작성기관 : 통 계 청
지정통계 : 111 – 11 – 12

광공업동태조사표(Ⅰ)

〔일 반 업 종 용〕

통계법 제4조에 따라 귀업체는 통계자료의 신고의무가 있으며, 또한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 목적에만 사용하고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199 년 월분) 1. 잠정자료 2. 확정자료

※ 매월 12일까지 제출

사업체고유번호	산업분류부호	사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체규모	종업원규모	유고사항
		사업체					1. 대 규 모	1. 500명 이상 2. 300~499명	1. 전 입
행정구역번호	조사구번호	본 사					2. 중소규모	3. 100~299명 4. 99명 이하	2. 휴 업 3. 사업체 흡수 4. 사업체 분리

1 제품생산 · 출하 · 재고

일련번호	품목부호	품목명	유고사항	단위	생산	구입 외부(수입포함)	구입 동일기업내타공장	동일공장내재투입(자가소비)	출하 외부판매 국내시판	출하 외부판매 수출	출하 동일기업내타공장출하및기타	과부족조정	월말재고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2 원재료 및 연료사용 · 재고

일련번호	원재료및연료부호	원재료및연료명	유고사항	단위	구분 국산1 수입2	월중사용량	월말재고량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51	9 0 1 – 0 0	무연탄 · 원료탄		M/T			
52	9 0 2 – 0 0	경유 · 중유		kℓ			
53	9 0 3 – 0 0	방카C유		kℓ			
54	9 0 4 – 0 0	전력		천KWH			

3 고용 및 조업상황

금월말상시종업원수			
생산직	사무직 · 기타	자영업주 · 무급가족종사자	계
명	명	명	명

월중 입직자수	월중 이직자수	월중 조업일수	월중1인당평균조업시간
명	명	일	시간 교대

4 증감내용

	품목부호	전월비 (%)	증감 부호	증 감 사 유	⊙ 증 감 내 용 부 호			
					<증 가>		<감 소>	
① 생 산					01	수출(주문)증가	11	수출(주문)감소
					02	내수(주문)증가	12	내수(주문)감소
					03	설비증설	13	설비축소
					04	정상가동		보수·고장
					05	지정품목생산개시	15	타품목생산
② 출 하					06	타공장흡수로증가	16	원재료구입부진
					07	수요증가대비	17	휴 업
					08	신제품·신기법 도입에 따른 증가	18	화재·파업
③ 재 고					09	기 타	19	기 타(일기불순 등)

	증 감 사 유
종 업 원 수	
조 업 일 수	
조 업 시 간	

응 답 부 서	응 답 자	조 사 담 당 자
과 전 화( )	(인)	(인)

당부말씀

① 이 조사는 국내의 광업, 제조업, 전기업 부문의 경기동향을 매월 파악하여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② 이 조사는 당청에서 미리 지정한 품목만을 조사함으로 귀업체의 생산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주시고, 유사제품이나 다른 지정품목을 새로이 생산할 때에는 당청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③ 귀업체의 조직·경영상 변동사항(합병, 이전, 휴·폐업, 증설 등)이 발생할 때에도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생 산
- ○ 판매용, 자가소비용 등으로 자체 생산한 량
- ○ 주요 원재료를 제공하여 타업체에 위탁생산한 량
- ○ 주요 원재료를 자체구입하여 제조한 타업체로부터의 수탁생산한 량
- ○ 제조업이 아닌 업체, 상사, 기관, 단체, 소비자로부터의 수탁생산한 량

※ 제외 : 타 제조업체로부터 주요 원재료를 제공받아 수탁생산한 량

외 부 구 입
- ○ 조사품목(생산품목)과 같은 제품으로서 외국수입 및 국내 타 업체로부터의 구입·융통량
- ○ 주요원재료를 제공하지 않고 타업체의 하청생산케 하여 납품받은 량
- ○ 반품된 량(폐기품 제외)

동일기업내타공장분구입
- ○ 조사품목과 같은 제품으로서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부터 인수한 량

동일공장내재투입
- ○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해 원재료, 부품, 연료 등으로 공장내에서 자가소비된 량
- ○ 위탁생산을 위해 하청공장에 원재료로 제공한 량

※제외 :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 이송된 량

국 내 시 판
- ○ 국내 타사업체 또는 소비자 및 군납용으로 출고된 량
- ○ 수출용이라도 타사업체로 출고되어 다른제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량
- ○ 종업원에 대한 현물급여로 지급된 량

수 출
- ○ 직·간접 수출량 및 주한 외국군 납품 량

동일기업내타공장출하및기타
- ○ 동일조사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동일기업내 타 공장으로 이송한 량
- ○ 동일기업내 타공장의 원재료, 연료 등으로 출하 이송한 량
- ○ 타업체로부터 융통받은 량의 변제
- ○ 선물, 견본, 전시용 및 자기사용(사무실, 공장내)으로 공급된 량

※ 제외 : • 같은 조사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의 출하(국내시판용, 수출용으로 계상)
• 염색, 도장 또는 단순 가공을 위해 출고된 량(재고로 계상)

월 말 재 고
- ○ 지정조사품목의 자체생산분 및 구입분의 실제 재고량
- ○ 판매는 이루어졌으나 아직 인도되지 않고 있는 제품(출하로 계상 않음)

※ 제외 : 반품된 제품중 폐기된 량.

작성기관 : 통 계 청
지정통계 : 111 – 11 – 12

광공업동태조사표(Ⅱ)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업종용〕

통계법 제4조에 따라 귀업체는 통계자료의 신고의무가 있으며, 또한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 목적에만 사용하고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199 년 월분) 1. 잠정자료 2. 확정자료

※ 매월 12일까지 제출

사업체고유번호	산업분류부호	사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체규모	종업원규모	유고사항
		사업체					1. 대 규 모	1. 500명 이상 2. 300~499명	1. 전 입
행정구역번호	조사구번호	본 사					2. 중소규모	3. 100~299명 4. 99명 이하	2. 휴 업 3. 사업체 흡수 4. 사업체 분리

1 제품생산·출하·재고

일련번호	품목부호	품목명	유고사항	생산 수량 단위	생산 수량	생산 금액	구입(동일기업내타공장 및 외부) 수량	동일공장내재투입(자가소비) 수량	출하 외부판매 국내시판 수량	출하 외부판매 국내시판 금액	출하 외부판매 수출 수량	출하 외부판매 수출 금액	동일기업내타공장출하 및 기타 수량	월말재고 수량	월말재고 금액
					백 십 만 십 만 만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억 억 억 천 백 만 만	백 십 만 십 만 만 천 백 십 일	백 십 만 십 만 만 천 백 십 일	백 십 만 십 만 만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억 억 억 천 백 만 만	백 십 만 십 만 만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억 억 억 천 백 만 만	백 십 만 십 만 만 천 백 십 일	백 십 만 십 만 만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억 억 억 천 백 만 만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2 원재료 및 연료사용·재고

일련번호	원재료및연료부호	원재료및연료명	유고사항	단위	구분 국산1 수입2	월중사용량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월말재고량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51	9 0 1 – 0 0	무연탄·원료탄		M/T			
52	9 0 2 – 0 0	경유·중유		kℓ			
53	9 0 3 – 0 0	방카C유		kℓ			
54	9 0 4 – 0 0	전력		천KWH			

3 고용 및 조업상황

금월말상시종업원수			
생산직	사무직·기타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	계
명	명	명	명

월중 입직자수	월중 이직자수	월중 조업일수	월중1인당평균조업시간
명	명	일	시간 / 교대

4 증감내용

	품목부호	전월비 (%)	증감 부호	증감 사유	⊙ 증감내용부호			
					<증 가>		<감 소>	
① 생 산					01	수출(주문)증가	11	수출(주문)감소
					02	내수(주문)증가	12	내수(주문)감소
					03	설비증설	13	설비축소
② 출 하					04	정상가동		보수·고장
					05	지정품목생산개시	15	타품목생산
					06	타공장흡수로증가	16	원재료구입부진
					07	수요증가대비	17	휴 업
③ 재 고					08	신제품·신기법 도입에 따른 증가	18	화재·파업
					09	기 타	19	기 타(일기불순 등)

	증 감 사 유
종 업 원 수	
조 업 일 수	
조 업 시 간	

응 답 부 서	응 답 자	조 사 담 당 자
과 전 화( )	(인)	(인)

당부말씀

① 이 조사는 국내의 광업, 제조업, 전기업 부문의 경기동향을 매월 파악하여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② 이 조사는 당청에서 미리 지정한 품목만을 조사함으로 귀업체의 생산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주시고, 유사제품이나 다른 지정품목을 새로이 생산할 때에는 당청 직원에게 반드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③ 귀 업체의 조직·경영상 변동사항(합병, 이전, 휴·폐업, 증설 등)이 발생할 때에도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유의사항

생 산
- ○ 판매용, 자가소비용 등으로 자체생산한 량
- ○ 주요 원재료를 제공하여 타업체에 위탁생산한 량
- ○ 주요 원재료를 자체구입하여 제조한 타업체로부터의 수탁생산량
- ○ 제조업이 아닌 업체, 상사, 기관, 단체, 소비자로부터의 수탁생산량
- ※ 제외 : 타 제조업체로부터 주요 원재료를 제공받아 수탁 생산한 량

구 입
- ○ 사업체에서의 생산중인 조사품목과 같은 제품으로서 국외수입, 국내 사업체로부터의 구입, 융통 및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부터 입고된 량
- ○ 주요 원재료를 제공하지 않고 하청공장에 위탁생산하여 납품받은 량
- ○ 반품된 량(폐기품 제외)
  ※ 제외 : 사업체의 조사품목(생산품목)이 아닌 제품의 구입량

동일공장내재투입
- ○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해 원재료, 부품, 연료 등으로 공장내에서 자가 소비된 량
- ○ 위탁 생산을 위해 하청업체에 원재료로서 지급한 량
- ○ ※ 제외 :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 이송된 량

국 내 시 판
- ○ 국내 타 사업체 또는 소비자 및 군납용으로 출고된 량
- ○ 수출용이라도 타 사업체로 출고되어 다른 제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량
- ○ 종업원에 대한 현물급여로 지급된 량

수 출
- ○ 직·간접 수출량 및 주한 외국군 납품량

동일기업내타공장 출하및기타
- ○ 동일 조사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 이송한 량
- ○ 동일 기업내 타공장의 원재료, 연료등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출하한 량
- ○ 타사업체로 부터 융통받은 량의 번제
- ○ 선물, 견본, 전시용 등으로 출고된 량
- ※ 제외 : • 같은 조사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동일기업내 타 공장으로의 출하(국내시판, 수출용으로 계상)
  • 염색 또는 단순가공을 위해 일시 출고된 량(재고로 계상)

월 말 재 고
- ○ 자체생산, 위탁생산, 구입분의 실제 재고량
- ○ 판매는 이루어졌으나 아직 인도되지 않은 제품량(출하로 계상 않음)
- ※ 제외 : 반품된 제품중 폐기된 량

작성기관 : 통 계 청
지정통계 : 111 - 11 - 12

광공업동태조사표(Ⅲ)

〔진척률 조사품목용〕

통계법 제4조에 따라 귀업체는 통계자료의 신고의무가 있으며, 또한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 목적에만 사용하고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199 년 월분) 1. 잠정자료 2. 확정자료

※ 매월 12일까지 제출

사업체고유번호	산업분류부호	사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체규모	종업원규모	유고사항
		사업체					1. 대규모	1. 500명 이상 2. 300~499명	1. 전 입
행정구역번호	조사구번호	본 사					2. 중소규모	3. 100~299명 4. 99명 이하	2. 휴 업 3. 사업체 흡수 4. 사업체 분리

1 품목수주 · 진척사항

일련번호	품목부호	품목명	유고사항	단위	당월수주량		당월진척량		수주잔량		당월완성품인도량	
					국내용	수출용	국내용	수출용	국내용	수출용	톤수	척(대)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십 일
01	8410200	철강유조선		G/T								
02	8410300	일반화물선		G/T								
03	8410400	특수화물선		G/T								
04	8410500	비상업용특수선박		G/T								
05	8410600	철강어선		G/T								
06	8410700	합성수지선		G/T								
07	8410800	선박해체업		LDT								
08	8410909	목선		G/T								
09	8420100	디젤기관차		대								
10	8420200	전동차		대								
11	8420300	여객차및수하물차		대								
12	8420400	화차		대								

2 원재료 및 연료사용 · 재고

일련번호	원재료및연료부호	원재료및연료명	유고사항	단위	구분	월중사용량	월말재고량
					국산1 수입2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51	901-00	무연탄 · 원료탄		M/T			
52	902-00	경유 · 중유		kℓ			
53	903-00	방카C유		kℓ			
54	904-00	전력		천KWH			

3 고용 및 조업상황

금월말상시종업원수			
생산직	사무직 · 기타	자영업주 · 무급가족종사자	계
명	명	명	명

월중 입직자수	월중 이직자수	월중 조업일수	월중1인당평균조업시간
명	명	일	시간 교대

4 증감내용

	품 목 부 호	전월비 (%)	증 감 사 유
당 월 진 척 량			

	증 감 사 유
종 업 원 수	
조 업 일 수	
조 업 시 간	

응 답 부 서	응 답 자	조 사 담 당 자
과 전 화( )	(인)	(인)

당 부 말 씀

① 이 조사는 국내의 광업·제조업·전기업 부문의 경기동향을 매월 파악하여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② 이 조사는 당청에서 미리 지정한 품목만을 조사함으로 귀업체의 생산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주시고, 유사제품이나 다른 지정품목을 새로이 생산할 때에는 당청 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③ 귀업체의 조직·경영상 변동사항(합병, 이전, 휴·폐업, 증설 등)이 발생할 때에도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당 월 수 주 량
- ○ 확실한 계약에 의거 외국 또는 국내로부터 주문 받은 량
- ○ 선박해체업의 경우는 폐선박 도입량(경화배수톤수)

당 월 진 척 량
- ○ 사업체에서 건조 또는 제작중인 선박, 철도차량의 공정 진척율에 따른 환산량 (수주잔량×당월 진척율)
- ○ 선박 해체업의 경우는 공정진척에 따른 해체량

수 주 잔 량
- ○ 총 수주량 중에서 당월까지의 진척량 누계를 차감한 잔량
- ○ 선박 해체업의 경우는 미해체량

당월완성품인도량
- ○ 공정 진척도에 관계없이 선박 또는 철도차량을 완성하여 통관 또는 주문처에 납품한 량

기계수주통계조사표

작성기관 : 통 계 청
승인번호 : 111－21－08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199 년 월분)

사업체고유번호							

※ 제출기한 : 매월 12일

사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명	전 화
사 업 체				
본 사				

【작성상 유의사항】

1. 설비용 기계류를 자기기업내에 설치하여 자가사용 할 계획인 경우에도, 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수주액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2. 기업의 계획 생산분은 판매시, 수주와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수주액과 판매액에 각각 그 금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3. 장기간의 공정을 요하는 기종의 판매액은 기성액(진척율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4. 수주잔고란에는 사업체의 총수주실적중에서 조사기준 월의 말일 현재 아직 납품(판매)하지 못한 수주액(잔액)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5. 금월분 수주잔고는 전월말 수주잔고에 금월분 수주액을 더하고 금월분 판매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6. 이미 보고된 수주액중 계약변동(해약, 감액, 증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비 고

- 수주액 증감요인 :
- 전월수주액 변동요인(감액사유) :

응답자부서	응 답 자	조사담당자
과		
(전화 :)	㊞	㊞

조사구번호 | | | | — | | |

(단위 : 백만원)

1. 수요자별 및 기종별 수주 (계속)

수요자별 \ 기종별	원동기				일반산업									
	01 화력원동기	02 수력원동기	03 내연기관	04 소계	05 농림업용기계	06 금속공작기계	07 금속가공기계	08 건설·광산기계	09 섬유용기계	10 석유·화학기계	11 풍수력기계
	조 억 억 억 억 천 백 만	조 억 억 억 억 천 백 만	조 억 억 억 억 천 백 만	조 억 억 억 억 천 백 만	조 억 억 억 억 천 백 만	조 억 억 억 억 천 백 만	조 억 억 억 억 천 백 만	조 억 억 억 억 천 백 만	조 억 억 억 억 천 백 만	조 억 억 억 억 천 백 만	조 억 억 억 억 천 백 만
01 전월말수주잔고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민간수요 제조업 02 식품공업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3 섬유공업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4 화학공업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5 석유·석탄제품공업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6 비금속광물공업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7 제1차금속공업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8 조립금속·기계·정밀기기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9 전기·전자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10 조선업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자동차공업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2 기타공업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3 제조업계(02~12)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비제조업 14 운수업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5 건설업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6 광업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7 농림어업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8 기타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9 비제조업계(14~18)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20 민간수요계(13+19)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공공수요 21 운수업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2 통신업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3 전력업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4 공공제조업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5 공공기타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6 공공수요계(21~25)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7 대리점(상사·회사포함)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8 해외수요	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29 수주액합계(20+26+27+28)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30 판매액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1 수주잔고(01+29-30)	31	31	31	31	31	31	31	31	31	31	31

(단위 : 백만원)

1. 수요자별 및 기종별 수주

199 년 월분

기종 / 수요자		용기계									전기·통신기계									수송용기계									22 합계							23 철구조물						
		12 운반기계							13 기타산업기계							14 소계							15 전기기계							16 통신기계							17 소계							18 선박							19 철도차량							20 기타수송기계							21 소계																		
		조	억	억	억	억	만	만	조	억	억	억	억	만	만	조	억	억	억	억	만	만	조	억	억	억	억	만	만	조	억	억	억	억	만	만	조	억	억	억	억	만	만	조	억	억	억	억	만	만	조	억	억	억	억	만	만	조	억	억	억	억	만	만	조	억	억	억	억	만	만
전월잔고	01																	

2. 수 주 내 역

	제 품 명	기 종 분 류	수 요 자 사 업 체 명	수요자분류	수주액(백만원)	신 규	개 보 수	예 정 납 기	비 고
1								년 월	
2								년 월	
3								년 월	
4								년 월	
5								년 월	
6								년 월	
7								년 월	
8								년 월	
9								년 월	
10								년 월	
11								년 월	
12								년 월	
13								년 월	
14								년 월	
15								년 월	
16								년 월	
17								년 월	
18								년 월	
19								년 월	
20								년 월	
21								년 월	
22								년 월	
23								년 월	
24								년 월	
25								년 월	
26								년 월	
27								년 월	
28								년 월	
29								년 월	
30								년 월	
31								년 월	
32								년 월	
33								년 월	
34								년 월	
35								년 월	

◉ 제출기한 : 매월 15일

※ 사 업 체 번 호	※ 사 업 체 명
□□-□□□□□	

지 정 통 계
111-11-15

(199 년 월분)

건설 수주통계 조사표

본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절대로 보장됩니다.

1. 국내건설공사 수주내역

(금액단위 : 백만원)

	일련번호	① 공사명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입)	② 세분류 공종명	공종분류 (부호)	③ 발주자명	④ 세분류 발주자명	발주자분류 (부호)	⑤ 수주액 합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⑤ 수주액 계약금액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⑤ 수주액 발주자공급 원자재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⑥ 계약일자	⑦ 착공예정일자	⑧ 완공예정일자	⑨ 공사기간 (개월)	⑩ 공사지역명	공사지역 (부호)
도급공사계약액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직영공사계획액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건	99	합 계									×××××××××××					

〔세분류공사종류및부호〕

1. 건 축

101 주 택
102 사무실·점포·숙박시설·오락장
103 공장·창고
104 관공서·학교·병원
109 기타(체육관, 군막사등)

2. 토 목

201 치산·치수
202 농림·수산
203 도로·교량
204 항만·공항
205 철도·궤도
206 상·하수도
207 발전·옥외전기및전화공사
208 토지조성·공원·경기장
209 댐
210 기계설치
219 기타

3. 전문공사

300 연관·난방·도장·도배·옥내전기공사·석공·미장·목공·지붕잇기·함석·구조강건립·방수·방습·내화·건물철거·기타(굴뚝·온돌·비계·창호·공사등)

〔세분류발주자명및부호〕

1. 국내공공

101 정 부
102 지방자치단체
103 국영기업체
109 기타공공단체

2. 국내민간

21 제 조 업
211 음식료품
212 섬유·의복
213 화학·석유
214 철 강 업
215 기계·장치
219 기 타
22 비제조업
221 운수·보관
222 상업·서비스·금융·보 험
223 부 동 산
224 광 업
225 건 설 업
229 기타비제조업

3. 국내외국기관

300 국내외국기관

〔공사지역별부호코드〕

11 : 서울
21 : 부산
22 : 대구
23 : 인천
24 : 광주
25 : 대전
31 : 경기
32 : 강원
33 : 충북
34 : 충남
35 : 전북
36 : 전남
37 : 경북
38 : 경남
39 : 제주

통 계 청

(매중 매)

1. ※ 란은 지방통계사무소에서 우송시 기입한다.
2. 해당되는 공사의 기입란이 부족할 경우 다른 조사표를 사용하여 매수를 기입하되 소계는 제외하고 합계만 기입한다.
3. 도급공사 계약액에는 발주자와 체결한 도급계약 금액을 기입한다. 국내 타 건설업체로 부터 하도급받은 수주액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나, 하도급 받은 경우일지라도 외국건설업체나 국내종합무역상사등으로 부터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된다. 발주자 공급 원자재비는 발주자가 공급할 재료비를 계약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4. 직영공사는 계획확정시 예정 총공사비를 기입하되, 계약확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착공시의 예정공사비를 조사한다. 여기서 직영공사란 조사대상 건설업체 또는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는 모기업체 또는 산하기업체를 위한 자기공사를 말한다.
5. 사업체 고유번호, 공종 분류부호, 발주자 분류부호, 공사지역 부호란은 부호기입에 특히 유의하고 적색펜으로 기입한다.
6. 세분류 발주자명 및 공종명은 조사표 하단의 내용에 따라 분류 기입한다.
7.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행발주한 경우에는 원발주자(실수요자)를 확인하여 기입한다.
8. 국가방위와 관련된 건설공사일 경우에는 공사명은 "ㅇㅇ공사"로, 발주자명은 정부(국군부대일 경우도 동일) 또는 국내 외국기관(주한미군일 경우)으로 기입한다.
9. 계약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발생월의 증감액만을 기입하되 증액시에는(＋)기호를, 감액시에는(－)기호를 증감액분 앞에 표시하고 그 내용을 난외 여백에 기입한다.
10. 단 한건의 수주액도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만일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누락분을 즉시 보고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익월조사시 기입보고하되 그 내역을 비고란에 기입한다.

○국내수주액 전월대비 증감요인

구 분	수주액(백만원)	증 감 요 인
전 월		
금 월		
증 감 액		

○비 고

작성일자 : 199 년 월 일

사업체명 :

작성부서 :

전화번호 :

작성자명 (인)

조사담당자 (인)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표

작성기관 : 통 계 청
승인번호 : 111 - 21 - 02

통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199 □ 년 □□ 월분) | 1. 잠정자료 | 2. 확정자료 |

※ 매월 12일까지 제출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소재지	종업원 규모	사업체 유고사항
	사업체		1. 500명이상 2. 300~499명 3. 100~299명 4. 99명 이하	1. 전 입 2. 휴 업 3. 사업체흡수 4. 사업체분리
조사구번호	본 사			
—				

응답부서	응답자	조사담당자
☎	인	

1 생산능력 · 생산량

일련번호	품목부호	품목명	품목유고(※)	단위	생산능력							생산량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2 증감내역 (증감사유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입해 주십시오.)

	품목부호	전월비(%)	증감부호(※)	증감사유
생산능력				
생산량				

※ 품목유고부호
1. 품목 신규 생산
2. 품목 생산 중단
3. 기보고 품목으로서 분류 착오로 제외
4. 품목 조사 누락 (누락품목의 신규)

※ 생산능력증감부호
1. 표준산식적용 (전월과 동일기준)
2. 설비증설 또는 대체
3. 설비 폐기
4. 표준조업시간변경
5. 표준조업일수 변경
6. 신기법 또는 공정개선
7. 노후설비 재산정
8. 기타

※ 생산량증감부호

증가
01 수출(주문) 증가 02 내수(주문) 증가 03 설비증설
04 정상가동 05 지정품목 생산개시 06 타공장흡수
07 수요증가대비 08 신기법 또는 공정개선 09 기타

감소
11 수출(주문) 감소 12 내수(주문) 감소 13 설비폐기 또는 축소
14 보수, 고장 15 대상외품목생산 16 원재료구입부진
17 휴업 18 화재, 파업 19 기타(일기불순등)

당 부 의 말 씀

- ㅇ 이 조사는 제조업부문의 설비이용실태를 파악하여 경기동향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191개품목을 생산하는 약 1,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하고 있습니다.
- ㅇ 이 조사는 당청에서 미리 지정한 주요품목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므로 귀업체의 생산품목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품목에 대한 자료를 매월 방문하는 당청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ㅇ 특히 이 조사는 설비의 이용실태를 생산능력대비 생산실적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설비내역 또는 능력산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해설 및 조사표 기입요령

1. 생산능력

생산능력의 개념에는 경제적측면(비용개념)의 능력과 공학적측면(기술개념)의 능력으로 대별되고, 기술개념의 능력은 이론적능력과 현실적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생산능력이란 이론적능력과 현실적능력의 중간개념인 표준생산능력으로서 이는 주어진 조건(지정된 설비와 주어진 조업일수 및 조업시간)에 따라 표준능력산식(당청 지정)을 적용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체에서 평가한 자료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2. 생산량

자체설비를 통한 생산량을 의미하므로, 원재료 제공 유무에 관계없이 위탁생산량은 제외하고 수탁생산량은 포함하여 기입합니다.

3. 생산능력과 생산실적 기록시 특히 유의할 사항

가. 월간운전가능설비와 월간 실운전실적을 조사하는 품목

- 방적품목(면사, 방모사, 소모사)은 "추(錘)"의 수를, 직물(면직물, 견직물, 합섬직물, 모직물)은 "직기"의 대수로 생산능력(운전가능 설비추수 또는 직기대수)과 월중 생산량(월중 가동한 설비수)을 조사하므로 실질적인 제품생산량(㎏,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 투입능력과 투입량을 조사하는 품목

- 원유는 원유처리능력과 처리량(원유투입량)을 기록합니다.(산출물의 합계가 아님)

다. 중간제품의 실적을 조사하는 품목

- 위생용지는 완성제품(화장지, 냅킨 등)의 합계가 아닌 위생용지원지의 생산능력과 생산량을 기입합니다.

라. 진척량을 조사하는 품목

- 철강선박은 사업체의 공칭능력과 진척률에 의한 생산량을 기입합니다.

마. 단위에 유의하여 조사표작성

특히, 크레인-인발중량, 산업용보일러 **T/H** 등

1991년

건설업통계조사 지침서

1992. 2

통 계 청

차 례

Ⅰ. 조사개요 ····· 3

1. 조사목적 ····· 3

2. 조사의의 ····· 3

3. 법적근거 ····· 3

4. 조사연혁 ····· 3

5. 조사기준시점 및 기간 ····· 4

6. 조사범위 및 대상 ····· 4

7. 조사단위 ····· 5

8. 조사사항(항목) ····· 5

9. 조사방법 ····· 6

10. 조사체계 ····· 6

11. 결과집계 및 공표 ····· 6

Ⅱ. 조사표기입요령 ····· 7

1. 주의사항 ····· 7

2. 항목별 기입요령 ····· 7

Ⅲ. 조사표 착오기입유형 ····· 36

Ⅳ. 조사담당자의 임무 ····· 37

1. 실사 ····· 37

2. 조사표의 검토 및 정리 ····· 41

< 부록 > ····· 44

1. 산업분류표(건설업) ····· 44

2. 공종세분류 ····· 82

3. 발주자 분류해설 ····· 84

4. 조사표 및 기타 서식류 ····· 99

Ⅰ.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우리나라 건설업 부문의 고용, 급여, 공사액, 공사비용,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 장비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건설업부문의 정책수립과 이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조사의의

가. 건설활동은 국가의 새로운 고정자산을 창출하며,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기여하기 때문에 각종 산업활동 중에서도 이의 비중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건설업의 활발한 활동이 괄목할 만한 신장을 보여 경제성장의 기여도가 커지고 있다.

나. 이와 같이 건설업 통계자료는 전반적인 국민경제분석 및 자본형성 측정등에 필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이 조사에서 생산되는 통계자료는 건설업체에서도 자체 사업계획 수립과 실적평가에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3. 법적근거

통계법 제3조1항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11-11-14호)

4. 조사연혁

가. 한국산업은행에서 1968 ~ 1970년까지 3년간 건설업 통계조사를 실시

나. 1972년에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어 1974년에 제1회 조사(1973년 기준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실시하여 금년이 19회 조사가 됨.

다. 1985년 기준조사부터는 건설업부문 유사통계 통합 실시 계획의 일환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통계청 등 3개 기관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실시.

라. 1989년 기준조사부터는 대한설비공사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분리하여 독립)가 추가 참여함으로써 4개 기관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

5. 조사기준시점 및 기간

가. 조사기준시점 : 1991. 12. 31 현재

나. 조사기준기간 : 1991. 1. 1 ~ 1991. 12. 31 (1년간)

다. 조사실시기간 : 1992. 2. 15 ~ 1992. 3. 14 (1개월간)

6. 조사범위 및 대상

가. 한국표준산업분류(1991. 9. 9 통계청 고시)의 대분류 『F. 건설업』 을 조사범위로 한다.

나. 조사대상

(1) 1종 전기공사업체(동력자원부장관 면허업체)
(2) 2종 전기공사업체(시·도지사 면허업체)
(3) 전기통신공사업체(체신부장관 면허업체)
(4) 건설업관련 각종 인·허가업체 및 각종 설비등록업체
(기타설비공사, 중소주택등록업체)

→ 통계청조사

(5) 종합건설업체(건설부장관 면허업체)
(6) 전문건설업체(시·도지사 면허업체)
(7) 설비공사업체(시·도지사 면허업체)

→ 건설관련협회조사 (회원업체)

* 조사대상 제외

- 기획, 조사, 측량, 설계를 하는 사업은 건설업이 아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조사에서 제외된다.
-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임대업, 중개업, 관리업 등은 "부동산업"에 해당되므로 조사에서 제외된다.

7. 조사단위

조사단위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된다.

본 조사에서 사업체라함은 자산 및 종업원과 비교적 영구적인 사무소 (개인기업주의 자택) 등을 가지고 건설활동을 위하여 입찰, 기획, 감독 및 도급계약 등을 할 수있는 영리추구 단체를 말한다.

8. 조사사항(항목)

가. 조사표

(1) 사업체의 특징에 관한 사항 : 『사업체명 및 소재지』, 『조직형태』, 『자본금 및 총매출액』

(2) 고용, 급여액에 관한 사항 :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3) 유형고정자산

(4) 주요건설장비 보유대수

(5) 기성액 및 공사비용

(6) 연초, 연말 재고액

(7) 면허종류

(8) 임대 수입

나. 부 조사표(건설공사 실적내역표)

공종별, 발주자별, 공사지역별 등의 수주액, 기성액, 미기성액 등에 관한 사항

9. 조사방법

가. 종합건설면허업체, 전문건설면허업체, 설비공사업체(협회등록) - 자계식 (전수조사)

나. 기타 건설업 관련 각종 인·허가 업체 및 각종 설비등록업체- 타계식 (전수조사)

(특정연료시공업체, 2종전기공사업체, 중소주택등록업체 - 타계식(표본조사))

10. 조사체계

가. 통계청 ⇒ 지방통계사무소 ⇒ 대상사업체

나. 대한건설협회 ⇒ 시·도지회 ⇒ 회원업체

다. 대한전문건설협회 ⇒ 시·도지회 ⇒ 회원업체

라. 대한설비공사협회 ⇒ 시·도지회 ⇒ 회원업체

11. 결과집계 , 공표 및 보고서 발간

가. 결과집계

당청 조사분과 3개 협회 조사분을 모두 당청에서 집계 자료처리

(1985. 11. 23 : 건설업부문 유사통계 통합조사 실시계획에 의거)

나. 공표

(1) 잠정집계결과 : 1992. 6

(2) 최종확정결과 : 1992. 9

다. 보고서 발간 : 1992. 10

II. 조사표 기입요령

1. 주의사항

가. 전기공사면허업체 및 전기통신공사 면허업체로서 토건업 또는 전문공사를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대한설비공사협회 조사하므로 겸업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나. 조사표중에서 『*』표가 있는 난은 기입하지 않는다.

다. 해당사항이 없는 난에는 사선(\)을 긋는다.

라. 기입한 사항을 고칠때에는 잘못된 곳에 두줄을 긋고 그 바로위에 명확하게 기입한다.

마. 건설업체중 해외건설면허를 소지한 업체는 국내공사, 해외공사를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하고, 해외건설분 조사표를 작성할 때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2. 조직형태』, 『3. 자본금 또는 출자금』 항목은 국내건설분 조사표와 동일하게 기입한다.

2. 항목별 기입요령

가. 본 조사표(건설업 통계조사표)

【 난외사항 】

사업체고유번호	본사소재지		면허업종	

(1) 사업체 고유번호

시도별로 접수대장의 접수번호를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사업체고유번호로 대체한다.(단, 표본업종 사업체는 사업체 명부 시트 우측에 주어진 고유번호를 사업체고유번호란에 기입한다.)

(2) 본사소재지

본사소재지 란에는 지역별 부호를 실적내역표 하단에서 찾아 기입한다.

(3) 면허업종

사업체의 주된 면허업종 부호를 실적내역표 하단에서 찾아 기입한다

【 난내사항 】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체명:						
대표자 :				전화번호 :		
소재지 :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가 동 리	번지	호

○ 사업체 명칭이라함은 그 사업체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실제로 등록한 공식명칭을 말한다.

○ 일정한 사업체 명칭이 없을 때에는 대표자(기업주)의 성명만을 기입한다.

○ 소재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장소로서 시·도명 부터 번지까지 상세히 기입한다.

○ 전화번호란을 각별히 유의하여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직형태 (해당란에 ○표)

1. 회사법인　　2. 회사이외의 법인　　3. 개인

○ 조직형태라함은 경영주체의 법적 조직형태를 말한다.

○ 법인사업체라함은 상법, 민법,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인등기를 완료하여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여기에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사단법인, 그리고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이 있으나, 본조사에서는 회사법인과 회사이외의 법인으로 두가지로만 구분하고 있으므로 회사이외의 법인에는 상법에 의한 회사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을 포함시킨다.

○ 준법인이란 조직형태상 법인격은 없으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비치 관리하는 개인 및 조직을 말하는바, 이는 회사이외의 법인에 기입한다.

○ 개인업체라함은 법인체가 아닌 개인소유의 사업체를 말한다. 2인이상 동업을 하거나 또는 법인격이 없는 조합과 같은 임의단체도 여기에 포함된다.

3. 자본금 또는 총매출액

* 자본금은 법인만 기입함
* 자본금 및 총매출액은 겸업포함 기재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자본금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총 매출액								

● 이 항목은 법인사업체에 한하여 기입한다.

○ 1991년 12월 31일 현재로 납입이 완료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기입한다.
(겸업일 경우 타산업 부문 자본금까지 포함조사)

○ 결산서상의 총매출액을 기입한다. (타산업부문 매출액 포함 조사)

4. 종사자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 피고용자	상용고	①사무 및 기타종업원														
		②기술자 및 기술공														
		③기능공및단순노무자														
	임시고(일용)	조 업 일 수 (A)														
		기능공	투입연인원 (B)													
			④ 1일평균 인원 (B÷A)													
		단순노무자	투입연인원 (C)													
			⑤ 1일평균 인원 (C÷A)													
	소계 ①+②+③+④+⑤															
(2)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합 계 (1) + (2)																

(가) 종사자

그 사업체의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외부에서 일을 하거나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경영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공동경영자와 주주는 종사자로 보지 않는다.

또한 원도급 사업체가 다른 사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에 하도급 업체의 종사자는 반드시 원도급 사업체의 종사자에 포함하여서는 않된다.

(1) 피고용자

일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임금, 봉급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급여를 받고있는 모든 남여 종업원을 말한다. 월별 종업원수는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수를 제외한 피고용자를 매월말 또는 급여계산일 현재의 인원을 기입한다. 장기 결근자 (3개월 이상) 및 군복무자 등은 제외하며, 해외공사의 경우에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의 피고용자는 조사하되 외국에서 현지 고용한 외국인 피고용자는 제외한다.

○ 상용고

1개월 이상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실제의 취업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정액급여를 받는 종업원을 말한다.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생산(건설공사 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관리직, 전문직, 서기직인 사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사환,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승용차 이외의 운전사는 생산직에 포함) 청소부 등을 포함한다.

- 기술자

건설공사의 설계 및 그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각종 건설관계법령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전신

전화 설비공사업, 지방자치 단체의 급수 조례)에 의한 면허소지자, 이공계대학 졸업자, 이공계 대학에서 2년이상 수료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가 해당된다.

(예 : 건축 및 토목기술사, 건축구조 및 설비기사1급, 시공기사 1급 및 2급 등)

- 기술공

전문직 기술자가 특히 지시한 기술을 책임있게 응용할 수 있으며 기술자의 지휘 또는 정립된 공학기술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기능공의 업무를 감독하는 자격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공계 초급대학(전문학교)졸업자,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기술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자, 정부에서 공인하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

(예 : 제도사, 측량사, 토목공학기술공, 전기 및 전자기술공 등)

- 기능공

건설공사의 시공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6개월 이상 조직적인 기술습득을 요하는 직종에서 1년이상 실무경험을 가진자, 국가에서 공인하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자로서 통칭 숙련공을 말한다.

(예 : 각종 건설직종의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 기능사보 등의 자격면허 소지자이거나, 또는 6개월 이상 조직적인 기술습득을 요하는 직종에서 1년이상 실무경험을 가진자로서 목공, 조적공, 미장공, 철근공, 도장공, 전공 등)

- 단순노무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육체적인 단순노무 제공자를 말한다. 즉 , 기능공의 조공, 특별인부,. 보통인부, 여자 인부 등 통칭 잡부를 말한다.

○ 임시고

- 1개월미만의 고용계약으로 실제의 취업일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 종업원을 말한다.
- 기능공 중에는 사업체의 상용종업원으로 고용되지 않고 일고(日雇)로 고용되는 경우도 있는 바, 일고(日雇)로 고용된 기능공을 임시기능공이라 하며 단순노무자로 분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한다.
- 임시고(임시기능공 및 임시단순노무자)의 1일 평균인원은 매월별로 투입한 연인원을 조업일수로 나누어 계산 (소수점이하는 올림)하고 연간 합계는 월별 1일 평균인원의 가로(1월 ~ 12월까지)합계 기입한다.

(2)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 사업주 (출자자 포함) 와 그의 가족 (동거자 포함)으로서 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 또는 노무에서 통상 작업시간의 1/3이상을 종사하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명의상으로만 사업주이고, 통상 작업시간의 1/3이상을 근무하지 않는 자는 종사자로 보지 않는다.
- 사업주의 가족이더라도 상시(常時)근무에 종사하고, 이에 대한 임금

또는 봉급의 형식으로 급여를 받는자는 피고용자에 포함시킨다.

-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는 조직형태상 개인업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있어야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연간급여액

구 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만	만	천원	구 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상용	(1)사무및기타종업원										임시	(4)기 능 공									
	(2)기술자 및 기술공											(5)단 순 노 무 자									
	(3)기 능 공										6)당년도퇴직급여충당전입금										
합 계 【(1)+(2)+(3)+(4)+(5)+(6)】																					

○ 종사자 구분별로 연간 지급한 급여총액을 기입하되, 연간급여액의 합계 【(1)+(2)+(3)+(4)+(5)+(6)】는 『203.임금 및 급료』와 반드시 일치하여야하고, (6) 당년도 퇴직급여 충당전입금은 퇴직급여 충당전입금은 대차대조표의 고정부채중 '91년도분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 전입된 금액을 기입한다.

단,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입한다.

○ 여기서 급여라 함은 공사원가 및 일반관리 부문에서 발생한 제반급여로서 조사기준 기간중 정기 또는 부정기를 가리지 않고 피고용자에게 노무의 댓가로 지급한 모든 급여, 즉 봉급,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생계보조비, 당년도 퇴직급여 충당전입금 등을 말하며 현금급여 이외에 현물로 지급된 것은 현금으로 환산하여 포함한다.

○ '91년 이전에 체불되었던 급여를 '91년중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고 반면에 '91년중에 지급해야 할 것이 미불된 것은 포함한다.

○ 급여액은 세금, 저금, 노동조합비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 즉, 업체에서 부담한 총액을 기입하며, 피고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보험료, 적립금 등을 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를 업체에서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이 부담액을 급여액에 가산한다.

○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피고용자의 급여액은 포함하되 외국에서 현지 고용한 외국인 피고용자의 급여는 제외시키고 이는 『210. 잡비』란에 포함하여야 한다.

6. 유형고정자산

	①연초총액(미상각 기초잔액) '91.1.1 현재									② 연간취득 및 증·개축액								③ 연간처분 및 손해액								④연말총액(미상각기초잔액) '91.12.31 현재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토 지																																	
(2) 건 물																																	
(3) 구 축 물																																	
(4) 중 기																																	
(5) 차량·선박·운반구																																	
(6) 공구·기구·비품																																	
(7) 건설 가계정																																	
합 계																																	

유형고정자산이라 함은 구체적 형태를 가진 고정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중기, 차량, 선박, 운반구, 공구, 비품, 건설가계정 및 기타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형고정자산 중 건설업활동에 제공된 부분만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타산업과 겸업일 경우에는 건설업 부분만의 유형고정자산을 구분하여 조사해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겸업업종의 외형거래액(매출액)과 건설공사액을 비례배분하여 기입한다.

① 연초총액은 연초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입한다.

② 연간 취득액 및 증·개축액

○ '91년 1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의 취득, 설치 및 증·개축을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다만 기설(旣設)의 유형고정자산의 기능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부분품의 대체(代替)와 수리에 지출된 경상경비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조사항목 "8. 기성액 및 공사비용"의 『 208. 수선비 』에 포함시킨다.

○ 취득액의 평가는 구입한 것에 대하여는 운임 및 설치비를 포함한 구입가격으로 평가하고, 동일 기업내의 다른 사업체로부터 양수(讓受)받은것은 양수 당시의 싯가로 환산 평가한다. 자기건설의 경우에는 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91년 1년간에 지출한 모든비용을 기입하되 미완성의 공사는 『 (7). 건설가계정 』란에 기입하고, 완성된 공사는 해당 유형고정자산란에 기입한다.

③ 연간처분액 및 손해액

○ 조사기준기간중에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액을 기입하고, 같은 기업내의 다른 사업체에 양도하였거나 재해, 도난 등으로 인하여 유형고정자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 원인의 발생당시에 매각할 수 있었던 싯가에 의하여 기입한다.

○ 조사기준기간중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의한 감소(상각액)는 장부가액의 감소를 자산 종류별로 기입한다.

○ 감가상각을 직접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 계정으로부터 연중 공제한 금액을, 간접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충당금에 연간 가산된 금액을 기입한다.

④ 연말총액

연말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입하되 다음 산식에 맞아야 한다.

④연말총액 = ①연초총액 + ②연간취득액 및 증·개축액 - ③연간처분액 및 손해액 《④ = ①+②-③ 》

⑤ 유형고정자산의 종류

건설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에 한한다.

(1) 토 지

○ 사업체의 대지, 사택부지, 건축예정부지 및 운동장과 이들을 위한 토지개량비도 이에 포함시킨다.

○ 그러나 비업무용 토지는 여기에 제외한다

(2) 건 물

· 사무소, 사택,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과 승강기, 냉방장치, 조명장치, 통풍장치 등의 부속시설도 포함시킨다.

(3) 구축물

토지에 정착된 모든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즉, 도로, 철도, 교량, 담장, 연돌, 수도, 송유관, 우물, 조경 등

(4) 중 기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치

(5) 차량, 선박 및 운반구(건설중기제외)

자동차, 철도차량, 우마차 등의 육상운반구와 여객선, 화물선, 전마선, 유조선 등의 해상운반구 및 항공기 등

(6) 공구, 기구 및 비품

내용년수가 1년이상이고 싯가 2만원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 만을 포함한다.

(7) 건설가계정

· 미완성된 유형고정자산을 위하여 이미 지출한 금액과 건설 활동을 위하여 재료, 기계설비 등을 매입하고자 이미 대금을 지출하였으나 아직 현품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 완성 또는 도착시까지 일시적 처리하는 계정을 건설가계정이라고 한다.

· 그러나 건설업체에 분양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7. 주요건설장비 보유대수

중기부호	중 기 명	보유대수				중기부호	중 기 명	보유대수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일
01 - 1	불도우저(20톤 이상)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01 - 2	불도우저(20톤 미만)					15	콘크리트 펌프				
02 - 1	굴 삭 기(1㎥ 이상)					16	아스팔트 믹싱 프랜트				
02 - 2	굴 삭 기(1㎥ 미만)					17	아스팔트 휘니셔				
03 - 1	로 우 더(타이어식)					18	아스팔트 살포기				
03 - 2	로 우 더(무한궤도식)					19	골재살포기				
04	지 게 차					20	쇄석기				
05	스크레이퍼					21	공기압축기				
06	덤프트럭(12톤 이상)					22	천공기				
07 - 1	기 중 기(타이어식)					23	항타 및 항발기				
07 - 2	기 중 기(무한궤도식)					24	사리채취선				
08	모우터 그레이더					25	준설선				
09	로 울 러					26	타우어크레인(비등록장비)				
10	노상안정기					27	12톤미만덤프트럭(비등록장비)				
11	콘크리트뱃칭프랜트					28	기타비등록장비				
12	콘크리트휘니셔					29	합 계				
13	콘크리트살포기										

○ 연말 현재 건설활동을 위하여 사업체가 보유하고 (소유주외) 있는 장비를 기입한다. 즉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수리중 또는 타업체에 대여한 것도 포함하여 기입한다.

○ 타업체로부터 대여받은것과 폐기처분 또는 가동불능인 장비는 제외한다.

○ 해외반출된 자기 소유 장비는 해외건설조사표에 별도 포함 작성한다.

○ 비등록 장비도 포함 조사한다.

8. 기성액 및 공사비용(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기 성 액			건설공사 기성액(외주공사비 포함)								
공사비용	201. 원재료비(자급)		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								
	202. 보조 재료비		일반관리비(소모품,사무용품)와 현장경비(소모 공구비 등)								
	203. 임금 및 급료 (인건비 총계로서 5.연간급여액란 합계와 일치)		임금 및 급료(손익계산서,원가계산서상의 금액)								
			당년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전입금(손익계산서상의 금액)								
	204. 복리 및 후생비 (보험료중 산재보험료,의료보험료는 포함)		손익계산서,원가계산서상의 의료보험료,산재보험료등 기타								
	205. 감가 상각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감가상각비,특별상각비								
	206. 지급임차료	건물·장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건물,장비,중기등의 임차료								
		토지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토지임차료								
	207. 조세 공과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세금과 공과								
	208. 수선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수선비(기계장치 수선,유지비 등)								
	209. 전력·용수·연료·광열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동력, 용수, 광열비								
	210. 잡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여타 계정과 기타								
	211. 외주공사비		원가계산서상의 외주비								
(2) 합 계			201+ 202+ 203+ .....+ 211								
(3) (1) - (2)			(기성액) - (공사비용)								
312. 발주자공급 원재료비			계약금액 이외 발주자로부터 받은 원재료중 공사에 투입된 원재료액								
313. 납부부가가치세			매출부가가치세 - 매입부가가치세								

○ 기성액이라 함은 건설업체에서 당년도에 시공한 공사액을 말한다.

○ 기성액에는 매출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입하고, 공사비용에도 매입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입한다. (건설업 이외의 타산업부문 제외)

(1) 기성액

○ "기성액"은 손익계산서상의 건설공사분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 포함)에 대한 매출액만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 기성액은 공사의 완성여부나 대금의 수취여부등과는 관계없이 공사공급가액에서 매출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당년도 기성액의 합계를 기입한다.

(단, 건설공사실적내역표 '(17)당년도 기성액' 에는 매출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손익계산서상의 기성액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2) 공사비용

○ 공사비용이라 함은 시공중에 발생한 일반관리비와 공사원가 비용을 총계한 것이다.

○ 기성액에 매출부가가치세가 제외되었으므로 공사비용 중에도 매입시 지출된 매입부가가치세를 각 공사비 항목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

201. 원재료비

○ 원재료라 함은 건설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건설자재로서(시멘트, 철근, 모래, 자갈, 목재, 유리, 대리석, 타일등 주재료와 부재료, 부분품 등) 건설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를 말한다.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외주) 계약금액 이외에 지급한 원재료는 원도급자측에서 포함 기입한다.

202. 보조재료비

○ 손익계산서의 일반관리비 중 소모품, 사무용품비와

○ 공사원가계산서의 현장경비 중 사무용품비, 소모품, 소모공구비 비등을 포함 기입한다.

203. 임금 및 급료

○ 임금 및 급료는 건설회사에서 지급한 인건비 총계로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말하는 바, 손익계산서의 일반관리비중 임원급여, 급료와 임금, 제수당 및 상여금,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 잡급과 공사원가계산서의 노무비, 즉 ① 급여 ② 임금 ③ 제수당 ④ 퇴직금 ⑤ 기타급여 등으로서 조사항목『5.연간급여액』합계와 반드시 일치하여야한다.

- 단, 해외공사의 경우에 현지에서 고용한 외국인 피고용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제외시키며 이는 잡비에 분류 조사해야 한다.

204.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라 함은 단순노무자를 포함한 전 종업원에 대하여 위생, 보건, 위안, 수양 등 사회복지와 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제비용 일반관리 및 공사원가부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복리후생비,보험료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장학금등을 말하며

○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 등에 지급한 급여도 여기에 포함한다.

205. 감가상각비

일반적으로 감가라 함은 고정자산의 사용기간경과에 따른 가치감소

로서 손익계산서의 일반관리비 중 감가상각비와 공사원가 부문에서의 기계장비 등 중기감가상각비, 특별상각비 등을 포함 기입한다.

206. 임차료

○ 일반관리비 및 공사원가부문에서 발생 지급한 임차료를 건물,장비에 대한 임차료와 토지에 대한 임차료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기입한다.

○ 해외공사의 경우 외국인 및 외국정부에 지급한 임차료는 잡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207. 조세공과

○ 영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과 공과금으로서 납부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제외한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공사원가 및 일반관리부문에 포함되는 모든 세금과 공과금을 기입한다.

- 해외공사의 경우 외국정부 등에 납부한 조세공과는 잡비에 포함한다.

208. 수선비

건설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 기능유지를 위해 그 수리를 외부에 의뢰하였을 경우에 지출된 제비용으로서 손익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중 수선비와 공사원가계산서의 기계 및 장치비중 수선유지비, 현장경비 중 수선비를 포함 기입한다.

209. 전력, 용수, 연료, 광열비

일반관리 및 공사원가부문에서 발생한 비용중 동력비, 용수비,광열비 등을 기입한다.

210. 잡 비

○ 여비, 교통비, 운반비, 광고비, 통신비, 접대비, 보험료, 해외공사의 기타비용, 잡비 등 건설공사 원가부문과 일반관리부문에서 발생한 기타의 제비용을 포함 기입한다.

○ 해외공사의 기타비용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노무자에게 지불한 조세공과금, 임차료 및 노무비를 말한다.

211. 외주공사비

원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고 하도급자의 기성 실적에 따라 지불한 금액으로써 공사원가상의 외주비를 말하며, 원도급자의 외주공사비는 하도급자의 하도급 공사 기성액과 일치하는 개념이다.

(제조업체의 제조가공을 위탁한 경우 예외)

312. 발주자 공급 원재료비

계약금액이외에 발주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중 공사에 직접 사용된 원재료금액을 기입한다.

※ 발주자공급 원재료비의 포함범위

《 건설자재 》

· 시멘트, 철근, 모래, 자갈, 목재, 유리, 대리석, 타일 등 건설자재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이외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싯가로 환산하여 포함한다.

· 조명등, 옥내전선, 소방설비 및 급수설비용자재 등은 건설자재로 본다.

《 기자재 》

. 건설자재가 아닌 기자재를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발주자로 부터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시킨다.

. 단, 계약금액에 기자재가 포함되어 원도급자가 구입한 경우는 원도급자의 자급란에 포함하여야 한다.

313. 납부부가가치세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건설업과 관련하여 실제 납부한 납부부가가치세를 기입한다.

9.연초·연말재고액																
	①연초재고(1991.1.1 현재액)								②연말재고(1991.12.31 현재액)							
(1) 원 재 료																
(2) 연 료																
(3) 저 장 품																
(4) 합 계																

○ 연초재고액은 1991년 1월 1일 현재로, 연말재고액은 1991년 12월 31일 현재로 재고대상 (원재료, 연료, 저장품)이 장소에 관계없이 그 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기입한다.

○ 재고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장부가격(결산서)에 의하되, 장부가격이 없을 때에는 구입가격으로 기입한다.

○ 하도급받은 공사와 관련이 있는 원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로 부터 지급받은 원재료의 재고 등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타업종 (판매업, 제조업, 서어비스업 등)을 겸하고 있는 사업체는 건설활동으로 인한 재고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10. 면허종류 (해당하는 면허종류 번호에 ○표를 한다)	
90. 1종 전기공사	95. 오수정화설비
91. 2종 전기공사	96. 도시가스설비
92. 전기통신공사	97. 소방 설비
93. 특정연료설비	98. 중소주택등록
94. 정화조 설비	
겸 업 산 업	

○ 건설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각종 건설업면허를 말한다

가) 국내건설면허

- 1종 전기면허
- 2종 전기면허
- 전기통신공사면허
- 기타설비면허 : 가)특정연료 나)정화조 다)오수정화
  라)도시가스 마)소방설비
- 중소주택 등록

나) 해외건설면허

- 1종전기면허
- 2종전기면허
- 전기통신면허
- 기타설비면허

11. 임대수입

○ 건물이나 건설중장비를 대여해준 댓가로 받은 임대수입금액을 말한다.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건 물								
건설중장비								
계								

○ 건물과 건설장비의 임대수입을 구분 기입한다. 그러나 건물의 임대시 받은 보증금을 은행대출 금리로 계산한 임대수입은 안되고, 다만 월세 또는 년간으로 받은 임대수입만을 말한다.

○ 건설장비 임대수입은 건설회사에서 보유중인 장비를 임대한 댓가로 년간 받은 금액을 기입한다.

(적요)

사업체의 유고,공종분류, 지역분류, 발주자분류등 작성시의 어려운 점과 겸업업체인 경우에는 겸업업종 등 사업체의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 부조사표 (건설공사실적 내역표) 】

○ 유사통계 통합실시를 위하여 공통조사 항목에 대한 용어 정의, 기준분류, 조사항목 등을 일원화하였는 바, 동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조사에 임하여야 하며

○ 면허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장을 달리하여 구분 작성한다.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 건설공사내역은 공사의 계약년도와 대금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즉 조사기준 기간에 실제로 공사가 진행된 모든 공사를 건별로 기입한다.
- 국내공사의 기성액,수령액에는 반드시 매출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입하여야 한다.
- 국내건설공사와 해외건설공사는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별장으로 기입한다.

(나) 항목별 기재요령

(1) 매수					
		-			

실적내역표 매수를 ( ) 매중 ( )매로 기입한다.

(2) 일련번호	

일련번호는 공사건별 차례로 계속해서 면허업종 구분없이 번호를 부여한다.

(3) 공사명	

- 해당공사의 공종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단, 방위와 관련된 공사는 공사명을 사실대로 기입해서는 안되며 위장 기입하여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기입방법 예 : ○ ○ ○ 시설공사)

  공종별로 건설공사 내역표 하단에 합계를 기입한다.

(4) 공종세분류(부호기입)			

내역표 하단의 공종별 세분류 코드에서 해당 세분공종을 찾아 부호(3자리숫자)를 기입한다.

(5) 공사지역 (부호기입)		

- 공사지역 란에는 공사현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내역표 하단의 지역부호코드를 찾아 부호로 기입한다.
- 공사지역이 해외일 경우에는 "41 ~ 46" 중에서 기입하고 (6)번 발주자명 란에 발주국명을 기입한다.
- 당해 공사가 2개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주된 공사지역의 부호를 기입한다.

(6) 발주자명	

· 발주자명은 발주자 분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공식 명칭을 기입한다. 단, 방위와 관련된 발주자일 경우에는 발주자명을 사실대로 기입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기입하고 보안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군부대일 경우에는 발주자명을 군부대명 대신 "정부" 라고 기입한다.
- 발주자가 주한외국군부대 또는 외국기관일 경우에는 발주자명을 외국군부대명 또는 외국기관 대신 "국내외국기관"이라 기입한다.

·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행 발주한 경우에는 원발주기관(수요처)을 발주자로 기입하여야 한다.

· 해외공사인 경우에는 발주자명 란에 발주국명을 기입한다.

(7) 하도급자는 ( )안에 원도급자명을 기입	( )

하도급 공사인 경우에는 원발주자 (기관,회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여 기입한다.

(8) 발주자분류(부호기입)			

부록의 발주자분류 해설을 참고하여 정확히 분류한 뒤, 내역표 하단의 하단의 발주자분류부호를 찾아 기입한다. 해외공사의 경우에는 해외(094)로 기입한다.

(9) 하도급공사의 경우 원도급자 면허번호 기입			

기재하지 않고 사선(\)을 긋는다

(10) 계약방법 1. 일반경쟁 2.제한 3.지명 4.수의	

기재하지 않고 사선(\)을 긋는다

(11) 계약종류 1. 원도급 2. 하도급	

- 원도급, 하도급을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한다.
- 원도급이란 원발주자로 부터 1차적으로 도급받는 경우이며, 하도급이란 원도급자로부터 재도급 또는 하청받은 것을 말한다.
- 본 조사에서는 국내 타 건설업체로 부터 재도급받은 경우를 하도급으로 보며, 그러나 국내건설회사가 아닌 외국건설회사나 국내 종합무역상사 등으로 부터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원도급으로 본다.
- 또한 조사대상 건설회사의 자기건설공사나 산하기업 또는 모기업을 위한 직영공사인 경우도 원도급공사로 본다.

(12) 계약년월	년	월

계약이 체결된 연도와 월을 각각 구분 기입하며, 자기공사(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계획이 확정된 연도와 월을 기입한다.

(13) 착공년월	년	월

(14) 준공년월	년	월

· 착공년월, 준공년월은 실제로 착공 또는 준공된 년월을 기재한다.
(단, 차년도로 이월될 공사는 준공예정 년월을 기입한다.)

(15)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된 공사액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 당년도에 계약체결한 도급계약액 (자기공사인 경우는 계획액)과 당년도로 이월된 공사액 (전년도의 미기성액분)을 포함기입한다.
즉, 계속 공사인 경우에는 당초의 총도급 계약액을 기입는 것이 아니라 당년도로 이월된 미기성액 만을 기입한다.

· 계약액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공급가액 이외에 매출부가가치세도 포함한다.
- 직영공사인 경우에 그공사의 총공사 계획액
- 추가 계약액

(16) 당년도 발주자 공급 원자재 가격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발주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별도로 공급한 원자재를 공사에 투입 사용한 경우에 투입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17) 당년도 기성액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 공사의 완성 및 대금의 수취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년도(조사기준기간)에 시공한 기성액을 기입한다.
- 산하기업 또는 모기업을 위한 직영공사분까지 포함 조사한다.
- 원도급자로 부터 재도급(하도급)을 받은 경우 하도급업체의 기성액 및 수주액의 산출은 원도급자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 내용에 따라 작성한다.
- 기성액의 평가는 도급계약액(도급공사인 경우에는 이익금 포함) 에 공사진척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즉,

당년도 기성액 = 도급계약액 × 공사진척율

$$= \text{도급계약액} \times \frac{\text{기투입공사비}}{\text{공사비 총액}}$$

※ 연차 공사인 경우의 도급계약액은 전년도 기성액을 제외한 금액을 당년도 도급계약으로 하여 공식에 적용시킨다

(18) 당년도 수령액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 1991년도에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기입한다.

· 1건공사의 공사액을 여러차례에 걸쳐 수령하였을 경우 그 누계액을 기입한다.

(19) 수령년월	년	월

· 마지막 금액을 수령한 년월을 기입한다.

· 1건 공사의 공사액을 여러차례에 걸쳐 수령하였을 경우 마지막 금액을 수령한 년월을 기입한다.

(20) 선급금 수령액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발주자(원도급자 포함)로 부터 공사 착공전에 받은 선급금을 기재한다.

(21)건물의 종류	1. 신축 2. 기타

당해년도 (조사기준년도)에 준공된 건물은 '1. 신축'에 그밖의 경우면 '2. 기타'에 해당되므로 1이나 2를 기입한다.

(22) 설비업종 세부공종	

설비공사협회용 조사표에만 해당되는 항목으로 네단위 세부공종 부호를 기입한다.

※ 이상 18)『 당년도 수령액 』, 19)『 수령년월 』, 20) 『선급금 수령액』, 21)『 건물의 종류 』, 22)『 설비업종 세부공종부호 』 항목들은 협회 관련 사업체용 조사표와 양식을 통일 하기 위해 배열된 항목들이므로 모두 사선 (\)처리 되었다.

다만, 상기 항목해설은 추후 당청에서 조사표내검을 실시할 경우에 대비한 참고용 일 뿐이다.

(23) 비고	

- 해당공사가 자기공사인 경우 『자기공사』라고 기입한다.
- 해당공사가 공동수주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공동계약』이라고 기입하고 그 아래에 공동 시공회사명과 공동계약액을 기재한다.
- 해당공사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로 당초계약액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계약변경』이라고 기입하고 변경(증감) 금액을 기입한다.

3. 조사표의 착오기입유형

다음의 착오기입사례는 내용검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노출되는 착오 유형으로서 조사표 작성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가. 조사항목 "8.기성액 및 공사비용의 205. 감가상각비" 는 조사항목 "6.유형고정자산의 ③ 연간처분 및 손해액" 보다 적거나 같아야 하는 바 오히려 많게 기입된 사례

나. 실적내역표의 "(15) 당년도 계약액 및 이월된 공사금액" 과 "(17) 당년도 기성액" 은 매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키는 사례

다. 타 산업과 겸업 사업체인 경우에는 타산업의 매출액 또는 외형 거래액을 제외한 건설업 부분만을 분리 기입하여야 함에도 겸업부분까지 포함하여 기입한 사례

라. 실적내역표에서 공사지역, 공종분류, 계약종류, 계약년월일의 기재가 누락된 사례

마. 해외 반출된 자기소유장비는 해외 건설조사표에만 기입하여야 하는데 국내 및 해외조사표에 모두 중복하여 기입하였거나 또는 기입이 완전히 누락된 사례

바. 공사현장에서 고용한 일용근로자를 종업원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사. 조직형태가 법인임에도 종사자란의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를 조사한 사례

아. 유형고정자산란 '중기'의 연말총액이 조사되었음에도 " 7. 주요건설기계 보유대수"란에 주요 건설장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사례

4. 조사담당자의 임무

가. 실사

(1) 사업체명부 확인

명부는 전년도 실사(實査)결과에 의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각 협회, 시·도 또는 관계기관의 자료에 의하여 보완된 것이므로 소재지가 불명확하다고 유고업체로 처리하지 말고 계속 추적하여 존폐 (存廢)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사업체명부 보완

○ 사업체명부에 기재된 사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면허종류의 기록사항을 확인하고 오기(誤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체명부에 정정 기입한다.

○ 폐업 또는 타사무소 관내(시.도)로 이전(移轉)된 사업체는 복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변경 년월을 표시한 다음에 "폐업" 또는 "이전"이라고 기입하고 이전된 주소를 기입한다.

○ 실사기간중에 신규로 발견된 사업체 또는 타조사구로 부터 전입(轉入)됨으로써 추가 조사토록 지시받은 업체는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면허종류 등을 기입하고 비고란에 "신규" 또는 "어느지역 어느조사구로부터 전입" 이라고 명확히 기입하고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

(3) 신규사업체 색출

○ 전년도 혹은 그 이전에 설립된 사업체로서, 수령한 사업체명부에 누락된 건설업체를 색출하여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 (단, 조사년도에 설립된 업체는 신규사업체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신규사업체 조사표는 적요란에 사업체실태(설립년월일, 업종, 겸업업체일 경우 주된 사업 등)를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 '92년에 설립된 신규사업체는 각 지방사무소별로 별도명부를 작성 조사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유고사업체의 처리

유고사업체라함은 응답불응, 휴업, 폐업, 소재불명, 이전, 전업과 명칭변경 등의 경우를 말하는바, 담당사업체중 이와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응답불응사업체

1) 피조사자(被調査者)가 비협조적이거나 거절할 때에는 조사원은 당황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되며 조사목적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응답자의 협조를 계속 구하여야 한다.

2) 이와같이 하여도 협조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사업체를 관할하는 관계기관 (전기공사협회지부, 전기통신공사협회지부 또는 구.시.군, 동.읍.면사무소 등)에 측면지원 요청토록 한다.

3) 각 관계기관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시종 불응할 경우에는 소속 사무소장에게 경위와 사유를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나) 휴업사업체

건설활동은 계절성이 심하므로 휴업중이라 하더라도 '91년중에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다) 폐업 및 소재불명 사업체

대상사업체가 폐업 또는 소재불명일 경우는 관할세무소, 구.시.군, 동.읍.면사무소 또는 각 협회 등에 문의하여 폐업여부와 소재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처리한다.

(라) 이전사업체

1) 동일조사구 내에서 이전하였을 경우

대상사업체가 동일조사구 (담당관할지역) 내에서 이전되었을 경우는 추적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동일사무소내의 타조사구로 이전하였을 경우

관계기관(각 협회, 세무서, 시.구.군, 동.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이전한 소재지 및 전화번호등을 파악, 즉시 사무소장에게 사업체명, 이전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사무소장은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3) 타사무소관내로 이전하였을 경우

대상사업체가 타사무소관내로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조사담당자는 이전사업체명, 이전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사무소장은 그 이전 사업체에 관한 관련사항을 조사관할 지방사무소로 통보하여 그곳에서 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명칭변경 사업체

조사대상 사업체의 명칭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대로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바) 전업(轉業)사업체

대상사업체가 타산업(제조업,서어비스업,도.소매업 등)으로 전업했을 경우에는 업종변경 이전의 건설실적 유무를 파악, 조사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업종변경 이전에, 조사 기준기간 중 건설업활동을 하였으면 그 건설업 부문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5) 겸업사업체의 처리

(가) 건설사업체중에는 건설활동 뿐만 아니라 타산업과 겸업하는 업체가 많으므로 특히 판매업 또는 제조업과 겸업하는 건설업체를 타산업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조사에서 제외 또는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겸업건설업체는 겸업한 산업명을 구체적으로 적요란에 기입하고, 지난 1년간의 총수입을 산업간 비율에 따라 구분해 볼 때, 수입이 가장 많았던 업종을 주된 산업으로하여 적요란에 산업명을 표시한다.

기입예 : ① 제조업과 겸업 건설업이 주업	② 판매업과 겸업 판매업이 주업

(다) 건설업 이외의 타업종에 속하는 사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설업 부문만을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종사자수, 급여액, 공사비용, 부가가치, 재고액, 유형고정자산 항목에 유의)

나. 조사표의 검토 및 정리

(1) 일반적인 사항

우선 국내건설분과 해외건설분이 구분 작성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가) 조사요원은 조사표상의 주요항목 내용을 요계표(소정양식)에 이기 (移記)하고 다음사항을 확인한 후 조사표와 함께 제출한다.

○ 조사항목의 기입누락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난에는 사선(\)을 긋는다.

○ 조사표상의 숫자 기록이 정확한가를 점검한다,

○ 조사된 내용 상호간의 연관성 및 합리성을 검토한다.

(나) 조사표가 오손되었을 때에는 타 조사표에 옮겨 다시 작성한다.

(다)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내검, 부호기입을 완료한 후 중앙에 제출한다. 단, 협회분 조사표는 조사표가 접수되는 순서로 내검, 부호기입을 완료하고 중앙에 제출한다.

(라) 조사표의 기재내용은 타 용지에 전사(轉寫)하거나 외부사람에게 알려서는 안된다(통계법 참조)

(마) 겸업건설업체의 조사표에는 『겸업산업』 및 『적요』란에 겸업(兼業)한 타 산업과 주된 산업명 (업종간 매출액비율에 의함)이 기입되었는가를 검토한다.

(2) 항목별 검토

(가) 사업체명을 약자 또는 줄여서 기입하지 않았는가를 검토하고 특히 소재지는 행정구역을 정확히 기입하였는가를 확인한다.

(사업체명부와도 일치하는가 검토한다)

(나) 조직형태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연관성을 검토한다.

(다) 면허종류란에 해당 면허번호의 기재 유무를 확인한다.

(라) 『4.종사자수』란에 있어서, 개인사업체인 경우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란에 기록이 되었는가를 법인사업체로서 동란에 기재되어 있는가도 확인한다.

(마) 조사항목 『5.연간급여액』의 합계가 조사항목 『8.기성액 및 공사비용』 중의 『203.임금 및 급료』와 일치되었는가를 검토한다.

(바) 공사지역은 발주지역이나 계약장소에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진 공사 시공지역이 기입되었는가를 검토한다.

(사) 유형고정자산의 연말총액이 다음 등식관계에 맞는가를 검토한다.

※ 연말총액 = 연초총액+연간취득 및 증·개축액-연간처분 및 손해액

(아) 조사항목 『6.유형고정자산』 중 '중기'의 연말총액과 조사항목 『7.주요건설 장비보유대수』와의 상호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자) 주요건설 장비보유대수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가동가능한 자기소유의 장비가 모두 포함 조사 기입되었는가를 검토한다.(해외에 반출한 소유장비는 해외건설조사표에 반드시 기입한다)

(차) 조사표 내검시에 특히 유고사업체에 대해 주의하여 유고 내용을 명확히 검토한다.

(3) 건설공사 실적내역표 및 요계표 작성

(가) 건설공사 실적내역표 검토

○『(15)당년도 계약액 및 이월된공사금액』에는 당년도 계약액과 '91년도로 이월된 공사액(전년도 미기성액)을 기입해야 하나, 이월공사

액이 아닌 최초의 수주액을 기재하지않았는가를 검토한다.

○ 『(17)당년도 기성액』중 공종별(각종설비,전기 및 전기통신) 기성액의 소계의 합계가 기성액 총계와 일치하는가를 검토한다.

(나) 요계표작성 및 검토

요계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조사표수치의 이기과정에서 착오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고 이기 완료후엔 착오 이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 검토 한다.

(4) 조사표의 회수 및 제출

(가) 조사표의 회수

○ 조사표는 조사담당자가 직접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즉석에서 작성이 곤란하거나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조사표작성을 의뢰하고, 조사표 회수시에는 작성된 조사표에 대한 오기,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회수한다.

(나) 조사표의 제출

○ 사무소장은 조사표가 완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조사표 및 실적내역표 접수대장 접수번호순으로 모아 철하고(조사표를 위로하고 실적내역표는 아래로 철하고, 신규사업체 조사표는 마지막에 철함)교육기간 중 배부받은 실사용 사업체명부와 함께 중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때 조사표는 가능한 약200매 단위로 철하되 1개사업체 조사표(실적내역표 포함)가 분리되게 철해서는 안된다.

(다) 조사표류 제출일정

1992. 4. 1 ~ 4. 5

<부 록>

가. 산업분류표(건설업)

(1) 건설업 산업분류 총괄표

【한국표준산업분류(6차 개정)】

소 분 류	세 분 류	세 세 분 류
451.지반조성 공사업	4510.지반조성 공사업	45101. 건축물 해체공사업
		45102. 토공사 및 정지공사업
		45109. 달리분류되지않는 지반조성공사업
452.건축물축조 및 토목 공사업	4521.건물종합 건설업	45211. 건축물 자영건설업
		45212. 주택도급 건설업
		45213. 사무 및 상업용 건물도급 건설업
		45214. 공업용 및 유사산업용 건물도급 건설업
		45219. 달리분류되지않는 건물종합 건설업
	4522.토목건설 업	45221. 도로건설 및 포장공사업
		452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45223. 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 건설업
		45224. 산업설비 조립 및 설치공사업
		45225.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 시설공사업
		45229. 달리분류되지않는 토목 건설업
	4523.건축물 축조관련 전문 건설업	45231.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공사
		45232. 보링, 그라우팅 및 우물공사업
		45233. 비계 및 형틀공사업

소 분 류	세 분 류	세 세 분 류
		45234. 철골공사업
		45235.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45236. 벽돌조적 및 석축공사업
		45237. 지붕잇기 및 함석공사업
		45238. 잠수 및 수중공사업
		45239. 달리분류되지않는 건축물 축조관련 전문 건설업
453. 건물설비 설치공사업	4530. 건물설비 설치공사업	45301. 배관, 냉난방 및 관련 공사업
		45302. 전기공사업
		45303. 통신공사업
		45304. 방수, 방음 및 내화공사업
		45305. 장치용 기계장비 설치공사업
		45306. 환경위생 처리기기 설치공사업
		45307. 울타리, 난간 및 관련 금속구조물 설치공사업
		45309. 달리분류되지않는 건물설비 설치공사업
454. 건축마무리 공사업	4540. 건축마무리 공사업	45401. 유리공사업
		45402. 창호공사업
		45403. 미장 및 타일공사업
		45404. 도장공사업
		45405. 도배 및 실내장식공사업
		45406. 내장 목공사업

대 분 류	중 분 류	세 세 분 류
		45407. 장식용 금속공작물 설치공사업 45409. 달리분류되지않는 건축마무리 공사업
455. 건설장비 임대업(운전사 딸린)	4550. 건설장비 임대업(운전사 딸린)	45500. 건설장비 임대업(운전사 딸린)

(2) 건설업 산업분류표 【한국표준산업분류(6차 개정)】

F 건설업 (45)(CONSTRUCTION)

1. 개 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각종 건설재료로 각종 건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 재축, 개축, 수리 및 보수, 해체 등을 주로 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건물 또는 구축물을 용지위에 설치하는 활동, 도급종합 건설업자 또는 자영건설업자에 의한 건물건설활동, 도급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한 토목공사 및 관련 구축물 설치공사, 조립식 건물의 설치공사와 기타 전문건설업자에 의한 각종 전문건설 활동이 포함된다.

○ 도급종합건설업

자기책임하에서, 설계된 종합건설사업 계획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주 공사를 직접 또는 전문 건설업체와의 재도급 계약에 의하여 건설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도급전문건설업

도급종합건설업자와의 재도급계약 또는 특정 토목공사 발주자, 건물 및 구축물 등의 소유자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토목공사 또는 종합건물 건설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공사활동중 특수전문기술 또는 장비가 요구되는 특정 전문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 자영건설업

판매를 위한 건물을 자기 계정에 의하여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동일 기업을 위한 건설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기업의 일개 부서로서 별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계약에 의한 조경설계, 정원조성 및 유지관리활동 (0141)

나. 계약에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에 직접 관련된 건설활동(1120)

다. 계약에 의하여, 원유 및 천연가스 이외의 광업권 개발 또는 채굴 준비 공사활동(4510)

라. 계약에 의한 광산지역에 건물, 도로 및 기타 구축물의 설치 공사는 건설업에 분류

마. 조립식 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건설업으로 분류

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건축설계, 감리, 기획, 조사, 측량 및 기타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 제공 (7421)

사. 건축물이외의 부동산 (토지, 광업권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건설업자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케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경우 (701)

아. 선박 해체업 (35115)

45 건 설 업(CONSTRUCTION)

451 지반조성 공사업(Site preparation)

4510 지반조성 공사업(Site preparation)

계약에 의하여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해체 또는 철거 공사, 토공사 및 기타 지반조성 공사, 광업권 및 광산용지의 개발, 준비 공사 등의 건설부지 또는 기타 용지를 개발, 조성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묘지 및 기타 토지의 자영 개발 공급(7012)
-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건설활동(1120)

45101 건축물 해체 공사업(Wrecking and demolition works)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해체, 철거 또는 파괴하는 공사를 말한다. 건축물의 해체 공사에 관련하여 지반정리 공사 와 해체 결과 얻어지는 부수물의 판매 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포 함>

- 발파 공사(건축물)
- 건물 해체 공사
- 건축물 철거 및 파괴 공사
- 구축물 철거 및 파괴 공사

<제 외>

· 선박 해체(35115)

45102 토공사 및 정지 공사업(Excavating and land readjusting)

계약에 의하여, 도급건설업자가 부지 및 기타 지반조성 공사에 관련된 발파, 암석제거, 굴착, 흙운반, 땅고르기, 절토, 성토, 비탈보호, 물막이, 흙막이 및 관련 배수로 설치공사 등의 토공사 및 정지 공사를 주로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부지조성 공사, 계약
· 토 공사, 계약
· 토지조성 공사, 계약
· 농지개발 및 정리 공사, 계약
· 공업용지 조성 공사, 계약
· 묘지조성 공사, 계약
· 용지조성 및 정리사업, 계약
· 굴착, 흙 운반 및 땅고르기 공사, 계약

<제 외>

· 도로 공사(45221)
· 터널 공사(45222)
· 수로, 하수로 공사(45223)

· 건물축조 기초공사 및 파일 공사(45231)

45109 달리분류되지않은 지반조성 공사업(Site preparation, n.e.c)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지의 개발과 채광에 관련된 각종 준비 공사와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지반 공사를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광산용지조성 관련공사 : 시굴, 암석 및 장애물 제거 공사, 터널 굴착 및 지주 설치 공사, 배수로 공사, 흙운반 공사, 관련 지면정리 공사 등

· 광산용지 개발공사

452 건축물 축조 및 토목 공사업(Building of complete constructions or parts thereof; civil engineering)

각종 건설재료로 계약 또는 자기 계정에 의하여,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또는 구축물을 용지위에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건축물 전체를 완전히 축조하는 종합건물 건설, 토목건설활동과 건축물 축조공사의 일부만을 계약에 의하여 건설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않고, 도급건설업자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업에 분류한다. 토목공사 성격을 갖는 축조물의 수리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 건물의 수리(증축 또는 개축 제외)는 (4523), (4530), (4540) 에 각각 분류

4521 건물 종합 건설업(Building of complete constructions or parts thereof ;civil engineering)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각종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건물의 증축, 재축, 개축이 아닌 건물의 수리활동은 그 수리부문에 따라 전문건설 활동으로 보아 (4523), (4530), (4540)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한다. 각종 건축물의 자영 건설활동을 포함한다.

45211 건축물 자영 건설업(Building construction-own account)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물 및 기타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일반 및 산업사용자에게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일 기업체를 위하여 건물건설 활동에만 주로 종사하는 동일 기업체내의 일개부서로서 별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 자영건물건설 분양, 판매

· 주택건설, 자영

· 단층, 다층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물건설, 자영

<제 외>

· 자영건설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7011)

· 직접 건설하지 않고, 다른 건설업자에 위탁하여 건축물을 건설케 하여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7012)

45212 주택도급 건설업(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contractors)

계약에 의하여,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등과 같은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단층, 다층, 주거용 종합건물, 도급
- 다세대 주거용 건물 건설, 도급
- 단독주택 건설, 도급
- 연립주택 건설, 도급
- 아파트 건설, 도급
- 주거용건물 건설, 도급
- 조립식 주거용 주택건설, 도급

<제 외>

- 호텔, 기숙사 및 유사용 건물 건설(45213)
- 행형시설 건설(45213)
- 군대막사 건설(45213)
- 오피스텔 건설(45213)

45213 사무 및 상업용 건물도급 건설업(Office and commercial building construction-contractors)

계약에 의하여, 전문 및 일반 사무용건물, 정부 및 공공용건물; 상업용 및 특수사업용 건물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사무용 건물 건설, 도급

· 은행 건물 건설, 도급

· 공공사무용 건물 건설, 도급

· 호텔, 기숙사, 군인막사 건설, 도급

· 학교 건설, 도급

· 병원 건설, 도급

· 극장, 교회, 회관, 도서관 건설, 도급

· 박물관 및 유사 건물 건설, 도급

· 상점 건설, 도급

· 쇼핑센타 건설, 도급

· 음식점 및 주점 건설, 도급

· 교도소 건설, 도급

· 경찰서 및 소방소 건설, 도급

· 공중목욕탕 및 화장실 건설, 도급

· 상업용 및 특수사업용 건물 건설, 도급

· 공공오락용 건물 건설, 도급

<제 외>

· 일반창고 건설 (45214)

· 특정용 창고 건설 (45219)

· 수영장 및 관련 탈의실 건설 (45229)

45214 공업용 및 유사산업용 건물도급 건설업(Industrial and similar industrial building construction-contractors)

계약에 의하여, 각종 제조공장 및 유사한 산업용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일반공업용 건물 건설, 도급
- 단층건물 (공업용) 건설, 도급
- 다층건물 (공업용) 건설, 도급
- 특정 공업용 건물 건설, 도급
- 발전소용 및 관련건물 건설, 도급
- 화학산업용 건물 건설, 도급
- 금속산업용 건물 건설, 도급
- 냉동·냉장시설 건물 건설, 도급
- 제조공장 건물 건설, 도급
- 공업용 건물 건설, 도급
- 광산건물 건설, 도급
- 일반창고 건물 건설

45219 달리분류되지않은 종합건물 건설업(Building of complete constructions or parts thereof and civil engineering,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건물 건설활동으로서, 주거용 건물,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공업용 및 유사 건물을 제외한 기타 건물을 계약에 의하여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농업용 건물 건설, 도급
- 운수관련 건물 건설, 도급
- 여객터미널 건물 건설, 도급
- 화물터미널 건물 건설, 도급

· 특정용창고건물 건설, 도급

· 화학물 및 석유저장소 건물 건설, 도급

· 주유소 건물 건설, 도급

· 격납고 건설, 도급

· 영묘정 건설, 도급

· 동물원용 건물 건설, 도급

· 차고시설 건설, 도급

4522 토목 건설업(Heavy construction-general contractors)

계약에 의하여, 종합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물이외의 각종 구축물, 산업 시설 및 설비를 용지위에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각종 토목공사 건축물의 수리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45221 도로건설 및 포장 공사업(Highway and street construction and pavement works)

계약에 의하여, 포장여부 또는 포장재료를 불문하고, 고가도로 이외의 차량 도로, 시가 도로, 보도 및 인도, 활주로등의 각종 도로 건설과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에 의한 각종 용도의 지면포장공사 활동을 말한다.

도로 건설 활동에 결합하여, 수행되는 도로 관련구조물, 차선 분리대, 공로 표지 등의 설치공사와 도로주변 조명공사, 교통선 긋기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포 함>

· 도로공사

· 차량도로 공사

· 시가도로 공사

· 활주로 공사

· 포장 공사

· 아스팔트 포장 공사

· 콘크리트 포장 공사

· 판석 포장 공사

· 고속도로 (고가고속도로 제외) 및 도로 건설

· 인도 및 보도 공사

<제 외>

· 교량 및 지하도공사, 도로건설과 분리된(45222)

· 교통통제조직 및 조명시설공사, 도로건설과 분리된(45229)

· 도로선 표시공사, 도로건설과 분리된(45404)

452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Bridges, tunnels and railway road construction)

계약에 의하여, 철교, 콘크리트교량 등 각종 교량, 고가도로 및 지하도로, 터널, 지하철 및 철도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로용 또는 고가로의 건설이 수로공사와 분리될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 교량 및 유사 구축물 건설

· 철교 건설

- 콘크리트 교량 건설
- 이동식 교량 건설
- 고가도로 및 유사구축물 건설
- 교량 및 유사구축물 건설
- 목재, 석재교량 건설
- 로프다리 건설
- 수중터널 공사
- 산 및 지상장애물 통과 터널공사
- 강 및 수로 터널 공사
- 철도 및 관련구축물 건설
- 지상철도 노반 공사
- 지하철도 및 관련터널 공사
- 철도노선 설치 공사
- 철도 조차장, 철도 측선 및 연합 구조물 공사
- 철도 관련구축물 설치 공사
- 터널 및 지하도 건설

45223 수로, 댐 및 급배수 시설 건설업(Waterway, dams and water supply facilities construction)

계약에 의해, 수로, 항구, 댐, 강, 제방, 둑 및 유사 저수시설, 관개 및 기타 급배수 시설을 건설하는 활동으로서 항만시설의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이러한 저수시설은 발전, 운하, 오락, 급수, 관개, 홍수 및 사태방지 등을 위한 수위조절에 이용될 수 있다.

<포 함>

- 흙 및 암석댐 건설
- 강 제방, 둑 및 유사 구조물 건설
- 콘크리트댐 건설
- 수로 및 배수시설 공사
- 관개수로시설 공사
- 방파제 및 유사구축물 건설
- 부두, 잔교 및 유사 구조물 공사, 부표의 설치 공사
- 운하 및 유사구축물 건설
- 항구 및 항만시설 건설 공사

<제 외>

- 인공호수(굴착) 건설 (45229)
- 전기 및 통신시설 공사와 결합되는 배관시설 공사 (45229)
- 급배수관, 파이프라인 공사 및 케이블 공사 (45229)
- 건물내부 배관 공사 (45231)

45224 산업설비 조립 및 설치 공사업(Industrial provision assembly and erection of construction)

계약에 의하여, 각종 중화학공업용 설비 및 장비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산업용 설비를 용지위에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 설비공사는 상이한 성질을 갖는 여러가지 기술이 요구되며 또한 이렇게 설치되는 설비는 단일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설치 조립될 수 있는 단일의 기계장비가 아니라 복합적인 기계장비가 종합적으로 설치된다.

<포 함>

- 탱크조립 설치 공사
- 도시가스 저장탱크 조립 공사
- 화학물 처리설비 설치 공사
- 산업설비 설치 공사
- 화학공업설비 설치 공사
- 광산설비 설치 공사
- 오븐, 노 및 유사설비 설치 공사
- 발전설비 설치 공사
- 제조설비 설치 공사

<제 외>

- 상업설비 설치용 건물 건설(45213)
- 산업용 기계장치(기조립된)의 설치공사(45305)
-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의 조립설치는 그 기계정비의 제조활동으로 분류

45225 폐기물 처리 및 오염방지 시설 공사업(Waste treatment and pollution-prevention institution construction)

폐수, 오수, 하수 및 분뇨,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용지위에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포 함>

- 폐수처리 시설 공사
- 오수처리 시설 공사

. 하수처리 시설 공사

. 분뇨처리 시설 공사

. 쓰레기처리 시설 공사

. 폐기물 소각장 시설 설치 공사

.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

<제 외>

. 수로 및 하수조직 건설 공사(45223)

. 탱크 조립, 설치 공사(45224)

. 건물에 환경위생처리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45306)

45229 달리분류되지않은 토목 건설업(Heavy construction, n.e.c.)

계약에 의하여, 달리분류되지않은 건물이외의 구축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급배수관 및 파이프라인 공사

· 경기장 및 유사 오락시설 공사

· 스타디움 공사

· 운동장 및 코트 공사

· 수영장 및 탈의실 공사

· 전기 및 통신배선 공사, 토목

· 배전선 설치 공사, 토목

· 통신선 및 관련구조물 설치 공사

· 통신탑 설치 공사

· 해저케이블 설치 공사

· 미사일 발사대 및 유사군사용 구조물 설치 공사

· 삭도 및 유사구조물 설치 공사

· 인공호수(굴착) 건설

· 공중편익 시설 공사

· 가로조명 시설 공사

· 교통통제 시설 공사

· 전기 또는 통신 케이블 공사

<제 외>

· 농지개발 및 정지, 광업관련 계약 공사(4510)

4523 건축물 축조 관련전문 건설업(Buildings construction related special structures construction)

종합 건설업자와의 재도급 계약 또는 건물, 구축물 소유자와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건물 및 구축물의 골격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수행되어야 할 공사 중 일부 공사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각종 전문 건설공사에 관련되는 수리활동만을 주로 수행할 경우에 도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건축물을 축조한 이후 그 건축물에 부착, 설치되어야 할 설비를 설치하는 설비공사와 건축 마무리공사 관련활동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45231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공사(Pile driving and related construction foundation works)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건축물의 축조에 관련되는 파일박기 및 축조용 대지 굴착 및 관련 흙운반 공사, 배수로 공사 (기초공사

관련)등의 건축물 축조에 관련되는 기초공사를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크레인 운영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 축조관련 부지 기초공사 및 관련공사
- 파일박기 및 관련공사
- 크레인 및 항타기 운영활동

<제 외>

- 건설용지, 토지 및 광산개발 관련공사(4510)

45232 보링, 그라우팅 및 우물 공사업(Boring, grouting and water well drilling works)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보링, 그라우팅 및 우물굴착 공사를 주로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우물 공사
- 보링 공사
- 그라우팅 공사
- 관정(관개용 우물)공사
- 굴정 공사

<제 외>

- 인공호수, 연못, 수영장 건설 (45229)

45233 비계 및 형틀 공사업(Scaffolding works and frame works')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일반비계공사,발판가설공사, 특수중량물 설치 공사, 콘크리트 형틀설치 공사, 기타 건축공사 보조물 설치 공사를 주로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비계 공사
- 일반비계 공사
- 발판가설 공사
- 특수중량물 설치 공사
- 건축공사 보조물 설치 공사
- 형틀(콘크리트) 설치 공사
- 형틀 목공사

<제 외>

-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결합 수행하는 형틀 공사 (45235)

45234 철골 공사업(Steel frame works)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건축물의 철골공사를 주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철골 공사
- 철골용접 공사

<제 외>

· 철강구조재의 제조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2811)

· 철구조물 (철탑, 철교 등) 조립·설치 공사 (45222)

45235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Steel reinforcing and reinforced concrete works)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철근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로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철근콘크리트 공사

· 철근 공사

<제 외>

· 기초공사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콘크리트 공사 (45231)

· 콘크리트 구축물 건설 공사, 건물제외 (4522)

· 벽면, 바닥의 회반죽 공사 및 미장 공사 (45403)

45236 벽돌조적 및 석축 공사업(Brick laying and stone setting works)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건물, 굴뚝 및 기타 구축물의 축조에 관련된 벽돌쌓기, 블록쌓기, 석재, 대리석 및 조립식 벽면설치 공사 등을 주로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벽돌조적 공사

· 석재조적 공사

· 콘크리트 블럭조적 공사

· 벽돌구조재 설치 공사

· 콘크리트 및 석재구조재 설치 공사

· 석조 공사

· 벽면부착 공사, 조립식

<제 외>

· 벽면에 타일 및 대리석 부착, 테라조 및 모자이크 공사 (45403)

45237 지붕잇기 및 함석 공사업(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함석, 루핑, 동판, 기와 등 각종 재료의 지붕잇기 공사와 건축물 축조에 관련되는 함석 및 기타 금속판 공사를 주로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지붕잇기 공사, 각종재료 (기와, 함석, 슬레이트)

· 판금 공사

· 물받이 및 홈통 설치 공사

<제 외>

· 함석 공사(배관공사 관련)(45301)

· 지붕잇기 공사와 분리되어 수행되는 지붕도장 공사(45404)

45238 잠수 및 수중 공사업(Underwater works)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잠수 및 수중공사업을 말한다.

<포 함>

· 수중건축 공사

· 잠수 및 수중 공사

45239 달리분류되지않은 건축물축조 관련 전문건설업(Buildings construction related special structures construction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건축물축조에 관련되는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건물이전 공사

453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Building installation)

4530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Building installation)

완전한 전문건설활동의 요소적 건설기능 활동으로서,건축물 골격을 축조 또는 건축물 완성과정에서 그 건축물에 결합,설치되어야 할 각종 장치물, 시설물, 부착물 및 기타 설비를 부착 또는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도급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또한 이러한 각종 전문건설공사에 관련된 수리활동을 주로 할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 건축물 축조후 그 축조물의 마무리 단계에서 축조물에 부착되어야 하는 창호 및 금속공작물 등의 부착, 설치공사(4540)

· 토목공사의 성격을 갖는 설비설치 공사 (4522)

45301 배관, 냉난방 및 관련 공사업(Plumbing, heating, and related works)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건물 축조에 관련되는 배관·냉난방 및 공기조절장치의 설치, 보수공사를 말한다. 여기에는 건물과 결합된 하수시설 및 부패조질 시설 및 화장실 공사, 배관공사와 결합된 판금 공사가 포함되나, 토목공사의 성격을 갖는 하수관 및 하수처리시설의 건설은 제외된다.

<포 함>

· 난방 공사

· 통풍 공사

· 공기조절장치 공사

· 배수관 및 배수시설 공사, 건물내부

· 가스설비 설치 공사, 건물내부

· 보일러 공사

· 송풍도관 건설 공사

<제 외>

· 배관 토목 공사 (45229)

· 함석 및 판금 공사, 배관 공사와 분리 (45237)

· 냉장고, 룸에어콘 등 가정용 기기의 수리 (5260)

45302 전기 공사업(Electrical works)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건축물 축조에 관련되는 전기난방 공사, 전기배선 및 조명시설을 설치, 수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전기배선 공사, 내부
· 전기선 배관 공사, 내부
· 조명시설 공사, 내부
· 경보 및 신호조직 설치 공사
· 전기설비 설치 공사
· 변압기 설치 공사

<제 외>

· 발전시설의 조립설치와 옥외 송배전선 설치 공사 (4522)
· 가전제품 전문수선업자에 의한 가전품 설치 (5260)

45303 통신 공사업(Communication equipment installation)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건축물 축조에 관련되는 통신배선,통신장비 및 전화 등을 설치, 수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통신배선 공사, 내부
· 안테나 및 레이더 설치 공사
· 전화설치 공사
· 통신장비 설치 공사

<제 외>

· 사업용 통신장비 전문 수선(3220)

· 통신설비 및 구조물의 조립 설치(4522)

· 가정용 전기통신기기 전문 수선 (52604)

45304 방수, 방음 및 내화 공사업(Waterproofing, soundproofing and fireproofing works)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건축물 축조에 관련하여 건물의 벽 및 천정 등에 각종 차단물질을 주입 또는 설치하여 방수, 방음 및 내화공사를 주로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방열, 방음 공사

· 내화 공사

· 방수, 방음 및 음향조절 공사

<제 외>

· 미장방수 공사(45403)

· 난방배관 공사(45301)

45305 장치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Installation of machinery equipment)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에 결합 설치되어야 할 각종 기계적 건물설비 및 장치를 용지위에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리프트 및 에스컬레이트 설치 공사

· 물품이동장치 설치 공사

· 식품이동장치 설치 공사

· 산업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토목공사 제외)

<제 외>

· 토목공사 성격의 공장설비 공사 (45224)

· 배관 공사 (45301)

· 전기 공사 및 통신장비 설치 공사 (45302 또는 45303)

· 문 및 창호설치 공사 (45402)

45306 환경위생 처리기기 설치 공사업(Installation of environmental hygience treatment appliances)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에 환경위생 처리기기 또는 오염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토목공사 성격을 갖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공사 (45225)

45307 울타리, 난간 및 관련금속 구조물 설치 공사업(Installation of fense, rail and related metal structure)

전문직별 건설업자에 의하여 축조활동에 관련되는 울타리, 철망 및 관련 금속 구조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울타리 공사 (건물과 분리된)

· 철망 공사 및 유사 금속구조물 설치 공사

· 장식물 모형 또는 설치물 설치 공사

<제 외>

· 건물 마무리 공정에서 건물에 부착 설치 되는 금속 공작물 부착 공사 (4540)

45309 달리분류되지 않은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Building installation, n.e.c.)

전문직별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달리분류 되지않은 축조 관련 건물 설비 설치공사를 주로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국기게양대 설치 공사

· 주거내 풀장 설치 공사

454 건축마무리 공사업(Building completion)

4540 건축마무리 공사업(Building completion)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건축물의 완성 또는 마무리 하는데 기여하는 각종 건설활동을 말한다.

<제 외>

· 직접 제조한 건축구조물 및 장치물의 설치는 그 제품의 제조 활동에 따라 분류

· 유리, 건물내부 굴뚝, 보일러 등의 청소 서비스 (7493)

45401 유리 공사업(Glass and glazing works)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각종 유리공사를 말한다.

<포 함>

· 유리 공사

· 유리끼우기 공사

· 유리 세공 공사

· 유리 및 창문설치 공사

<제 외>

· 차량유리 판매 (50302)

45402 창호공사업(Installation or erection of doors)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각종 창호공사를 말한다.

<포 함>

· 경금속 창호설치 공사

· 강제 창호설치 공사

· 목제 창호설치 공사

· 플라스틱 창호설치 공사

· 창호 공사, 각종

<제 외>

· 회전문 또는 자동문 개폐장치 설치공사 (45305)

45403 미장 및 타일 공사업(Plastering and tile works)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건축물의 벽면 및 바닥미장에 관련된 회반죽 공사, 타일 및 대리석 부착, 모자이크 공사 등의 미장 및 정리공사

<포 함>

· 타일 및 테라조 공사

· 타일부착 공사

· 대리석부착 공사

· 마루 및 벽타일 공사

· 모자이크 공사

· 표면치장 판넬 공사

· 회반죽 공사 및 관련미장 공사

· 회바르기 및 관련미장 공사

· 프레스코 공사

· 벽면처리 공사

· 모래취부 공사

· 태핑 공사

<제 외>

· 블록·벽돌, 석재 조적 공사 (45236)

· 지붕 공사 (45237)

· 방수, 방음 공사 (45304)

45404 도장 공사업(Painting works)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건물 및 구축물에 도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교량 및 기타 구축물 도장 공사

· 도로선 표시도장(도로건설 활동과 분리된) 공사

· 건물내·외부 도장 공사

· 선박도장 공사

<제 외>

· 프레스코 공사 (45403)

45405 도배 및 실내장식 공사업(Paper hanging and decorating works)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건물 및 구축물 벽면의 도배 공사와 카펫, 경표면 마루 덮개 및 기타 실내장식 공사를 말한다.

<포 함>

· 도배 공사

· 벽지부착 공사

· 카펫 공사

· 장판 공사

· 모노륨 공사

· 비닐 공사

· 마루덮개 공사, 목공제외

· 실내장식 공사, 목공사 제외

<제 외 >

· 목재 마루깔기공사 (45406)

45406 내장 목공사업(Carpentry and flooring works)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내부마무리 목공공사 및 마루 깔기공사 등을 말한다.

<포 함>

- 내장 목공사
- 목재 마루깔개 공사
- 벽면 목공사
- 목공물 부착공사
- 목세공 공사
- 나무 및 금속결합 공사

<제 외>

- 문 및 창호 공사 (45402)
- 형틀 목공사 (45233)

45407 장식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Installation of ornamental metal structure)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건축물에 부착,설치되는 장식용 금속공작물 등 각종 금속공작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장식용 모형 또는 설치물 설치 공사
- 장식금속공작물 설치 공사
- 아치 금속설치 공사

· 금속울타리 및 난간 설치 공사, 벽건물부착용

· 차광막 설치 공사

· 화재대피시설 설치 공사

· 철사다리 설치 공사

· 발코니 금속 공사

· 금속공작물 용접설치 공사

· 난간 및 관련 금속구조물 설치 공사

<제 외>

· 금속 구조재 제조업체가 설치하는 경우 (281)

· 축조관련 울타리 설치 공사 및 철망 공사 (45307)

45409 달리분류되지않은 건축 마무리 공사업(Building completion, n.e.c.)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기타 건축 마무리공사를 주로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모래깔기 공사(건축구내)

· 보도블록깔기 공사(건축구내)

· 바닥정리 및 청소 공사

· 증기청소 공사(건축물)

· 커튼 및 차광발 설치 공사(금속공사 제외)

· 커튼고리 부착공사

455 건설장비 임대업 (운전사 딸린)(Renting of construction or demolition equipment with operator)

4550 건설장비 임대업 (운전사 딸린)(Renting of construction or demolition equipment with operator)

45500 건설장비 임대업 (운전사 딸린)(Renting of construction or demolition equipment with operator)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 (종합, 전문, 자영) 의 요구에 의하여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그 기계장비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급건설업자가 직접 도급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 장비로 계약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계약 건설 내용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포 함>

- 건설용 기계장비 임대, 운전자 딸린
- 건물 및 토목 공사용 장비 임대, 운전자 딸린
- 건물해체용 기계장비 임대, 운전자 딸린
- 광산용 기계장비 임대, 운전자 딸린

<제 외>

-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 운전자없이 (71220)

신분류와 구분류의 연계 테이블

신분류 CODE	항 목 명	구분류 CODE	비 고
F	건 설 업 (45)		
45	건 설 업		
451	지반조성공사업		
4510	지반조성공사업		
45101	건축물 해체공사업	52830 0	
45102	토공사 및 정지공사업	52810 1	
45109	지반조성공사업, N.E.C.	51290 1	광업 관련 토지개발 공사
452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업		
4521	건물종합 건설업		
45211	건축물 자영건설업	51120 0	
45212	주택도급 건설업	51111 0	
45213	사무 및 상업용 건물도급 건설업	51112 0	
45214	공업용 및 유사 산업용 건물 도급건설업	51119 1	
45219	달리분류되지않은 건물종합건설업	51119 1	
4522	토목건설업		
45221	도로건설 및 포장공사업	51210 0	
45222	교량,터널 및 철도건설업	51220 0 51240 0	
45223	수로,댐 및 급배수 시설 건설업	51230 0 51290 1	항만시설, 관개수로,배수로 및 간척공사
45224	산업설비 조립 및 설치 공사업	51290 1	
45225	폐기물 처리 및 오염방지 시설 공사업	51290 1	
45229	토목건설업, N.E.C.	51290 1	
4523	건축물 축조 관련 전문 건설업		

신분류 CODE	항 목 명	구분류 CODE	비 고
45231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공사	52810 1	
45232	보링, 그라우팅 및 우물 공사업	52820 0	
45233	비계 및 형틀공사업	52750 0	
45234	철골 공사업	52711 0	
45235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52712 0 52760 0	
45236	벽돌조적 및 석축공사업	52410 0 52420 1	벽돌, 블록 조적
45237	지붕잇기 및 함석공사업	52600 0	
45238	잠수 및 수중공사업	52910 0	
45239	건축물축조 관련 전문건설업, N.E.C.	52990 1	
453	건물설비 설치공사업		
4530	건물설비 설치공사업		
45301	배관, 냉난방 및 관련 공사업	52100 0	
45302	전기공사업	52310 0 95121 1	
45303	통신공사업	52320 0	
45304	방수,방음 및 내화공사업	52430 0	
45305	장치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52720 1	
45306	환경위생 처리기기 설치 공사업	52720 1	
45307	울타리, 난간 및 관련 금속 구조물 설치공사업	52990 1	
45309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N.E.C.	52990 1	

신분류 CODE	항 목 명	구분류 CODE	비 고
454	건축마무리 공사업		
4540	건축마무리 공사업		
45401	유리공사업	52730 0	
45402	창호공사업	52740 0	
45403	미장 및 타일공사업	52420 1	
45404	도장공사업	52200 1	
45405	도배 및 실내장식 공사업	52200 1	
45406	내장 목공사업	52500 0	
45407	장식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	52990 1	
45409	건축마무리 공사업,N.E.C.	52990 1	
455	건설장비 임대업(운전사 딸린)		
4550	건설장비 임대업(운전사 딸린)		
45500	건설장비 임대업(운전사 딸린)	52990 1	

나. 공종세분류표

분류번호	공 종 명	분류번호	공 종 명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	414	사무실.상업용건물 및 시장.백화점
401	1종전기		
402	2종전기	415	호텔.숙박시설(목욕탕 부설 포함)
410	전기통신	416	은행
		417	극장,영화관 및 욕탕 등 위락시설
	(기타설비공사)		
501	특정연료설비	418	창고 및 차고
502	정화조설비	419	공장
503	오수정화설비	420	관공서건물(공공단체건물은'414사무실'에 포함)
504	도시가스설비		
		421	학교
505	소방설비	422	병원
	(중소주택등록사업)	423	문화재 및 유적건물
601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424	교회,사찰 등 종교건물
602	아파트	425	위험물 저장소
603	부지조성	430	위생냉·난방 설치
		440	기계기구 설치
	※(건축공사)	450	기타건축
411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412	아파트		
413	주거겸용아파트 및 사무실		

분류번호	공 종 명	분류번호	공 종 명
	※(토목공사)		※(전문건설공사)
210	도로,교량 및 도로터널	001	의장
220	댐(다목적댐에 의한 수력발전소 포함)	002	토공
221	발전소 시설	003	미장방수
230	항만	004	석공
231	공항	005	도장
240	철도,철도터널 및 지하철	006	조적
250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007	비계
260	농림.수산 및 관개수로	008	창호
261	농지정리	009	지붕.판금
270	상.하수도	010	철조콘크리트
280	경기장.운동장.공원시설	011	철물
281	택지조성	012	설비
290	기타토목시설	013	상.하수도
610	포장	014	보링그라우팅
620	철강재 설치	015	철도.궤도
630	준설	016	포장유지보수
640	조경	017	수중
		018	조경식재
		019	조경시설물 설치

주:1.※ 표시된 공종분류는 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설비공사협회)의 회원업체를 통해 조사되는 조사표를 내검할 때 참고용임.

2.전문건설공사 공종세분류번호는 면허업종 고유번호앞에 편의상 ○을 더한 것임.

다. 발주자 분류해설

구 분	분류번호	발 주 자	분 류 해 설
가.공공부문			
(1)중앙정부기관	041	내 무 부	.내무부 및 그 산하기관 .경찰청,경찰서 등 치안관계기관 (단,시·도,구·시·군 및 그 산하기관은 지방자치 단체에 분류)
	042	재 무 부	.재무부,국세청,관세청 및 그 산하기관
	043	법 무 부	.법무부,검찰청,교도소 및 그 산하기관
	044	국 방 부	.국방부,병무청 및 그 산하기관과 예하 군부대
	045	교 육 부	.교육부 및 그 산하기관 - 국립대학교,국립초급대학,국립전문학교 및 기타 국립교육기관 (단,시·도교육위원회,구·시·군교육청 및 국민학교,국공립중·고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로 분류)
	046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수산청 및 그 산하기관
	047	상 공 부	.상공부,공업진흥청,특허청 및 그 산하기관

구 분	분류번호	발 주 자	분 류 해 설
	048	동 자 부	.동력자원부 및 그 산하기관
	049	건 설 부	.건설부,지방국토관리청 및 그 산하기관
	050	보 사 부	.보건사회부 및 그 산하기관
	051	노 동 부	.노동부 및 그 산하기관
	052	교 통 부	.교통부,철도청,해운항만청,수로국 및 그 산하기관
	053	체 신 부	.체신부 및 그 산하기관
	054	문 화 부	.문화부,문화재관리국 및 그 산하기관
	055	체 육 청소년부	.체육청소년부
	056	기 타	.위의 정부기관 및 그 산하기관을 제외한 모든 행정부처
(2)지방자치 단 체	011	서 울 시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교육청 및 국.공립국민학교, 중.고등학교
	021	부 산 시	.부산직할시 및 그 산하기관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청 및 국.공립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

구 분	분류번호	발 주 자	분 류 해 설
	022	대 구 시	.대구직할시 및 그 산하기관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청 및 국.공립국민학교, 중.고등학교
	023	인 천 시	.인천직할시 및 그 산하기관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청 및 국.공립국민학교, 중.고등학교
	024	광 주 시	.광주직할시 및 그 산하기관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청 및 국.공립국민학교, 중.고등학교
	025	대 전 시	.대전직할시 및 그 산하기관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청 및 국.공립국민학교, 중.고등학교
	031	경 기 도	.경기도 및 그 산하기관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청 및 국.공립국민학교, 중.고등학교
	032	강 원 도	.강원도 및 그 산하기관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청 및 국.공립국민학교, 중.고등학교
	033	충청북도	.충청북도 및 그 산하기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청 및 국.공립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구 분	분류번호	발 주 자	분 류 해 설
	034	충청남도	.충청남도 및 그 산하기관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청 및 국공립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035	전라북도	.전라북도 및 그 산하기관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청 및 국공립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036	전라남도	.전라남도 및 그 산하기관 .전라남도교육위원회,교육청 및 국공립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037	경상북도	.경상북도 및 그 산하기관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청 및 국공립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038	경상남도	.경상남도 및 그 산하기관 .경상남도교육위원회,교육청 및 국공립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039	제 주 도	.제주도 및 그 산하기관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청 및 국공립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구 분	분류번호	발 주 자	분 류 해 설
(3)국 영 기 업 체	091	국 영 기 업 체	.정부 현업관서를 제외한 각종 정부출자 기업체(자본금의 50%이상)로서 국책은행, 공사, 주식회사 등 - 특수은행: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 - 공사:농업진흥공사,한국전력(주) 한국도로공사,대한무역진흥공사, 농어촌개발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한국수자원개발공사,한국방송공사,근로복지공사 한국가스공사,한국감정원,한국조폐공사,한국관광공사,서울지하철공사 등 - 주식회사:포항제철(주),한국냉장(주),국정교과서(주)
(4)공공단체	092	공공단체	. 국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 국방과학연구소,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동력자원연구소,서울대학병원 대한적십자사,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표준연구소,한국과학기술원

구 분	분류번호	발 주 자	분 류 해 설
			한국전자기술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전기통신연구소, 교통안전진흥공단, 국제공항관리공단, 독립기념관, 문예진흥원, 한국소비자보호원, 대외경제연구원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 서울시립강남병원, 부산의료원 등 각 의료원 및 각종 주식회사
(5)주한외국기관	093	주한외국기관	· 주한외국군부대, 외국상사, 주한외국공관 등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기관
(6)해 외	094	해외	· 해외에서 발주한 공사는 모두 여기 해당

구 분	분류번호	발 주 자	분 류 해 설
나.민간부문			(지침서내 신산업분류 해설집 참조)
(1)제조업	900	음식료품	· 사람 또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각종 음식료품 및 식품재료, 식용 및 비식용 동·식물성 유지, 동물용 사료 및 관련제품 제조
	901	담배	· 담배제조업
	902	섬유제품	· 제사 및 방적업, 직조업,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끈 및 끈가공품제조업, 도포 및 삼투직물 제조업
	903	의복 및 모피제품	· 각종 직물, 가죽 및 기타 재료(모피 제외)를 재단·재봉하여 의복류,모자 및 의복 악세사리를 제조
	904	가죽, 가방, 마구류및신발	· 가죽제조, 가방, 핸드백 및 마구류 제조, 신발제조
	905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제외)	· 나무, 등 또는 대나무, 버드나무 및 갈대 등의 각종 나무물질을 주원료로 한 제재목, 건축용 조립구조물, 단판 및 합판, 목재처리 및 가공, 목제 용기, 콜크제품,목제도구 및 장비 등과 같은 각종 나무제품과 나무제품의

구 분	분류번호	발 주 자	분 류 해 설
			부분품을 제조
	906	펄프·종이 및 종이 제품	·나무, 넝마, 폐지 및 기타 섬유물질로 펄프를 제조하거나, 펄프로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활동과 종이를 재가공한 가공지, 종이용기와 기타 펄프, 종이 및 판지의 제품을 제조
	907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 기록매체, 기타 간행물의 출판,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보조활동, 기록매체의 복제 생산 활동이 포함
	908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석탄을 처리하여 코크스 및 관련 생산품을 생산하거나 원유, 역청광물 및 이들의 분획물을 정제 또는 처리하는 활동과 우라늄 금속을 추출하거나 핵연료를 가공하는 산업
	909	화합물·화학제품	·화학적 처리를 주 제조과정으로 하는 산업활동과 화학적 처리과정에서 생성된 제품을 혼합 및 기타 최종 처리하여 단일·혼합·화합 등 복합화합물 또는 화학제품을 제조

구 분	분류번호	발 주 자	분 류 해 설
	910	고무·플라스틱 제품	· 구입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사출·압출·성형 및 기타 가공하여 각종 형태의 1차제품, 적층판 및 기타 단순가공품, 가정용, 산업용 또는 기타용의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조
	911	비금속 광물제품	· 돌, 모래, 점토형태의 각종 비금속 광물을 원료로 유리 및 유리제품, 비구조용 비내화 도자기 제품, 구조용 비내화 점토제품, 내화 요업제품, 시멘트, 석회 및 암면제품과 관련제품 등을 제조
	912	제1차 금속	· 고로, 전로, 압연 및 가공설비를 갖추고 각종 금속광, 금속스크랩 또는 찌꺼기를 제련 및 정련·용해·합금처리·주조·압출·압연 및 연신·금속표면처리 및 기타 처리하여 각종 1차형태의 금속반성품 및 주물제품을 생산
	913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 제외)	·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유사 저장용기, 증기발생기 및 중앙난방용 보일러, 금속압단제품 및

구 분	분류번호	발 주 자	분 류 해 설
			분말야금제품 제조와 금속임가공 처리업,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금속파스너 및 철선제품, 가정용 금속제품 및 기타 조립 금속제품을 제조
	914	달리분류되지않은 기계 및 장비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특수 목적용 기계제조, 달리분류되지 않은 가정용 기구 제조
	915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 자동자료처리 장비(컴퓨터) 및 그 주변장치를 포함하여 등사기, 주소 인쇄기 및 사무실용 인쇄기 ,수동 또는 전동타자기와 자동 타자기, 사진복사기, 수지식 또는 탁상용 전자계산기 및 기타 계산기, 회계기, 현금 등록기, 우편요금 계산기, 표발행기 및 기타 계산장치가 결합 또는 결합 되지않은 유사한 기계, 동전의 분류·포장 및 계산기, 현금자동 지출기, 봉투 투입기, 연필깎는 기계, 천공 또는 스테플링기 및 기타 사무용 기계장비를 제조

구 분	분류번호	발 주 자	분 류 해 설
	916	달리분류되지않은 전자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제조, 절연 및 케이블 제조,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 달리분류되지않은 전기장비 제조
	917	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	· 전자부품, 방송장비, 유선전신 또는 전화용 기기, 방송수신기 및 관련기기, 영상 또는 음성 기록 및 재생기, 음성증폭기등을 제조
	918	의료·정밀·광학 기기·시계	·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
	9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 자동차 부품 제조
	920	기타 운송장비	·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철도장비 제조,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 달리분류되지않은 운수장비 제조

구 분	분류번호	발 주 자	분 류 해 설
	921	가구 및 기타제조	· 가구제조 및 다른 소분류에서 분류되지않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귀금속제품, 악기류, 운동 및 경기용구, 인형 , 장난감 및 오락용품, 모조장신구 및 장식품 , 흥행 및 유희용품, 사무 및 회화용품, 우산 및 지팡이, 비, 솔, 단추, 라이타 및 기타 잡제품을 제조
	922	재생물질 가공 처리업	· 특정제품 제조용 원료로 그 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태의 금속 또는 비금속 제품, 스크랩 또는 특정제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 사용하기에 적합한 일정형의 원료 상태로 전환 처리하는 산업활동

구 분	분류번호	발 주 자	분 류 해 설
(2)비제조업	950	농림, 수렵업, 어업	·농림, 수렵업 및 임업 -작물생산, 축산업, 양잠업, 조경작물식재관리업, 작물생산 관련서비스업, 수렵업, 영림업, 벌목업, 임업서비스업, 해면 어업, 양식업, 기타어업(내수면 어업 등)
	951	광업	·광업 -무연탄 광업, 갈탄 광업, 기타 석탄 광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광업, 철광업, 비철금속광업 ,토사채취업, 화학 및 비료 원료 광물광업, 석회석, 요업 및 내화광물광업, 기타 광업 (흑연, 활석, 석고 등)
	952	전기·가스·수도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전기업, 가스제조 및 공급업, 증기 및 온수공급업, 수도사업 등
	953	도·소매업	·도·소매업 -농산물 및 음식료품, 섬유 및 의류, 의약품 및 화학제품도매

구 분	분류번호	발 주 자	분 류 해 설
			기계 및 장비도매, 기타도매, 일반소매, 종합소매 등
	954	음식·숙박업	·음식·숙박업 -식당, 주점, 숙박업, 기타 숙박업 등
	95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철도운수업, 고속버스, 시외 및 시내버스, 택시, 전세버스, 노선화물, 용달화물, 해상운송, 항공운수업, 보통창고, 냉장창고, 농산물 창고업 등
	956	금융·보험업	·금융·보험업 - 시중은행, 증권회사, 전당포, 보험회사
	957	부동산업	·부동산업 - 대점포, 대사무실, 주택, 아파트 건축분양 및 임대업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 임대포함)
	958	건설업	·건설업(분양,임대한것은 부동산업에 분류) - 건물도급건설업, 건물자영건설업, 도로건설 및 포장공사,교량

구 분	분류번호	발 주 자	분 류 해 설
			및 고가로, 댐 및 저수시설, 터널, 지하철 및 철도건설, 기타 토목건설, 전문직건설업(배관, 석공, 목공, 유리창호 등)
	959	사업서비스업	· 사업서비스업 -법무관련서비스업(변호사, 사법서사), 공인회계사업, 속기사업, 건축설계 측량 및 관련서비스업, 자료조사업, 광고대행업, 인력 공급 및 대리업, 기계 및 장비임대업 등
	960	교육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기타 교육기관 및 강습소
	961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병·의원 및 유사의료업, 수의업, 사회복지사업
	962	기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기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산업 및 전문가 단체,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기타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작성기관 : 통 계 청

지정통계 : 111-11-14

1991년 건설업통계조사표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통계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사업체고유번호	본사소재지		면 허 업 종	

※산업분류	※조직형태	※종사자규모	※자본금규모	※총공사액규모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체명 :

대 표 자 : 전화번호

소 재 지 : 시·도 구·시·군 구·로 동·읍·면 가·동·리 번지 호

2. 조직형태(해당란에 ○표)

1. 회사법인 2. 회사이외의 법인 3. 개인

3. 자본금 및 총매출액

*자본금은 법인만 기재함.

*자본금 및 총매출액은 겸업포함 기재

자본금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총매출액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4. 종사자수 * 각종설비, 전기, 전기통신공사에 종사한 자만 기재한다.

○ 상용고 : 1개월 이상의 고용계약으로 취업시간에 관계없이 고정급여를 받는 종업원

○ 임시고 : 1개월 미만의 고용계약으로 취업시간에 의해 임금을 받는 종업원

○ 기술자 및 기술공 : 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 등의 자격면허소지자이거나 기능공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종업원

○ 기능공 : 기능사1급, 기능사2급, 기능사보등의 자격면허소지자이거나 6개월이상 조직적인 기술습득을 요하는 직종에서 1년이상 경험을 가진 종업원(예 : 목공, 조적공, 미장공, 철근공, 도장공, 전공등)

○ 단순노무자 : 기능공의 조공, 특수인부, 보통인부, 여자인부등 통칭 잡부를 말한다.

○ 하도급업체의 종사자는 원도급업체의 종사자에서 제외한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1) 피고용자	상용고	①사무및 가타 종업원													
		②기술자 및 기술공													
		③기능공및단순노무자													
	임시고(일용)	조 업 일 수 (A)													
		기능공 투입연인원 (B)													
		기능공 ④1일평균인원 (B÷A)													
		단노무순자 투입연인원 (C)													
		단노무순자 ⑤1일평균인원 (C÷A)													
	소계 ①+②+③+④+⑤														
(2)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합 계 (1)+(2)															

5. 연간급여액 * 각종설비, 전기, 전기통신공사에 종사한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만 기재한다.

○ 연간급여액은 피고용자에게 지불한 급여의 총액으로서 당년도 미불금을 포함(급료, 임금, 수당, 상여금, 현물급여 등)

○ (6)란은 91년도분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입하고 이 계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지급한 퇴직금을 기입

구 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상용	(1) 사무 및 기타종업원									
	(2) 기술자 및 기술공									
	(3) 기능공및단순노무자									
임시	(4) 기 능 공									
	(5) 단순노무자									
(6) 당년도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합 계 [(1)+(2)+(3)+(4)+(5)+(6)]										

6. 유형고정자산 * 각종설비, 전기, 전기통신공사에 해당하는 자산만 기재한다.

○ 연초·연말총액(미상각잔액) : 연초·연말 현재의 장부가격에 따르고 불가능할 때는 싯가에 의한다.

○ 연간취득액 및 증개축액 : 구입한 것은 운임·설치비를 포함한 구입가격으로, 양수받은 것은 양수당시의 싯가로 자가건설의 완료인 경우에는 연간 지출한 모든 비용을 기입한다.

○ 연간처분 및 손해액 : 매각, 양도, 재해, 도난 등으로 인한 감소액과 당기 감가상각액을 포함한다.

○ 따라서 연간처분 및 손해액의 합계는 조사항목8의 「205.감가상각비」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

④=①+②-③

	①연초총액(미상각기초잔액)91.1.1 현재								②연간취득 및 증개축액								③연간처분 및 손해액								④연말총액(미상각기말잔액)91.12.31현재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토 지																																		
(2) 건 물																																		
(3) 구 축 물																																		
(4) 중 기																																		
(5) 차량·선박·운반구																																		
(6) 공구, 기구, 비품																																		
(7) 건 설 가 계 정																																		
합 계																																		

7. 주요건설장비 보유대수

* 각종설비,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에 이용되는 장비만 기재한다.

○ 타업체에 대여한 자기소유 장비는 포함하고 대여받은 장비는 제외한다.

○ 해외반출 소유장비는 해외건설조사표에 별도로 작성한다.

○ 비등록장비도 포함 기입한다.

중기부호	중 기 명	보유대수 백	십	일	중기부호	중 기 명	보유대수 백	십	일
01-1	불도우저(20톤이상)				14	콘크리트믹서트럭			
01-2	불도우저(20만톤미만)				15	콘크리트펌프			
02-1	굴 삭 기(1m³이상)				16	아스팔트믹싱프랜트			
02-2	굴 삭 기(1m³미만)				17	아스팔트휘니셔			
03-1	로 우 더(타이어식)				18	아스팔트살포기			
03-2	로 우 더(무한궤도식)				19	골재살포기			
04	지 게 차				20	쇄 석 기			
05	스크레이퍼				21	공기압축기			
06	덤프트럭(12톤이상)				22	천 공 기			
07-1	기 중 기(타이어식)				23	항타 및 항발기			
07-2	기 중 기(무한궤도식)				24	사리채취선			
08	모우터그레이더				25	준 설 선			
09	로 울 러				26	타우어크레인(비등록장비)			
10	노상안정기				27	12t 미만덤프트럭(비등록장비)			
11	콘크리트뱃칭프랜트				28	기타비등록장비			
12	콘크리트휘니셔				29	합 계			
13	콘크리트살포기								

8. 기성액 및 공사비용(부가가치세 제외)

* 기성액 및 공사비용은 건설공사분(각종설비, 전기, 전기통신)에 대하여만 기재하고 겸업분은 제외한다.

			금액 (백억 / 십억 / 억 / 천만 / 백만 / 십만 / 만 / 천원)
(1) 기성액		건설공사 기성액(외주공사비 포함)	
(2) 공사비용	201. 원재료비(자급)	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	
	202. 보조재료비	일반관리비(소모품, 사무용품)와 현장경비(소모공구비등)	
	203. 임금 및 급료 (인건비총계로서 5.연간급여액란 합계와 일치)	임금 및 급료(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금액)	
		당년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전입금(손익계산서상의 금액)	
	204. 복리및후생비 (보험료중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는 포함)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기타	
	205. 감가상각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감가상각비, 특별상각비	
	206. 지급임차료 건물·장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건물, 장비, 중기등의 임차료	
	206. 지급임차료 토지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토지 임차료	
	207. 조세공과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세금과 공과	
	208. 수선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수선비(기계·장치, 수선유지비등)	
	209. 전력·용수·연료·광열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동력, 용수, 광열비	
	210. 잡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여타 계정과 기타	
	211. 외주공사비	원가계산서상의 외주비	
(2) 합계		201+202+203+……+211	
(3) (1) − (2)		(기성액)−(공사비용)	
−	312. 발주자공급원재료비	계약금액이외 발주자로부터 받은 원재료중 공사에 투입된 원재료액	
	313. 납부부가가치세	매출부가가치세−매입부가가치세	

9. 연초, 연말 재고액

○ 평가는 장부가격에 의하되, 불능시에는 싯가로 평가한다.
○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원도급자로부터 지급받은 것과 발주자급원자재는 제외한다.

	①연초재고(1991. 1. 1 현재액) (백억 / 십억 / 억 / 천만 / 백만 / 십만 / 만 / 천원)	②연말재고액(1991.12.31 현재액) (백억 / 십억 / 억 / 천만 / 백만 / 십만 / 만 / 천원)
(1) 원재료		
(2) 연료		
(3) 저장품		
합계		

10. 면허종류(해당하는 면허 종류 번호에 ○표를 한다)

90.	1 종전기공사	95.	오수정화설비
91.	2 종전기공사	96.	도시가스설비
92.	전기통신공사	97.	소 방 설 비
93.	특정연료설비	98.	중소주택등록

겸업산업	

11. 임대수입

○ 건물이나 건설중장비를 대여해준 댓가로 받은 임대수입금액을 말한다.

	(백억 / 십억 / 억 / 천만 / 백만 / 십만 / 만 / 천원)
건물	
건설중장비	
계	

(적요)

【기입시 유의사항】

○ 이 조사표는 건설공사에 관련된 수치만 기입함(겸업인 경우 피고용자, 연간급여액, 유형고정자산, 장비보유대수, 공사비용, 연초·연말재고액등의 구분이 곤란할 때는 총매출액에 대한 건설공사 매출액 비율로 배분하여 거재함.)
○ 면허번호는 2종 이상일때 기성액이 가장 많은 업종의 면허번호만을 기재함.
(업체별 고유번호가 되어 계속 이용되므로 변경할 수 없음.)
○ ※표가 있는 란은 기입하지 않음.
○ 5. 연간급여액의 합계=8. 기성액 및 공사비용의 203. 임금 및 급료
○ 조직형태가 개인인 경우에는 4. 종사자수 란의, (2)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란에 반드시 기입되어야 함.
○ 조업일수는 매월간 조업일수이므로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작성년월일 1992. . .	통계사무소
작성부서	조사담당자 ㊞
(전화번호)	내검자 ㊞
작성자 ㊞	조사과장 ㊞

사업체고유번호	※본사소재지		※면허업종	

(1)매 수
–

1991년도 건설공사 실적내역표

사업체명 :

전화번호 :

대 표 자 : ㊞

(2) 일련번호	(3) 공 사 명	(4) ※ 공종세분류 (부호기입)	(5)※ 공사지역 (부호기입)	(6) 발 주 자 명 / (7) 하도급자는( )안에 원도급자명을 기입	(8) ※ 발주자분류 (부호기입)	(9) 하도급 공사의 경우 원도급자 면허번호 기입	(10) 계약방법 1. 일반경쟁한 2. 제한경쟁 3. 지명 4. 수의	(11) 계약종류 1. 원도급 2. 하도급	(12) 계약 년 월	(13) 착공 년 월	(14) 준공 년 월	(15) 당년도계약액 또는 이월된 공사 금 액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6) 당년도발주자 공급 원자재가격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7) 당년도기성액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8) 당년도수령액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9) 수령 년 월	(20) 선급금수령액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21) 건물의 종류 1. 신축 2. 기타	(22) 설비업종세부공종	(23) 비 고
				( )																
				( )																
				( )																
				( )																
				( )																
				( )																
				( )																
				( )																
				( )																
999(888)	합(소)			계																

(주의사항) ※ 1. 업종별로 별장 기재한다. 2. 전년도 미기성액('90년도에서 이월된 공사금액)부터 기재하고 소계를 작성한 다음 당년도 분을 계약일자 순으로 기재하고 합계를 기재한다.
3. ※란은 반드시 해당코드를 찾아 해당번호를 기재한다. 4. 각 장마다 소계를 기재한 다음 끝장에 합계를 기재한다. 5. 실적내역표 (18)란~(22)란은 조사하지 않는다.

※ 각종 분류별 코드번호

※본사소재지 및 공사지역(5)별 부호코드

11 : 서울 33 : 충북 41 : 중동지역
21 : 부산 34 : 충남 42 : 아시아지역 (중동지역제외)
22 : 대구 35 : 전북
23 : 인천 36 : 전남 43 : 유럽지역
24 : 광주 37 : 경북 44 : 아프리카지역
25 : 대전 38 : 경남 45 : 오세아니아지역
31 : 경기 39 : 제주 46 : 아메리카지역

※면허업종별 부호코드

90. 1종전기공사
91. 2종전기공사
92. 전기통신공사
93. 특정연료설비
94. 정화조설비
95. 오수정화설비
96. 도시가스설비
97. 소방설비

※공종세분류(4)별 부호코드

401. 1종전기공사
402. 2종전기공사
403. 전기통신공사
501. 특정연료설비
502. 정화조설비
503. 오수정화설비
504. 도시가스설비
505. 소방설비
601. 단독주택및연립주택
602. 아파트

※ 발주자 (8) 별 부호코드

정부기관

041:내무부 050:보사부
042:재무부 051:노동부
043:법무부 052:교통부
044:국방부 053:체신부
045:교육부 054:문화부
046:농수산부 055:체육청소년부
047:상공부
048:동자부 056:기타

지방자치단체

011:서울시 033:충청북도
021:부산시 034:충청남도
022:대구시 035:전라북도
023:인천시 036:전라남도
024:광주시 037:경상북도
025:대전시 038:경상남도
031:경기도 039:제주도
032:강원도

기타

091:국영기업체
092:공공단체
093:주한외국기관
094:해외

민간부문

(1) 제조업 (23개)

900:음식료품
901:담배제조업
902:섬유제품
903:의복 및 모피제품
904: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905: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906: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908:코크스·석유정제품, 핵연료
909:화합물·화학제품
910:고무·플라스틱제품
911:비금속광물제품
912:제1차금속
913: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 제외)
914:달리분리되지않은 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915: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
916:달리분리되지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917: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918: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919:자동차 및 트레일러
920:기타 운송장비
921:가구 및 기타제조업
922:재생물질가공처리업

(2) 비제조업 (13개)

950:농림, 수렵업, 어업
951:광업
952:전기·가스·수도
953:도소매업
954:음식·숙박업
955:운수·창고·통신업
956:금융·보험업
957:부동산업(건설회사의 부동산업은 제외)
958:건설업(분양임대는 부동산업에 포함)
959:사업서비스업
960:교육서비스업(국공립학교제외)
961: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62:기타사회 및 개인

70-44

1991년 광공업통계조사

조 사 요 령 서

1992. 3.

통 계 청

차 례

Ⅰ. 조사개요 3
1. 조사목적 3
2. 조사의 법적 근거 3
3. 조사연혁 3
4. 조사체계 3
5. 조사기간 3
6. 조사범위 및 대상 4
7. 조사단위 9
8. 조사표의 종류 9
9. 조사사항 10
10. 조사방법 11
11. 조사표 내검 및 조사표제출 11
12. 조사결과의 공표 11

Ⅱ. 조사준비 및 실지조사 12
1. 조사업무의 실시순서 12
2. 조사준비 12
3. 실지조사 13
4. 조사표 작성상 문제점 해결 15
5. 조사표 내검 및 관련자료 작성 16
6. 조사지도 17

Ⅲ. 조사표 작성요령 19
1. 일반적인 유의사항 19
2. 조사표 [Ⅰ] 항목별 작성요령 20
3. 조사표 [Ⅱ] 항목별 작성요령 55

Ⅳ. 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 57
1. 일반적인 사항 57
2. 연관항목별 심사요령 57

Ⅴ. 관련자료 작성요령 59
1. 집계표 작성 59
2. 조사용 사업체명부 정리 및 보완 61
3. 추가 및 전출사업체명부 작성 66
4. 조사표 접수대장 작성 66
5. 내용심사 총괄표 작성 67

Ⅵ. 조사요령 요약 68
1. 조사전반에 관한 사항 68
2. 조사표 항목별 작성요령 68
3. 산업 및 품목분류 요령 68
4. 조사표 검토요령 68

부록: Ⅰ. 사업체 결산서 과목과 조사항목 대비표(조사표 [Ⅰ] 기준) 69
Ⅱ. 시도별 공업단지 83

Ⅰ.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광업.제조업부문의 고용,급여,출하,재고,생산비,유형고정자산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동 구조 및 분포와 경영활동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경제정책수립 및 관련 표본통계 작성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조사결과 주요용도

- o 관련 경제정책수립 및 시책효과 측정
- o 민간기업의 기업경영계획 참고자료
- o 광공업부문 각종통계의 모집단자료
- o 광공업부문 및 관련 주요경제지표의 편제 또는 개편자료
  (GNP추계,생산.출하.재고.가동율지수,도매물가지수,산업연관표등 작성)
- o 전 광공산품의 품목별 분석(생산,출하,재고등) 및 수급동향
- o 지역별 경제지표 작성자료

2. 조사의 법적 근거

통계법 제2조 및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11-11-10)

3. 조사연혁

1967년기준의 제1회조사 실시이후 매년 실시하여 금년이 제20차 조사이다.
(3,8자 연도는 산업총조사로 실시)

4. 조사체계

지방행정기관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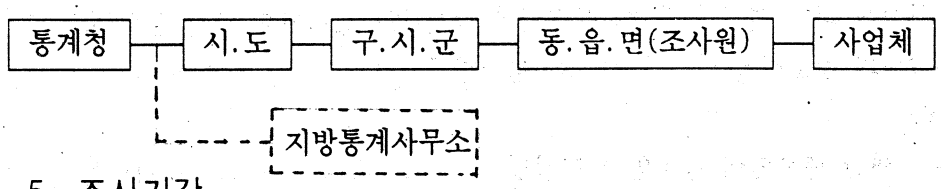

5. 조사기간

- o 조 사 기준일 : 1991. 12. 31 현재

o 조사대상기간 : 1991. 1. 1 ~ 12.31(1개년간)

o 조사실시기간 : 1992. 4. 21 ~ 5.20(1개월간)

6. 조사범위 및 대상

o 한국표준산업분류중 대분류 「C.광업」, 「D.제조업」사업체로서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하여

- 1991. 12. 31 현재 종사자 5인 이상이거나
- 1991년 조업한 기간중의 월평균 종사자가 5인 이상인 사업체

o 광업과 제조업의 정의

광 업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불문하고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 재취, 추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간단한 손질 및 품질개선 활동 포함)

제 조 업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단순히 상품을 선별,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음)

※ 광공업과 타산업과의 관계

o **겸업사업체**

- 광공업활동 실적만 분리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임.
- 구분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사기간중 총수입(생산 또는 출하액)이 많았던 산업을 주산업으로 본다.
- 위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종사자수 또는 설비(유형고정자산)의 정도비율에 따라 산업을 결정한다.

<예>

- 연간 총수입이 광공업 > 타산업 ..... 조사대상
- 연간 총수입이 광공업 < 타산업 ..... 비 대 상

o 농업·수렵업 및 임업과의 관계

제 조 업(조사대상)	비제조업(비대상)
· 농원·농장에서 자가채취 또는 재배한 생산물을 원료로 제조, 가공처리하고있고 전문적인 상용근로자가 있는 경우로서 제조업으로 분리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제조업으로 본다.	· 자가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 제조활동만을 별개의 사업체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 육림업, 벌목업과 단순한 목재절단업

o 어업과의 관계

제 조 업(조사대상)	비제조업(비대상)
. 어업활동을 하지않고 수산물 가공활동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상용종사자가 있는 경우 제조업으로 본다. . 공장형태의 가공선박을 별도로 독립사업체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제조업으로 본다.	. 직접적으로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 (가공하는 시설투자가 많은경우와 전문적 종사자가 제조, 가공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

o 건설업과의 관계

제 조 업(조사대상)	비제조업(비대상)
· 자기가 제조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및 건물 장치용 기계장비 등을 제조하여 직접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조립설치만을 분리파악할 수 없을 경우)전체활동을 제조업으로 본다.	· 제조된 교량, 저장 및 창고설비, 엘리베이터 중앙난방기, 연관장치 등의 건물조직과 구조물의 구성품 및 부품 등 설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업에 해당된다.

제 조 업(조사대상)	비제조업(비대상)
	· 수수료 또는 계약에의한 건축설계, 감리, 기획, 조사, 측량 등은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 계약에 의하여, 원유및 천연가스 이외의 광업권개발 또는 채굴준비 공사활동은 건설업에 해당된다.

o 도·소매업과의 관계

제 조 업(조사대상)	비제조업(비대상)
· 빵, 과자, 떡등을 제조하여 대리점 또는 도·소매업자등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 빵, 과자, 떡등을 접객시설을 갖추어 놓고 구내에서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음식업으로 분류.
· 양복점, 양화점, 양장점 등 개인의 주문에 주문에 의한 제조를 주로 하는 경우.	· 타사업체에서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구입(기성품) 판매분이 자가제조 부문보다 클 경우는 도·소매업으로 분류.
· 알루미늄 새시바를 구입하여 창문 및 창틀을 직접 조립 또는 가공하는 경우	· 알루미늄 새시바를 구입하여 단순절단 또는 원형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 자기가 직접 기획한 제품을 직접제조하지 않고,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제조한 상품을 자기 명의와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 농가 및 어가에서 농·수산물의 출하를 위하여 선별, 포장만을 하는 경우.

o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 기타 서비스업과의 관계

제 조 업(조사대상)	비제조업(비대상)
·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등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은 제조업으로 본다.	· 냉장고, 세탁기, TV등 가정용기기 및 장비 가정용품, 자동차 등 소비자용품의 수리를 주로하는 경우는 자동차수리 및 소비용품수선업에 해당된다.
· 공업용, 상업용 및 유사장비의 유지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가 설비시설규모가 구비되어 있으며, 수선에 필요한 부속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리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본다.	· 컴퓨터및 사무용장비의 유지및 수리를 전문으로하는 경우는 사무기기 유지및 수리업에 해당된다.
· 각종 상품을 본질적으로 개조, 혁신 또는 재생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으로 본다.	· 개개의 가정소비자를 대상으로 세탁, 표백, 염색, 의복을 수선하는 경우는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 의류, 직물 등을 직접제조하여 염색하거나, 구입하여 염색하거나 또는 수수료만을 받고 염색하여 주는 업체는 모두 제조업으로 본다.	

o 인쇄 및 출판업과의 관계

제 조 업(조사대상)	비제조업(비대상)
· 신문사, 출판사는 인쇄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제조업으로 본다.	· 학교, 각종 협회, 종교단체등의 산하 소관부서에서 신문, 회지, 사보 등을 발간하여 단체 구성원들에게 배부하는 경우는 각급 기관단체의 부수업무로 보아 인쇄·출판업으로 보지않는다.
· 학교, 각종협회, 종교단체 등의 산하소관부서에서 별도시설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이된다.	

※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체

o 콩나물 공장

o 개인을 상대로 표백 및 염색활동을 겸한 사업체(세탁소)

o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로 구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빵·제과점
(다만,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비중이 높거나, 접객시설이 없는 경우는조사대상)

o 알루미늄 새시바 판매점(건재상 등에서의 단순절단 판매 등)

o 자동차, 자전거 가전제품 수리점

※ 조사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업체

o 위탁사업체
도·소매 또는 무역업체가 자기가 기획한 제품을 제조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고 제품을 제조케하여, 이를 납품받아 자기명의로 출하하는 경우 그 사업체가 사업체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관할조사구내에 있는 모든 사업체를 색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5항조사)

o 채석 및 모래, 자갈채취업

o 양복·양장·양화점(구입 판매분이 많을 경우 제외)

o 수탁사업체
다른 사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 제조 하여 준 대가로 가공임을 받은 사업체(15항 연간제품 출하액 내역은 조사하지 않고 16항 임가공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을 조사)

o 도정업

- 벼, 보리, 밀 등을 구입하여 이를 도정·압착·분쇄하여 쌀, 보리쌀, 밀쌀 등을 생산하거나 압맥, 곡분등을 생산하는 경우는 「곡물도정업(15311)」으로서 15항 출하를 조사하여야 한다.
- 수수료(가공임)만을 받고 곡물을 도정해주거나 제분하여 주는 경우는 「임가공 곡물 도정·제분업(15481, 15482)」으로서 12항 ③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과 16항 임가공 수입액 품목별 내역을 조사한다.
(도정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은 겨, 밀기울(제분찌꺼기)등의 판매는 15항제품 출하로 조사)

o 방위산업 사업체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체외에는 모두 조사함(군으로부터 수탁여부 불문).

o 연초제조창과 담배원료 공장

7. 조사단위

조사단위는 사업체(공장)이다.

• 사업체의 정의

사업체라 함은 공장, 작업장, 광산, 사업소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하에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제단위(단일 법적주체)를 말한다.

- 동일장소(구역)에 있으며 같은 종류의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하는 경우

[출근부, 임금대장 / 재산목록, 경영장부] 를 각공장별로 갖고 있을 때 별개사업체로 조사.

- 보조단위의 처리

단일 사업체내의 보조단위 즉 창고, 차고, 수선소, 연구개발 및 실험실, 발전부 등과 같은 것은 그 사업체의 내부 부서로 간부해서 별개의 사업체로 보지 않는다.

8. 조사표의 종류

o 조사표 [I]

공장, 광산 등의 개별사업체용 조사표

o 조사표 [II]

- 사업체(공장)의 본사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조사표.
- 조사표(본사) [II] 에는 산하 전공장 및 지점 등을 합산하여 조사한다. (6항 ~ 15항까지 합산. 단, 14항은 제외)

・본사 조직이 별도로 없는 단일공장이라 하더라도 구역을 달리하여 직매장, 지사, 영업소, 하치장 등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 반드시 조사한다.

→ 사업체 방문시 반드시 상기 유・무 확인하여, 있을 경우 조사표 [I], [II] 를 함께 배부하고 작성토록 함.

9. 조사사항

o 조사표 I : 21개 항목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2. 본사명 및 소재지
3. 소속 모기업(그룹)명
4. 창설년월
5. 결산기
6. 경영조직
7. 부지 및 건물
8. 자산, 부채 및 자본
9. 내국소비세액
10. 종업원수
11. 연간 급여액
12. 연간 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13.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내역
14. 기술개발연구비
15. 연간 품목별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 내역
16. 수탁제조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17. 재고액
18. 유형고정자산
19. 주요 사용원재료
20. 주요 생산공정
21. 동일 기업내 타공장 내역

o 조사표 II : 16개 항목

1. 본사명 및 소재지
2. 소속 모기업(그룹)명
3. 경영조직
4. 창설년월
5. 회계기간
6. 자산·부채·자본
7. 유형고정자산
8. 종업원수
9. 연간급여액
10. 연간 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11. 재고액
12.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3. 기술개발연구비
14. 본사 관할(동일기업내)사업체 내역
15. 내국소비세액
16. 동일그룹(소속모기업)내 계열기업체 내역

10.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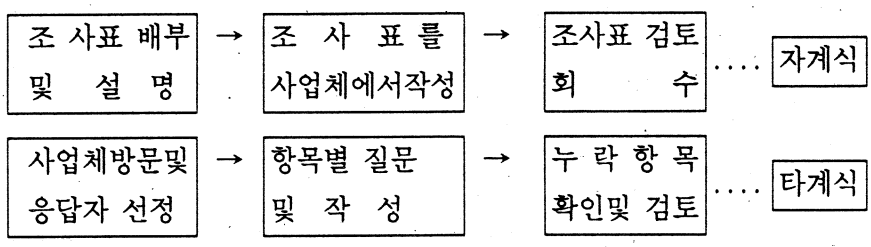

11. 조사표 내검 및 조사표제출

조사완료된 조사표는 접수되는대로 단계별로 내검을 거쳐 제출

1 단계	2 단계	3 단계
동·읍·면 →	구·시·군 →	시·도(책임내검 완결후 제출)

12. 조사결과의 공표

o 전산입력 → 내검 및 수준분석 → 결과집계·제표과정을 거쳐 '92년 12월중 보도를 통하여 공표

o 보고서 발간

- '93.1 ~ 4월중 산업별,지역별,품목별 결과표가 수록된 보고서를 발간.
- 조사정도가 확보되고,자체보고서 발간을 희망하는 시·도는 통계청에서 보고서 원고를 제공하여 발간토록 할 예정임

II. 조사준비 및 실지조사

조사담당자는 조사요령 및 제반 유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여 조사업무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조사대상 사업체는 빠짐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사업체명부에 없다거나, 응답을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임의로 제외시키거나, 허위·부실 조사표를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② 조사기간중 업무량을 적절히 배분하여 일정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며, 일시에 해결하기 위해 조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③ 사업체의 생산제품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어떠한 품목분류에 해당되는 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체명부에 있는 품목분류 번호를 그대로 확인절차없이 옮겨 적거나 정확한 것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④ 완료된 조사표는 내용검토를 철저히 하여 착오기입, 항목누락, 관련항목간 계수 불일치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체에 대한 조사내용은 단순한 것일지라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1. 조사업무의 실시순서

조사담당자 임명 (구·시·군에 통보) → 교육훈련참가 및 조사용품의 수령 → 조사담당지역답사 대상사업체 확인

사업체 명부정리 (내용정정 및 누락, 신규사업체 등재) → 실 지 조 사 → 조사표 내용검토 및 정리

집계표 등 제서식작성 → 조사표, 집계표, 사업체명부 및 제서식 제출

2. 조사준비

o 교육훈련

조사원은 반드시 조사요령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조사요령에 대한 의문사항은 질의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o 조사용품 수령

· 사업체명부 및 표지
· 조사표 [Ⅰ], [Ⅱ] 및 표지
· 조사요령서
· 조사협조의뢰공문
· 산업 및 품목분류표
· 작성서식 : 집계표, 추가 및 전출사업체명부

3. 실지조사

o 조사대상 사업체 확인 및 명부의 정리

- 조사원은 실사전에 담당지역내의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대상 여부(광업 또는 제조업인가, 종사자수 기준은 적합한가?)를 확인하여 사업체명부를 보완하여야 한다.
- 조사용 사업체명부는 단지 조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명부이므로 동명부에 없는 사업체라도 '91년도의 실적이 있는 조사대상사업체가 발견되면 명부에 등재한 후 조사하여야 한다.
- 전출 사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동·읍·면 및 구·시·군에 통보하여 조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행정구역 착오 및 개편에 의한 경우도 포함)

o 조사협조 공문서 전달

사업체방문 당일 조사원은 협조공문서를 휴대, 해당 사업체에 접수시킨다.
(수신처명을 정확하고 깨끗하게 명기)

o 조사표류 배부 및 실지조사

조사대상 사업체로 확인되면, 다음 기준에 따라 조사표를 구분 배부하여야 한다.

- 조사표 구분배부
  · 먼저 사업체가 어떠한 조직체계하에서 영위되고 있는지를 다음 기준에 따라 파악 구분하여 배부한다.

조사표 배부요령

사업체 구분	형 태	배부 조사표
o 본 사	산하 공장과 별도 장소에 있는 본사	[II] 표
o 본사+공장	본사가 산하 어느 한 공장과 같이 있음.	[I], [II] 표
o 공 장	본사와 떨어져있는 사업체 (공장)	[I] 표
o 단독사업체	별도장소에 지점, 영업소, 직영대리점 및 서비스센타, 하치장이 있는 사업체	[I], [II] 표
o 단독사업체	별도장소에 지점, 영업소등이 없음	[I] 표

< 예 >

서울본사

① 삼성전자(주) [II] 표

- 수원공장 ---------- I 표
- 구미공장 ---------- I 표
- 부천공장 ---------- I 표
- 직영 서비스센타

* 본사에서 [II] 표에 산하공장 및 서비스센타분을 합산기입.

② 한일합섬(주)

- 마산공장(본사와 함께 있음) ---------- I.II표
- 김해공장 ---------- I 표
- 대구공장 ---------- I 표
- 서울 지사

* 마산공장에서 [II] 표에 마산, 김해, 대구공장 및 서울지사 합산하여 기입한다.

- 당해 공장에서는 조사표작성이 불가능하고, 타 지역에 있는 본사나 다른 공장에서만 작성이 가능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배부한다.
- 조사표 작성시 반드시 각 항목별 유의사항 및 조사표 이면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토록 당부한다.
  특히 15항의 품목분류번호 및 제품명기입시, 사업체명부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명은 잘못된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체 담당자와 확인하여「산업 및 품목분류표」기준에 따라 정확히 구분 기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가 '91. 9. 9일 개정공고되고 '92. 1. 1일부터 시행된 산업분류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므로「산업 및 품목분류번호」기입시 착오 없도록 할것.

4. 조사표 작성상 문제점 해결

o 유고사업체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조사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 사업체명부상의 우측 여백에 그 사유를 기입하고, 조사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단, 현재 휴업한 사업체라도 '91년도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조사응답 거부 사업체

우선 조사의 취지, 목적 및 법적근거를 잘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상급관서에 보고하여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o 방위산업 사업체

이러한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히 협조를 구하고 「방위산업품목」에 한하여 제품명 및 분류번호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 비밀이 조사표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294 101	화약	→	24259 901	기타산업용제품
29270 101	군용 화기	→	29279 901	"
29270 102	권총	→	29279 902	"
29270 103	폭탄, 수류탄, 지뢰, 미사일	→	29279 903	"
29270 104	총포탄 및 탄약통	→	29279 904	"
29270 109	기타 군수용무기 및 부품	→	29279 905	"
32202 200	군수용 무선통신장비 및 부품	→	32209 909	"
35301 102	군수용 항공기	→	35309 901	"
35301 104	군수용 헬리콥타	→	36309 902	"

o 결산서가 구비되지 않은 사업체

결산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 있거나, 관계장부 또는 서류가 관계기관에 제출되어 참고할 수 없는 사업체의 경우, 참고가 될 각종 서류나 구술자료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조사표를 작성하여 사업체누락이 없도록 한다.

o 현지공장에서 조사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에(공장)에서는 조사표 작성이 불가능하고, 본사나 타공장에서만 작성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 당해 사업체에다 조사표를 배부한 후, 조사표 작성이 가능한 본사나 타공장에 작성 의뢰토록 하고 추후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o 다공장 기업체의 한 공장으로서, 회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당해 공장에 대한 조사표 작성이 곤란하다고 하는 경우.

조사표 [I] 은 반드시 각 사업체(공장,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므로, 공장별로 구분작성할 수 없도록 결산장부가 통합되어있다고 할 지라도 공장별 유형 고정자산 혹은 공장별 종사자수 등 해당업체의 타당성 있는 기준에 따라 각 공장의 비율을 산정한 후, 그비율에 따라 공장별로 분할작성하여야 한다.

o 결산마감월이 12월이 아닌 사업체

결산 마감월이12월이 아닌 사업체라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조사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직근 1년간의 결산자료에 의거 작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적요란에 조사대상 기간을 명시한다.

o 덕대제 광업사업체(조광권자)

덕대제 채택 광산은 덕대단위로 조사함. 따라서 광업권자는 직영 광산분만을 조사하고, 덕대가 직접 출하하였거나 광업권자에게 인도한 것은 모두 덕대 사업체의 출하로 조사한다.

5. 조사표 내검 및 관련자료 작성

Ⅳ. 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 (p57 참조)

Ⅴ. 관련자료 작성요령 (p59 참조)

* 조사표는 [I], [II] 로 구분하여 간지를 첨부한 후 합철함.

6. 조사지도 (구·시·군, 시·도 지도원 임무)

구·시·군 지도원	시·도 지도원
o 사업체명부의 배부 · 사업체명부를 동읍면 별로 분할 배부하되 동읍면 별 사업체수를 사전에 파악하여 추후 조사표 제출내역과 대조확인 하여야함. · 행정구역 개편지역 (분동,분구, 통합 등)은 사업체명부를 개편된 행정구역 관할에 따라 정확히 조정하여 배부하여야 함.	
o 조사표류 배부 및 회수 · 적정량의 조사를 동읍면 조사원에게 배부하여 조사토록 조치 · 조사완료후 관계자료와 함께 동읍면 별로 접수하여 합철	· 조사표를 산하 구시군에 배부하되 관내 구시군 간에 행정구역 개편이 있을 경우 사전에 사업체명부를 조정하여 배부함. · 조사완료된 각종자료를 구시군별로 접수 분류하여 제출
o 교육·순회지도 · 시도에서 실시하는 구시군 담당자 교육을 받고 이에 따라 조사원을 소집하여 직접 교육하여야 한다.	· 구시군에 대한 교육실시와 관내 조사원 교육시 순회점검 (조사원의 훈련실시 여부 및 참석상황,과정,교육의 충실도 등을 확인)
o 실사순회지도 · 실사기간중 각 동읍면을 순회하여 조사의 오류를 시정하고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	· 관내를 순회하며 조사의 오류등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고 조사의 진행 정도를 점검하여 기일내 조사완료토록 독려.

구·시·군 지도원	시·도 지도원
o 조사표 내검 및 보완 ·동읍면에서 작성,제출하는 조사표를 내용검토하여 확인 및 보완조치	·구시군에서 제출한 조사표를 내검하여 미비점 또는 착오사항을 동읍면에 질의하거나 현지 출장하여 확인보완.
o 관련자료 작성 및 제출 ·동읍면에서 작성된 집계표를 근거로 구시군 집계표 및 접수대장을 작성하며,조사표·사업체명부등 각종서식을 동읍면 별로 편철하여 시도에 제출.	·집계표, 접수대장등 시도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각종 조사표류와 함께 중앙에 제출.

III. 조사표 작성요령

1. 일반적인 유의사항

조사표상의 부호는 다음경우를 나타낸다.

★ : 동·읍·면에서 기입

★★ : 통계청에서 기입

* * * : 기입하지 않는 부분

o 조사대상기간

이 조사표는 '91.1.1 ~ 12.31일 1년간 자료에 의거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것이 매우 곤란할 경우는 직근1년간의 결산자료에 의하여 조사한다. 특히 6개월단위로 결산을 하는 사업체의 경우 1년간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o 특히 주요한 항목

- 12항, 연간출하액 및 기타수입액
- 13항, 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내역
- 14항, 기술연구개발비
- 15항, 연간제품출하액 및 재고액 내역
- 17항, 재고액

o 조사내용 정정

- 일부 조사항목의 내용을 정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호 관련되는 조사항목의 내용도 검토하여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수량단위를 정정할시는 반드시 금액란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o 수량 및 금액단위 기입

- 수량단위: 사업체사용단위가 「산업 및 품목분류표」의 지정단위와 다를 경우, 지정단위로 환산하여 정확히 기입.
- 금액단위: 각 항목의 금액단위는 「백만원」이며, 단위미만은 반올림(사사오입)하거나 유사항목에 포함.
  단, 15항의 (5)단위당출하가격은 「원」임을 유의

※ 모든 수량 및 금액은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입함.

o 숫자가 음수(마이너스)일때의 기입

- 숫자가 음수로 나올때는 숫자앞에 △표시를 함.
- 9항의 ①납부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을때 음수가 나올수 있다.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o 다공장소유기업의 경우 공장별 분리조사

- 조사표의 전항목에 대하여 당해 사업체 (공장)분만 조사하여야 한다.
- 공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없도록 결산장부가 통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유형고정자산비율, 공장별종업원수, 출하액규모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각 공장의 비율을 산정한 후 반드시 분할 작성토록 강조하여야 함.

2. 조사표 I 항목별 작성요령

〔난외사항〕

행정구역 번호								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								산업 분류				
		-			-						-										

행정구역분류번호

사업체명부상의 행정구역 분류번호를 기입한다.

일 련 번 호

o 사업체명부상에 기재된 번호를 기입한다.
  (폐업, 대상외 사업체등이 있을 경우에는 결번 처리)
o 명부상 신규,누락이나 전입사업체의 경우 각동·읍·면별로 기존명부상의 마지막 일련번호에 이어서 일련번호를 추가로 부여한다.

사업체고유번호

o 동·읍·면에서 기입할때
  조사용 사업체명부상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이기함
  단, 사업체명부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체나 신규설립업체의 고유번호는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시.도에서 기입)

o 구·시·군에서 기입할때

사업체명부상의 사업체중 동일구시군내의 동읍면간에 전·출입한 사업체에 대하여, 이전하기전 소재지의 사업체명부에서 해당사업체에 대한 고유번호를 찾아 이기 하여야한다.

o 시·도에서 기입할때

┌ 사업체명부상 누락사업체
├ 타시도로부터 전입된 사업체 ─ 의 고유번호는 시·도에서 최종기입함.
└ 관내구시군간 전출입사업체

※ 최종 기입요령

┌ 사업체명부상 누락사업체
└ 타시도로부터 전입된 사업체 ┘ 는 추가 및 전출사업체명부작성에 의거 통계청산하 지방통계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고유번호를 부여함.

- 관내구·시·군간 전출입사업체는 이전된 소재지의 사업체명부에서 고유번호를 찾아 그대로 이기한다.

산업분류(조사완료후에 기입)

o 조사표 15항「연간제품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중 산업세세분류(품목분류번호 8자리중 앞의 5자리까지의 숫자)별 출하액이 가장 많은 것을 택하여 5자리 부호로 기입.

o 임가공(수탁제조)만 하는 업체는 16항「임가공(수탁제조)수입액의 품목별내역」의 품목분류번호에서 위와같은 방법으로 산업분류를 기입

※ 산업분류 결정방법

o 해당사업체의 생산품목이 1개인 경우
사업체의 산업분류는 생산품목분류번호의 앞 5자리까지의 숫자

o 해당사업체의 생산품목이 2개이상인 경우
출하액이 가장 큰 생산품목의 품목분류번호 앞 5자리까지의 숫자를 기입. 단, 이때 품목은 서로 다르더라도 앞 5자리까지(산업세세분류)의 번호가 같은 경우는 이를 합산하여 타생산품목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예시>

금강산업(주)의 제품출하

일련번호	산업 및 품목분류번호	품 목 명	출하액(백만원)
01	22121 101	일간신문	5,000
02	22110 101	서 적	4,000
03	22110 102	팜프렛	2,500

· 산업분류 22121 : 50억원(일련번호 01)

· 산업분류 22110 : 65억원(일련번호 02 + 03)

→ 따라서 금강산업주식회사의 산업분류는 22110 임.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체(공장)명 | 공단부호 | | |

대 표 자 | 전 화

소 재 지

o 사업체명은 그 사업체가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기입.

o 공단부호는 조사대상사업체가 어느 공업단지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사요령서 부록II 시도별 공업단지의 공업단지부호를 찾아 기입한다.

공단에 속해있지 않은 사업체는 「\」을 긋는다.

o 일정한 공장명이 없을 경우는 대표자(사업주)의 성명을 기입.

o 공장의 소재지(주소)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제장소를 말함.

주소이외에 특수지역명칭(□□빌딩, □□상가, □□공단등)이 있을경우 구체적으로 기입.

※ 전화번호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 (지역번호 필히 기입)

2. 본사명 및 소재지

본 사(본점)명 | 전 화

소 재 지

o 본사가 따로 있는경우 본사명 및 소재지,전화번호를 기입

o 본사가 공장과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 「상동」이라고만 기입.

o 덕대광산

덕대제 채택에 의하여 채광되고 있는 덕대광산은 본사 소재지란에 위탁한 광업사업체의 대표자 및 소재지,전화번호를 기입하고 대표자명 우측 여백에 「덕대」라고 기입하여야 함.

※ 본사가 별도로 있지않고, 영업상 편의를 위하여 서울에 연락사무소나 지사를 두고 있는경우, 본사명란에는 ○○연락사무소등으로 기입하고 전화번호, 소재지를 반드시 기입.

3. 소속모기업(그룹)명

o 법적으로 독립된 2개이상의 기업들이 자본, 혈연관계등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지도적(지배적)지위에 있는 기업을 모기업(그룹)이라 함.

o 일반적으로 「○○그룹」이라고 부를 경우에 그 그룹명을 기입한다.

<예>

제일모직(주),삼성전자(주),전주제지(주) → 삼 성 그 룹

(주)금 성 사,(주)럭 키,금성통신(주) → 럭키금성그룹

o 그룹이라고 불리어지지 않고 있는 계열기업군은 모기업명을 기입함.

<예>

동아제약(주),라미화장품(주),동명산업(주) → 동 아 제 약

대성산업(주),대성광업개발(주)
창원 기화기공업(주) → 대 성 산 업

※ 주요그룹(모기업)명

대 림	동 아	럭키금성	선 경	코 오 롱	한 진
대 우	동아 제약	롯 데	신 동 아	한국화약	현 대
대한전선	동 양	삼 미	쌍 용	한 양	효 성
동 부	두 산	삼 성	진 로	한일합섬	한 라

4. 창설년월

(현공장 가동년월)

19 년 월

o 법인사업체 → 법적설립년월

o 개인사업체 →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년월

o 본사와 떨어진 사업체 → 그 사업체(공장)가 신설된 년월

o 업종변경사업체 → 업종을 변경한 년월 (중분류 기준)

o 동일한 업종으로서 사업주 또는 상호만 변경된 사업체는 최초로 창설한 년월을 기입함.

5. 경영조직

① 주식·유한·합자·합명회사 ( )

② 기 타 법 인 ( )

③ 개 인 ( )

o 주식·유한·합자·합명회사

· 상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함.

· 공기업일지라도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포항제철(주), 대한석탄공사 등)

o 기타법인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재단법인을 말한다.

즉, 법인격을 부여받은 조합등을 말함.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는 ③개인에 포함)

o 개 인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법인격을 갖지않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체도 여기에 포함.

6. 결산기(마감월)

① 연1회 (월) ② 연2회 (, 월)

o 결산 마감월(예:12월)을 말함.

<예>

· 결산일이 연1회 (기간: 1~12월)인 경우 → 12월

· 결산이 연2회 (기간: 1~6월, 7~12월)인 경우 → 6, 12월

7. 부지 및 건물연면적(제조업체만 조사)

o 임대한 부분 및 비업무용은 제외　　o 소숫점 이하삭제

o 1평 = 3.3 ㎡

	(1) 자 기 소 유	(2) 임 차 사 용
① 부　　지	㎡	㎡
② 건물연면적	㎡	㎡

본 항목은 제조업체에 한하여 조사하며, 사업목적으로 업체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지 및 건물의 소유형태와 면적을 기입한다.

(비업무용과 남에게 임대하여 준것은 제외)

◦부 지

- 광업과 연계된 제조활동을 하는 사업체도 광업부분은 제외하고 제조업부분만 기입.

<예>

석회석광산과 시멘트공장을 함께하는 사업체의 경우, 시멘트공장의 부지만 기입

- 복리후생시설(사택,기숙사,운동장등)이 생산공장과 같은 장소에 있거나 길건너 인접하여 있는것등은 포함하나,이러한 시설이 지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있을때는 제외한다.

o 건물연면적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연면적을 기입한다.

※ 2개이상의 사업체가 동일한 건물내에 있는 경우

· 부지면적은 각업체의 실제 사용면적으로 기입하되, 공유면적이 있을 경우는 이를 연건평에 따라 분할하여 포함시킴.

· 건물의 연면적은 각각의 사업체에서 실제 사용중인 면적만 조사.

8. 자산·부채·자본

o 개인사업체인 경우 자산총액·부채총액·자본총액만 기입하되,사업용에 한하며, 법인사업체인 경우 전항목을 기입.

o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유동자산+투자와 기타자산+고정자산+이연자산)

o 부채총액 = 유동부채 + 고정부채

o 자본총액 = 납입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 자 산 총 액							
┌부 채 총 액							
└자 본 총 액							
※ 납 입 자 본 금							

결산기말현재 기업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에서, 자산항목은 기업소유재산의 운용상태, 부채 및 자본항목은 기업의 자본조달 형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한 기업에서는 항상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이 되도록 이루어져 있음.

o 자산총액

- 기업에 투입된 총자산에는 타인자본인 부채와 자기자본에 속하는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음.
  따라서 부채총액과 자본총액을 합한금액을 기입한다.
- 결산장부가 있는 사업체에서는 장부상의 자산총액을 기입하며, 장부가 없는 개인사업체에서는 '91.12.31일 현재의 자산을 싯가로 평가하여 기입한다.

o 부채 및 자본총액

- 기업에 투자된 총자산중 출자자이외의 제삼자로부터 끌어들인 타인자본 즉 부채의 총액을 기입.
- 자본총액은 자기자본으로서, 자기자본에는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자본,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o 납입자본금(기업전체분 조사)

- 법인격을 갖춘 기업체의 주주들이 직접출자한 주식의 주금총액(수권주식 및 발행주식)또는 출자금을 기입한다.
- 개인사업체는 본 항목이 해당되지 않음.

9. 내국소비세액

o 본사나 주된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경우에도 당해공장분만 구분기입

o 납부 부가가치세 = 매출부가가치세 - 매입부가가치세

o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 경우 세액앞에 "△"표시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 납부부가가치세							
② 특 별 소 비 세							
③ 주 세							
합 계							

o 납부부가가치세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부가가치세를 말하며, 1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총액을 기입한다.
-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에는 공제법과 가산법이 있으며 본 조사에서는 공제법에 의함.
  즉, [매출액 - 직접생산비(13항① --+⑥합계액)] 의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 본사 또는 주된 사업체에서 총괄납부하는 경우 당해 사업체분만을 구분하여 기입.
- 수출품과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때 부가가치세가「부의 수치(환급세액) "-" 」가 될 수 있음.
  이 경우 숫자(환급세액)앞에 "△" 표시함.
- 납부부가가치세액은 12항 연간출하액 ①~④합계액의 1~8%내외정도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잘못 계상되었는가 또는 면세업종이나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체인가 확인.

· 과세특례자는 연간공급가액(매출액)이 3,600만원미만의 사업자중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방앗간), 양복, 양장점, 양화점과 이와 유사한 업종에 한하여 인정됨.
  (세율은 공급가액의 20/1,000임)

· 신문, 전매품, 연탄 및 무연탄, 소금등을 제조 또는 채광하여 원료용 및 일반소비자용으로 출하하는 것은 면세되나, 주된산업이 면세업종이라도 과세활동 부분에는 과세됨.

<예>

신문사의 광고수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등

- 납부부가가치세 산출요령

< 예 > A사업체의 볼펜 출하액이 100백만원일때 , 볼펜을 만들기 위해 구입한 재료비(합성수지, 잉크등)등 직접생산비합계액이 60백만원이라면

매출부가가치세(매출액의10%) = 10백만원

매입부가가치세(매입액의10%) = 6백만원임.

이때 [매출부가가치세] - [매입부가가치세] = [납부부가가치세] 이므로

· 볼펜전량을 국내시판 하였을 경우

10백만원 - 6백만원 = 4백만원 ------ 납부부가가치세

· 볼펜전량을 수출 하였을 경우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매출부가가치세(10백만원)가 부가되지 않음.

따라서 0백만원 - 6백만원 = △6백만원(환급세액)임. ... 납부부가가치세

즉, 환급받은 6백만원이 납부부가가치세이며 조사표에 「△6」이라 기입.

· 볼펜출하액이 내수50%, 수출 50%인 경우

┌ 내수출하액 50백만원, 직접생산비 30백만원 이고
└ 수출출하액 50백만원, 직접생산비 30백만원 이면

부부가가치세는

┌ 내수부가가치세 5 - 3 = 2 (백만원)
└ 수출부가가치세 0 - 3 = -3 (백만원)

따라서 2 - 3 = -1(백만원) ------- 조사표에 △1 이라 기입.

o 특별소비세

사치성품목, 소비억제품목, 고급내구성 소비재 품목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보석류, 귀금속류, 모피, 골프용품, 특수화장품 등이 있다.

(품목별 세율은 「산업 및 품목분류표」부록 참조

o 주 세

각종 주류에 부과는 세금

10. 종사자수

o 임시 및 일고, 사장, 임원 등 포함

o 일고 종업원은 연인원으로 계상 하여서는 안됨.

		(1) 12월말 현재 종사자수			(2) 조업기간중 월평균 종사자수
		계	남	여	
①자영업주					
②무급가족 종사자					
피고용자	③ 생 산 직				
	④ 사무및기타				
합 계					
⑤연간 조업월수 ( )월					

o 자영업주

개인사업체의 소유주(동업자 포함)를 기입.

o 무급가족 종사자

개인사업체 소유주의 가족(동거인포함)으로 정규작업(경영)시간의 1/3이상 사무 및 생산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5항의 경영조직이 회사법인이나 기타법인에는 없으며,
③개인사업체에는 자영업주가 반드시 1인이상 있음에 유의.

o 피고용자(종업원)

- 생산직 ┬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 생산공정의 특정단계를 기록,감독하는 기록원과 감독원
  └ 제품,원재료등 기타물품을 운송하는 트럭운전사
- 사무 및 기타 - 생산종업원이외의 모든 피고용자를 말한다.
  즉,생산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기술적,전문적, 서기적인 업무종사자와 이들의 보조원인 사환,수위, 승용차운전사,전화교환원,간호원등을 말한다.

※ 법인체에 있어 보수를 받는 사장,지배인,중역도 포함

◦ 12월말 현재 종사자수

· '91.12.31일 현재의 실제 종사자수를 기입

· 12월중에 조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휴업,계절업종등)에는 종사자수를 기입하지 않고 「△」표시만 함.

o 조업기간중 월평균 종사자수

실제 조업을 한 각 월말종사자수의 누계를 조업월수로 나눈 월평균 종사자수를 말한다.

※ 휴업등으로 생산을 하지 않은 월은 제외

<예> 아래 5개월만 조업한 사업체의 월평균 종사자수는,

월	3	4	5	8	9
종사자수	35	50	60	60	40

(35 + 50 + 60 + 60 + 40) ÷ 5 = 49명

o 연간조업월수

실제 조업한 개월수를 말한다.

최소한 월간 1 주일이상 조업 했을 경우에만 조업월수에 포함.

※
· 피고용자에는 장기 결근자(3개월이상),군복무자,외국인은 제외

· 위탁제조시킨 경우 수탁사업체의 종사자수는 포함해서는 안됨

· 겸업사업체

광공업과 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 광공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만을 분리하여 기입.

· (1)항 12월말 현재 종사자수와 (2)항 월평균 종사자수가 차이가 많을 경우에는 재확인 검토.

· 일용 및 임시종업원은 반드시 포함하나, 연인원으로 조사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함

<예>

- 월중 조업일수 : 26일 ┌ 10일간 20명씩
  ├ 7일간 15명씩
  └ 9일간 30명씩,근무하였다면,

- (10일x20명)+(7일x15명)+(9일x30명)=575명→월중연근무인원수

$$\frac{\text{월중 연근무인원수}}{\text{조 업 일 수}} = \frac{575(\text{명})}{26(\text{일})} = \boxed{22\text{명}} \therefore \text{일용종업원의 월평균 종사자수}$$

11. 연간급여액

o 상여금, 제수당 포함

o 퇴직금, 복리후생비 제외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	*	*	*	*	*
*	*	*	*	*	*

① 자 영 업 주	
② 무급가족 종사자	
피고용자	③ 생 산 직
	④ 사무및기타
합 계	

연간급여액은 퇴직금,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액으로 기입하여야 함.

따라서 퇴직금, 후생복리비가 포함되는 13항 ⑦급여총액보다 적거나 같아야한다.

┌ 각종세금, 기여금, 보험료, 적금,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전의 급여액
└ 상여금등 각종 수당도 포함

o 생산직 급여액

생산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액으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노무비"를 기입.

o 사무 및 기타급여액

사무 및 기타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액으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상의 임금및 급여액을 기입.

※
- '91년이전의 체불급여를 '91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
- '91년중에 지불해야할 급여액을 지불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액은 포함.
- 현물로 지급한 경우
  - 자가생산품일때 → 지급시의 공장도 가격 기입.
  - 구입품 일때 → 구입가격으로 환산 기입.
- 종사자1인당 평균급여액이 타사업체등에 비하여 매우 적거나, 훨씬 많을 경우 재확인 검토.

1인당 월평균 급여액

= (연간급여액합계 ÷ 월평균 종사자수 ÷ 조업월수

12. 연간출하액(매출액) 및 기타수입액

o 제품(자가생산품 또는 위탁생산품)출하액에는 내국간접세는 제외됨.

o 제조업이외의 타산업으로부터 수탁생산할 경우, 원재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경우는 ③임가공료만 기입.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 제품 출하액							
② 부산물·폐품판매액							
③ 임가공(수탁제조수입액)							
④ 수리수입액							
합 계(①+ ...+④)							
⑤ 구입상품매출액							
⑥ 구입상품매출원가							

o 제품출하액

- 당해 사업체에서 직접 제조 생산하였거나, 원재료를 제공하고 위탁생산하여 납품받은 모든 제품중에서 '91년 1년간 출하(수출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생산시설이 없는 도·소매 또는 무역업체가 원재료를 제공하고 위탁생산하여 납품받은후 자기명의로 출하하는 경우 조사대상업체로 조사 하여야함.
- 판매가 완료되지않은 적성품, 할부, 예약, 시용판매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일단 상품이 출고되었을 경우도 포함 조사한다.
- 외화로 판매한 것은 수출당시의 외환시세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 기입.
- 제품출하액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등 내국 간접세가 포함되어서는 안됨.

<출하로 간주하는 예>

-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 직매장이나 영업소 등으로 이송한 것
  -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 이송한 것
  - 겸업하고 있는 건설활동이나 타산업활동부분으로 대체 사용한 것은 외부매출시의 이윤 상당액을 가산시켜 기입함.
- 타 제조업체나 광공업사업체가 아닌 도·소매 또는 무역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아 생산(수탁생산)하여 납품(위탁업체)하였을 경우에는 ③임가공, 16항 임가공수입액의 품목별 내역에서 조사됨.

o 부산물·폐품판매액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작업잔설(폐품), 부산물 등을 판매한 금액을 기입한다.

<예>

- 공장 또는 인쇄소 → 폐지, 불합격품(불량품)등
- 철 공 소 → 쇠 부스러기 등

제품의 생산과정이외에서 나오는 폐기물 즉, 파손된 기계부품, 사용 불능인 책상, 사무용품 등의 판매액은 제외.

o 임가공(수탁제조수입액)

원재료(또는 중간제품)나 원재료비를 타 광공업 사업체및 도·소매, 무역업체로 부터 공급받아 제조 가공처리하여 준 대가로 받은 수입액을 기입한다.

·수수료, 임가공료만 받고 수탁제조하는 도살업, 임가공도정·임가공제분 ·임가공식품냉동·기타식료품임가공업은 임가공료(수탁제조수입액)만 기입한다. ·신문사, 출판사 등의 광고수입도 여기에 기입함.

o 수리수입액

타인 소유의 산업용기계, 장치를 수리하여 준 대가로 받은 수입액을 기입함.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운수장비 등 기타 산업용장비 및 장치물)

o 구입상품 매출액

사업체가 직접 제조가공한 제품외에 외국에서 수입한 것과 타사업체로 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또는 단순포장가공하여 판매한 상품의 총매출액을 기입한다.

(손익계산서상의 「상품매출액」을 기입)

o 구입상품 매출원가

연간 판매한 구입상품의 원가를 기입

「12항출하액」합계액이 「13항 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합계액에 비해 과소·과다한 경우 타당성을 확인하고 특별한 요인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요란에 기입.

13.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같은 비목을 합하여 기입.

· 급여액은 퇴직금을 포함함으로 11항 합계액보다 같거나 많아야 함.

· 열거되지 않은 경비는 기타에 합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 재료비							
② 연료비							
③ 전력비							
④ 용수비							
⑤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⑥ 수선비(수리유지비)							
소 계(①+ - - - +⑥)							
⑦ 급여총액(퇴직금포함)							
⑧ 복리후생비							
⑨ 임차료							
⑩ 감가상각비							
⑪ 세금공과금 (내국소비세액제외)							
⑫ 대손상각비							
⑬ 기 타(광고선전비, 운반비, 보험료, 접대비등)							
합 계(①+ ..... +⑬)							

'91년 1년간 실제생산에 소요된 제조 및 영업비용을 기입.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항목중 같은 항목을 합산하여 기입)

o 재료비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주요재료, 보조재료, 부속품 등의 사용 금액을 기입한다.

-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료(또는 반제품)는 싯가로 평가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 타산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자가취득한 재료는 사용 당시의 싯가로 환산하여 기입.

o 연료비

'91년 1년간에 가열로(난방포함), 동력 및 자가발전용 등으로 사용한 석탄류, 유류등 모든 연료비 금액을 기입.

일반적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품목이라도 그 사업체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위항 「재료비」에 계상함.

o 전력비

'91년 1년간 구입 사용한 전력요금을 기입.

- 자가발전에 사용된 연료비(석탄, 석유류등)는 위항 「연료비」로 조사기입 - 개인사업체인 경우 가정소비분은 제외하고 생산에 소비된 분만 조사기입

o 용수비

'91년 1년간 생산에 사용된 것은 물론 사무실용, 종사자의 음료용 등을 포함한 모든 용수의 요금을 기입.

얼음공장에서의 용수비는 ②항 재료비로 조사기입

o 외주가공비

위탁사업체가 제품생산을 위하여 수탁사업체와 가사노동자에게 외주작업

의 댓가로 지급한 비용(가공임)을 기입

출판사에서 원고만을 주고 인쇄소에 인쇄를 의뢰했을 때에는 인쇄비용은 포함하나 원고료는 포함하지 않음.

o 수선비

생산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제 비용(수익적 지출)을 말함.

즉,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수선비」항목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상의 「수선비」를 합하여 기입

자본적 지출(건물, 기계장치의 내용년수를 증가시키거나 자산의 성능 및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등의 수리비)은「17항 유형고정자산」으로 조사하여야 함.

o 급여총액

'91년 1년간 피고용자에게 지급된 임금, 급료, 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인건비로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함.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설정된 사업체는 이를 포함하여 조사하고 이 계정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체는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포함하여 기입. 급여총액은 「11항 연간급여액」보다 같거나 많아야 함.

o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복지 및 후생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을 기입.

이에는 구내식당운영보조비, 치료보조비, 장학금, 경조비, 체육행사비, 치료시설유지비, 직원신체검사비, 피복비 등이 포함됨.

o 임차료

토지·건물 및 구축물 등을 임차한 경우에 지급되는 임차료 또는 사용료를 기입.

o 감가상각비

유형고정자산(토지와 건설가계정 제외)인 건물, 기계장치, 공구·기구·비품, 차량 및 운반구 등에 대한 연간('91년 당해년도분만)감가상각비를 기입.

이 비용은 「17항 유형고정자산의(4)연간감가상각액」합계와 일치되어야 함.

o 세금공과금

세금이란 영업과 관계되는 조세 즉, 사업소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등의 세부담액을 말하며, 공과금이란 상공회의소부과금, 조합비, 협회비, 동회비 등과 같이 영업과 관계되는 공공적 지출을 말하며, 이 모두를 합하여 기입.

이 항목에는 법인세, 사업소득세, 관세 및 내국소비세(납부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는 포함하지 않음에 유의.

o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 받을어음등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추산액 또는 경상적인 대손상각액을 말한다.

o 기 타

①항 재료비~⑫항 대손상각비이외에 달리분류되지 않은 경비의 합계액을 기입

- 기타의 주요경비로는 광고선전비, 운반 및 보관비, 접대비, 여비, 교통·통신비, 보험료 등이 있음.
- 본 항목에는 영업외 비용 및 특별손실은 포함하지 않음.

※	· 13항 합계(①+ ~ +⑬)는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함. · '91년중 영업실적이 적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12항 합계는 13항 합계보다 커야 함.

14. 기술연구개발비(R&D)

(1) 기술연구개발활동 수행유무(해당란에 ○표)

① 수행 했음( ) → (위탁연구개발포함)

① 부설(또는 독립) 연구소	② 연 구 개 발 부 (실)
③ 연 구 개 발 과	④ 기 타 ( )

② 수행 안했음( )

(2) 기술연구개발비 내역(①+②=③+④+⑤+⑥)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사 용 금 액	① 자체연구개발비 사용액(외부지출액 포함)						
	② 외부로부터 받은 금액(수탁개발비)						
사 용 내 역	③ 인건비(연구개발 직접관련 인원)						
	④ 기계·장비·토지·건물 등 구입비						
	⑤ 자체연구개발비중 외부 지출액						
	⑥ 기타 제 경비(수위등 간접지원 인건비 포함)						

(3) 연구개발 종사자

합 계	① 연 구 원	② 연구보조원	③ 기술·기능직	④ 기타 지원 업무
명	명	명	명	명

기술연구개발(R&D)비

o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 등을 위해 기술연구개발활동에 투자한 '91년 1년간 총비용을 의미

기술연구개발활동이란 자연과학(이학), 공학 및 기술, 의학, 농학분야에서 사물, 기능, 현상 등에 관하여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를 의미(제품생산, 제조공정에 관한 개발이나 기술적 개선을 시도하는 활동포함)

<기술연구개발활동에 포함되는 경우>

o 연구소·연구부서에서 실시하는 활동

· 연구에 직접 필요한 정보,자료의 수집,試作,실험,검사,분석,기계·장비의 구입,설치 및 건설, 동식물의 육성 등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o 연구소·연구부서 이외에서의 활동

· 생산현장인 공장 등에서 연구소·연구부서의 활동과 공업화 중간시험(Pilot plant의 설계·건설·시험),試作品(Proto type model)의 설계·제작 및 이에 따른 시험활동

o 연구개발활동의 지원활동

· 연구개발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서무, 회계 등의 지원활동

o 기 타

· 사내에서 직접 연구개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외부에 연구개발을 의뢰한 경우

<기술연구개발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연구소와 공장 등의 생산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o 생산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생산공정을 일상적으로 점검(check)하는 품질관리에 관한 활동 및 제품,반제품,생산물 및 토양,대기 등의 검사,시험,측정,분석 등

o 공업화중간시험(Pilot plant), 試作品(Proto type model)의 단계를 넘어 경제적으로 생산을 위한 기기설비 등의 설계

o 일반적인 지형도의 작성, 지하자원을 찾기 위한 탐사활동 및 지질조사, 해양조사, 천체관측 등의 일반적인 자료수집

o 특허출원 등에 관한 사무수속

o 연구원이 아닌 일반직원의 연수·훈련

(1) 기술연구개발활동 수행유무

o '91년 중에 기술연구개발활동의 수행 유무에 따라 해당번호에 ○표

o 기술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한 부서가 여러개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것 하나에만 ○표

예) 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과가 있는 경우 ①에 ○표

(1) 기술연구개발활동 수행유무 (해당란에 ○표)

① 수행 했음(●) → (위탁연구개발포함)

①부설(또는 독립) 연구소	② 연 구 개 발 부 (실)
③ 연 구 개 발 과	④ 기 타 ( )

② 수행 안했음( )

① 부설(또는 독립)연구소

· 기업체에 설립되어 있는 연구소를 의미하는데 대부분이 부설연구소이며, 기업에 따라 별도로 독립된 법인형태의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④ 기 타

연구소나 연구개발부, 연구개발과가 없이 필요시마다 연구전담반(task-force)을 구성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거나 또는 외부에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2) 기술연구개발비 내역

사용금액

o 연구개발활동을 위해 사용한 총비용으로 자체연구개발비 사용총액(자체내 사용금액 + 자체연구개발비중 외부위탁 연구개발금액)과 외부에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수탁 받은 금액을 포함.

사용내역

o 연구개발비(사용금액)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기입

o 사용내역의 합계는 연구개발비 사용금액과 같아야함(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③ 인건비

· 연구개발활동부서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상여금, 퇴직금, 각종 보너스 및 수당포함)로서 기여금, 소득세,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총금액을 기입한다.

· 겸직인원의 경우는 연구개발활동부서와 타부서간의 근무비중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

※ 그러나 수위, 경비원, 청소원 등과 같이 연구개발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인원의 인건비는 기타 제 경비에 포함시켜야 함.

④ 기계 · 장비 · 토지 · 건물 등 구입비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아래의 모든 자본적 지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입한다.

·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연구기기 · 기구 · 기계 · 장비의 구입, 설치비용 및 수선비

·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토지 · 건물의 매입비, 건물건축비, 선박 · 차량 등의 구입비

· 기계·기구·장비 및 토지·건물 등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자본적 지출금액

※ 그러나 단순히 제품생산을 위한 기계·장비의 구입, 공장신축 등은 연구개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외

⑤ 자체연구개발비중 외부지출액

· 자체연구개발비 총액에서 자체내에서 직접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입한다.

⑥ 기타 제 경비

· 자체사용 연구개발비중 인건비와 기계·장비·토지·건물 등의 구입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⑥란에 기입

· 여기에는 사무실 및 실험실용 비품구입비, 인쇄비, 건물사용료, 공공요금과 같은 경상비와 기술정보비, 시약재료비, 교육훈련비는 물론 연구개발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수위,청소원 등)의 인건비와 외부에서 수탁받은 연구개발비중 다시 외부로 위탁지출한 금액을 모두 포함.

· 특히 재료비의 경우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사용된 것만을 포함시켜야 함.

예)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5,000만원어치의 재료를 구입하였으나 연구개발에 3,000만원어치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생산활동에 사용한 경우

→ 비록 연구개발을 위해 5,000만원어치를 구입하였으나 실제로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은 3,000만원어치이므로 3,000만원만 포함.

(작성 예)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9,000만원 (자체연구개발비 총액이 5,000만원, 외부수탁 4,000만원)중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인건비가 2,500만원, 기계·장비 등 자본적지출이 1,500만원, 자체연구개발비중 외부에 연구를 위탁한 금액이 2,000만원, 외부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비중 외부에 다시 연구를 위탁한 금액이 500만원, 시약재료비 등 경상경비가 1,500만원, 수위,청소원 등의 인건비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아래와 같이 기입하고 ③, ④, ⑤, ⑥의 합계가 ①, ②의 합계와 동일한 가를 반드시 확인한다.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사 용 내 역	③ 인건비(연구개발 직접관련 인원)					2	5
	④ 기계·장비·토지·건물 등 구입비					1	5
	⑤ 자체연구개발비중 외부지출액					2	0
	⑥ 기타 제 경비(수위등 간접지원 인건비 포함)					3	0

(3) 연구개발 종사자 인원현황

연구개발부서에 종사하는 인원수를 아래의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입

① 연구원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동등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자(기사 1급 이상의 자격소지자 등)로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자(연구개발활동 부서에서 행정, 경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과거에 연구원으로서의 경력을 가진자 포함)

· 연구원의 수는 상근 개념으로 파악하여 기입

※ 겸직연구원이 있는 경우 인원산출방법
상근연구원이 2명, 겸직연구원이 3명 있을때 겸직연구원중 2명은 근무시간의 1/4를, 1명은 1/2를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했다면
연구원수 = 2 + 1/4 + 1/4 + 1/2 = 3명

② 연구보조원

· 연구원이 아닌자중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 검사, 측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연구 개발업무수행을 보조하는자

③ 기술 및 기능직

· 연구원, 연구보조원이 아닌자중 연구원의 지시 및 감독하에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에 종사하는자 및 연구개발 보조노무자

④ 기타지원업무

· ②, ③, ④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잡무, 경리, 회계 비서 등을 포함한 지원업무에 종사 하는자

15. 연간제품출하액(매출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일련번호	품목분류번호 (산업및품목분류표참조)								제 품 명	★★	수량단위
01											
02											
03											

이 항목은

[12항 ①제품출하액과 / 17항(1), (2)의 ①완제품] 에 기입된 총금액을 품목별로 세분 기입함.

◦ 품목분류번호

- 분류요령

제품원재료(재질) 용도, 공정등확인 → 중분류산업결정 (2자리) → 제품의 특성 공정, 용도등확인 → 소분류산업결정 (3자리)

→ 분류산업결정 (4자리) → 세세분류산업결정 (5자리: 산업분류) → 품목결정 (8자리)

※ 일반적으로 동일한 품목인 것처럼 표기되고 있더라도 품목분류번호가 달리 분류되므로 사업체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확히 파악한후 적절히 분류하여야 함.

사업체의 생산품이,

· 별책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어디에 분류할 것인가가 명백하지 않을때에는 먼저 사업체담당자와 품목분류표에 의거 품품목을 확인하여, 품목명칭과 수량, 단위에 의하여 정확히 기입하고, 품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원재료명, 용도등)으로 조사표 여백에 기입한다.

· 이후 품목을 확정하고 품목분류번호 기재와 함께 지정단위에 의한 수량을 환산하여 정정 기입 한다.

o 제품명

- 제품(품목)명은 해당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입하되 구체적으로

한다. 특히 조립금속,기계.전자,화학제품을 간단한 용도까지 기입.

- 품목명칭은 포괄적인 명칭으로 기입하지 말것.

<예>

목재류,식품류,기계류,전자제품 등

- 품목명칭이 애매하거나 외국어 일때에는 용도등 구체적인 설명을 조사표여백에 기입하여 품목분류 분석에 도움이 되도록 할것 (외국명은 공식약자로 표시되는 경우라도 괄호안에 원어를 써야하며 우리나라 명칭이 있으면 역시 부기 할것.)

- 여러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는 제품출하액이 큰 순서로 기입. 행이 부족한경우에는 본 항목의 양식만 별도로 복사하여 작성 첨부함.
- 특히 제품명이 "기타... ", "... 제품", "...용품", "...류" 등과 같이 복합적인 품목에 해당할 때에는 출하액이 큰 품목 몇개로 세분하여 기입하며, 품목명칭은 사업체 사용명칭에 따르되 용도를 기입.
- 동일한 품목을 필요이상 세분하지 말것(규격,성분별로 나누는 등)

사업체명부상의 품목명이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 제품" 으로 표기된 것은 품목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품목명칭을 기입.

o 수량단위

- 수량단위는 반드시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있는 지정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산업 및 품목분류표」의 단위가「※」인 품목은, 조사표의 "수량단위" 란에는「※」로 이기하며, "수량" 란에는 수량과 함께 사업체 사용단위를 기입한다.
- 사업체 사용단위가 지정단위와 달라 환산할경우 「산업 및 품목분류표」의 부록 "단위환산표" 에 의하여 환산하여 기입한다.

"단위환산표"에 수록되지 않은 것은 관련부서에 설명을 들어 환산하고 그 환산내역을 여백에 기입.

<예>

· 콜 라 ─┬ 지정단위: kℓ
　　└ 사업체단위: C/S상자=24본(병)

1본이 190mℓ인 콜라 219,000상자를 지정단위로 환산하면,

190mℓ X 24본 X 219,000상자 = 998,640,000mℓ

1 kℓ = 1,000 ℓ = 1,000,000mℓ이므로

998,640,000mℓ= 1,000,000mℓ= **999 kℓ**

· 직 물 ─┬ 지정단위: 천m²
　　└ 사업체단위:yd(길이), inch(폭)

폭36인치, 길이500,000yd의 면직물을 지정단위로 환산하면,

1yd=0.9144m, 1inch=0.0254m이므로

500,000 X 0.9144m X 36 X 0.0254m =418,050m²

= **418천m²**

- 환산이 극히 어려울 경우 사업체의 사용단위로 조사하고 그 단위의 자세한 규격등 설명을 여백에 기입.
(수량단위 난에는 공란으로 두고 수량란에는 수량과 사업체 사용단위 기입)

※ 수량단위란에는 지정단위로 표시하고 수량은 환산하지 않은채 기입하였거나, 지정단위로 조사하지 않고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로 조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예>

· 지정단위인 단위를 M/T로 표시하고 수량은 kg으로 기입한것.
· 지정단위가 M/T인데 수량 단위난에는 kg으로 기입하고 수량도 kg으로 기입한것 등.
· 수량단위가 천배수인 것은 특히 유의.
kg → M/T, ℓ → kℓ, m²→천m² 매(개)→천매(천개)

o 출하액

(1) 제품의 총 출하액(내수+수출)							
수 량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 품목별 국내 판매분과 수출분을 합한 금액을 기입한다.
  (국내나 외국으로 부터 수입한 상품의 매출액은 12항의 ⑤구입상품 매출액에 기입.)
- 품목별 총 합계액은 12항 ①제품출하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1) 수출액(수출품의 원재료, 부품용은 제외)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 수출금액은 수출당시의 원화교환 비율로 환산 기입한다.

※ 조사하여야 할 수출의 유형

o 자기명의 수출 : 수출입 허가업체가 외국상사와 직접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한 수출면장상의 금액.

o 위탁수출 : 외국상사와 수출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수출입허가가 없어 수출입허가업체나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수출한 경우의 수출면장 또는 내국신용장 금액을 기입한다.

o 내국신용장 수출 : 외국상사와 직접 수출계약을 맺지는 않았으나, 국내의 비광공업 사업체인 수출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내국신용장에 의거 수출용 제품을 공급했을 경우의 공급액을 기입한다.

o 기타 약정에

의한 수출 : ①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구매승인서, 임가공 및 기타약정에 의거 비광공업 사업체에 공급한 수출용제품의 공급액을 기입한다. (원재료의 공급여부와는 관계없음)
②계약서상 수출용품으로 명기되지는 않았으나, 자사 제품이 수출용품임을 공급자가 확인 할수 있는 경우 위 ①항에 준하여 수출품으로 간주하여 그 금액을 기입한다.

※ 수출로 조사하지 않고 국내시판으로 조사하여야 할 유형

국내의 수출제조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수출용제품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원자재, 반제품 및 부품을 공급하였을 경우는 수출액으로 조사하지 않고 국내시판으로보아 총 출하액에만 포함한다.

(3) 연초재고액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 제품 수불명세서상의 금액을 기입한다.
- 연초 재고액의 합계는 17항 (1)의 ①완제품의 연초재고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 '91년 신규사업체는 연초재고액이 없다.

(4) 연말재고액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 제품수불명세서상의 금액을 기입한다.
- 연말재고액의 합계는 17항 (2)의①와제품의 연말재고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단위당 출하가격(원)	
최 저 가 격	최 고 가 격

- 제품별 출하금액을 수량으로 나눈 출하가격(평균)은 단위당 출하가격의 최저·최고단가 범위내의 가격이어야 한다.

※·최저·최고단가는 반드시 지정단위당의 단가를 기입하여야 함.
·예컨데 지정단위가 M/T일때 kg당 단가를 기입하거나, 천㎡일 경우 ㎡당 단가를 기입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16. 임가공(수탁제조)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일련번호	품목분류번호 (산업 및 품목분류표참조)	제 품 명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01								
02								
03								

∘본 항목은 「12항③의 임가공(수탁제조)수입액」을 제품별로 구분 기입한다.
∘동일 품목이라도 제품을 매출하는 경우와 임가공 생산하는 경우의 「산업 및 품목분류」가 다름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 ·제품출하 쌀 「 15311 」
·임가공 쌀 「 15481 」

※ 임가공만 하는 사업체에서는 16항의 「임가공 품목별 내역」에만 기입하고 15항에는 기입하지 않음.

- 주요 임가공 산업 -

· 15481 임가공 도정업
· 15482 임가공 제분업
· 15483 임가공 식품냉동업
· 15489 달리분류 되지않은 식료품 임가공업

다만, 도정업,도살업,제분업 등에서 직접 재료를 구입하여 가공하는 경우는 임가공과 분리하여 제품출하로 조사하여야 함.(15항에서 조사)

17. 재고액

• 완제품 재고에는 자사 생산제품에 한하며, 구입상품은 제외

	(1) 연 초						(2) 연 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완 제 품												
②반제품 및 재공품												
③원재료 및 보조재료												
④연 료												
합 계												

• 완제품

- 당해 사업체에서 제조완료된 제품으로서 연초 또는 연말현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
- 재고평가액은 생산자 제조원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 반제품 및 재공품

당해 사업체가 추가 가공을 요하는 미완성 제품이다.

• 원재료 및 보조재료

당해 사업체의 소유분으로 작업장 외부에 보관중인 것도 포함한다.
(원재료 및 연초가격은 구입가격으로 함)

※ · 연초재고액은 전년도('90년도) 연말재고액과 일치하여야 함.
('91년 창설업체는 연초재고액이 없음)
· 재고액이 출하액에 비하여 너무 과다 · 과소할 경우 재확인하여야 함.

18. 유형고정 자산	(01)연초잔액 (감가상각충당 금누계공제후)							(02)연간증가액 (취득·대체액)							(03)연간처분 ·손해액 (건설가계정 대체액포함)							(04)연간감가 상각액 (당기충당금 설정액)							(05)연말잔액 ((1)+(2) -(3)-(4))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토 지																																	
②건물 및 구축물																																	
③기계장치·공구 ·기구·비품																																	
④차량·선박 ·운반구																																	
⑤건설가계정																																	
⑥기 타 유형 고정 자산																																	
합 계																																	

유형고정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1년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 차량·선박 및 운반구, 건설가계정 및 기타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o 토 지

-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
- 운동장, 기숙사, 사택등의 대지

※ 단, 비업무용 토지는 제외한다.

o 건물 및 구축물

- 건 물 : 공장, 사무소, 사택, 기숙사, 기타부속건물 및 승강기, 냉방·조명·통풍장치등과 이들의 부속시설 등
- 구축물 : 도로, 철도, 교량, 담장, 굴뚝, 수조탱크, 송유관, 조선대등

o 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

- 기계장치 :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등 각종기계류
- 공구·기구·비품등 : 1년이상 내구성 있는 것

o 차량·선박·운반구

- 육상운반구 : 자동차, 철도차량등
- 해상운반구 : 전마선, 화물선, 유조선등

o 건설가계정

- 영업용 유형고정자산(건물, 대형설비등)의 건설을 위해 지출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지급액등을 완성에 이르기 까지 일시 처리하는 계정.
-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과 미착기계등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 예 >

건물신축을 위하여 50억이 3개년에 걸쳐 투자 되었을 경우

(1)

'89 년 →	25 억
'90 년 →	15 억
'91 년 →	10 억

(2)

'90 년 →	25 억
'91 년 →	15 억
'92 년 →	10 억

①

연 도	1)연초잔액	2)연간증가액	3)연간처분액	4)연말잔액
'89년	0	25	0	25
'90년	25	15	0	40
'91년	40	10	50	0

②

연 도	1)연초잔액	2)연간증가액	3)연간처분액	4)연말잔액
'90년	0	25	0	25
'91년	25	15	0	40
'92년	40	10	50	0

o 기타 유형고정자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요(窯), 로(爐), 궤도, 항공기, 입목 등을 말한다.

(01) 연초잔액

91.1.1현재('90.12.31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을 공제한 잔액.

(02) 연간증가액

- '91년 1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을 실질적으로 신규취득 또는 중고취득하였거나 이를 설치 및 증개축하기 위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이다.
- 건설가계정으로부터 건물이나 기계장치 계정으로 대체되어온 것도 취득으로 간주한다.

(03) 연간처분·손해액(건설가계정 대체액 포함)

· '91년 1년간에 매각, 양도, 재해, 도난등으로 인한 유형고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 감소액을 말한다.

감가상각에 의한 장부가격의 감소는 (04)연간감가상각액에 기입한다.

· 건설가계정에서 건설완료로 건물이나 기계장치 계정등으로 대체한 것도 이 란에 기입(건설가계정의 감소액)

(04) 연간 감가상각액

반드시 '91년 당해연도(1년간)의 감가상각액 또는 감가상각충당금만 기입함.

감가상각액 또는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액을 기입해서는 안된다.

(05) 연말잔액

· '91.12.31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한 미상각잔액을 말함.

※ 장부가액을 기입하며,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싯가에 의함.
· 임차사용분은 제외하고, 임대하여 준것은 포함함.
· '91년도에 창설된 사업체는,
토지, 건물, 기계, 운반구등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액이 반드시 있어야 함
다만, 임차사용하는 경우는 없을수 있으나, 반드시 확인을 요망.

19. 주요 사용 원재료명(주생산품목의 원재료)	
①	②
③	④

o 다품목 생산업체는 출하액이 가장 큰 품목의 주요 원재료를 기준으로 기입한다.

o 특히 기계, 전자, 화학사업체의 외국어 원재료명은 우리나라명칭을 부기할것.

20. 주요 생산공정(주생산품목의 공정)

①		→ ②	
→③		→ ④	
→⑤		→ ⑥	

생산공정은 주된 품목(출하액이 가장 큰 품목) 하나에 대하여 최초의 투입

원재료명부터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제품까지의 순서를 단계적으로 요약 기입한다.

<예>

① 점토·규사 →② 배 합 →③ 성 형 →④ 소 성 →⑤ 내화벽돌

↓ (원재료명)

↓ (제품명)

21. 동일기업내 타공장 내역											
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								타공장명(사업체명)	소 재 지	전화번호
01											
02											
03											

동일 기업내에 산하공장이 2개이상 있을경우에 각각의 공장에 관한 사항을 기입함.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 첨부한다.

★ 사업체고유번호

타공장의 사업체고유번호는 사업체명부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만 기입하고 모르는 경우에는 그대로 둔다.

<예>

금강산업(주)의 산하공장이 서울, 대구, 대전, 광주에 있을 때 각 공장에서 이 항목을 기입하면,

(1) 서울공장에서 기입 할 경우

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							타공장명(사업체명)	소 재 지	전화번호
01	2	2	0	2	4	5	5	대구공장	대구 북구 침산1동 69	763-4953
02	3	4	0	4	2	8	2	대전공장	대전 중구 도마동 35	45-5133
03	3	6	0	1	2	4	1	광주공장	광주 동구 지원동 26-3	23-7635

(2) 광주공장에서 기입 할 경우

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							타공장명(사업체명)	소 재 지	전화번호
01	1	1	1	3	2	4	5	서울공장	서울강서구 화곡동 333	696-2209
02	3	4	0	4	2	8	2	대전공장	대전 중구 도마동 35	45-5133
03	2	2	0	2	4	5	5	대구공장	북주 침산1동69	23-7635

(3) 대전, 대구공장에서도 위와 같은 요령으로 기입

종사자수(명)	출 하 액(백만원)	주 요 생 산 품 명

- 종 사 자 수 : 공장별로 조업기간중 월평균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출 하 액 : 공장별로 제품출하액을 기입한다.
- 주요생산품명 : 출하액이 가장 큰 순서로 기입한다.

3. 조사표II 항목별 작성요령

o 유의사항

이 조사표II는 본사(본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단독사업체의 경우

단독사업체라 함은 별개의 독립된 장소에 본사가 없이 1개의 공장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말하며, 조사표I만을 작성한다.

단, 본사개념은 아니더라도 구역을 달리하여 직매장, 영업소(직영), 지사, 하치장이 있으면 조사표I, II를 함께 작성한다.

- 1개의 공장과 별개의 장소에 본사가 있는 경우

공장에 대해서는 조사표I을, 본사에 대해서는 조사표II를 작성한다.

- 다공장을 소유한 기업의 경우

· 본사가 산하공장과 지역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

당해 본사는 조사표II를 작성하되, 1항~13항까지는 전 산하공장분을 합산 기입함.

단, 14항 본사관할 사업체 및 내역은 사업체별로 기입.

· 본사가 산하공장(사업체)중 1개와 동일장소에 있는 경우:

조사표I, II를 함께 작성하며, 조사표II는 위의 요령과 같이 작성함.

o 항목별 작성요령

- 사업체고유번호

III. 조사표작성요령중 「p.20 사업체고유번호」 참조.

단, 별도장소에 본사가 없는 단일사업체라도 영업소, 지사, 하치장이 있어 조사표II를 작성할 때 사업체고유번호는 해당 사업체(공장)고유번호를 기입한다.

- 「6항 자산·부채·자본」부터 「15항 내국소비세액」까지는 산하 모든 사업체분을 합하여 기입(조사표I 작성요령에 준함.)

- 14항 본사관할 (동일기업내)사업체 및 내역

반드시 본사에 대한 사항을 가장 먼저 기입한다.

·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부상의 사업체고유번호를 이기, 사업체명부에 없거나 확인 할

수 없으면 공란으로 둠.

· 사업체 구분

본사, 본점, 지사, 영업소, 하치장, 직매장등 해당 명칭을 기입.

· 활동내역

공장일 경우 ○○제품제조, 그외의 경우는 관리, 직매장, 영업, 구매등으로 기입한다.

16. 동일그룹(소속모기업)내 계열기업명 및 소재지								
일련번호	★★기업체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경제활동(업 종)
01								
02								
03								

o 법률적으로 독립된 기업이라도 자본, 혈연관계등에 의하여 내면적으로 결합된 기업은 그룹(기업군)에 포함한다.

· 따라서 이 난은 그룹내 기업체단위란 점에서 14항과 구분된다.

· 그룹(기업군)에 속해 있는 대상기업체에서는 그룹내의 모든 계열사에 대하여 기입한다.

o 기업체번호는 사업체명부상에서 알 수 있을 때에만 기입하고, 모를 경우에는 공난으로 둔다.

o 주된 경제활동난에는 ○○제조업, ○○도매업, 주택건설업등의 기업체단위 주력산업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Ⅳ. 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

1. 일반적 사항

o 조사표 작성

_ 사업체별로 정확하게 조사표 Ⅰ.Ⅱ를 작성하였는지 검토한다

_ 행정구역 분류번호, 일련번호,사업체고유 번호가 사업체명부와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_ 연관항목의 계수 일치여부 검토한다.

_ 적자일경우 그타당성 검토한다.

o 신규,누락,전입사업체 고유번호 부여한다.

시.도에서 신규,누락 및 전입사업체 명부를 별도로 일괄작성하여 통계청 지방통계사무소에 통보,신규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기입한다.

o 조사표철

조사표는 동.읍.면별 사업체명부상 일련번호 순으로 철하되,본사용 조사표【Ⅱ】는 뒷 부분에 간지를 넣어 구분 합철함

2. 연간항목별 심사요령(조사표Ⅰ기준)

o 4항 창설연월일이 '91년이면
- 17항 재고액(1)연초재고액이 없음.
- 18항 유형고정자산(01)연초잔액이 없음.
- " (02)연간증가액이 있음.

(단 임차사용중일 경우 없을 수 있음)

o 5항 경영조직이
- ① 회사법인 및 ② 기타법인일 경우
  - 8항 자산,부채,자본,납입자본금이 있어야함.
  - 10항 종업원의①,②는 없어야 함.
- ③ 개인일경우
  - 8항은 ①자산,②부채,③자본총액만 기입하며, ④납입자본금은 기재하지않는다.
  - 10항 ①자영업주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②무급가족종사자가 있을 수 있다.

o 12항 연간 출하액에서
- ① 제품출하액이 있으면 → 15항 연간제품 출하액 내용이 있어야 한다.
- ③ 임가공수입액 이 있으면 → 16항 임가공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이 있어야 한다.

o 13항 연간 제조원가에서
- ① 재료비가 있으면
  - 12항 ①제품출하액이 있으야 함.
  - 14항에 제품출하액도 있으야 함.
- ⑤ 외주가공비가 있으면 → 위탁생산품목도 제품출하로 간주함.

o 15항 연간제품 출하액의 합계는 12항 ①제품출하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o 15항 (3), (4)연초, 연말재고액의 합계는 17항 ①재고액의 완제품과 (1)연초, (2)년말 재고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V. 관련자료 작성 요령

1. 집계표 작성

o 조사가 완료되고 조사표의 심사가 끝나면, 조사표에 의거 『집계표』를 작성한다.

※ 집계표는 필요한 사항을 조기 집계하여 신속하게 자료의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결과요약표임.

o 집계표는 조사표【Ⅰ】의 사업체 일련번호 순으로 기입한다.

o 유고업체는 적색볼펜으로

①, ②, ③ 및 ⑤란은 사업체명부 대로 기입하고 ⑦ ~ ⑪란에는 유고년월 및 유고내용을 기입

※ 적색으로 기입된 유고사업체는 소계·합계에 포함하지 않음.

o 집계표 작성 및 제출

_ 동·읍·면 : 사업체별
_ 구·시·군 : 동·읍·면별
_ 시 · 도 : 구·시·군별

→ 작성 → 시·도에서 취합 제출한다.

o 집계표 작성요령

_ 동·읍·면 작성시

행정구역 분류부호 및 행정구역명

사업체 명부상 해당 동·읍·면 부호를 기입하고, 『시·도』, 『구·시·군』, 『동·읍·면』명칭을 기입한다.

① 사업체 고유번호

·사업체 명부상의 기재된 번호를 기입함.

·새로 발견된 명부상의 누락사업체나 전입사업체중 고유번호를 알수없는 경우는 기입하지 않는다. (시·도에서 부여함)

② 사업체 명부상 일련번호

·사업체 명부상의 기재된 번호를 기입한다.

· 누락사업체나 전입사업체의 경우 동·읍·면 별로 사업체명부의 제일끝에 배열하여 계속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사업체명부·집계표·조사표철의 사업체별 순서가 일치되도록 한다.

③ 사업체명

· 조사표에 기입된 사업체명을 기입한다.

· 사업체명부상의 사업체명과 조사표상의 사업체명이 다를경우는 조사표에 기입된 명칭을 기준으로 기입한다.

④ 산업분류

[조사표 15항 (연간제품 출하액)
  조사표 16항 (임가공 수입액)] 의 품목분류번호중 주된 산업분류 (품목번호중 앞자리의 합계가 가장큰 산업)을 기입한다.

·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용 장비 등 수리업체는 수리품의 주된 산업에따라 분류 기입한다.

※ 대표적인 수탁제조(임가공)산업

임가공제분업	15482
임가공 곡물도정	15481
임가공식품냉동업	15483
달리분류되지않은 식료품임가공업	15489

⑤ 종사자수

조사표 10항 (2) 『조업기간중 월평균 종사자수』의 합계를 기입한다.

⑥ 연간급여액

조사표 11항 연간급여액의 합계를 기입한다.

⑦ 연간출하액

조사표 12항 연간출하액 및 기타수입액의 ① ~ ④의 합계를 기입한다.

⑧ 연간제조원가

조사표 13항 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①재료비 + ... + ⑥수선비까지의 소계를 기입한다.

_ 시.도.구.시.군 작성시

행정구역 분류번호 및 행정구역명

. 행정구역 분류번호 : 시.도 및 구.시.군 분류부호 기입한다.
. 행 정 구 역 명 : 시.도.구.시.군 명을 기입한다.

사업체 고유번호 및 사업체명

. 사업체 고유번호
  ┌ 구.시.군 : 동.읍.면별 행정구역 분류번호를 기입 (6자리)
  └ 시 . 도 : 구.시.군 " "
. 사업체명
  ┌ 구.시.군 : 동.읍.면의 명칭 기입한다.
  └ 구 . 도 : 구.시.군의 명칭 기입한다.

사업체 명부상 일련번호

  ┌ 구.시.군 : 동.읍.면별 사업체수를 기입한다.
  └ 시 . 도 : 구.시.군별 "

⑤ ~ ⑪ 항목

  ┌ 구.시.군 : 동.읍.면별 합계 기입한다.
  └ 시 . 도 : 구.시.군별 "

2. 조사용 사업체 명부 정리 및 보완

o 사업체수의 우선확정

조사담당자는 실사전에 관할구역내의 조사대상 사업체를 빠짐없이 방문하여

명부정리 및 누락사업체의 보완을 완료함으로서 조사대상 사업체를 확정하여 한다.

o 내용변동 사업체 처리

[사업체 명칭이나 대표자(소유주), 종사자수의 변경
  동일 행정 동.읍.면 내에서의 소재지 변경] 등 단순히 사업체 명부상 내용의 일부분만 변경된 경우는 유고사업체로 처리치 않고, 변경된 부분만적색으로 정정한다.

o 유고사업체 처리

_ 조사표를 작성할 수 없는 사업체는 유고사업체로 처리하되,사업체를 삭제하지 않고 명부상의 유고년월,유고부호,비고란의 해당 위치에 유고내용을 구분하여 기입한다.

(예)

. 유고년월:유고발생 년월이 91년 7월이면 → 『 9107 』

. 유고부호:유고사항이 『 폐업 』이면 해당부호 → 『 08 』

. 비　　고:구체적인 사유를 기입한다.

- 전 출 경 우 → 전출지 기입
- 대상외 경우 → 실제의 업종,품목,영업형태 기입.
- 조사불능경우 → 조사치 못한 이유 기입.
- 명부상 중복 → 중복된 사업체의 일련번호 기입.

_ 유고 부호 및 종류

부 호	02	03	04	06	08	09	10	12	14
내 용	전 출	휴업	기 준 미 달	소 재 불 명	폐 업	대상외	조 사 불 능	명부상 중 복	기 타

부 호	15	16	17
내 용	사업체 명변경	주 소 변 경	전 화 변 경

. 04 기준미달: '91.12월말 현재 종업원수 및 조업기간중 월평균 종사자수 모두 4인 이하인 업체

. 09 대 상 외: 광공업 사업체가 아닌 타산업인 경우.
(건설업,운수업,서어비스업 등)

. 12 중　　복: 동일사업체가 다른 고유번호로 이중 등재된 경우.

_ 전출 사업체의 처리 (행정구역 착오인 경우도 동일 요령)

각 행정기관은 관내의 전출 사업체를 파악하여

. 동일 구.시.군으로 전출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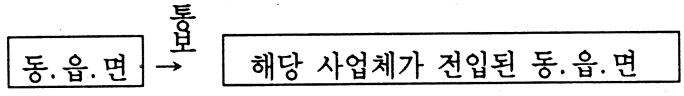

. 타 구.시.군으로 전출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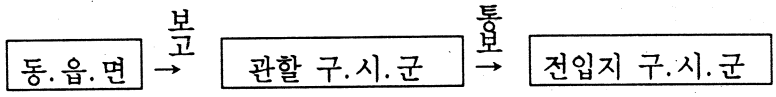

. 타 시.도로 전출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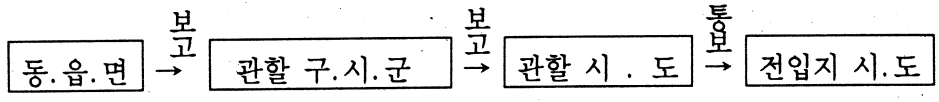

※ 구.시.군 및 시.도는 전입된 사업체 및 관내 이전 사업체가 빠짐없이 조사되도록 조치하고, 조사표류 접수시 조사여부 및 고유번호 이기 상태 등을 확인 하여야 함.

_ 추가 사업체 등재

추가 사업체에 대하여는 조사용 『사업체명부』에 등재함과 동시에 별도의 『추가 및 전출사업체명부』도 작성하여 상급기관에서 고유번호 확인기입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추 가 사업체
- 전입 : 91년중 조업실적이 있는 사업체가 타행정 구역에서 전입된것 ..... 조사표 작성 (행정구역 착오로 인한 경우도 전입처리)
- 누락 : 92년 이전에 창설된 사업체가 명부에 누락된것. ..... 조사표 작성
- 신규 : 92년도에 창설된것 (조사표작성치 않고 명부에만등재)

· 사업체 고유번호
- 전입 : 통보된 자료에 의해 고유번호 기입한다.
- 누락 : 지방통계 사무소 협조를 받아시.도에서 기입한다.
- 신규 : " "

. 일련번호 _ 명부에 이미 부여된 일련번호 맨끝 번호에 이어 계속해서 부여한다.

· 전입사업체의 유고발생

일단 전입으로 추가 기재한후 유고처리함. 부호는 최종 유고번호를 기입하고 사유를 명기한다.

· 변동 부호

전입의 경우 " 01 " 신규의 경우 " 05 " 누락의 경우 " 13 "	을 명부의 유고부호란에 기입

- 행정구역 개편 및 착오에 의한 타 동·읍·면 소재 사업체 처리

· 행정구역 개편(시승격 및 분동지역)으로 인하여 명부상 실제 행정구역이 다른 사업체가 혼재한 경우는 구·시·군에서 개편된 행정구역 별로 조정 배부 한다.

· 착오등으로 타 동·읍·면 소재 사업체가 등재된 경우에는 전출로 처리하되 명부를 발췌 기입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 정리 및 보완 요령

  · 타 사업체에 착오기입하거나 해당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변동사항의 정정은 변경된 부분만을 횡선으로 긋고 상단여백에 정정기입한다.

  · 전입 · 누락 · 신규 등의 추가는 흑 또는 청색을 사용한다.

  · 유고사업체는 적색으로 유고년월, 유고부호, 비고란만 정리 한다.

※

사업체명부 항목중 『조직』과 『구분』란은 다음 사항을 표시한 것임.

조 작	1 : 회사법인 2 : 기타법인 3 : 개 인	경영조직을 말함.
구 분	1 : 본사 (공장과 분리된) 2 : 본사 · 공장 (통합) 3 : 공장 (본사와 분리된) 4 : 단독업체	사업체의 구분을 말함

3. 추가 및 전출사업체 명부 작성

o 작성기관 및 대상

- 작성기관 : 동·읍·면
  (2부 작성하여 1부 차상급기관 송부, 1부 보관)
- 대 상 : (01) 전입사업체
  (02) 전출사업체
  (05) 신규사업체
  (13) 누락사업체

o 기입요령

- 사업체 고유번호
  · 전입사업체
    ┌ 동일 구 시군 내에서의 동·읍·면간 전출입 경우, 동·읍·면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거 기입한다.
    └ 동일 시도 내에서의 구시군간 전출일 경우, 시도에서 이전전 소재지의 사업체 명부에서 해당 사업체의 고유번호를 찾아 이기한다.
- 누락 및 신규사업체
  시·도에서 본 명부를 취합하여 해당 지방통계사무소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일괄 기입함.
- 생산품명
  · 조사표상의 제품란에서 주요생산 품목명을 발췌 각각 1 ~ 2개 기입.
  · 수탁생산(임가공)업체는 임가공품목을 기입한다.
- 구 분
  전입, 전출, 누락 신규의 해당란에 " ○ " 표 한다.
- 비 고
  전입(전출)사업체의 경우 반드시 전입전 (전출후)소재지를 기입한다.

4. 조사표 접수대장 작성

o 작성기관
  구·시·군, 시·도

o 기입 요령

- 행정구역명
  · 구·시·군 작성시 : 동·읍·면 명을 기입한다.
  · 시·도 작성시 : 구·시·군 명을 기입한다.

- 조사표수

  조사대상 사업체중 유고사업체를 제외한 실제로 조사표가 작성된 사업체의 조사표를 [I] [II]로 구분 기입.

- 조사대상 사업체수

  · 명부상 사업체수 기입

  · 누락,전입등 추가사업체수를 합한 수를 기입.

※ 조사대상 사업체수의 합계는 사업체명부 표지상의 대상사업체수의 합계와 같아야 함.

- 유고사업체수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입.

5. 내용심사 총괄표 작성

o 작성기관

구·시·군, 시·도

o 기입요령

- 구·시·군 : 동·읍·면 별로 작성치 않고 구·시·군 합계(집계표 참고)
- 시 · 도 : 구·시·군 별로 작성된 집계표 및 내용심사 총괄표를 참고하여 구·시·군 별로 기입함.

VI. 조사요령 요약 (조사표 I 기준)

1. 조사전반에 관한사항

- o 조사는 조기에 착수하여 조사기간내에 완료한다.
- o 조사항목이 복잡하므로 대규모사업체는 자계식, 소규모사업체는 타계식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 o 특히 15항 연간제품 출하액에 관하여는 조사표 배부시에 사업체 담당자와 사업체명부상의 전년조사 품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품산업 및 품목분류표 기준에 적합하게 구분하여 조사한다.
- o 본 조사의 1차 우선 순위는 15항임. 따라서 정확한 조사가 요구된다.
- o 품목분류 번호 및 수량 단위는 반드시 별책 『개정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의한다.
- o 사업체명부상에 누락된 사업체도 발굴 조사하여야 한다.
- o 조사표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수정전의 기입내용을 일아볼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칼로 긁거나 수정액 사용불가)

2. 조사표 항목별 작성요령

- o 본 조사항목의 개념과 사업체의 사용내용이 상이 할 경우본 조사개념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o 금액 단위는 각 항목별로 다르므로 『자리수』에 착오없도록 한다.
- o 각 항목별 연관계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3. 산업 및 품목분류 요령

- o 산업분류는 주된 산업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모든 품목의 분류번호는 8단위로 기입한다.
- o 수량은 반드시 지정단위로 조사하여야 한다.
- o 분류의 일반원칙은 ①생산품의 종류, ②생산품의 물리적 구성및 조립단계, ③용도, ④원재료, 공정및 기술에 따라 품목분류 번호가 다름에 유의한다.

4. 조사표 검토 요령

- o 조사누락된 사업체가 없는지 확인검토 한다.
- o 조사표 I, II를 바르게 선택하여 작성되었는지 검토한다.
- o 조사누락 항목이 없는지 검토한다.
- o 각 항목의 연관계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부록 Ⅰ 사업체 결산서 과목과 조사항목 대비표(조사표Ⅰ 기준)

Ⅰ. 대차대조표(보고식) : 조사항목 8항, 17항, 18항과 관련

제 × (당)기 < 1991. 12. 31 현재 >

제 × (전)기 < 1990. 12. 31 현재 >

과 목	제 × (당)기 (1991.12.31현재)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제 × (당)기 (1990.12.31현재)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자 산								
Ⅰ. 유 동 자 산								
(1)당 좌 자 산								
1. 현 금		XXX						
2. 예 금		XXX						
3. 유 가 증 권		XXX						
4. 외 상 매 출 금	XXX							
대 손 충 당 금	XXX							
5. 받 을 어 음	XXX							
대 손 충 당 금	XXX	XXX						
(할인어음 또는 배서어음: XXX)								
6. 단 기 대 여 금	XXX							
대 손 충 당 금	XXX	XXX						
(어음상의 채권: XXX)								
7. 미 수 금	XXX							
대 손 충 당 금	XXX	XXX						
(어음상의 채권: XXX)								
8. 미 수 수 익	XXX							
대 손 충 당 금	XXX	XXX						
9.		XXX						
(당좌자산계)		(XXX)						

과 목	제 × (당)기 (1991.12.31현재)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제 × (당)기 (1990.12.31현재)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자 산								
(2) 재 고 자 산				17항. 연말재고				17항. 연초재고
1. 상 품		XXX				XXX		
2. 제 품		XXX		17항. (2)의①		XXX		17항. (1)의①
3. 반 제 품		XXX		17항. (2)의②		XXX		17항. (1)의②
4. 재 공 품		XXX				XXX		
5. 원 재 료		XXX		17항. (2)의③		XXX		17항. (1)의③
6. 보 조 재 료		XXX				XXX		
7. 연 료		XXX		17항. (2)의④		XXX		17항. (1)의④
8. 저 장 품		XXX				XXX		
9.		XXX				XXX		
(재고자산계)		(XXX)				(XXX)		
(3) 기 타 유 동 자 산								
1.선 급 금		XXX				XXX		
2.선 급 비 용		XXX				XXX		
3. (기타유동자산계)		XXX				XXX		
유 동 자 산 합 계			XXX				XXX	
II. 투자와 기타자산								
(1)투 자 자 산								
1.장 기 성 예 금		XXX				XXX		
2.투자유가 증 권		XXX				XXX		
3.출 자 금		XXX				XXX		
4.관계회사 주 식		XXX				XXX		
5.관계회사 사 채		XXX				XXX		
6.관계회사출자금		XXX				XXX		
7.투 자 부 동 산		XXX				XXX		
8. ..... (투자자산계)		XXX				XXX		

과 목	제 × (당)기 (1991.12.31현재)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제 × (당)기 (1990.12.31현재)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2)기 타 자 산								
1.장 기 대 여 금	XXX				XXX			
대 손 충 당 금	XXX	XXX			XXX	XXX		
2.장기성받을어음	XXX				XXX			
대 손 충 당 금	XXX	XXX			XXX	XXX		
3.주주임원·종업원장기대여금	XXX				XXX			
대 손 충 당 금	XXX	XXX			XXX	XXX		
4.관계회사대여금	XXX				XXX			
대 손 충 당 금	XXX	XXX			XXX	XXX		
5.특정현금과예금		XXX				XXX		
6.전 세 금		XXX				XXX		
7.전신전화가입권		XXX				XXX		
8.임 차 보 증 금		XXX				XXX		
9.영 업 보 증 금		XXX				XXX		
10.부 도 어 음		XXX				XXX		
11.		XXX				XXX		
(기타 자산계)		XXX						
투자와기타자산합계			XXX				XXX	
III.고 정 자 산								
(1)유형 고정 자 산				18항유형고정				18항유형고정
1.토 지		XXX		18항.(5)의①		XXX		18항.(1)의①
2.건 물	XXX			18항.(5)의②	XXX			18항.(1)의②
감가상각충당금	XXX	XXX			XXX	XXX		
3.구 축 물	XXX				XXX			
감가상각충당금	XXX	XXX			XXX	XXX		
4.기 계 장 치	XXX			18항.(5)의③	XXX			18항.(1)의③
감가상각충당금	XXX	XXX			XXX	XXX		
5.선 박	XXX			18항.(5)의④	XXX			18항.(1)의④
감가상각충당금	XXX	XXX			XXX	XXX		

과 목	제 × (당)기 (1991.12.31현재)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제 × (당)기 (1990.12.31현재)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6.차 량 운 반 구	XXX			18항.(5)의④	XXX			18항.(1)의④
감가상각충당금	XXX	XXX			XXX	XXX		
7.공 구 와 기 구	XXX			18항.(5)의③	XXX			18항.(1)의③
감가상각충당금	XXX	XXX			XXX	XXX		
8.비 품	XXX				XXX			
감가상각충당금	XXX	XXX			XXX	XXX		
9.건 설 가 계 정		XXX		18항.(5)의⑤		XXX		18항.(1)의⑤
10.시 설 가 계 정		XXX				XXX		
11.미 착 기 계		XXX				XXX		
12.기 타(입목 등)		XXX		18항.(5)의⑥		XXX		18항.(1)의⑥
(유형고정자산계)		XXX		18항.(5)합계		XXX		18항.(1)합계
(2)무형 고정 자 산								
1.영 업 비		XXX				XXX		
2.특 허 권		XXX				XXX		
3.실 용 신 안 권		XXX				XXX		
4.의 장 권		XXX				XXX		
5.상 표 권		XXX				XXX		
6.광 업 권		XXX				XXX		
7.어 업 권		XXX				XXX		
8.차 지 권		XXX				XXX		
9.		XXX				XXX		
(무형고정자산계)		(XXX)				(XXX)		
고 정 자 산 합 계			XXX				XXX	
Ⅳ.이 연 자 산								
1.창 업 비		XXX				XXX		
2.개 업 비		XXX				XXX		
3.신 주 발 행 비		XXX				XXX		
4.사 채 발 행 비		XXX				XXX		

과 목	제 × (당)기 (1991.12.31현재)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제 × (당)기 (1990.12.31현재)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5.시 험 연 구 비		XXX				XXX		
6.환 율 조 정 차		XXX				XXX		
이연자산합계			XXX				XXX	
자 산 총 계			XXX	8항의①자산총액			XXX	
부 채								
Ⅰ.유 동 부 채								
1.외 상 매 입 금		XXX				XXX		
2.지 급 어 음		XXX				XXX		
3.당 좌 차 월		XXX				XXX		
4.단 기 차 입 금		XXX				XXX		
(어음상의 채무: XXX)								
5.미 지 급 금		XXX				XXX		
(어음상의 채무: XXX)								
6.선 수 금		XXX				XXX		
7.예 수 금		XXX				XXX		
8.미 지 급 비 용		XXX				XXX		
9.미지급법 인 세		XXX				XXX		
10.관계회사단기채무		XXX				XXX		
11.주주·임원·종		XXX				XXX		
업원장기차입금								
12.유동성장기부채		XXX				XXX		
13.선 수 수 익		XXX				XXX		
14.X X 충 당 금		XXX				XXX		
15.		XXX				XXX		
유 동 부 채 합계			XXX				XXX	

과 목	제 × (당)기 (1991.12.31현재)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제 × (당)기 (1990.12.31현재)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II.고 정 부 채								
1.사 채	XXX				XXX			
사채할인발행차금	XXX	XXX			XXX	XXX		
2.장 기 차 입 금		XXX				XXX		
3 관계회사장기차입금		XXX				XXX		
4.장기성지급어음		XXX				XXX		
5.주주·임원·종업원장기차입금		XXX				XXX		
6.X X 충 당 금		XXX				XXX		
7.		XXX				XXX		
고 정 부 채 합 계			XXX				XXX	
III.이 연 부 채								
1.환 율 조 정 대		XXX				XXX		
2.		XXX				XXX		
이 연 부 채 합 계			XXX				XXX	
부 채 총 계			XXX	8항의②부채총액			XXX	
자 본								
I.자 본 금								
(1) 수 권 주 식 수 X X X 주(1주당 금액 xxx 원)								
(2) 발 행 주 식 수								
1.보통주식(xx주)		XXX				XXX		
2.우선주식(xx주)		XXX				XXX		
자 본 금 합 계			XXX	8항의④납입자본금			XXX	
II.자 본 잉 여 금								
(1) 자 본 준 비 금								

과 목	제 × (당)기 (1991.12.31현재)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제 × (당)기 (1990.12.31현재)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1.주식발행초과금		XXX				XXX		
2.감 자 차 익		XXX				XXX		
3.합 병 차 익		XXX				XXX		
(자본준비금계)		(XXX)				(XXX)		
(2)재평가 적 립 금		(XXX)				(XXX)		
(3)기타 자본잉여금								
1.국 고 보 조 금		XXX				XXX		
2.공 사 부 담 금		XXX				XXX		
3.보 험 차 익		XXX				XXX		
4.자산 수증 이 익		XXX				XXX		
5.채무 면제 이 익		XXX				XXX		
6.자기주식처분이익		XXX				XXX		
7.		XXX				XXX		
(기타자본잉여금계)		(XXX)				(XXX)		
자본 잉여 금 합 계			XXX				XXX	
III.이 익 잉 여 금 (또는 결손금)								
1.이 익 준 비 금		XXX				XXX		
2.기업합리화적립금		XXX				XXX		
3.재무구조개선적 립금		XXX				XXX		
4.x x 적 립 금		XXX				XXX		
5.당기말미처분이 익잉여금 (또는 당기말미처 리 결손금)								
가.수정후전기이월	XXX				XXX			

과 목	제 × (당)기 (1991.12.31현재)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제 × (당)기 (1990.12.31현재)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이익 잉여금 (또는 수정후전기 이월결손금)								
나.당 기 순 이 익	XXX	XXX			XXX	XXX		
(또는당기순손실)			XXX				XXX	
이익 잉여금 합 계								
Ⅳ.주식할인발행차금			- XXX				- XXX	
Ⅴ.배 당 건 설 이자			- XXX				- XXX	
자 본 총 계			XXX	8항의③자본총액			XXX	
부 채와 자 본 총 계			XXX	8항의①자산총액과 일치			XXX	

II. 손익계산서(1991. 1. 1. ~ 1991. 12. 31) : 조사항목 12항, 13항과 관련

과 목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비 고
I. 매 출 액			12.연간출하액(매출액)및 기타수입액	
1. 제 품 매 출 액	XXX		12항의 ①	
2. 상 품 매 출 액	XXX		12항의 ⑤	
3. 폐 품 판 매 액	XXX		12항의 ②	
4. 임 가 공 수 입 액	XXX		12항의 ③	
5. 수 리 수 입 액	XXX		12항의 ④	
매 출 총 계		XXX		
II. 매 출 원 가				
1. 기 초 제 품 재 고 액	XXX			
2. 기 초 상 품 재 고 액	XXX			
3. 당 기 제 품 제조원가	XXX			
4. 당 기 상 품 매 입 액	XXX			
계		XXX		*12항의⑥구입상품 매출원가 = 2(기초상품재고액)+4(당기상품매입액)-7(기말상품재고액
5. 제 세 환 급 금	XXX			
6. 기 말 제 품 재 고 액	XXX			
7. 기 말 상 품 재 고 액	XXX			
당 기 매 출 원 가		XXX		
III. 매 출 총 이 익 (또는 매 출 총 손 실)		XXX		
IV. 판매비 와 일반관리비			13. 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 임 원 급 여	XXX		13항의⑦급여총액 *(1+2+3=11항의④사무 및 기타 급여액)	
2. 급 료 와 임 금	XXX			
3. 제 수 당	XXX			
4.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XXX			
5. 복 리 후 생 비	XXX		13항의 ⑧	
6. 여 비 교 통 비	XXX			
7. 통 신 비	XXX			
8. 수 도 광 열 비	XXX		13항의③전력비④용수비로구분기입	

과 목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비 고
9. 세 금, 공 과 금	XXX		13항의 ⑪	*판매비와일반관리비에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비는 합산하여 13항의 ⑬기타에 포함 *판매비와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 명세서와 같은 경비항목과 합하여 조사표 13항에 기입
10. 지 급 임 차 료	XXX		13항의 ⑨	
11. 감 가 상 각 비	XXX		13항의 ⑩	
12. 수 선 비	XXX		13항의 ⑥	
13. 보 험 료	XXX			
14. 접 대 비	XXX			
15. 광 고 선 전 비	XXX			
16. 보 관 료	XXX			
17. 견 본 비	XXX			
18. 포 장 비	XXX			
19. 경 상 시 험 연 구 비	XXX			
20. 개 발 비	XXX			
21. 운 반 비	XXX			
22. 판 매 수 수 료	XXX			
23. 대 손 상 각	XXX		13항의 ⑫	
24. 영 업 권 상 각	XXX			
25.	XXX			
26. 잡 비	XXX	XXX		
V. 영 업 이 익 (또는 영 업 손 실)		XXX		
VI. 영 업 외 수 익				
1. 수입이자와할인료	XXX			
2. 유가증권이자	XXX			
3. 수 입 배 당 금	XXX			
4. 수 입 임 대 료	XXX			
5. 유가증권처분이익	XXX			
6. 원 가 차 익	XXX			
7. 매 입 할 인	XXX			

과 목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비 고
8. 외 환 차 익	XXX		
9. 외 화 평 가 이 익	XXX		
10. 환 율 조 정 대 환 입	XXX		
11. 보 험 차 익	XXX		
12. 대 손 충 당 금 환 입	XXX		
13. 유가증권평가충당금환입	XXX		
14.	XXX		
15. 잡 이 익	XXX		
Ⅶ. 영 업 외 비 용	XXX		
1. 지급이자 와 할인료	XXX		
2. 사 채 이 자	XXX		
3. 창 업 비 상 각	XXX		
4. 개 업 비 상 각	XXX		
5. 신 주 발 생 비 상 각	XXX		
6. 사 채 발 행 비 상 각	XXX		
7. 시 험 연 구 비 상 각	XXX		
8.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XXX		
9. 기 타 의 대 손 상 각	XXX		
10. 유 가 증 권 처분손실	XXX		
11. 유 가 증 권 평가손실	XXX		
12. 투 자 자 산 평가손실	XXX		
13. 원 가 차 손	XXX		
14. 매 출 할 인	XXX		
15. 외 환 차 손	XXX		
16. 외 화 평 가 손 실	XXX		
17. 환 율 조 정 차 상 각	XXX		
18. 재 고 자 산 평가손실	XXX		
19. 재 고 자 산 감모손실	XXX		

과 목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비 고
20. 기 부 금	XXX			
21.	XXX			
22. 잡 손 실	XXX	XXX		
Ⅷ. 경 상 이 익 (또는 경 상 손 실)		XXX		
Ⅸ. 특 별 이 익				
1. 고 정 자 산 처분이익	XXX			
2. 투 자 자 산 처분이익	XXX			
3. 상 각 채 권 추심이익	XXX			
4.	XXX			
Ⅹ. 특 별 손 실				
1. 고 정 자 산 처분손실	XXX			
2. 투 자 자 산 처분손실	XXX			
3. 재 할 손 실	XXX			
4.	XXX			
Ⅹ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또는 법인세차감전순손실)		XXX		
ⅩⅡ. 법 인 세 등		XXX		
ⅩⅢ. 당 기 순 이 익 (또는 당 기 순 손 실)		XXX		

Ⅲ. 제조원가명세서(1991. 1. 1 ~ 1991. 12. 31): 조사항목 13항과 관련

과 목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비 고
Ⅰ. 재 료 비				
1. 기초재료재고액	XXX			
2. 당기재료매입액	XXX		13항①의 재료비(당기재료투입액)=1(기초재고액)+2(당기재료매입액)-3(기말재료재고액)	* 재료비에는 부재료 및 보조재료를 포함
계		XXX		
3. 기말재료재고액	XXX			
계		XXX		
Ⅱ. 노 무 비				
1. 급료와임금	XXX		13항의⑦급여총액	
2. 제 수 당	XXX		④ * (1+2=11항의③생산직	
3. 퇴직급여총충당금전입액	XXX		급여액	
Ⅲ. 경 비				
1. 외주가공비	XXX		13항의 ⑤	*경비에서 달리분류되지 않은 경비는 합산하여 13항의 ⑬기타에 포함 *경비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같은항목을 합하여 조사표 13항에 기입
2. 전 력 비	XXX		13항의 ③	
3. 연 료 비	XXX		13항의 ②	
4. 수 도 비	XXX		13항의 ④	
5. 복리후생비	XXX		13항의 ⑧	
6. 여비교통비	XXX			
7. 통 신 비	XXX			
8. 세금공과금	XXX		13항의 ⑪	
9. 지급임차료	XXX		13항의 ⑨	
10. 감가상각비	XXX		13항의 ⑩	
11. 수 선 비	XXX		13항의 ⑥	
12. 보 험 료	XXX			
13. 접 대 비	XXX			
14. 구 독 료	XXX			
15. 보 관 료	XXX			
16. 견 본 비	XXX			
17. 포 장 비	XXX			

과 목	금 액		광공업통계 조사표 항목	비 고
18. 설 계 비	XXX			
19. 개 발 비	XXX			
20. 운 반 비	XXX			
21. 지 급 수 수 료	XXX			
22. 대 손 상 각	XXX			
23. 차 량 비	XXX			
24.	XXX			
25. 잡 비	XXX	XXX		
IV. 당 기 총 재 조 비 용		XXX		
V. 고정자산등다른계정에서 대체된 금액		XXX		
VI. 기 초 재 공 품 재고액		XXX		
VII. 합 계		XXX		
VIII. 기 말 재 공 품 재고액		XXX		
IX. 고정자산등 다른계정으로 대채된 금액		XXX		
X. 당기 제 품 제 조 원가		XXX		

IV. 기타(부속명세서) 참고사항

부 속 명 세 서	광 공 업 통 계 조 사 표 항 목
1. 임금대장 근무상황표	10항 종사자수
2. 제품수불명세서	15항 연간제품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3. 공정자산명세서	18항 유형고정자산 (02)연간증가액 및 (03)연간처분·손해액
4. 감가상각충당금명세서	18항 유형고정자산 (04)감가상각액 (반드시 당해년도분만 기입; 누계액이 아님)

부록 II 시도별 공업 단지

시·도	부호	단 지 명	관 리 기 관	소 재 지	전 화
서울 (3)	01	한국수출산업 공업단지	한국수출산업공단	구로구 구로3동 188-5	856-5572
	02	영등포 기계 공업단지	영등포 기계공업 공단	구로구 온수동 100-26	681-6612
	03	한국프라스틱 공업단지	한국프라스틱공업 공단	양천구 목1동 195-45	646-1804
부산	04	사상공업지역	부산직할시	중구 중앙동 7가 20	463-5161
	05	신평공업단지	부산시(신평, 장림 공업단지 관리공단)	사하구 신평동 547-2	205-0209
	06	장림공업단지	"	"	203-8537
대구	07	대구염색공업 단지	대구염색 공업공단	서구 비산동 영색공업 단지	34-1521
	08	서대구 공업 단지	서대구공업단지협회	서구 중리동 1082-8	52-3320
	09	대구 제3공업 단지	대구 제3공업단지 협회	북구 노원3가2동 175	32-8364
	10	성서공업단지	성서공업단지관리 공단	달서구 갈산동 123-4	557-4744
인천	11	인천남동공업 단지	한국수출산업공단	남동구 남촌동 624-3	433-2512
	12	인천공업단지	인천지방공업단지 관리공단	남구 도화동 767	864-8261
	13	경인주물공업 단지	경인주물공단협동 소조합	서구 경서동 381	525-0101
	14	인천기계공업 단지	인천기계공업단지 관리공단	남구 도화동 742-2	82-5461
광주	15	하남공업단지 제 1단지	광주직할시	동구 계림동 505-900	224-4652
	16	하남공업단지 제 2단지	광주직할시	동구 계림동 505-900	224-4652

시·도	부호	단 지 명	관 리 기 관	소 재 지	전 화
광주	17	하남공업단지 제 3단지	광주직할시	동구 계림동 505-900	224-4652
	18	본촌공업단지	광주직할시	동구 계림동 505-900	224-4652
	19	송암공업단지	광주직할시	동구 계림동 505-900	224-4652
	20	광산소촌공업 단지	광주직할시	동구 계림동 505-900	367-3511
대전	21	대전공업단지	대전직할시	중구 대흥2동 499-1	250-2392
	22	대전 제3공업 단지	대전직할시	중구 대흥2동 499-1	250-2392
	23	대전 제4공업 단지	대전직할시	중구 대흥2동 499-1	250-2392
경기	24	반월공업단지	반월공업공단	안산시 원시동 773-2	491-5533
	25	시화공업단지	반월공업공단	안산시 원시동 773-2	491-5533
	26	성남공업단지	성남공업단지관리 공단	성남시 상대원1동 517-14	49-9460
	27	향남제약공업 단지	대한 약품공업협동 조합	화성군 향남면 성신리 900-1	587-5411
	28	반월도금공업 단지	안산시청	안산시 고잔동 515	82-6161
	29	안성공업단지	안성군(안성공업단 지 관리공단)	안성읍 영리 410 안성군 대덕면 견지리	73-8200 72-0211
강원	30	춘천공업단지	춘천시청	춘천시 옥천동 111	53-3700
	31	원주공업단지	원주시	원주시 우산동 185-1	42-2111
	32	강릉중소공업 단지	강릉시	강릉시 명주동 38	41-2011
충북	33	청주공업단지	청주공업단지관리 공단	청주시 송정동 329-1	65-0912
	34	충주공업단지	충주시	충주시 역전동 711-2	44-1221

시·도	부호	단 지 명	관 리 기 관	소 재 지	전 화
충북	35	부용공업단지	청원권	청원군부용면금호리20	53-1031
충남	36	아산인주공업단지	아산군(식산과)	아산군 영치면 송곡리 244-19	40-2114
	37	천안공업단지	천안공업단지관리공단	천안시 두성동 91-4	565-2014
	38	천안 제2공업단지	아산군(지역경제과)	천안시 문화동 118	551-2011
	39	조치원 공업단지	연기군(식산과)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동123	2-2171
전북	40	전주 제1공업단지	전주시	서노송동 568-1	85-5151
	41	전주 제2공업단지	전주시	서노송동 568-1	85-5151
	42	이리수출자유지역 이리(직할)공업단지	상공부 이리 수출자유지역 관리소	이리시 영동동 191-3	855-0700
	43	이리(지방)공업단지	이리시장	이리시 남중1가동 60	53-3610
	44	군산공업단지	군산시	군산시 중앙로 1가 2	41-3114
	45	청주공업단지	청주시	청주시 수성동 440-1	2-5141
전남	46	목포공업단지	목포시	목포시 용당동 888	72-2171
	47	순천공업단지	승주군	승주읍 평증리 55	54-5831
	48	광양연관공업단지	전라남도	광주직할시 광산동 13	222-0011
	49	나주공업단지	나주군	나주시 과원동 109-5	2-2531
	50	여수오천공업단지	여수시	여수시 여서동 222	665-7101
	51	여천공업단지	여천공업단지관리공단	여천시 중흥동 138-12	81-0952
경북	52	구미공업단지	구미수출공업공단	구미시 공단동 164	567-2908

시·도	부호	단 지 명	관 리 기 관	소 재 지	전 화
경북	53	포항공업단지	포항강철공업관리공단	포항시 장흥동 140-14	72-9191
	54	경주민속공예품단지	경주시	경주시 노동동 12	3-8771
	55	경주용강공업단지	경주시	경주시 노동동 12	3-8771
	56	김천농기계공업단지	김천시	김천시 남산동 49	
	57	논공공업단지	논공공업단지관리공단	달성군 논공면 북리 1-11	611-4756
	58	현풍공업단지	달성군	대구 남구 대명동1584	652-8971
	59	왜관공업단지	경상북도	대구 북구 산격동1443	93-0811
경남	60	창원공업단지	창원기계공업공단	창원시 외동 851-1	60-1121
	61	온산공업단지	상공부 온산공업 단지 협회	울산군 온산면 화산리 22	500-2430
	62	마산수출자유지역	상공부 미산수출지역 관리소	마산시 양덕동 975	91-2661
	63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사단법인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	울산시 부곡동 439	72-1807
	64	울산미포공업단지	경남 도시성비과 (울산시공업진흥사)	창원시 사림동 1	85-7050
	65	옥포산업기지	장승포시	장승포시 아주동 1	680-2317
	66	진주상평공업단지	진주시	진주시 본성동 5	43-9000
	67	양산공업단지	양산군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84-4101
	68	철서공업단지	.미 정	. 미정	. 미정
	69	진해공업단지	민간(대동조선,동흥공업사)	부산영도구 대평동1가 160	49-1125
	70	죽도산업기지	거제군(삼성조선)	거제군신현읍장평리530	635-2151

70-45

1991년 기준

운수업통계조사표 작성 요령

(버스 및 택시부문)

(1992. 4)

통 계 청

차 례

Ⅰ. 조사개요 3

1. 조사목적 3

2. 법적근거 3

3. 조사연혁 3

4. 조사기준시점 및 기간 3

5. 조사표 작성 및 조사표 제출기간 4

6. 조사표 제출절차 4

7. 조사범위 및 대상 4

8. 조사단위 4

9. 조사항목 4

10. 조사방법 5

11. 결과공표 5

12. 조사단계(흐름도) 5

Ⅱ. 조사표 기입요령 6

1. 일반적 유의사항 6

2. 항목별 기입요령 8

Ⅲ. 조사표 내용검사 및 정리요령 28

Ⅳ. 지역소득추계 조사표 기입요령 34

〈 부록 〉

1. 한국표준산업분류(1991.9.9 통계청 고시) 37

2. 운수업통계조사표(버스 및 택시부문) 71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운수업부문 (버스 및 택시운송업) 의 고용·급여·운수장비·운수수입 및 비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 부문의 수준과 구조의 변동 및 운수활동 상태를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경제정책수립 및 이의 시책효과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법적근거

이 조사는 통계법 제 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111-11-16호)이다.

3. 조사연혁

가. 중소기업은행에서 64년·69년 2회 실시

나. 1976년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어 1977년에 제1회 조사 (1976년 기준)를 시작으로 매년 실시하여 금년이 16회 조사가 됨

다. 1987년 (1986년 기준)부터 자계식 조사 실시

4. 조사기준 시점 및 기간

가. 조사기준시점 : '91. 12. 31 현재

나. 조사기준기간 : '91. 1. 1 ~ 12. 31(1년간)

※조사기준기간과 사업체의 결산기간이 다를 경우에는 당해 사업체의 직근 1년간의 결산기간을 조사기준기간으로 하여 조사한다.

5. 조사표 작성 및 조사표 제출기간

가. 조사표 작성 : '92.4.1 ~ 4.10

나. 조사표 제출 : '92.4.11 ~ 4.20(사업체→각 시·도 조합)

: '92.4.21 ~ 4.30(각 시·도조합 → 지방통계사무소)

6. 조사표 제출절차

사업체→각 시·도 조합→각 시·도 통계사무소(내검 및 부호기입)→통계청

7. 조사범위 및 대상

가. 조사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의『대분류 Ⅰ.운수 및 창고업』중 다음 업종을 조사대상 업종으로 한다.

나. 조사대상업종

(1) 육상운송업 중 시외버스(고속버스포함)·시내버스·전세버스업의 약 700개 업체

(2) 육상운송업 중 회사택시 약 1,900개 업체

8. 조사단위

조사단위는 버스 및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체

9. 조사항목

사업체개황·조직형태·차량보유현황·연간수송실적·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연간 운수수입 및 비용·유형고정자산 등 10개 항목

10. 조사방법

대상 사업체의 통계담당 실무자에 의한 자계식조사

11. 결과공표

가. 잠정집계 결과공표 : '92. 9월중

나. '91 운수업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 '92. 11월중

12. 조사단계(흐름도)

가. 사업체 명부확인 및 보완 : 1 ~ 2월

나. 표본설계(개인택시·개인용달·농산물 창고) : 2월

다. 조사요령교육 : 3월

라. 실지조사 : 4.1 ~ 4.10

마. 조사표제출 : 4.11 ~ 4.20(각 시·도 조합)

바. 조사표 내검 및 제출 : 4.21 ~ 4.30(각 시·도 조합 →각 지방 통계사무소)

사. 부호기입 및 집계표 작성 : 5.1 ~ 5.20(각 지방 통계사무소)

아. 조사표제출 : 5.31일까지(각 지방 통계사무소 → 중앙)

자. 자료처리 : 6.1 ~ 9.30

차. 결과공표 및 보고서발간 : 잠정결과(9월)

: 확정결과(11월)

II. 조사표 기입요령

1. 유의사항

가. 조사표의 모든 기재사항은 운수업 부분만 기입한다.

단, 겸업사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입한다.

(1) 운수업과 타산업(제조업·도소매업 등)을 겸업하는 경우

장부에 의거 반드시 분리 조사한다. 분리조사가 어려운 경우라면 총 매출액에 대한 운수수입 비율로 배분하여 기재한다.

(2) 여객운송업[시외버스(고속버스)·시내버스·전세버스 및 택시]과 다른 운수업종(수상·화물·운수관련서비스업 등)을 겸업하는 경우

(1) 항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분리조사한다.

(3) 여객운송업[시외버스(고속버스)·시내버스·전세버스 및 택시]상호간 겸업인 경우

장부상으로 조사항목이 분리조사가 가능할 경우에는 분리하여 조사표를 별도로 작성하되 분리조사가 곤란할 경우에는 수입이 많은 곳으로 합산하여 조사한다. 이런 경우 반드시 업종별 차량대수를 적요란에 기입 하여야 한다.

나. 이 조사는 금액중심의 조사이므로 금액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다. 모든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한다.

라. 조사표중 "※"표가 있는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마. 조사표의 작성은 항목별 기입요령에 따라 장부에 의한 자료를 기입한다.

바. 조사표 기재는 반드시 흑색이나 청색『볼펜』을 사용하며 금액단위는 점선으로 구분한 각 란에 맞도록 정확 명료하게 기입한다.

사. 숫자는 반드시 1, 2, 3, ····과 같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한다.

아. 기재사항이 잘못된 부분은 복선(=)을 긋고 그 위에 정정 기입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란은 사선을 좌상에서 우하로 긋는다.(\)

자. 조사표상 사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므로 기입하지 않는다.

차. 천원미만은 4사5입한다.

카. 각 항목별 합계란의 검산을 철저히 하여 계수의 정확을 기한다.

타. 조사표 작성과정에서 어느 항목을 정정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와 관련 되는 합계란과 항목을 검토하여 연관항목은 모두 정정하여야 한다.

파. 조사항목의 해설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기입요령에 따라 정확하고 성실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2. 항목별 기입요령

가. 난외사항

※ 사업체고유번호	※ 산업분류 번호	※ 구분	※ 행정구역 번호	※ 조직형태번호

※사업체고유번호·산업분류번호·구분 등은 기입하지 않는다.

나. 난내사항

1. 사업체 개황

(1) 사업체명 (2) 창설년월 년 월

(3) 대표자명 (4) 전화번호

(5) 소재지 시 구 시 군 구 로 동 읍 면 가 동 리 번지 호

(1) 사업체명 : 정식명칭을 기입한다.

(2) 창설년월 : 법인은 법적설립년월, 개인은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년월을 기입한다. (단, 업종을 변경한 사업체는 업종변경년월, 동일한 업종으로서 사업주 또는 상호만 변경된 사업체는 최초로 창설한 년월을 기입함.)

(3) 대표자명 : 대표자 또는 사업주명을 기입한다.

(4) 전화번호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입한다.

(5) 소재지 : 사업체가 사업을 실제로 경영하고 있는 장소 또는 등록된 행정구역상의 주소를 말한다.

2. 조직형태(해당란에 O표)

① 국가기관 ▨　② 공사 ▨　③ 회사법인 □

④ 기타법인 ▨　⑤ 개인 □

(1) 조직형태라 함은 경영주체인 사업체의 법적 조직형태를 말한다. 법인이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 회사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사단법인과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등이 있는바, 이 조사에서는 "회사법인과"과 "기타법인"으로 구분하며, 상법에 의한 "회사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을 "기타법인"에 포함시킨다.

(2) 개인업체라 함은 법인업체가 아닌 개인소유의 사업체를 말한다.

3. 사업형태(해당란에 O표)

① 시외버스 □　② 전세버스 □　③ 시내버스 □　④ 택시 □

(1) 여객운송업[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시내버스, 전세버스 및 택시)] 상호간 겸업으로 인하여 합산조사하는 경우에는 주업종 한곳에만 O표하고 업종별 차량대수를 적요란에 기입한다.

4. 자본금 또는 출자금										
1991. 12. 31 현재 납입 완료된 금액 (개인사업체는 해당되지 않음)										

(1) 조직형태에서 "법인"에 한하여 기입하며, "개인"은 사선을 긋는다.

5. 차량 보유현황

(1) 기관별 차량(대수)

o 영업용이외의 차량은 제외

o 경과년수 : 차량 등록일로부터 1991.12.31 까지 경과된 년수

경과년수 / 기관별	합계	① 1년미만	②1~3년미만	③3~5년미만	④5~8년미만	⑤ 8년이상
(1)디젤엔진						
(2)휘발유엔진						
(3)LPG 엔진						
합 계 (1)+(2)+(3)						

(2) 형별 시내버스 및 택시차량(대수)

o 총가동대수: 보유차량중에서 운행한 차량의 연간 총 가동대수

시 내 버 스			택 시		
합 계	①도시형	②좌석형	합 계	① 중 형	② 소 형

(3) 총가동대수

십 만	만	천	백	십	일

(4)총운행일수

백	십	일

o 형별택시 :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은 요금체계(중형:기본요금800원) 소형:기본요금750원)에 의해 구분하고, 그외 시도는 배기량 (중형 :1500cc이상,소형:1500cc미만)을 기준함

o 총운행일수 :개인택시의 연간 총영업일수

(1) 차량보유대수

(가) 91.12.31일 현재 당해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차량을 말하는데, 사업체 소유가 아닌 타인소유의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는 차량도 포함된다.

(나) 차량보유대수에는 영업용 차량만 해당됨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차량 경과년수

(가) 차량 등록일로부터 조사기준일까지 경과된 년수를 말한다.

(나) 중고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했을 경우 구입전의 차량등록일을 확인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즉 중고차량의 구입일로부터 조사기준일까지 경과된 년수가 아니다.

(다) 택시의 차량경과년수는 8년이상이 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기관별

버스차량은 반드시 디젤엔진란에만 기입하도록 한다.

(4) 형별 시내버스 및 택시차량(대수)

(가) 시내버스를 도시형·좌석형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도시형과 좌석형의 합계는 "기관별 차량합계"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나) 시내버스업이 주업종이면서 전세 또는 시외버스를 겸업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좌석형에 포함시키고 적요란에 그 내용을 기입한다.

(다) 택시는 중형·소형으로 구분하여 기입하되 중형·소형의 합계는 "기관별 차량합계"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라)중형·소형의 구분기준 :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은 요금체계(중형: 기본요금 800원, 소형: 기본요금750원)에 의해 구분하고, 그외 시·도는 배기량(중형:1500cc이상, 소형:1500cc미만)을 기준한다.

(5) 총가동대수

(가) 총가동대수는 전보유차량중에서 영업용으로 운행한 차량의 연간 총가동대수를 말한다.

(나) 모든 보유차량의 일일 총가동대수를 누계하여 월 총가동대수를 구한 다음 월별 총가동대수를 합하여 연간 총가동대수를 산출한다.

예를들어 영업용차량 20대를 보유하고 있는 "갑" 업체가 91년도 11월부터 운행하여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18대, 21일부터 30일까지 20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20대, 16일부터 31일까지 18대를 각각 운행하였을 경우 총가동대수는 다음과 같다.

11월 총가동대수 = (18대×20일)+(20×10일)=560대

12월 총가동대수 = (19대×5일)+(10대×10일)+(18대×16일)=483대

"갑"업체의 총가동대수 = 560대(11월 총가동대수) + 483대(12월 총가동대수)=1,043대

(6) 총운행일수

개인택시업종에 한하여 조사한다

6. 연간 운송 실적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o수송총인원:연간 수송한 총인원	(1)수송총인원 (명)								
o수송총거리:연간 수송한 총거리	(2)수송총거리 (km)								
o총운행횟수:연간 총운행한 횟수	(3)총운행횟수 (회)								

(1) 수송총인원

여객운수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영업용 차량을 차량별로 매일매일 수송한 여객인원을 누계하여 월별 수송총인원을 구한 후 모든 차량의 월별 수송총인원을 합하여 연간 수송총인원을 산출한다.

(2) 수송총거리

여객운수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영업용 차량을 차량별로 매일매일 실제로 주행한 거리를 누계하여 월별 수송총거리를 구한후 모든 차량의 월별 수송총거리를 합하여 연간 수송총거리를 산출한다.

(3) 총운행횟수

(가) 왕복을 1회로 하여 계산한다. 단, 시외(고속)버스는 편도로 계산한다.

(나)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영업용 차량을 차량별로 조사대상기간 1년간에 매일매일 실제로 운행한 횟수를 누계하여 월별 운행횟수를 구한 후 모든 차량의 월별 총운행횟수를 합하여 연간 총운행횟수를 산출한다.

(다) 택시는 타코메타기에 기록된 횟수를 기록하되 타코메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택시차량은 승객이 탄 횟수를 기입한다.

7.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① 종사자수			② 급여액(연간 총액)									
			계	남	여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원	천원
(1) 차량관계 종업원	① 운전기사	고정운전기사													
		대 기(스페어)													
		계													
	② 안내원 및 조수														
	③ 정비 및 수리공														
	④ 기 타														
계 (①+②+③+④)															
(2) 기타 종업원															
(3)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합 계 [(1)+(2)+(3)]															

(1) 종사자

'91.12.31일 현재 일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임금·봉급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보수를 받고 그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피고용자수와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의 합계를 말한다. 여기에는 상용·임시·일용종업원뿐만 아니라 병가자·사고로 인한 단기휴가자 등은 포함하고 군복무자와 일정한 고정급여액을 운수업체로부터 지급 받지 않는 종업원은 제외한다.

(가) 차량관계 종업원

1) 운전기사

가) 영업용 차량운전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자가용 운전기사는(임원·사무직 및 기타) 에 포함』

나) 대기(Spare)운전기사 (택시 운송업부문만 해당)는 고정운전기사가 결원 (훈련·병가·연가)되었을때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안내원 및 조수 (버스 운송업 부분만 해당)

안내원은 차량운행중 여객의 운임수취 및 여객의 승·하차와 기타 여객의 여행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운전기사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수는 차량운행 중 차량의 수리를 주로 담당함으로써 운전기사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비 및 수리공

차량의 정비 및 수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회사수리공장(사업체 직영공장)에서 차량의 정비 및 수리에 종사하는 자(정비관리자)를 말한다.

4) 기타

상기 분류에 속하지 않으나 운행 및 유지관리를 위해 종사하는 종업원(안전관리자·세차원 등)을 말한다.

(나) 기타종업원(임원·사무직 및 기타)

차량운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임원, 관리직인 사무종사자 및 이들들의 보조원을 말한다. 예를들면, 사무직원·매표원·검수원·수위·경비원·급사·자가용운전기사·차고관리인 등을 말한다.

(다)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1) 사업주 및 그외가족(동거자 포함)으로서 사업에 관련되는 제반업무에 주당 정상작업시간의 1/3이상을 종사하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자를 말한다.

2) 조직형태에서 개인에 ○표된 경우에만 기입한다.

(2) 급여액

(가) 조사대상 기간중 피고용자에게 노무의 대가로 지급된 연간 급여 총액을 말하는데 급여라함은 현금, 정기 또는 부정기를 불문하고 노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임금·상여금·각종수당 및 생계보조금 등 운송 원가명세서 및 일반관리비 부문에서 발생한 각종 급여를 말한다. 즉, 사업체에서 세금·노동조합비 등의 공제금을 포함하여 실질상 지출한 급여 총액을 말한다.

(나) 차량관계 종업원의 급여액에는 차량운전시 소요되는 급식비 및 피복비는 『운수비용』중 『 ④ 복리후생비』에 기입한다.

(다) 급여액은 91년중에 발생한 연간총액을 기입한다.

즉, '91년 이전의 체불되었던 급여를 '91년중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고, 반면에 '91년중에 지급하여야 할 급여가 미불된 것은 포함한다.

(라) 차량관계 종업원 및 기타 종업원의 급여액 합계는 『운수비용』중 『 ② 인건비』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

(마) 급여액이 종업원수와 비교하여 현실적인 급여수준에 상당히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당 월별 급여액을 계산하여 급여액을 재확인한다.

8. 연간 운수수입 및 비용

단위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원	천원
(1) 운 수 수 입				조사기간중 얻어진 사업체의 모든 영업수입(영업외 수입제외)										
(2) 운수비용	① 재료비	연료비	경 유	영업용차량용 휘발유사용량의 구입비용										
			휘발유	영업용차량용 휘발유사용량의 구입비용										
			LPG	영업용차량용 LPG사용량의 구입비용										
			기 타	영업용차량용										
			계	경유 + 휘발유 + LPG + 기타										
		기타 재료비		외부로부터 매입된 부분품으로서 그대로 차량에 부착시켜 그 구성분이 되는 부속품비(타이어,튜브,등)										
		소 계		연료비 + 기타재료비										
	② 인 건 비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임금,제수당 및 잡급등의 비용(7항 급여액과 일치)										
	③ 퇴직급여충당금 전 입 액			당년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본계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지급된 퇴직금										
	④ 복 리 후 생 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된 법정복리비,장학금,의료보험,피복비 보건비,무료급식 등										
	⑤ 감 가 상 각 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⑥ 지 급 임 차 료			건물,차량 및 운반구										
				토지임차료										
	⑦ 보 험 료			자동차,건물,산업재해등에 대한 보험료										
	⑧ 세 금. 공 과 금			자동차,재산,취득,방위,등록세(법인세,소득세 제외)협회비,적십자비 등										
	⑨ 수 선 비			건물,수송장비 등 유형고정자산의 수선,수리를 외부에 의뢰한 경우에 지출한 경비										
	⑩ 사 용 료			차량검사료 등										
	⑪ 대 손 상 각			받을어음 그밖의 이에 준하는 채권중 회수할 수 없는 금액(경상적인 대손상각비만 기입)										
	⑫ 잡 비			수도광열비,광고선전비,접대비,소모품비,비영업용 차량유지비 및 사고비,통신비,여비 등										
	합 계			① + ② + · · · · · · · · · · + ⑫										
(3) 영 업 이 익				(1) 운수수입 - (2) 운수비용										
(4) 납부 부가가치세				매출부가가치세 - 매입부가가치세										

(1) 이 조사항목은 운수업통계조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조사항목이므로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가) 운수수입과 운수비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결산서상의 금액을 기입한다.

(나) 손익계산서상의 운송원가명세서 및 일반관리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 이 조사항목은 각 운수사업체 결산자료의 각 항목분류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내용은 동일하므로 각 항목해설을 숙지하여 사업체 결산자료의 각 항목을 이 조사 항목에 맞도록 분류 작성해야 한다.

(라) 사업체의 결산자료에는 대체로 직영차량분에 대한 자료만 포괄되기 때문에 비직영차량은 직영차량에 준하여 비직영 차량분을 산출 포함시켜서 기입한다.

(2) 세항별 기입요령

(가) 운수수입

1) 조사기준기간 중 사업체의 운수활동으로 얻어진 경상적인 영업수입을 말한다.

2) 부동산 투자 등으로 얻어진 영업외수입은『9.임대수입』에 기재한다.

3)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제외한다.

(나) 운수비용

조사기준기간중 사업체의 운수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영업비용(일반관리비 및 운송원가명세서)을 말한다.(영업외비용은 제외)

1) ① 재료비

재료비란 사업체에서 운수활동을 위하여 소비할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매입한 재료구입비용 중 실제 사용액을 말하는바, 재료비에는 다음의 두가지로 구분한다.

가) 연료비

① 영업용 차량의 운행에 실제 사용된 비용을 말한다.

택시 운송업은 경유·휘발유·LPG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며 버스 운송업은 경유만을 기입한다.

② 소비된 연료에만 기재하고 미사용분인 비축분은 제외하여야 하며 기타란에는 윤활유 (엔진오일·핸들오일·브레이크오일 등)를 기입한다.

③ 영업용 차량외의 연료비(승용차용·자가발전·난방용)는 『⑫ 잡비』에 기입한다.

나) 기타재료비

외부로부터 매입된 부분품으로서 그대로 차량에 부착시켜 그 구성부분이 되는 타이어·튜브·베어링 등의 부속품비를 기입한다.

2) ②인건비

가) 운전기사·안내원·정비 및 수리공 등의 차량관계 종업원과 사무원 및 잡급등의 기타 차량관계 종업원에 대하여 지급된 급료·임금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특근수당 등의 각종수당 및 잡급 등이 포함된다.

나) 인건비는 『7.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의 차량관계 종업원 및 기타종업원의 급여액 합계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

3) ③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91년도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기입하되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입한다.

4) ④복리후생비

전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된 법정복리비, 복지시설 부담액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기재한다.

예) 장학금·경조비·종업원의 건강비·손해보험·치료보조비·의료보험·보건비·각종보조금·피복비·무료급식비 등이다.

5) ⑤감가상각비

가) 고정자산(토지 제외)은 사용기간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는 바, 이것을 결산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나)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91년도의 감가상각액을 기입하여야 한다.

6) ⑥지급임차료

동산·부동산·특허권 등을 일정한 기간동안 임차·사용했을 경우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건물·차량 및 운반구와 토지를 구분하여 기입)

예) 영업용토지·공장·건물·기계장치·운반구 등의 임차료

7) ⑦보험료

가) 자동차·건물(건물 부속설비 포함)및 비품 등에 대하여 사업체가 지불한 화재·손해 및 산업재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나) 종업원의 후생을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는『④복리후생비』에 기입한다.

8) ⑧세금·공과금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동차세·재산세·인지세·등록세·취득세·방위세 등의 제세금과 상공회의소비·무역협회비·조합비·적십자비 등의 각종 공과금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소득세 및 고정자산 원가에 포함되는 등록세 등은 제외한다.

9) ⑨수선비

가) 사업체의 건물·차량·기계장치·공구 등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선·수리를 외부에 의뢰하였을 경우에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수익적 지출)

나) 건물의 증축이나 기계도구의 개조로 인해 그 자산의 가치가 증식된 경우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치증가이므로 『10.유형고정자산』의 『②연간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자본적 지출)

10) ⑩사용수수료

여러 운수사업체가 정류장(지방정류소 포함)을 공동사용할때 승차권 판매(매표)업무를 정류장에서 대행할 경우 사업체에서 정류장에 지급된 매표에 대한 수수료·면허수수료·그밖에 차량검사료 등을 말한다.

11) ⑪대손상각

가) 버스운송업 부문만 기입한다.

나) 외상매출금·받을어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중 회수할 수 없는 경상적인 금액을 기재한다.

12) ⑫잡 비

가) 이상 열거한 비용 이외의 비용으로 수도광열비·광고선전비·접대비·소모품비·비영업용 차량사고비·통신비·사고비·여비·교통

비·주차장 사용료 등의 제비용을 말한다.

나) 영업비용 중 외국 (정부기관 및 개인)에 지불한 인건비·복리후생비·임차료·조세 등도 잡비에 포함한다.

(다) 영업이익

사업체의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운수수입에서 운수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한다.

(라) 납부 부가가치세

1) 일반 과세자의 경우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발생기금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기입한다.

2) 과세 특례자의 경우는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상의 차감 납부한 세액을 기입한다.

9. 임대수입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원	천원
영업외 수입중 차량·토지·건물 등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임대수입금	(1) 토 지							
	(2) 건물및구축물							
	(3) 기계장치및기구							
	(4) 차량및운반구							
	(5) 합 계							

운수업체에서 경상적인 영업활동이외에 토지·건물·운수장비의 대여로 수입된 금액을 말한다. 즉 영업외수입중 토지·건물·장비 및 차량운반구 등의 수입임대료를 조사한다.

10. 유형고정자산

· 장부가액을 기입하며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싯가에 의하여 기입한다.

· 임차사용분은 제외하고 임대하여준 것은 포함한다.

· 연초잔액은 91.1.1 현재 감가상각 충당금 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연간증가액은,신규취득 및 중고 취득하였거나 이를 설치 및 증·개축액을 말하며 건설가계정으로부터 건물이나 기계장치 계정으로 대체되어 온 것도 취득으로 간주한다.

· 연간처분 및 손해액(연간감가상각액 포함)은 91년 1년간에 매각·양도·재해·도난등으로 인한 유형고정자산의 실직적인 가치감소액을 말하며, 건설가계정에서 건물완료로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으로 대체한것은 건설가계정 감소액에 기입한다.

· 연말잔액은 91.12.31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한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 연말잔액 = 연초잔액 + 연간증가액 - 연간처분 및 손해액 (연간감가상각액 포함)

	①연초잔액 (1991.1.1 현재)										②연간 증가액 (취득·대체액)										③연간처분및손해액 (연간감가상각액)										④연말 잔액 (1991.12.31 현재)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원	천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원	천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원	천원	조	천만	백만	십만	억	천억	백억	십억	만원	천원
(1)토 지																																								
(2)건물및구축물																																								
(3)기계장치 및 기구·비품																																								
(4)차량및운반구																																								
(5)건설가계정																																								
(6)합 계 【(1)+...+(5)】																																								

(1) 유형고정자산의 종류

유형고정자산이란 구체적 형태를 가진 고정자산으로 토지·건물 및 구축물·기계장치 및 기구·차량 및 운반구 등을 말한다.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중 비업무용은 제외한다.

(가) 토지

사무소·차고·정비공장·사택·운동장 등의 토지를 말한다.

(나) 건물 및 구축물

1) 건물

토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과 그 일부인 영속성 부속설비를 말한다.

예) 사무소·영업소·기숙사·공장·창고·사택·기타 부속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승강기·냉방·조명·통풍설비 등의 부속설비

2) 구축물

토지에 정착된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예) 도로·다리·담장·수도·송유관 등

(다) 기계장치 및 기구와 공구·비품

1) 기계

동력을 받아서 외부의 대상물에 작업을 가하는 기계의 단위로 발전기 전동기·공작기계 등을 말한다.

2) 장치

대상물을 내부에 수용하여 이것을 변질, 변형시키기 위한 설치로서 연소·화학·냉동장치 등을 말한다.

3) 기구·공구 및 비품

내용년수가 1년이상으로서 5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공구·비품 및 집기 등을 말한다.

(라) 차량 및 운반구

1) 버스 및 택시 등의 차량과 추레라 등의 운반구를 말한다.

2) 영업용 이외의 차량 및 운반구도 포함됨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비직영차량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연초 잔액

'91. 1. 1일 현재의 감가상각 충당금 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3) 연간 증가액

(가) '91년 1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설치 및 증·개축을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구입의 경우는 운임·설치비를 포함한 구입가격으로 양수받는 것은 양수 당시의 싯가로, 자가(自家)건설의 경우에는 1년간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나) 연간 증가액에는 자산재평가에 의한 명목상 장부가격의 증감은 제외한다.

(다) 건설가계정으로부터 건물이나 기계장치계정으로 대체되어온 것도 취득으로 간주한다.

(4) 연간처분 및 손해액 (연간감가상각액 포함)

(가) '91.1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의 매각·양도한 금액과 재해 등으로 인한 실질적 감소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매각의 경우는 매각액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액을, 재해·도난 등으로 인하여 유형고정자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원인의 발생당시에 매각할 수 있었던 싯가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나) 반드시 '91년 당해년도의 감가상각액 또는 감가상각충당금만을 기입하여야 하며, 장부상의 감사상각액 누계액 또는 감가상각충당금누계액(累計額)을 기입해서는 안된다.

(5) 연말 잔액

(가) '91.12.31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한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장부가 없을 경우에는 싯가에 의한다.

(나) 연말잔액은 다음 산식에 적합해야 한다.

연말잔액 = 연초잔액 + 연간증가액 - 연간처분 및 손해액(연가감가상각액 포함)

적 요

적요란은 조사표상의 조사내용이 일반적인 조사원칙이나 사업체의 결산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 그 내용을 기입하여 차후 조사표내검 및 전년도와의 수준대비 등의 자료점검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조사자료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 그 요인을 기입한다.

(2) 적자일 경우 그 요인을 기입한다.

(3) 사업체 경영에 있어 전년도와 큰 변동사항(시설확장·종업원의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입한다.

(4) 기타 사업체의 특이한 사항을 기입한다. (겸업종 사업체의경우 비조사업종의 차량대수 등)

작성년월일 1992. . .	통계사무소
작성자소속(전화)	내검자 (인)
성 명 (인)	

(1) 작성년월일·작성자 소속·전화번호 및 이름을 정확하게 기입한다.

(2) 통계사무소명·내검자는 기입하지 않는다.

III. 조사표 내용검사 및 정리요령

1. 공통사항

가. 모든 기재사항이 운수업부문에 대해서만 기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나. 조사표상의 숫자기록이 정확한가를 검사한다.

다. 차량보유대수 및 가동대수가 영업용차량에 대해서만 기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라. 해당되지 않는 조사항목은 사선(＼)이 있는지 확인한다.

마. 모든 금액단위는 "천원"단위로 기입 되었는지 확인한다.

2. 항목별 검토요령

가. 사업체 개황

사업체명·대표자명·소재지·전화번호 등이 정확하게 기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나. 조직형태

(1) "○"표된 해당번호가 부호기입란의 조직형태란에 정확히 기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2) 조직형태가 법인인 경우『4.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야만 하고 『7의 (3)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란에는 『＼』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3) 조직형태가 ⑤개인인 경우는 『4. 자본금 또는 출자금』란에 『＼』이 『7의 (3)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란에는 반드시 기입되어야 한다 (단, 급여액은 제외)

다. 사업형태

반드시 주업종 1개에만 "○"표시되어야 한다.

라. 자본금 또는 출자금은 조직형태와 연관하여 검토한다.

마. 차량 보유현황

(1) 조사표상의 차량이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기관별차량 대수와 경과년수별 차량대수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3) 시내버스의 도시형과 좌석형의 합계와 택시의 중형과 소형의 합계가 각각의 당해 업종의 기관별 차량대수 합계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바. 연간 수송실적

(1) 단위가 천단위로 기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2) 수송 총인원

(가) 『수송총인원÷총운행횟수』가 1회 평균 수송인원이므로 업종별로 합리적인가를 검토한다.

(나) 특히 시내버스 운수업인 경우 운수수입과 연관 검토한다.

(3) 수송 총거리

(가) 『수송총거리÷총운행횟수』가 1회 평균 수송거리이므로 업종별로 합리적인가를 검토한다.

(나) 특히 택시운송업의 경우 운수수입과 연관 검토한다.

(4) 총운행횟수

보유차량에 의한 연간 총운행횟수 인바, 운수수입과 연관 검토한다.

사.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1) 종사자수

(가) 기타 종업원수가 차량관계 종업원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확인하여 그 사유를 적요란에 기입한다.

(나) 사업형태와 관련하여 직종별 종업원수를 검토한다.

(다) 보유차량 대수와 관련하여 운전기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라) 택시업종에 한해서 대기운전기사가 기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2) 연간급여액

(가) 연간급여액 총계가 『운수비용중 인건비』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나) 급여액은 종업원의 현실적인 급여수준에 미달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직종별로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을 산출하여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다)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에 있어서는 전체의 란을 가로·세로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아. 연간 운수수입 및 비용

(1) 운수수입

(가) 차량 1대당 월평균 수입을 산출하여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나) 시내버스 운송업의 경우는 수송총인원수와 운수수입의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2) 운수비용

(가) 기관별 차량대수와 연료비를 관련 검토한다. 즉 디젤엔진인 경우에 비용중 경유란에 기입되었는가 검토(휘발유엔진→휘발유, L.P.G 엔진→L.P.G)한다.

(나) 기관별(엔진별) 차량 1대당 월평균 연료비 산출하여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다) 기재 누락시킨 항목이 있는가를 검토한다.

(라) 소계·계·합계의 재검토 및 운수수입에서 운수비용의 합계를 차감하여 영업이익과의 일치여부를 검토한다.

(마) 영업비용중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지불된 인건비·복리후생비·임차료 및 조세 등은 잡비로 처리되었는가를 검토한다.

자. 유형고정자산

(1) 연말잔액이 다음 산식에 적합한가를 검토한다.

④연말잔액 = ①연초잔액 + ②연간증가액 - ③연간처분액 및 손해액(연간감가상각액 포함)

(2) 조사기간의 당해년도 감가상각액만을 기입하였는가를 검토한다.

(3) 각 항목별로 가로·세로의 합계가 맞는지를 검토한다.

(4) 겸업 사업체에 있어서는 유형고정자산의 분할이 타당성있게 분리되었는지 확인한다.

3. 주요 착오사례

가. 사업형태

겸업인 경우 사업형태란에 두곳을 ○표한 사례가있는바, 수입액을 기준으로 주 산업 한곳에만 ○표하고 업종별 차량대수를 반드시 적요란에 기입 한다.

나. 차량 보유현황

(1) 비영업용 차량을 조사한 사례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차량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차량대수보다 운전기사가 적은 사례

(3) 기준시점 착오

차량대수를 조사시점('91.4월)을 기준으로 조사한 사례가 있는바, 반드시 확인을 요한다.

(4) 기관별 차량대수와 형별차량대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

다. 연간수송실적

(1) 수송실적을 기입하지 않는 사업체가 있는데 누락시키지말고 반드시 기입토록 한다.

(2) 수송총인원·수송총거리·총운행횟수간에 불합리하게 조사된 사례

라.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1) 연간급여액의 합계가 『운수비용』중 『② 인건비』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

마. 연간 운수수입 및 비용

(1) 운수수입에서 운수비용의 합계를 뺀것이 영업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

(2) 부가가치항목 (인건비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 복리후생비 + 감가상각비 + 임차료 + 세금·공과금 + 대손상각 + 납부부가가치세)의 합계가 운수수입보다 큰 사례

(4) 운수수입 및 비용에 타산업 부문이 포함된 사례

바. 유형고정자산

(1) 조사년도의 1년간 감가상각액을 기입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을 기입한 사례

(2) 연말잔액 = 연초잔액 + 연간증가액 - 연간처분액 및 손해액 (연간감가상각액 포함)의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사례

Ⅳ. 지역소득추계 조사표 기입요령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지역별 주민소득 추계계획의 일환으로 운수업부문의 총생산액 및 부가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지역별 운수수입·피용자보수·간접세·감가상각비 및 영업이익을 파악코자 함

나. 조사대상

시외버스(고속버스)·전세버스

다. 조사항목

각 사업체의 지역별 운수수입·피용자보수 및 감가상각비

라. 조사방법

운수업통계조사와 병행조사 실시

2. 조사표 기입요령

가. 유의사항

(1) 조사표상의 운수수입·피용자보수(인건비·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및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및 감가상각비의 지역별 합계금액은 운수업 통계 조사표상)의 해당항목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 조사표상의 모든 조사항목은 해당 지역별로 기입한다.

(3) 각 사업체의 운수업 부문의 영업소·수리공장·지사·사무소·출장소 등에서 발생된 것은 해당 지역에 포함시켜 작성한다.

(4) 해외부분은 2개이상의 국가에 취항하여 얻은 운수수입중 국내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국내지역 구분이 곤란한 경우 본란에 기입한다.

나. 난외사항

사업체고유번호·사업체명 및 소재지는 운수업 통계조사표와 동일하게 기입한다.

다. 항목별 기입요령

업종의 특성상 2개이상의 지역(시·도)이 서로 연계되어 있거나 회계계정이 본사계정으로 일괄 처리되어 지역별 금액자료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는 다음의 산식을 이용하여 지역별로 배분 기입한다.

(1) 운수수입 : 운수업통계조사표 상의 영업수입(운수수입)을 지역별로 기입한다.

(산 식)

$$\text{지역별 운수수입} = \text{총 운수수입} \times \frac{\text{지역내 승객인원(지역내 화물톤수)}}{\text{총 승객인원(총 화물톤수)}}$$

(2) 피용자보수 : 운수업통계 본조사표상의 인건비·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및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을 지역별로 기입한다.

(산 식)

$$\text{지역별 피용자보수} = \text{총 피용자보수} \times \frac{\text{지역내 종업원수(지역내 급여액)}}{\text{총 종업원수(총 급여액)}}$$

(3) 감가상각비 : 운수업통계 조사표상의 『운수비용』 중 『⑤감가상각비』를 지역별로 기입한다.

(산 식)

$$\text{지역별 감가상각비} = \text{총 감가상각비} \times \frac{\text{지역내 유형고정자산}}{\text{총 유형고정자산}}$$

3. 조사표 제출 요령

지역소득추계 조사표는 운수업통계조사표 뒷장에 철하여 당해 시·도 조합에 제출한다.

<부 록> 한국표준산업분류

(1991.9.9 제6차 개정)

대분류 I. 운수, 창고 및 통신업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S)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각종 운수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활동과 창고 및 및 기타 운수관련 서비스 및 통신활동이 포함된다.

●운수업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철도, 도로, 수상 및 항공운수 시설에 의하여 일정노선 유무를 불문하고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과 터미널시설 제공, 화물운송 대리, 여행알선, 화물창고운영 등의 운수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통신업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 및 우편화물의 접수, 운반, 배달하는 우편사업과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 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이 분류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특정산업활동에 결합된 운송활동은 그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되나, 동일기업체를 위한 장거리운송, 하역, 육상운수, 파이프라인 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운수업에 분류된다.

나.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국 또는 스튜디오 (9213)

다.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을 제외한 운수장비의 수리 및 개조활동 (35)

라. 도로, 철도, 항구, 비행장등의 건설, 유지수선활동 (4522)

마.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의 유지, 수리활동은 (5020) 또는 (5040) 에 각각 분류

바. 운전자 또는 조작자없이 운수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운수장비의 종류 종류에 따라 (711) 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LAND TRANSPORT ; TRANSPORT VIA PIPELINES)

601 도시간 철도운송업(Transport via railways)

6010 도시간 철도운송업(Transport via railways)

60100 도시간 철도운송업(Transport via railways)

도시간 또는 교외간 철도차량에 의해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철도차량 견인 및 전철활동 등 관련활동이 포함된다.

<포 함>

. 도시간 철도운송

. 여객철도우송 : 도시간

· 화물철도우송 : 도시간

· 냉동 또는 냉장품 화물 철도운송

· 액체 또는 가스화물 철도운송

· 콘테이너 화물 철도운송

· 철도화물운송

<제 외>

· 독립적인 침대차운영 (5510)

· 호텔운영 (5510)

· 독립적인 식당차운영 (5521)

· 도시내 철도운송 (6021)

· 수상운송 (61)

· 철도운수 관련서비스 (630)

· 철도차량의 유지 및 단순한 보수 (6303)

· 통신서비스 (6420)

602 기타 육상운송업(Other land transport)

이 분류에는 도로운송시설, 구역전철, 케이블카등을 포함한 각종 육상운송시설 (도시간 철도 제외)에 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도로 차량의 유지, 보수 (50)

· 육상운송 보조활동 (6301)

6021 정기노선여객 육상운송업(Other scheduled passenger land transport)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도시내 및 도시간 육상운송시설 (도시간 철도운송업 제외)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운송활동은 여객버스, 삭도차량, 무궤도전차, 도시내 철도 등에 의하여 수행된다.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버스, 공항버스,노선관광버스, 케이블카 등에 의한 운송활동이 포함된다.

60211 구역내 철도운송업 (Urban railway transport)

철도차량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내 또는 도시구역내에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지역내 철도운송
- 시내 철도운송
- 지하철 운송 : 도시내
- 전기철도 운송 : 도시내

60212 시외버스 운송업(Inter-urban highway bus passenger transport)

시내버스를 제외하고 도시간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로 버스를 운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시외 정기노선 운송, 여객
- 도시간 정기 여객 운송
- 시외버스 운송
- 정기노선 여객버스 운송
- 직통 여객버스 운송
- 도시간 노선버스 운송
- 도시간 고속버스 운송
- 정기 고속노선 도로 운송
- 고속버스 운행

60213 시내버스 운송업(Urban bus passenger transport)

일정한 도시 또는 읍면의 한정 구역내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로 버스를 운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항버스 및 특정구역 정기순환 미

니버스와 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정구간을 정기적으로 순환하는 운송시설 운영활동이 포함된다.

<포 함>

- 시내 및 교외 정기노선 운송
- 구역내 노선 여객버스운송
- 노선 여객버스운송 : 도시내, 구역내
- 시내 노선버스운송
- 정기순회 미니버스 운영
- 공항버스 운영

60219 달리분류되지않은 노선여객 육상운송업(Other scheduled passenger land transport,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노선여객 육상운송업으로, 무궤도 고가차량, 케이블카, 삭도차량등의 교통수단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내 여객운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무궤도 고가차량 여객운송 : 정기노선
- 케이블카 여객운송 : 정기노선
- 삭도차량 여객운송 : 정기노선
- 관공구역내 정기순환 여객운송
- 학교버스 운영, 대리

<제 외>

· 관광지 또는 유흥목적으로 운행되는 삭도시설 운영 (92499)

6022 비노선여객 육상운송업(Other non-scheduled passenger land transport)

일정한 운행노선을 정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택시, 운전자가 딸린 차량 임대, 전세버스, 유람용 및 기타 수시운행 차량, 인력견인 또는 동물견인차량 등에 의하여 수시로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엠블런스의 운영 (8519)

60221 택시 운송업(Taxicab transport)

소형 또는 중형 승용차에 의하여 통상 주행거리 또는 주행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승용차 임대 (운전자 딸린)

· 택시 운송 : 비노선

· 소형 또는 중형 승용차 운송 : 비노선

60222 전세버스 운송업(Charterbus transport)

일정한 노선없이 수시 계약에 의하여, 버스를 운행하며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버스 임대 (운전자 딸린)

· 비노선버스 운영 : 여객

· 전세버스 운영

60229 달리분류되지않은 비노선여객 육상운송업(Other non-scheduled passenger land transport,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비노선여객 육상운송업으로, 일정한 노선없이 동물견인차량, 인력견인차량 등에 의한 여객운송 산업을 말한다.

<포 함>

· 인력견인차량 운영 : 여객운송

· 동물견인차량 운영 : 여객운송

· 비동력차량 운영 : 여객운송

6023 도로화물 운송업(Freight transport by road)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도로화물차량에 의하여, 각종화물을 운송하는 활동으로서 원목,가축, 냉동화물,중기, 벌크화물,가구 등 다양한 화물운송활동이 포함되며, 인력견인 또는 동물견인차량에 의한 화물운송과 운전자가 딸린 화물차량의 임대활동이 포함된다.

<제 외>

· 화물 터미널 운영 (6303)

· 운송용 화물 포장 및 검사 (6309)

· 우편물 도로운송 (641)

60231 정기노선 도로화물 운송업(Freight transport regularly scheduled)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각종 도로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0232 특수화물 자동차 운송업(Special freight transport non-regularly scheduled)

일정한 노선을 정하지않고 부정기적으로 특정화물 운송에 적합한 특수장치를 설비한 냉동차량, 콘테이너차량,탱크차량,크레인 및 기타 특수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구역간 또는 구역내 각종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차량구난 및 견인차량의 운영도 여기 포함된다.

<포 함>

- 특수화물 운송업
- 냉장, 냉동화물 운송
- 콘테이너화물 운송
- 탱크로리 운송
- 벌크화물 운송
- 덤프트럭화물 운송
- 원목 운송
- 차량, 중기화물 운송
- 액체화물 운송
- 호크레인 화물 운송
- 액체 및 가스 도로 운송
- 현금 및 귀금속 도로 운송
- 자동차 견인 운송

<제 외>

· 벌목장내의 원목운반 (02020)

· 정기노선 도로화물 운송(60231)

60233 일반 전국화물 자동차 운송업(General whole country freight transport)

정기노선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운행구간으로 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0234 일반구역 화물 자동차 운송업(General local freight transport)

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정기노선을 정하지 않고, 적재 정량이 1 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일반구역화물 운송

· 비노선 일반구역화물 운송

<제 외>

· 특수화물 부정기운송, 구역내 또는 구역간 (60232)

60235 일반구역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업(General local cargo pick-up and delivery transport)

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노선을 정하지 않고, 적재 정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용달화물 운송, 구역

60236 장의차량 운영업(Hearse operation)

시체를 운구할 수 있는 특수한 설비를 갖춘 장의차량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장의차량 운영

<제외 >

· 묘지개발 및 분양 (70123)

· 장의사가 운영하는 장의차량 (93031)

· 상여 등으로 시체만 운구하는 활동 (93031)

60239 달리분류되지않은 도로화물 운송업(Freight transport by road,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도로화물 운송업으로 동물견인차량, 인력견인차량 등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동물견인차량 운영 : 화물

· 인력견인차량 운영 : 화물

· 비동력 차량 운송 : 화물

<제 외>

· 포터 및 지게 등 인력에 의한 수화물 운반 (93099)

603 파이프라인 운송업(Transport via pipelines)

6030 파이프라인 운송업(Transport via pipelines)

60300 파이프라인 운송업(Transport via pipelines)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가스, 액체 및 기타 상품을 파이프라인에 하여 운송하는 산업활동으로서,이들 상품용 펌프장 운영과 파이프라인 유지관리활동도 포함한다.

<포 함>

- 파이프라인 운송업
- 가스운송 : 파이프라인
- 액체운송 : 파이프라인
- 파이프라인 유지관리
- 펌프장 운영, 파이프라인 운송상품용
- 파이프라인 연료운송
- 파이프라인 상품운송

<제 외>

- 가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자영 공급 : 배관 (40201)
- 증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자영 공급 : 배관 (40300)
- 수도 자영 공급 : 배관 (41000)
- 특정산업에 관련된 배관시설 운영은 그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61 수상운송업(WATER TRANSPORT)

노선 또는 정기여부를 불문하고 여객 또는 화물을 수상운송설비에 의하여 운송하는 활동으로서 견인보트, 관광 또는 순항보트, 유람선 또는 광선, 수상택시 등의 운영활동이 포함된다.

<제 외>

- 선상에서 독립적으로 음식점 및 주점 운영활동은 (552)에 분류되나, 운송활동에 결합, 운영되는 경우는 운송업 분류
- 화물의 적재 및 하역, 보관, 부두운영과 도킹, 수로안내 (도선), 선박구난활동 및 구난선 운영 등의 기타 수상운송 보조활동은 (6304)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된다.

611 해상운송업(Sea and coastal water transport)

6110 해상운송업(Sea and coastal water transport)

연근해 및 원양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대 호수내의 수상운송도 포함된다.

<제 외>

- 항만내의 수상운송 (612)

61101 내항여객 운송업(Coastal water passenger transport)

국내항 간에 선박을 취항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여객수상 운송 : 국내항간

· 수상여객 운송 : 국내항간

· 내항여객선(박) 임대 (승무원 딸린)

<제 외>

· 내항 화물선(박) 임대 (승무원 딸린) (61102)

· 연안 순항 여객선 운영 (항간이동 제외) (61109)

61102 내항화물 운송업(Coastal water freight transport)

국내항 간에 선박을 취항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수상운송 : 국내화물

· 내항화물운송

· 화물수상운송 (국내항)

· 내항화물 선박 임대 (승무원 딸린)

61103 외항여객 운송업(Deep sea foreign passenger transport)

외국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외항여객 운송업

· 여객수상 운송 : 외국항로

· 외항 선박 여객 운송업

· 외항여객 선박 임대 (승무원 딸린)

61104 외항화물 운송업(Deep sea foreign freight transport)

외국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외국화물 운송

· 화물 수상 운송 : 외국항로

· 외항 냉장 및 냉동품 운송업

· 외항 액체 및 가스선박 운송업

· 외항 콘테이너 선박 운송업

· 외항 선박 화물운송업

· 외항 화물선박 임대 (승무원 딸린)

61109 달리분류되지않은 해상 운송업(Sea and coastal water transport,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해상 운송업으로, 해상 유람선 임대 (조종사 딸린), 예인선 운영 등이 포함된다

<포 함>

· 예인선 운영 : 공해, 근해상

· 유선업 운영 : 연안 (항간이동 제외)

· 유람선 임대 (조종사 딸린), 해상

<제 외>

· 항만내 수로여객 운송 (61201)

· 내륙수로상의 예인선 운영 (61209)

· 항구내의 거룻배 운영 (61209)

· 조난선의 구조예인선 (63044)

612 내륙수상 운송업(Inland water transport)

6120 내륙수상 운송업(Inland water transport)

강, 운하, 항만내 수로에서 보트, 거룻배, 예인선, 바지선, 관광선, 수상택시 등의 각종 선박에 의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 여객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1201 내륙수상 여객운송업(Inland water passenger transport)

강, 운하, 항만내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 항간 이동 여객운송을 위한 각종 선박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내륙수상 여객운송

· 여객운송, 강, 운하, 항만내

· 내륙선박 여객운송업

· 관광선 운영, 내륙 항간이동

· 내륙여객선 임대 (승무원 딸린)

61202 내륙수상 화물운송업(Inland water freight transport)

강, 운하, 항만내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 화물운송을 위한 각종 선박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내륙수상 화물운송
- 수상화물운송, 강, 운하, 항만
- 내륙화물선박 임대업 (승무원 딸린)
- 내륙수상 냉장 및 냉동품 운송업
- 내륙수상 액체 및 가스 운송업

61209 달리분류되지않은 내륙수상 운송업(Inland water transport,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내륙수상 운송업으로 내륙수로 유람선 임대 (조종사 린), 예인선운영 및 유선업 등이 포함된다.

<포 함>

- 예인선 운영, 내륙수상
- 유선업 운영, 내륙수상
- 내륙선박 견인 및 예인 서비스업
- 수상택시 운영
- 유람선, 내륙수상
- 유람선 임대 (승무원 딸린), 내륙수상

<제 외>

- 하역업체가 거룻배를 운영할 경우 (63012)

62 항공 운송업(AIR TRANSPORT)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항공기 또는 항공기 엔진의 분해·수리활동 (3530)
- 우편물 항공 운송활동 (641)

621 정기 항공 운송업(Scheduled air transport)

6210 정기 항공 운송업(Scheduled air transport)

62100 정기 항공 운송업(Scheduled air transport)

일정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면서 국내·외 항공여객,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정기 항공 운송
- 항공여객 운송
- 항공 화물 운송
- 항공 화물 운송,정기

622 부정기 항공기 운행사업(Non-scheduled air transport and airplane-rental with operator)

6220 부정기 항공기 운행사업(Non-scheduled air transport and airplane-rental with operator)

부정기적으로 항공 여객 또는 화물운송 사업과 조종사가 딸린 항공기를 운송 이외의 목적에 주로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2201 부정기 항공 운송업(Non-scheduled air transport)

부정기적으로 항공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항공여

객 또는 화물운송을 위한 항공기 임대 (조종사 딸린)와 우주선에 의한 운송활동도 여기에 분류된다.

<포 함>

- 부정기 항공 운송
- 항공화물 운송 : 부정기
- 항공여객 운송 : 부정기
- 우주선 운행
- 운송 항공기 임대 : 조종사 딸린

62202 항공기 임대사업(조종사 딸린) (Air plane rental with operator)

조종사가 딸린 항공기운송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대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항공 광고대행용 항공기 임대 (조종사 딸린)
- 항공 약품살포용 항공기 임대 (조종사 딸린)
- 항공측량용 항공기 임대 (조종사 딸린)
- 조종사훈련용 항공기 임대 (조종사 딸린)
- 항공 방제용 항공기 임대 (조종사 딸린)
- 항공 촬영용 항공기 임대 (조종사 딸린)
- 보도비행용 임대
- 시설물 순시 비행용 임대

<제 외>

- 항공기를 이용하여 직접 특정용역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용역사업 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SUPPORTING AND AUXILIARY TRANSPORT ACTIVITIES : ACTIVITIES OF TRAVEL AGENCIES)

각종 화물취급,보관 및 창고시설 운영,운수사업 유지 서비스,여행알선 및 대리 서비스,운수관련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운전사 알선 및 대리 (7491)
- 승용차 임대, 운전사 없이 (7111)

630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Supporting and auxiliary transport activities ; activities of travel agencies)

6301 화물 취급업(Cargo handling)

운송수단을 불문하고, 화물 또는 여행자 수화물을 운송장비에 적재 또는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3011 항공 및 육상화물 취급업(Air freight and land freight handling)

철도, 도로 등 각종 육상 운송장비에 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항공화물 취급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 화물 취급업, 육상
- 화물 하역업, 육상 (도로, 철도)
- 화물 취급업, 항공
- 하역업, 육상화물
- 하역업, 항공화물

63012 수상화물 취급업(Water freight handling)

항구내에서 선박과 부두, 선박과 선박간에 직접 화물을 운반하여 이를 선적 또는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화물 취급업, 수상
- 하역업, 수상화물

6302 보관 및 창고업(Storage and warehousing)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가구,자동차,목재, 가스 및 유류, 화학물, 석유,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관세부과 지역에 설치되는 무역상품 보관시설 운영활동이 포함되며, 이러한 보세 창고는 보세물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세분항목에 분류한다.

<제 외>

- 벌크상태의 천연 또는 제조가스 저장 시설 운영 (4020)
- 주차시설의 운영 (6303)
- 은행의 안전예금금고 서비스 (6719)
- 영화필름 및 영화용 비데오테이프 보관 (9211)
- 세탁소에서의 의복보관 (9301)
- 수화물 임시보관소 (9309)

63021 보통창고업(General warehousing)

물자의 보관을 위하여 특수한 시설이 없이 보통 상온에서 저장이 가능한 물자를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보관 창고 운영
- 일반물품 보관 창고 운영

63022 냉장 창고업(Refrigerated warehousing)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포 함 〉

- 냉장창고 운영
- 얼음보관소 운영
- 냉장 및 냉동품 창고 운영
- 냉동식품 보관
- 냉동물품 보관

〈 제 외 〉

- 냉장 또는 냉동물의 보관 목적이 아니고, 수수료에 의하여 위탁된 물품의 냉동처리 활동을 주로할 경우(15489)

63023 위험물품 보관업 (Dangerous goods warehousing)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 등 안전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물품을 저장탱크 또는 야적장에서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가스성 화물 보관소
- 화학물 창고 운영
- 가스포장 화물 창고 운영
- 액체 인화물 보관소
- 위험물 창고 운영
- 가스포장 화물 창고 운영

63024 농산물 창고업(Farm product warehousing)

곡물 및 기타 농산물을 주로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식품의 벌크상 또는 포장여부를 불문한다.

<포 함>

- 곡물 창고 운영
- 농산물 보관 운영

63029 달리분류되지않은 보관 및 창고업(Storage and warehousing,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보관 및 창고업으로 차량 장기보관소 운영,목재하치장(수면목재창고 포함),각종 물품의 야적장 운영활동 등이 포함된다. 다만 비축시설 운영업은 비축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적합한 항목에 분류 된다.

<포 함>

- 목재 하치장 운영
- 수면 목재 창고 운영

· 일반 물품 보관 야적장 운영

· 주류 보관 창고 운영

· 차량 보관소 운영

<제 외>

· 위험물 보관시설 운영 (63023)

6303 육상운수 유지 서비스업(Other supporting transport activities)

63031 철도 운수유지 서비스업(Supporting, railway transport activities)

도시내 또는 도시간 철도운송에 관련된 여객 또는 화물터미널 시설운영 및 기타 철도 운수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철도차량 정류장 운영

· 철도여객 터미널 운영

· 철도화물 터미널 운영

· 철도차량 주차장 운영

· 철도운수 유지 서비스

63032 여객 자동차 터미널시설 운영업(Operation of passenger terminal facilities)

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 운영
- 자동차 정류장 운영 : 여객
- 버스 정류장 운영 : 여객

<제 외>

- 주차장 운영 (63035)
- 매표소(승강장) 운영 (63069)

63033 화물자동차 터미널시설 운영업(Operation of freight terminal facilities)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자동차 정류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화물 자동차 터미널시설 운영
- 자동차 정류장 운영 : 화물

63034 유료도로 운영업(Operation of tall road)

유료도로, 터널, 교량 등의 설비를 수수료를 받고 관리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고가로 운영, 유료
- 교량 운영, 유료
- 터미널 운영, 유료

63035 주차장 운영업(Operation of vehicle parking facilities)

유개 또는 무개를 불문하고,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시간 주차시키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주차장 운영

<제 외>

· 차량 장기보관소 운영 (63029)

63039 달리분류되지않은 도로운수 유지 서비스업 (Supporting land transport activities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도로운수 유지 서비스업으로서, 기타 도로 운수유지, 보조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포 함>

· 도로 운수유지 서비스, 기타

<제 외>

· 자동차 세차업 (50203)

· 도로 차량점검 유지 서비스 (5020)

6304 수상운수 유지 서비스업(Supporting water transport activities)

6304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업 (Operation of harbour and water terminal facilities)

항구, 선창, 도크, 잔교 및 기타 해상 터미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항만시설 운영

·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

63042 수로 안내(도선)업(Pilotage)

항구내 또는 항구외로 선박을 인도하거나 항해 위험지구에서 수로안내 활동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수로 안내 및 정박서비스

63043 선박 청소업(Shipboard cleaning)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선박갑판 및 탱크 등의 청소, 살균, 훈증 소독, 해충구제 및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선박청소 서비스

· 선박소독 및 해충구제 서비스

63044 선박 구난업(Vessel salvage)

원양 및 근해 또는 내륙수로에서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63049 달리분류되지 않은 수상운수 및 관련유지 서비스업(Supporting water transport activities n.e.c.)

달리분류되지 않은 수상운수 및 관련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등대운영
- 운하운영
- 항해조력 서비스
- 수로, 갑문 운영
- 항해 보조 서비스

<제 외>

- 해상터미널시설 운영 (63041)

6305 항공운수유지 서비스업(Supporting air transport activities)

63051 항공터미널 시설(Operation of air terminal facilities)

항공여객 또는 화물의 승강, 적하를 위하여 항공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공항운영 서비스업
- 항공터미널 시설 운영

63052 항공기 지상 관리 서비스업(Ground management of airplane)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지상에서 항공기 예인, 격납고 서비스,

청소 및 관리서비스, 급유점검 및 경상유지 수리 등의 착륙한 기체관리에 관련된 지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항공화물 하역 및 적재활동 (63011)

63059 달리분류되지 않은 항공운수 유지서비스업(Supporting air transport activities, n.e.c.)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항공운수 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공항설비 운영 서비스 : 항공터미널 제외
- 기권운수 보조 서비스
- 공항지상 서비스
- 비행 관제탑 운영 서비스
- 비행관제 서비스
- 항공교통통제 서비스

<제 외>

· 무선표지 및 레이더 통신소 (6420)

6306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 (Activities of travel agencies and tour operators ; tourist assistance activities)

여행자 및 관광객을 위하여 여행정보, 조언 및 여행일정 계획 등 여행 관련 서비스제공, 숙식 및 운송을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행자 안내활동과 매표 대리활동도 포함된다.

<포 함>

· 여행대리
· 여행사 운영
· 여행안내
· 숙식알선
· 매표대리
· 여행알선 및 여행사 운영
· 관광안내 서비스

63061 여행사업(Activities of travel agencies)

국내외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관련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포 함>

· 여행 대리업
· 여행사 운영업

- 여행 알선업
- 국내 여행사 운영
- 국외 여행사 운영
- 일반 여행사 운영
- 관광 알선업
- 관광 대리업

63069 달리분류되지않은 여행알선업(Activities of travel agencies,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여행알선업으로서, 여행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여행자 안내활동, 매표대리활동, 음식안내활동 등 특정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관광 안내소
- 매표대리
- 여행자 안내 서비스
- 카풀체계 운영
- 숙식 알선

6309 기타 운수관련 대리 서비스업(Other service allied to transport agency)

화물운송대리 및 중개, 통관업무대리, 선박 및 항공기 중개, 화물포장 및 검수 등 화물운송에 관련된 대리 또는 중개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3091 화물운송 대행업(Freight forwarding)

직접 화물운수 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각종 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화물운송 대리

63092 화물중개 및 대리업 (Freight brokerage and agency)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운송에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통관 및 관세 중개 서비스, 화물증서 결산 및 화물요금 공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통관 서비스
- 관세 중개
- 화물요금 결산대리
- 화물대리
- 화물중개
- 화물수송 알선
- 통관기록 작성
- 화물증서 작성 및 결산
- 화물운임 정보 서비스

<제 외>

· 화물운송 대행 (63091)

63093 선박 및 항공기 중개업 (Ship and aircraft brokerage and similar services)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항공기의 임대 및 판매에 관련하여 이를 중개 또는 알선해 주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선박 임대 중개

· 선박매매 알선

· 항공기 임대 중개

· 항공기 매매 알선

<제 외>

· 선박임대, 조종사 딸린 (61)

· 항공기 임대, 조종사 딸린 (62)

63094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 (Freight packing, crating, inspection and similar services)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운수화물 포장, 검수, 형량 및 유사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화물 포장, 운수관련

· 화물 검수, 운수관련

· 화물 형량 및 유사 서비스, 운수관련

<제 외>

· 제품 포장 (74950)

· 계량 서비스 (74994)

630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운수관련 대리업(Other service allied to transport agency,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운수부대 서비스업으로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가축운송에 따른 임시가축 사육장 운영, 가축형량, 가축 하역 등 관련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동물운송 관리 서비스

· 가축 형량 및 하역 서비스

· 가축운송 관련 서비스

지 정 통 계
승인번호 : 111-11-16

1991년 기준

운수업통계조사표 (버스 및 택시운송업)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 사업체고유번호	※ 산업분류번호	※ 구 분	※ 행정구역번호	※ 조직형태번호
—				

◎문의전화 : 통계청 통계조사국 산업1과(723~0787)

1. 사업체 개황

(1) 사업체명 (2) 창설년월 년 월

(3) 대표자명 (4) 전화번호

(5) 소 재 지 시도 구시군 구·동로·면 가동리 번지 호

2. 조직형태(해당란에 ○표)

① 국가기관 ② 공 사 ③ 회사법인
④ 기타법인 ⑤ 개 인

3. 사업형태(해당란에 ○표)

① 시외버스 ② 시내버스 ③ 전세버스 ④ 택시

4. 자본금 또는 출자금(운수업부문만 기입)

1991.12.31 현재 납입 완료된 금액
(개인사업체는 해당되지 않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5. 차량 보유현황

- 영업용 이외의 차량은 제외
- 경과년수 : 차량 등록일로부터 1991.12.31까지 경과된 년수
- 형별택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요금체계(중형 : 기본요금 800원, 소형 : 기본요금 750원)에 의해 구분하고 그외 시도는 배기량(중형 : 1500cc이상, 소형 : 1500cc미만)을 기준함
- 총가동대수 : 전보유 차량 중에서 운행한 차량의 연간 총가동대수
- 총운행일수 : 개인택시의 연간 총 영업일수

(1) 기관별차량(대수)

경과년수 / 기관별	합계 (①+②+③+④+⑤)	① 1년미만	②1~3년미만	③3~5년미만	④5~8년미만	⑤ 8년이상
(1)디 젤 엔 진						
(2)휘발유엔진						
(3)LPG 엔 진						
(4)합 계 [(1)+(2)+(3)]						

(2) 형별 시내버스 및 택시차량(대수)

시내버스			택시		
합계(①+②)	①도시형	②좌석형	합계(①+②)	①중 형	②소 형

(3) 총가동대수

십만	만	천	백	십	일(대)

(4) 총운행일수

백	십	일

6. 연간 수송실적

- 수송총인원 : 연간 수송한 총인원
- 수송총거리 : 연간 수송한 총거리
- 총운행횟수 : 연간 총운행한 횟수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1)수송총인원(명)								
(2)수송총거리(km)								
(3)총운행횟수(회)								

7.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 종사자수는 1991.12.31. 현재로 기입하며 병가자, 단기휴가자 및 파업중인자도 포함한다. 단, 3개월 이상 장기 결근자 및 군복무자와 급여를 단일 운수사업체로부터 고정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종업원은 제외된다. 즉, 정류장(지방 정류소 포함) 등에서 운수사업체의 승차권을 판매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매표원 검표원 등은 제외된다.
- 정비 및 수리공 : 차량의 정비 및 수리를 주된 임무로 당해 사업체의 수리공장에서 차량의 정비 및 수리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사업주 혹은 그의 가족(동거자 포함)으로서 관련되는 제반업무에 주당 정상작업시간의 1/3이상을 종사하였으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 급여액 : 종업원에게 노무의 댓가로 연간 지급된 급여의 총액으로서 봉급, 상여금, 각종수당, 생계보조금 등을 말하며 이의 미불금도 포함한다.
- 종업원의 급여액 합계는 조사항목 「8」의 운수비용중 「② 인건비」와 일치되어야 한다.

		① 종사자수(1991.12.31. 현재 : 명)			② 급 여 액(연간총액)									
		계	남	여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차량관계종업원	① 운전기사 고정운전기사													
	① 운전기사 대기(스페어)													
	① 운전기사 계													
	② 안내원 및 조수													
	③ 경비 및 수리공 (정비관리자 등)													
	④ 기타 (안전관리자, 세차원등)													
	계(①+②+③+④)													
(2) 기타종업원 (임원, 사무직 및 기타)														
(3) 사업주및무급가족종사자 (개인업체에서만 기입)														
합 계 [(1)+(2)+(3)]														

8. 연간 운수수입 및 비용

- 운수수입 : 사업체의 운수활동으로 얻어진 모든 영업수입을 말한다.(영업외 수입 제외)
- 운수비용 : 사업체의 운수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된 모든 영업비용을 말하며,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운송원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영업외 비용 제외)
- 영업이익 :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운수수입에서 운수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운수수입			조사기간중 얻어진 사업체의 모든 영업수입										
(2) 운수비용	① 재료비	연료비	경유	영업용차량용 경유사용량의 구입비용									
			휘발유	영업용차량용 휘발유사용량의 구입비용									
			LPG	영업용차량용 LPG 사용량의 구입비용									
			기타	영업용차량용 기타연료 사용량의 구입비용 윤활유(엔진오일, C오일, 구리스, 핸들오일, 브레키오일)									
			계	경유+휘발유+LPG+기타									
		기타재료비		외부로부터 매입된 부분품으로서 그대로 차량에 부착시켜 그 구성성분이 되는 부속품비(타이어, 튜브, 튜브티 등)									
		소계		연료비+기타재료비									
	② 인건비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 임금, 제수당 및 잡급등의 비용(7항 급여액과 일치)									
	③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당년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본 계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지급된 퇴직금									
	④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된 법정복리비, 장학금, 의료보험, 피복비, 보건비, 무료급식 등									
	⑤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⑥ 지급임차료			건물, 차량 및 운반구									
				토지임차료									
	⑦ 보험료			자동차, 건물, 산업재해 등에 대한 보험료									
	⑧ 세금·공과금			자동차·재산·취득·등록세(법인세·소득세 제외), 협회비, 적십자비 등									
	⑨ 수선비			건물, 수송장비 등 유형고정자산의 수선, 수리를 외부에 의뢰한 경우에 지출한 경비									
	⑩ 사용료			차량검사료 등									
	⑪ 대손상각			받을어음 그밖의 이에 준하는 채권중 회수할 수 없는 금액(경상적인 대손상각비만 기입)									
	⑫ 잡비			수도광열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소모품비, 비영업용차량유지비 및 사고비, 통신비, 여비 등									
	합계			①+②+ ····· +⑪+⑫									
(3) 영업이익				(1)운수수입-(2)운수비용									
(4) 납부부가가치세				매출부가가치세-매입부가가치세									

9. 임대수입

영업외수입중 차량, 토지, 건물 등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임대수입금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토지							
(2) 건물및구축물							
(3) 기계장치및기구·비품							
(4) 차량및운반구							
합계							

10. 유형고정자산

- 장부가액을 기입하며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싯가에 의하여 기입한다.
- 임차사용분은 제외하고 임대하여준 것은 포함한다.
- 연초잔액은 91.1.1 현재 감가상각 충당금 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연간증가액은 신규취득 및 중고 취득하였거나 이를 설치 및 증·개축액을 말하며 건설가계정으로부터 건물이나 기계장치 계정으로 대체되어온 것도 취득으로 간주한다.
- 연간처분 및 손해액(연간감가상각액 포함)은 91년 1년간에 매각·양도·재해·도난 등으로 인한 유형고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감소액을 말하며, 건설가계정에서 건설완료로 건물이나 기계장치등으로 대체한 것은 건설가계정 감소액에 기입한다.
- 연말잔액은 91.12.31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한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 연말잔액=연초잔액+연간증가액-연간처분 및 손해액(연간감가상각액 포함)

	①연초잔액 (1991.1.1 현재)								②연간증가액 (취득·대체액)								③연간처분및손해액 (연간감가상각액 포함)								④연말잔액 (1991.12.31 현재)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토지																														
(2) 건물및구축물																														
(3) 기계장치및기구·비품																														
(4) 차량및운반구																														
(5) 건설가계정																														
합계 [(1)+(2)+(3)+(4)+(5)]																														

적요

작성년월일 1992. . .

작성자소속 전화번호 :

성명 ㊞

조사담당자 ㊞

내검자 ㊞

조사과장 ㊞

70-46

1991년 기준

운수업통계조사 지침서

(1992. 4. 실시)

통 계 청

목 차

1. 조사개요 5

가. 조사목적 5
나. 조사연혁 5
다. 법적근거 5
라. 조사기준시점 및 기간 6
마. 조사표(집계표) 제출기간 6
바. 조사범위 및 대상 6
사. 조사단위 7
아. 조사표의 종류 8
자. 조사항목 8
차. 조사방법 8
카. 결과공표 9
타. 조사단계(흐름) 9

2. 조사담당자의 임무

가. 사전조사 10
나. 실 사 13
다. 유고사업체 처리 16

3. 조사표 기입요령 18

가. 일반적 유의사항 18

나. 항목별 기입요령 19

(1) 도로화물조사표 19

(2) 철도·지하철 조사표 42

(3) 유료도로 운영업 조사표 42

(4) 버스 및 택시 운송업 조사표 42

(5) 수상운송업 조사표 42

(6) 운수관련 서비스업 조사표 47

(7) 항공운송업 조사표 49

4. 주요 착오 사례 50

가. 사업 형태 50

나. 차량보유현황 50

다. 연간수송실적 50

라.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51

마. 운수수입 및 비용 52

바. 부가가치 52

사. 유형고정자산 52

아. 중복조사 52

5. 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 53

가. 공통사항 53

나. 항목별 검토요령 53

다. 버스 및 택시 조사표 내검 및 제출 57

라. 증감요인 분석표 작성요령 58

6. 집계표 기입요령 59

가. 유의사항 59

나. 항목별 기입요령 59

7. 부호 기입요령 62

8. 지역별소득 추계 조사표 기입요령 67

가. 조사개요 67

나. 조사표 기입요령 67

9. 조사표류 제출요령 69

가. 조사표 편철 69

나. 조사표지 기입요령 69

10. 산업분류 신·구 비교표 70

〈 부록 〉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1991. 9. 9 제 6차 개정) 77

1. 조 사 개 요

가. 조사목적

운수업부문의 고용·급여·운수장비·운수수입 및 비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동부문의 수준과 구조 변동 및 영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경제정책 수립 및 이의 시책효과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데 있다.

나. 조사연혁

중소기업은행에서 64년·69년 2회 실시하여 오던 동 조사를 정부의 통계일원화 및 강화계획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으로 이관하여 발전시키도록 결정함에 따라 이를 1976년 기준조사부터 부활 실시하게된 이래 금년조사는 제16회 조사가 된다.

다. 법적근거

이 조사는 통계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승인번호 111-11-16호)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사대상 사업체에서는 응답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조사에서 얻어진 통계자료는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조사 종사자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통계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라. 조사기준시점 및 기간

(1) 조사기준시점 : '91. 12. 31 현재

(2) 조사기준기간 : '91. 1. 1 ~ 12. 31 (1년간)

(3) 조사실시기간 : '92. 4. 1 ~ 4. 30 (1개월간) : 지방통계사무소

'91. 4. 1 ~ 4. 10 (10일간) : 버스 및 택시조합

마. 조사표 (집계표) 제출기간

'92. 5. 31일까지 조사관리과로 제출한다.

바. 조사범위 및 대상

(1) 조사범위 : '91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I. 운수·창고 및 통신업』중 운수·창고업을 조사대상 범위로 한다.

(2) 조사대상업종 (41개)

(가) 지방사무소 조사대상 업종

1) 육상운송업 (8개)

- 도시간철도
- 구역내철도(지하철)
- (개인택시)
- 노선화물
- 특수화물
- 전국화물
- 일반구역화물
- 용달화물
- 장의차량 운영업

2) 수상운송업 (7개)

- 내항여객
- 내항화물
- 외항여객
- 외항화물
- 내륙수상여객
- 내륙수상화물
- 기타내륙수상

3) 항공운송업 (3개)

- 정기 항공 운송업
- 부정기 항공운행사업
- 항공기 임대사업

4) 운수관련 서비스업 (19개)

- 육상화물 취급업
- 수상화물취급업
- 보통창고
- 냉장창고
- 위험물품보관
- 농산물창고
- 기타보관 및 창고
- 여객자동차정류장
- 화물자동차정류장
- 유료도로 운영업
- 수로안내(도선)업
- 선박청소업
- 선박구난업
- 항공기 취급업
- 여행사업
- 화물운송대행업
- 기타 항공 운수유지 서비스업
- 선박 및 항공기 중개업
- 포장·검수 및 유사대리업

(나) 버스 및 회사택시조합을 통한 조사대상 업종 (4개)

- 시외버스 운송업 (고속버스 포함)
- 시내버스 운송업
- 전세버스 운송업
- 택시 운송업 (회사택시)

사. 조사단위

(1) 조사단위는 운수 및 창고업을 경영하는 기업체(이하 사업체라 함)이다.

(2) 단일사업체의 보조단위인 운수업부문의 영업소·수리공장·지사·사무소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체(본사)에 포함 조사한다.

아. 조사표의 종류 (7종)

(1) 도로화물 조사표

(2) 철도·지하철 조사표

(3) 유료도로 운영업 조사표

(4) 버스 및 택시 운송업 조사표

(5) 수상운송업 조사표

(6) 항공운송업 조사표

(7) 운수관련 서비스업 조사표

자. 조사항목

사업체 개황·조직형태·장비 보유현황·연간수송 실적·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연간운수수입 및 비용· 유형고정자산 등 10개 항목

차. 조사방법

(1) 전수조사

(가)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시내버스·전세버스 및 회사택시 : 버스 및 회사 택시업체에 의한 자계식조사

(나) 버스 및 회사택시를 제외한 육상·수상·항공 및 운수관련서비스업 : 지방사무소 직원에 의한 면접타계식 조사

(2) 표본조사

개인택시· 개인용달· 농산물창고

카. 결과공표

(1) 잠정집계결과 : '92. 9월중

(2) 확정집계결과 : '91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92. 11월중)

타. 조사단계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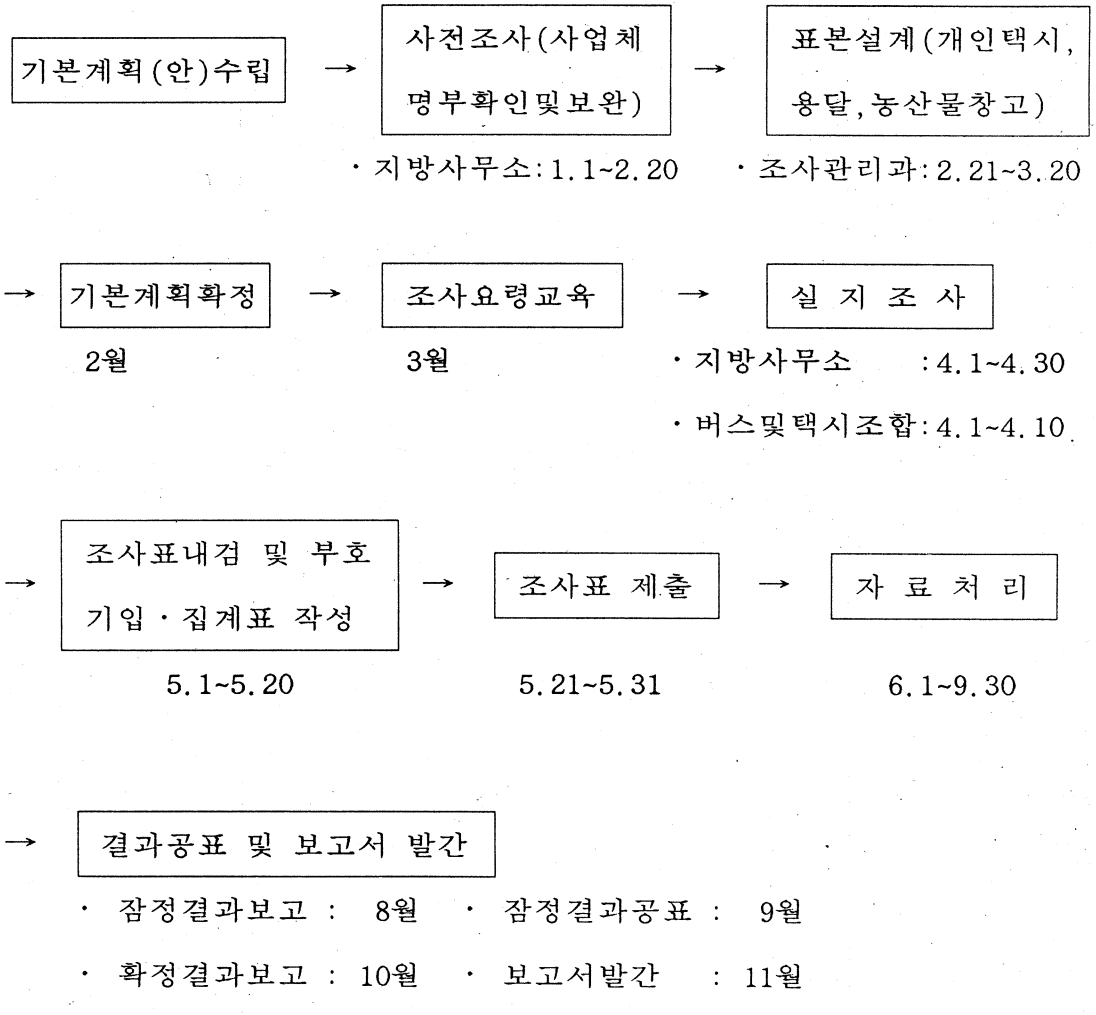

2 . 조사담당자의 임무

가. 사전조사

(1) 사업체 명부 확인

조사담당자는 운수관련기관·협회 및 조합을 통하여 해당 업종의 사업체명부를 입수하여 담당조사구에 명부상의 사업체가 실제로 존재 하는지를 확인 조사한 다음 중앙에서 보낸 사업체명부를 보완하여야 한다.

(2) 누락 및 신규사업체 색출

사업체명부에 등재된 사업체만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담당한 조사구내에서 명부에 누락된 사업체나 신규 사업체를 색출하여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업체명부도 보완·정리하여야 한다. (단 조사년도에 설립된 사업체는 신규사업체에서 제외됨)

(3) 사업체명부 보완 및 정리

(가) 증가사업체

1) 신규사업체

'91. 1. 1 ~ '91.12.31 사이에 등록된 사업체를 말한다. 따라서 신규사업체는 사업체명부 우측 여백에 설립 년월일을 기입한다.

2) 누락사업체

'91. 1. 1일 이전에 등록된 사업체로 명부상에 누락된 사업체를 말한다.

3) 전입사업체

타 시·도로부터 전입된 사업체는 사업체명부 우측여백에 『ㅇㅇ시·

도 ○○구·시·군 으로부터 전입』이라고 기입하고 사업체 고유번호는 전출된 사무소 또는 중앙으로 확인 후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4) 업종변경 사업체

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사업체수가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유고사업체

1) 폐업

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2) 소재불명

소재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말한다.

3) 전출

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타 시·도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시·도 ○○ 구·시·군 으로 전출』 이라고 기입한다.

4) 휴업

휴업내용을 사업체명부 우측여백에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5) 기타

가) 중복

사업체가 명부상 중복 또는 조합조사분과 중복인 경우를 말한다.

나) 업종변경 전출

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사업체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전업

운수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가 타 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 본사조사가능 사업체

본사(본점) 또는 다른 사업소에서만이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서 조사가능업소의 주소·전화번호 등을 상세히 기입한다.

마) 합산·합병

명부상 2개이상의 사업체를 하나의 조사표에 합산(합병)하여 작성한 경우로서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체의 여백에 『ㅇㅇ번(사업체고유번호)사업체에 합산 또는 합병』이라고 기입한다.

(다) 항목별 보완요령

1) 행정구역번호

한국행정구역 분류번호와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정정한다.

2) 일련번호

정정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추가 등재시에만 맨 끝 번호의 다음번호를 부여한다.

3) 사업체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조사관리과에서 부여 함으로 수정하여서는 안된다.

4) 산업분류번호

산업분류의 착오시에는 부록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세세분류 번호에 따라 정정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기재한다.

5) 사업체명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을 기입한다.

6) 대표자명

대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만 기재한다.

7) 소재지

구·시·군이 틀리면 구·시·군명을 정정하고 번지까지 기재한 다음 행정구역번호도 정정한다.

(라) 사업체 명부 총괄표 작성

실사시 조사담당자별로 정리·보완된 사업체 명부를 기준하여 사업체명부 총괄표를 작성한 후 조사표와 함께 제출한다.

나. 실 사

(1) 사업체 확인 및 사업체 명부의 보완이 완료되면 조사대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한다.

(2) 실사시 특히 유의할 사항

(가) 기간내 조사불능인 사업체

사업체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관계장부 또는 서류가 관계기관에 영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인된 결산서가 있으면 이에 따라 작성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능한 항목까지만 조사하되 작성책임자로부터 언제까지 작성·제출하겠다는 확인을 받아 일단 유고사업체로 처리한 다음에 추후 조사하여 제출한다.

(나) 본사 조사가능 사업체

현지의 사업체가 지점·영업소 또는 출장소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본사에서 직접 현지사업체의 영업을 관할함으로써 본사에서 조사가 가능하다면 본사의 정확한 소재지와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동일 통계사무소 관할내의 소재지이면 소장에게 보고하고, 타 통

계사무소 관할의 소재지이면 해당 통계사무소장에게 속히 통보하며 이 내용을 중앙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2) 만일 본사와 별개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고 독립채산으로 회계처리할 경우에는 현지사업체에서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다) 겸업사업체

1) 운수업과 타산업과의 겸업

운수업과 타산업(제조업·도소매업 등)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거하여 분리조사하되, 장부에 따라 분리조사가 어려운 경우라면 각 조사항목에 대해 총매출액에 대한 운수수입 비율로 배분하여 조사표를 작성한다.

2) 운수업내 상호간 겸업

분리조사를 원칙으로 하나 분리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기간중 연간 총수입이 많은 업종에 합산하여 작성하되,수입이 적은 업종에 대한 운수장비(선박·차량 등) 수를 적요란에 기입한다.

예1) 내항여객운송업이 내항화물운송업보다 연간 총수입이 많을경우 "내항화물운송업"은 "내항여객운송업"에 포함조사하며, 적요란에 내항화물선 1척(100 G/T) 등으로 표시한다.

예2) 전세버스와 여행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주업종이 전세버스업이라면 여행사업수입을 전세버스에 포함조사 하고, 여행사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전세버스와 여행사업을 겸업하지 않은 순수한 여행사업체만을 여행사업(63069)으로 조사한다.

(라) 조사에서 제외되는 사업체

1) 리·동단위의 새마을 창고

2) 비영업용인 자가용차량·선박·창고 등만을 가진 업체

3) 농업협동조합 창고 (단위조합 포함, 중앙에서 일괄조사)

4) 서울이외의 지방에 소재하는 대한통운주식회사의 산하 지방영업소 (본사에서 일괄조사)

5) 내륙수상 운송업

가)1개사업체가 척당 20 G/T 미만의 선박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

나)거룻배 운영업

6) 기타 내륙수상 운송업(관광유람선)

가) 비동력선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

나) 사업체에서 1척의 선박을 보유한 경우에는 선박크기가 20 G/T 미만인 사업체

다) 1개업체에서 2척 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경우에는 업체선박 총톤수가 20 G/T 미만인 사업체

(마) 누락되기 쉬운 업종(반드시 조사되어야 할 업종)

1) 목재하치장 (수면창고)·폐차장·주류보관업체 및 고철야적장 등의 창고업체(달리 분류되지 않은 창고로 분류)

2) 보세창고

3) 나용선(외국에서 임차운행하는 선박도 포함)

4) 비직영차량 (지입제차량)

다. 유고사업체 처리

유고사업체라 함은 휴업·폐업·소재불명·이전·명칭변경·응답불응 업체 등을 말한다.

(1) 휴업 사업체

휴업중이라 하더라도 '91년중에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반드시 조사한다.

(2) 폐업 사업체

폐업사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관할세무서·구·시·군, 읍·면·동사무소 또는 각 운송사업조합 등에 문의하여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합병 또는 영업양도인 경우에는 추적 조사하여야 한다.

(나) 완전 폐업된 경우에는 유고 처리한다.

(3) 소재불명 사업체

(가) 대상사업체의 관할세무서·구·시·군, 읍·면·동사무소 또는 각 운송사업조합 등에 문의하여 소재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조사한다.

(나) 도저히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는 소재불명 사업체로 유고처리한다.

(4) 이전 사업체

(가) 동일 통계사무소의 타조사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즉시 조사과장에게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과장은 전입된 지역의 조사담당자에게 조사토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나) 다른 통계사무소 관할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사담당자는 사업체명·이전주소·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사무소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무소장은 해당 통계사무소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중앙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 명칭변경 사업체

사업체의 명칭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명칭대로 조사하고 조사표 뒷면 적요란에 명칭변경 일시를 기재한다.

(6) 응답불응 사업체

(가) 피조사자가 비협조적이거나 거절하는 태도를 보일지라도 조사담당자는 당황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되며, 조사목적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응답자의 협조를 구한다.

그 자리에서 조사가 어려울 때는 두번 세번 재방문하여 성의 있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여 협조를 얻도록 한다.

(나) 이와 같이 하여도 협조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사무소장에게 그 경위와 사유를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7) 본사 조사가능 사업체

창고건물만 있거나 단순한 영업소로서 현지에서 조사가 불가능하여 다른 조사구에 있는 본사(본점) 사무실에서만 조사가 가능하면 본사 조사가능 사업체로 하여 이전사업체에 준하여 유고 처리한다.

3. 조사표 기입 요령

가. 일반적 유의사항

(1) 조사표의 모든 기재사항은 운수업부문만 기입한다. (단, 겸업사업체에 대하여는 "겸업사업체" 처리 요령에 따라 기입함)

(2) 조사표의 작성은 항목별 기입요령에 따라 장부에의한 자료를 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이 조사표는 '91.1.1 ~12.31일의 1년간 자료에 의거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결산기간이 다를 경우는 직근1년간의 결산자료에 의함)

(4) 조사표 기재는 반드시 흑색이나 청색의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단위는 점선으로 구분한 각 란에 맞도록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5) 이 조사는 금액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단 종사자수·연간수송실적·차량보유현황은 제외)

(6) 모든 금액단위는 "천원" 으로 한다.

(7) 단위 미만은 4사5입 한다.

(8) 기재사항이 잘못된 부분은 복선(=)을 긋고 그 위에 정정 기입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란은 사선을 좌상에서 우하로 긋는다(\ )

(9) 조사표상 사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 (▨)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입하지 않는다.

(10) 조사표 수정시 일부항목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와 관련되는 항목의 내용도 재검토 하여야 한다.

나. 항목별 기입요령

(1) 도로화물조사표

(가) 사업체 개황

1) 사업체명

사업체가 "법인"일 때는 등기 또는 등록된 명칭을 말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한다.

2) 창설년월일

법인은 법적설립년월,개인은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년월을 기입한다. (단, 업종을 변경한 사업체는 업종변경년월, 동일한 업종으로서 사업주 또는 상호만 변경된 사업체는 최초로 창설한 년월을 기입함.)

3) 대표자명

대표자 또는 사업주명을 말한다.

4) 전화번호

전화번호가 2개이상일 경우에는 대표전화 1개만 기입한다.

5) 소재지

사업체가 사업을 실제로 경영하고 있는 장소 또는 등록된 행정구역상의 주소를 말한다.

(나) 조직형태

1) 조직형태라 함은 경영주체의 법적조직 형태를 말한다.

2) 이 조사에서는 국가기관·공사·회사법인·기타법인 및 개인의 5가지로 구분한다.

3) "법인"사업체라함은 상법·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인등기를 완료하여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 조직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사단법인과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을 말한다. 이 조사에서는 "회사법인" 과 "기타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법에 의한 "회사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을 "기타법인"에 포함시킨다.

4) "준법인"이란 조직형태상 법인격은 없으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비치관리 하는 개인 및 조직을 말하는 바, 이는"기타법인"으로 분류된다.

5) 개인업체라 함은 법인업체가 아닌 개인 소유의 사업체를 말하며,1인 소유의 업체는 물론 2인 이상이 동업하는 업체도 포함시킨다.

(다) 사업형태

1) '91년 한국표준산업분류(운수업부문) 참조

2) 운수업내 겸업인 경우에는 분리조사가 원칙이나 합산조사하는 경우에는 주업종 한곳에만 ○표하고, 업종별 차량대수 및 선박톤수 등 장비대수를 적요란에 기입한다.

3) 사업체명부상의 사업형태(산업분류번호)대로 "○"표하지 말고, 사실상의 사업형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명부상의 사업형태와 다를 때에는 반드시 재확인 한다음 명부상의 사업형태를 정정하고 그 내용을 "적요"란에 상세히 기입한다.

(라) 자본금 또는 출자금

1) '91.12.31일 현재 납입완료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한다.

2) 조직형태가 "개인" 일 경우 본란은 사선(\ )을 긋는다.

(마) 차량보유현황

1) '91.12.31일 현재 당해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차량을 말하며, 사업체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는 차량도 포함시킨다.

※차량소유기준은 편의상 관리주의를 채택함

2) 차량보유대수는 영업용 차량만 해당됨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기관별차량은 사업형태가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한다.

톤수별화물차량은 사업형태가 ①.②.③.④.에 해당한다.

총가동대수는 사업형태가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한다.(단,개인용달은 제외)

총운행일수는 개인용달에 한하여 기입한다.

가) 기관별 차량대수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영업용 차량을 기관별·경과년수별 및 소유형태(직영·비직영)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① 차량경과년수

차량등록일로부터 조사기준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말한다.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했을 경우 구입전의 차량등록일을 확인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즉, 중고차량의 구입일로부터 조사기준일까지 경과된 연수가 아니다.

② 소유자

조사표상의 소유자란에는 직영·비직영으로만 구분되었으나 이 조사요령서에 직영업체 및 비직영업체란 용어가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해설한다.

※ 직영과 비직영에 대한 해설

o 직영차량

. 차량에 대한 영업권(영업행위)이 조사대상 사업체에 있는 차량

(개별화물·개인택시 및 개인용달은 전부 "직영"으로 처리함)

o 비직영차량

지입제와 같이 차량에 대한 영업권이 개별차주에 있는 차량

o 직영업체

사업체가 보유한 영업용차량 전부를 당 사업체에서 직접 영업 행위를 하는 것으로 직영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차량의 법적 소유권 및 영업권이 회사에 있는 경우 (회사소유 - 회사경영)

· 차량의 법적 소유권은 회사에 없지만 회사에서 임차등의 방법에 의하여 영업권은 회사에 있는 경우 (타인소유 - 회사경영)

o 비직영업체(일부직영)

사업체가 보유한 영업용차량중 업체에서 직영하지 않는 차량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법적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 및 영업권은 차주에 있는 경우

o 완전비직영업체

사업체가 보유한 영업용차량 전부를 차주들이 각각 직접 영업 행위를 하며, 회사에서는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이 전혀 없는 업체를 말한다.

나) 톤수별 화물차량 대수

① 용달화물과 장의차량 운영업체를 제외한 노선화물·특수화물 및 전국화물 일반구역화물 운송업체의 차량을 톤수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② 화물운수업체(용달화물·장의차량운영업제외)는 기관별 차량대수의 합계와 톤수별 차량대수의 합계가 일치하여야 한다.

※특히 개별화물은 조사지침서의 톤급별 차량대수 현황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 총가동대수

화물운송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영업용 차량중에서 매일 매일 실제로 영업을 한 차량을 누계하여 '91년 1년 동안의 총 영업대수를 기입한다.(개인용달·개별화물은 제외)

라) 총운행일수

① 개인용달에 대해서만 기입한다.

② 1년동안에 영업을 한 일수를 기입한다.(1시간이상 영업한 경우에도 1일로 계산함)

(바) 연간 수송실적

연간수송실적이란 영업용차량이 연간수송한 총톤수·총거리의 실적을 말한다.

1) 수송총톤수

화물운송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영업용차량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조사기준기간(1년간)에 실제로 수송한 화물의 총톤수를 말한다.

2) 수송총거리

화물운송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영업용 차량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조사기준기간 1년간(결산기간)에 실제로 주행한 차량 개개의 총거리의 합계를 말한다.

※ 수송총톤수 및 수송총거리 산출

- o 직영업체는 회사에서 해당 시·도 운수과에 보고한 "자동차운송보고서"(월보)의 1년분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o 직영업체가 아닌 회사로서 운수실적보고시 비직영차량에 대한 수송실적을 제외시킨 경우는 비직영차량의 수송실적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이미 보고된 실적에 합산하여 보고한다.
- o 1년간 비직영 차량대수가 일정하였을 때는 비직영차량 1대당의 연간수송실적을 계산하고, 이에 차량대수를 곱하여 추정 산출 한다.
- o 비직영차량대수가 일정치 않을때(예:1월 20대, 5월 15대, 12월 20대)는 비직영차량의 1대당의 월별 수송실적을 계산하고, 이에 차량수를 곱하여 추정 산출 한다.

(사)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1) 종사자

'91.12.31일 현재 일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임금·봉급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보수를 받고 그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피고용자수와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합계를 말한다. 여기에는 상용·임시·일용종업원 뿐만 아니라 병가자와 사고로 인한 단기휴가자 및 파업중인자도 포함한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와 고정급여액을 일정한 운수업체로부터 지급받지 않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정류장 등에서 승차권을 판매해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매표원·검표원 등은 제외함)

2) 급여액

가) 조사대상기간중 피고용자에게 노무의 대가로 연간 지급된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데, 급여라 함은 현금 또는 현물,정기 또는 부정기를 불문하고 노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임금·상여금·각종수당 및 생계보조금을 망라한 금액을 말한다. 현금 급여일 경우 세금·조합비 등의 공제금을 포함한 사업체에서 실질상 지출한 급여총액을 말하며, 현물 급여일 경우에는 사업체가 지급당시의 싯가에 따라 화폐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차량관계종업원의 급여액에는 차량운행시 소요되는 급식비 및 피복비 등은 제외한다. ※차량운행시의 급식비 및 피복비는 "운수비용" 의 항목중 "④ 복리후생비"에 포함됨

다) 급여액은 '91년중에 발생한 연간 총액을 기입하여야 한다. 즉, '91년 이전에 체불되었던 급여를 '91년중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고 반면 '91년중에 지급하여야 할 급여가 미불된 것은 포함한다.

라) 급여액이 종업원수와 비교하여 현실적인 급여수준에 상당히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당 월별 급여액을 계산하여 재확인한다.

마) 급여액의 합계는 "운수비용" 의 항목중 "② 인건비"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

3) 차량관계 종업원

가) 운전기사

영업용 차량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조수

조수란 차량운행중 차량의 수리를 주로 담당함으로서 운전기사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정비 및 수리공

차량의 정비 및 수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체 공장에서 차량의 정비 및 수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 기타

상기분류에 속하지는 않으나 운행 및 유지관리를 위해 종사하는 종업원(세차공)을 말하며, 기타차량관계 종업원중 세차공 이외의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요" 란에 종업원의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4) 기타종업원

가) 단순노무자

① 화물의 상·하차와 차량으로부터 창고에 이르는 화물의 입·출고 작업 및 이에 준하는 제작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단순노무자의 1인 일당 연평균급여액은 단순노무자에게 연간지급된 급여총액을 연간고용된 단순노무자수(연인원수)로 나눈금액을 말한다.

※1인일당 연평균 급여액= 단순노무자의 연간급여총액÷연간단순노무자수

③ 단순노무자수는 연간급여총액을 1인 일당 연평균액으로 나눈다음 300일로 나누어 산출한다.

※단순노무자수=단순노무자의 연간급여총액 ÷ 1인일당 연평균급여액 ÷300일

나) 사무직 및 기타

차량운행에 직접관여 하지 않고 관리적인 사무종사자와 이들의 보조원을 말한다. (사무직원·수위·경비원·급사·자가용 운전기사·차고관리인 등을 말함)

5)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가) 사업주 및 그의 가족으로서 사업에 관련되는 제반업무에 주당 정상작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나) 회사법인과 기타법인은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없다.

다) 개인업체는 사실상의 업주가 타직장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사업

감독상 가족중의 1인정도는 정상 작업시간의 3분의1 이상을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반드시 1인이상 조사되어야 한다.

(아) 연간 운수수입 및 비용

연간운수수입 및 비용은 이 조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조사 사항이며 이는 운수업체 결산자료(손익계산서)의 각 항목분류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내용은 동일하므로 각 항목해설을 숙지하여 사업체 결산자료의 각 항목을 이 조사항목에 맞도록 분류하여 작성 한다.

1) 운수수입

가) 조사기준기간중 사업체의 운수활동으로 얻어진 경상적인 영업수입을 말한다.

나) 부동산 투자 등에서 얻어진 영업외 수입은 "9.임대수입" 에 기재한다.

다)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운수비용

조사기준기간중 운수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영업비용(일반관리비포함)을 말한다.

가) 재료비

재료비란 운수활동을 위하여 소비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매입한 재료구입 비용중 실제사용액을 말하는 바, 이는 연료비와 기타 재료비로 구분한다.

① 연료비

o 영업용차량의 운행에 사용된 휘발유·경유·LPG 등으로 구분 기입한다.

o 소비된 것만 조사하고 구입액중 미사용분인 비축분은 제외하여야하며, 기타란에는 모빌유·브레이크유 등을 조사한다.

o 영업용 차량 외의 연료비 (승용차용·자가발전·난방용 등)는 『⑫ 잡비』에 기입한다.

② 기타재료비

외부로부터 매입된 부분품으로서 그대로 차량에 부착시켜 그 구성 부분이되는 타이어·베아링 등의 부속품비, 내용년수 1년 미만, 5만원 미만 상당의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등을 말한다.

나) 인건비

① 도로화물 운송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운전기사·정비 및 수리공 등의 차량관계종업원과 사무직원 및 잡급 등의 기타 종업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말하는데,여기에는 특근수당 등의 각종 수당 및 잡급 등이 포함된다.

② 인건비는 『7.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의 차량관계종업원 및 기타 종업원의 급여액 합계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

다)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당년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기입하되, 이 계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을 기입한다.

라) 복리후생비

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된 법정복리비·복리시설부담액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예) 장학금·경조비·종업원의 건강비·손해보험·치료보조비·각종위생·보건비·각종보조금 등(퇴직금은 별도 항목으로 조사)

마) 감가상각비

유형고정자산(토지·건설 가계정 제외)인 건물·기계장치·차량 및 운반구 등에 대한 연간('91년도)감가상각액을 기입한다.

※ 감가상각비 해설

< 일반감가상각 >

o 고정자산은 크게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나눈다. 유형고정자산은 건물·구축물·차량 및 공구·비품 등을 뜻하며 무형고정자산은 특허권·영업권·실용 신안권 등을 말한다.

o 고정자산은 경과나 사용에 따라 소모.파손.노후되거나 기능의 발전이나 경제변동에 따라 구식화 되게 마련인데 이러한 고정자산의 가치감소를 추정 계산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o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자산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기소유자산은 모두 대상이 된다.

o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데는 취득원가·내용연수·잔존가치 및 감가상각방법을 알아야 한다.

o 취득가격은 통상적으로 그 자산의 매입가격에 인수운임·하역비·보험료·제세공과금 등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때까지 지출한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이다.

o 내용연수는 당해 고정자산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율을 정하는 기준에 불과한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각 자산별로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다.

o 잔존가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끝나서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된 때에도 어느정도의 가치가 남아있게 되는데 이 남아있는 가치를 말한다.한편 세법에서 유형고정자산은 취득가액의 10%를,무형고정자산은 영(零)으로 하고있다.

o 감가상각방법은 유형고정자산은 정액법과 정율법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무형고정자산은 정액법으로 한정되어 있다. 감가상각방법은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정액법 = $\frac{\text{취득원가-잔존가치}}{\text{내용연수}}$

· 정율법 = 미상각잔액×정율

$$\text{정율}(\%) = 1 - \sqrt[n]{\frac{\text{잔존가치}}{\text{취득원가}}} \quad (\text{단, n은내용연수})$$

< 특별감가상각비 >

o 특별감가상각비는 일반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상한 후 일반상각비의 일정비율을 추가, 감가상각비로 손금을 인정해주는 조세혜택 제도이다. 이는 투하원가를 회수하는 것이이므로 아무리 특별감가상각비계상의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투하원가인 취득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o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선·항공 등 중요산업의 경우에는 일반감가상각비의 100% 를 특별감가상각비로서 추가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 감가상각비 작성요령

o 감가상각비는 재무제표 등 각종 장부상의 금액을 기입하되 장부가 없는 개인업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기입한다.

· 취득원가(구입가격)를 감가상각비의 해설을 참조하여 정액법 및 정율법에 의하여 산출 작성한다.

· 자본적지출이거나 재평가한 경우는 원시취득 가액에 자본적지출 등으로 증가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잔존가치 10%만 남겨놓고 계산하여 작성한다.

예를들어 개인택시의 경우 취득원가 천만원,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는 10%인 백만원이라 할 때 정액법에 따르면

$$\frac{\text{천만원} - \text{백만원}}{5} = \frac{9\ \text{백만원}}{5} = 180\text{만원이 된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5년동안 매년 180만원으로 기입된다.

바) 지급임차료

동산·부동산 등을 일정한 기간동안 임차 또는 사용했을 경우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건물·차량 및 운반구와 토지를 구분하여 기입한다)

예) 영업용토지·공장·건물·기계장치·운반구 등의 임차료

사) 보험료

① 자동차·건물(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비품 등에 대하여 사업체가 지불한 화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② 종업원의 후생을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는『④.복리후생비』에 기입한다.

아) 세금·공과금

영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자동차세·재산세·인지세·등록세·취득세·방위세 등의 제세금과 상공회의소비·무역협회비·조합비·적십자비 등의 각종 공과금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소득세 및 고정자산원가에 포함되는 등록세 등은 제외한다.

자) 수선비

① 사업체의 건물·차량·기계장치·공구 등의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선·수리를 외부에 의뢰하였을 경우에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수익적 지출)

② 건물의 증축이나 기계기구의 개조로 인해 그 자산의 가치가 증식된 경우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치증가이므로 『10.유형고정자산』의 『연간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자본적 지출)

차) 사용료

여러 운수사업체가 정류장(지방정류소 포함)을 공동사용할때 승차권 판매(매표)업무를 정류장에서 대행할 경우, 사업체에서 정류장에 지급된 매표에 대한 수수료·면허수수료·그밖에 차량검사료 등을 말한다.

카) 대손상각

외상대출금·받을어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중 회수할 수 없는 경상적인 금액을 말한다.

타) 잡비

① 이상 열거한 비용 이외의 비용으로 수도광열비·광고선전비·접대비·소모품비·비영업용차량사고비·통신비·사고비·여비·교통비·주차장사용료 등의 제비용을 말한다.

② 영업비용중 외국(정부기관 및 개인)에 지불한것 중 인건비·복리 후생비·임차료·조세 등은 잡비에 포함한다.

3) 영업이익

사업체의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운수수입에서 운수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4) 납부부가가치세

가)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신고서 (예정·확정·영세율 등 조기환급)상의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발생기준의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를 기입한다.

나) 과세 특례자의 경우는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상의 차감 납부할 세액을 기입한다.

(자) 임대수입

운수업체에서 경상적인 영업활동이외에 토지·건물·운수장비의 대여로 수입된 금액을 말한다. 즉 영업외수입중 토지·건물· 장비 및 차량운반구 등의 임대수입료를 조사한다.

(차) 유형고정자산

1) 유형고정자산의 종류

유형고정자산이란 구체적 형태를 가진 고정자산으로 차량 및 운반구·토지·건물 및 구축물·기계장치 및 기구 등을 말한다.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중 단순히 부동산 투자를 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토지

사무소·차고·정비공장·사택·운동장 등의 토지를 말하는데 사무소·기숙사·공장·창고·사택 등을 위한 토지개량비(정지·매축 등의 공사비 및 수익자 부담금)등도 포함된다.

나) 건물 및 구축물

① 건물

토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과 그 일부인 영속성 부속설비를 말한다.

예) 사무소·영업소·기숙사·공장·창고·사택·기타 부속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승강기·냉방·조명·통풍설비 등의 부속설비

② 구축물

토지에 정착된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예) 도로·도크(Dock)·궤도(軌道)·안벽(岸壁)·다리·담장·댐·수도·송유관 등

다) 기계장치 및 기구·비품

① 기계

동력을 받아서 외부의 대상물에 작업을 가하는 기계의 단위로 발전기·전동기·공작기계 등을 말한다.

② 장치

대상물을 내부에 수용하여 이것을 변질·변형시키기 위한 설치로서 연소(撚燒)·화학·냉동장치 등을 말한다.

라) 차량 및 운반구

마) 건설가계정

건설가계정이란 미완성의 유형고정자산. 즉 건물 및 자동차 등의 매입을 위하여 경비는 지출되었으나 완성이나 도착이 되지않아 완성 및 도착시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2) 연초잔액

'91.1.1 ~ 91.12.31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써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3) 연간증가액

가) '91년 1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설치 및 증·개축을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구입의 경우는 운임·설치비를 포함한 구입가격으로, 양수받은 것은 양수 당시의 싯가로, 자가(自家)건설 경우에는 1년간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나) 연간증가액에는 자산재평가에 의한 명목상 장부가격의 증가는 제외한다.

다) 건설가계정으로부터 건물이나 기계장치 계정으로 대체되어온 것도 취득으로 간주한다.

4) 연간처분 및 손해액 (연간감가상각액 포함)

가) '91년 1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의 매각·양도한 금액과 재해 등으로 인한 실질적 감소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매각의 경우는 매각액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액을, 재해·도난 등으로 인하여 유형고정자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원인의 발생 당시에 매각할수 있었던 싯가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나) 건설가계정에서 건설완료·차량도착 등으로 건물이나 차량계정으로 대체한 것은 건설가계정의 감소액에 기입한다.

다) 연간 감가상각액은 반드시 '91년 당해년도(1년간)의 감가상각액 또는 감가상각충당금만 기입한다.

※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액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5) 연말잔액

가) '91.12.31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한 미상각 잔액을 말한다. 장부가 없을 경우에는 싯가에 의한다.

나) 연말잔액은 다음 산식에 적합해야 한다.

연말잔액 = 연초잔액 + 연간증가액 - 연간처분 및 손해액-(연간감가상각액 포함)

다) 비직영차량이 많은 화물운수업체의 경우는 연말잔액을 차량대수로 나누어 차량 1대당 가격을 산출하여 비직영차량분의 누락여부를 확인·수정 기입하여야 한다.

(카) 적요

1) 조사자료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 그 요인을 기입한다.

2) 적자일 경우 그 요인을 기입한다.

3) 사업체 경영에 있어 전년도와 큰 변동사항 (시설확장·종사자의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입한다.

4) 기타 사업체의 특이한 사항을 기입한다.

※ 도로화물업종중 주요 착안사항

< 개별화물 (60234) >

1. 난외사항

o 산업분류번호 : 60234

o 구분 : 7

o 사업체고유번호와 행정구역번호는 사업체명부와 일치

2. 난내사항

o 사업체 개황 : 사업체명부를 활용하여 기입한다.

· 사업체명 : 각 시·도 지부명을 기입한다.

예) 전국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조합 경기지부

· 대표자명 : 각 시·도 지부장 이름을 기입한다.

· 전화번호 : 각 시·도 지부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 소재지 : 각 시·도 지부 주소를 기입한다.

o 조직 형태 : "개인" 란에 ○표 한다.

o 사업 형태 : "일반구역화물"란에 ○표 한다.

o 자본금 또는 출자금 : 사선(\)을 긋는다.

o 차량보유현황 : (각 시도별 톤급별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기관별 차량대수,톤급별 화물차량대수를 기입한다.
총가동대수와 총운행일수는 조사하지 않는다.

o 연간수송실적 : 조사하지 않는다.

o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 종사자수는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와 "합계"란에 각 시 차량대수와 동일한 인원수를 기입하며 연간급여액은 기입하지 않는다.

· 개별화물 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므로 시도지부 직원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유의 한다.

o 연간 운수수입 및 비용

· 톤급별로 차량1대당 운수수입과 비용을 산출하여 뒷장에 있는 각 시·도별, 톤급별 차량대수를 곱하여 작성한다.

· '91년도중에 화물운수업체에서 비직영 차량으로 있다가 개별화물이 된 경우에는 중복조사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o 임대수입 : 사선(\)을 긋는다.

o 유형고정자산 : 톤급별 차량1대당 유형고정자산을 산출하여 각 시·도의 톤급별 차량대수를 곱하여 추정한다.

※ 개별화물은 각 시·도 개별화물 운송사업조합별로 조사표 1장에 작성함에따라 조사의 정도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바, 이를 '92년 기준부터 표본조사로 대체할 예정임. 따라서 금년에는 기존 조사방법의 시계열을 유지하여 작성하고, 또한 개별화물의 톤급별 표본수 (41 페이지 참조)를 고려하여 병행조사를 하여야 함.

※ 개별화물 톤급별 차량대수 현황

'91.12.31현재 단위 : 대(臺)

\ \ \	1.0~2.0t 미만		2.0~3.0t 미만		3.0~4.5t 미만		계	
	차량수	표본수	차량수	표본수	차량수	표본수	차량수	표본수
서 울	3,041		4,984		1,004		9,029	
부 산	761		1,507		827		3,095	
대 구	411		766		321		1,498	
인 천	95		344		73		512	
광 주	20		304		372		696	
대 전	30		239		253		522	
경 기	331		1,182		882		2,495	
강 원	117		351		892		1,360	
충 북	88		374		471		933	
충 남	132		277		893		1,302	
전 북	49		202		569		820	
전 남	43		154		713		910	
경 북	202		664		494		1,360	
경 남	410		529		902		1,841	
제 주	20		8		188		216	
계	5,750		11,985		8,854		26,589	

(2) 철도·지하철 조사표

※철도·지하철부문 참조

(3) 유료도로운영업 조사표

※유료도로운영업부문 참조

(4) 버스 및 택시 운송업 조사표

※버스 및 택시부문 참조

(5) 수상운송업 조사표

(가) 사업체 개황

(나) 조직형태

(다) 사업형태

(라) 자본금 또는 출자금

※ 위 항목은 『(1)도로화물부문』을 참고한다.

(마) 선박보유 현황

'91.12.31일 현재 당해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선박으로서 자기(사업체)소유가 아닌 타인 및 타국소유의 선박을 임차하여 운행하는것(裸傭船)도 포함된다. 즉 선박보유는 소유주의와 관리주의 중에서 편의상 관리주의를 채택한다.

1) 선박경과년수

선박 진수일로부터 '91.12.31일까지 경과된 년수를 말하는데, 진수일이 불명할 때에는 당월 1일, 진수월이 불명할 때에는 당년 1월로 하여 경과년수를 산출한다.

2) 톤수

선박 1척당의 총톤수를 말하는데,총톤수란 선박의 용적을 톤(G/T)으로 표시한 것이다.

3) 선질

선체가 주로 어떤 재료로 건조되었는가에 따라 강선, 목선,합성수지제선(F.R.P)으로 구분한다.

4) 기관별

선박추진기의 종류를 말하는데 디젤기관·소구발동기·증기기관·기타기관(가스터어빈·전기기관)으로 구분한다.

5) 보유척수(기관별)

가) 유조선은 건조할 때부터 유류수송을 목적으로 탱크(Tank) 등 설비를 갖춘 선박이므로, 유조선 이외의 선박이 유류를 수송했더라도 유조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나) 추진력이 없는 부선(바지선)은 제외한다(적요란에 척수만을 기입함)

(바) 연간수송실적

1) 연간수송실적 중 수송총인원·톤수·거리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정기여객 및 해운화물업체의 경우는 선박 관할 지방항만청에 보고 하는 "운항실적보고서"(월보)의 1년(결산기가)분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단,여객선의 경우는 보고서상에 화물수송실적이 있더라도 이 조사표의 수송 총톤수에는 기입하지 않는다.

나) 상기 이외의 선박으로 조사대상기간(결산기간) 동안의 "선박운항일지"가 있는 업체는 운항일지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1) 수송총인원은 여객운송업의 보유선박에 의한 연간 수송한 총톤수를 말한다.

2) 수송총톤수는 화물운송업의 보유선박에 의한 연간 수송한 총톤수를 말한다.

3) 수송총거리는 여객 및 화물운송업부문에 한하여 작성한다.

(사)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1) 선내근무종업원

가) 선박직원

해기사로서 선장, 항해사, 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를 말한다.

나) 부원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중 선박직원 이외의 자로서 갑판장·갑판수·갑판원·조기장·조기수·조기원·조리장·조리수·조리원·사무원·간호사 등을 말한다.

다) 기타

위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선내근무종업원을 말한다.

단, 선내근무 종업원 중 대기중인 일반직원·부원은 기타란이나 육상근무종업원에 넣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해당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라) 선내근무 종업원의 급여액에는 선박운항시 지급되는 급식비 및

피복비 등은 제외한다.선박운항시의 급식비 및 피복비는 『(2) 운수비용』 중 『④ 복리후생비』에 기입한다.

마) 선내근무 종업원 중 선박직원 및 부원 이외의 기타 종업원이 있을 경우는 조사표 뒷면 적요란에 종업원의 담당 직책명과 직무내용을 간단히 설명 기입한다.

2) 육상근무종업원

가) 단순노무자

① 부두에서 선박에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선박으로부터 창고에 이르는 운반작업, 입·출고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제작업 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② 단순노무자의 1인 일당 연간평균액을 반드시 기입한다. 1인 일당 연간 평균액이란 단순노무자에게 연간지급된 급여총액을 단순노무자의 연간인원(연인원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단순노무자수는 연간급여액÷1인일당연간평균액÷300일로 산출한다.

나) 사무직 및 기타 : 도로화물부문을 참고한다.

다)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 도로화물부문을 참고한다.

3) 급여액 합계는『8.연간운수수입 및 비용』의 항목중 『② 인건비』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

(아) 연간 운수수입 및 비용

1) 이 조사항목은 운수업통계조사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조사사항이므로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가) 운수업체가 법인인 경우

이 조사항목은 각 해운업체 결산자료의 각 항목분류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내용은 동일하므로 각 항목해설을 숙지하여 사업체 결산 자료의 각 항목을 운수업 통계 조사항목에 맞도록 분류 작성하여야 한다.

나) 운수업체가 개인인 경우

① 선주가 장부(현금출납부 및 그에 준하는 장부 등)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따라 조사한다.

② 선주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정기여객 및 화물선(내·외항선)은 이미 보고된 "운항실적보고서"(월보)의 수입액 및 주요지출액(유류·선원비·수리비 등)을 참고로 1년(결산기간)분을 합산하되, 선주의 사업특수성(선박사고로 인한 운항정지·일정한 기간의 휴업 등)을 고려하여 추정 작성한다.

2)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임차료(외국용선료제외)는 『⑫ 잡비』에 포함시킨다.

(자) 임대수입

운수업체에서 경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 건물·토지·운수장비의 대여로 수입된 금액을 말한다. 즉 영업외 수입중 건물·토지·장비·선박의 수입 임대료를 조사한다.

(차) 유형고정자산

1) 선박 및 운반구

가) 여객선·화물선·유조선 등의 선박과 기타 운반구를 말한다.

나) 영업용 이외의 선박 및 운반구도 포함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선박 및 운반구 이외의 각 항목은 『(1) 도로화물부문』을 참고한다.

(6) 운수관련 서비스업 조사표

(가)사업체 개황·(나)조직형태·(다)사업형태·(라)자본금 또는 출자금

※ (가),(나),(다),(라)항목은 『(1)도로화물부문』을 참고한다.

(마) 보관소·창고 및 장비보유 현황

1) '91.12.31일 현재 당해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보관소(야적장)·창고 및 장비를 말하는데, 영업용 이외의 것은 제외한다. 보관소·창고 및 장비는 편의상 관리주의를 채택하므로 자기(사업체) 소유가 아닌 타인소유의 것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도 포함한다.

2) 장비보유현황은 사업형태가 ①~⑦의 업종만 작성하고 그 외 업종은 사선(\)을 긋는다.

3) 경과년수

장비등록일로부터 '91.12.31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말한다.

(바) 화물취급능력 및 연간실적 (보관 및 창고업)

1) 보관능력

가)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보관소 (야적장)·창고의 1회 적정한 보관취급할 수 있는 물량을 말한다.

나) 단위

보관물의 단위는 M/T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간보관실적

가)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보관소·창고에 의하여 '91년 1년간(결산기간)에 실제로 보관한 1일 누계의 연간총량을 말한다.

나) 연간보관실적은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보관소·창고에 조사기준기간 1년간(결산기간)에 실제로 보관한 1일누계의 연간총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예시와 같이 산출한다.

(예시) 벼 1,000M/T을 3월1일부터 3월30일까지 보관하고, 콩 120M/T을 4월10일부터 4월29일까지 보관했으며, 밀 500M/T을 4월16일부터 5월10일까지 보관했다고 하면,

1,000M/T × 30일 = 30,000M/T

120M/T × 20일 = 2,400M/T

500M/T × 25일 = 12,500M/T

계 : 30,000M/T + 2,400M/T + 12,500M/T = 44,900M/T

그러므로 연간보관실적은 44,900M/T이 된다.

※ 보관 및 창고업만 작성하고 그외 업종은 사선(-)을 긋는다.

(사)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1) 장비관계 종업원

가) 중기운전기사

소정의 운전면허를 얻어 일정한 사업체에서 영업용 장비 또는 중기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부원(보통선원)

선박구난업에서 운행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냉장기기사

냉장창고업체에서 냉장시설의 운행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기타종업원

가) 단순노무자

※이 항목은 사업체가 ①~⑦ 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그외 업종은 단순노무자의 종업원이 있더라도 『④ 사무직 및 기타』란에 포함 조사한다.

나) 안내원

여행사업에 종사하는 통역안내원·국내관광안내원·국외여행 안내원으로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 여행사업에만 종사하는 종업원 임을 특히 유의하여야 함.

다) 검수·차량·감정원

포장·검수 및 유사 대리업에서 화물의 이동에 따라 화물의 수량·품명·하인(荷印)·화물손상·적재확인 등을 점검·감정 또는 이에 준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 포장·검수업에만 종사하는 사람임을 특히 유의하여야 함.

라) 사무직 및 기타

관리적인 사무종사자와 그 보조원. 즉 매표·검표원·수위·경비원·급사·차고관리인 등을 말한다.

(7) 항공운송업 조사표

※ 항공운송업 부문 참조

4. 주요 착오 사례

가. 사업형태

(1) 겸업종 사업체의 경우 두곳에 ○표한 사례

예) 수상화물취급업과 육상화물취급업을 겸하고 있을때 두곳에 ○표를 하였는바, 이는 주업종 한곳에만 ○표를 하여야함.

(2) 산업세세분류와 사업형태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

예) 산업분류에는 기타내륙수상운송업(61209)으로 하였고 사업형태는 내륙수상여객(61201)에 ○표를 하였음.

나. 차량보유 현황

(1) 도로화물운송업의 경우 기관별 차량대수와 톤수별 화물차량대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

(2) 비영업용 차량을 조사한 사례

(3) 택시의 경우 차량경과년수를 불합리하게 조사된 사례

(4) 경과년수별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

(5) 시내버스·회사택시의 경우 기관별 차량대수와 형별 차량대수가 일치하지않는 사례

(6) 개별화물의 경우 조사지침서상의 시·도별 톤급별 차량대수와 조사상의 차량대수가 불일치한 사례

다. 연간수송 실적

(1) 사업형태는 화물에 ○표가 기입되었으나 수송실적란에는 수송총인원에 조사된 사례

(2) 수송총인원·수송총거리·총운행횟수간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조사된 사례

예) 회사택시 조사표에 있어서 『 수송총인원 ÷ 총운행횟수 』가 5명 이상으로 조사되었는 바, 이는 불합리한 자료이므로 개인택시의 조사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를 확인토록함. (특히 단위에 유의하여야 함)

라.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1) 개인택시·개인용달·개별화물업체에 있어서 종사자와 차량대수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와 연간급여액이 조사된 사례

(조사대상이 사업주가 아니라 지정된 차량이므로 종사자수와 차량대수는 일치하여야 하고, 연간급여액도 조사될 수가 없음)

(2) 단순노무자 산출에 있어서 연인원수를 조사하는 사례

예) "갑"회사에서 지난 1년간 단순노무자에게 지급한 연간급여총액이 1,620만원, 1인일당 연평균급여액 9,000원, 연간근무일수가 300일인 경우 단순노무자수 산출은 다음과 같다.

단순노무자수 = 1,620만원 ÷ 9,000원 ÷ 300일 = 6명 (○)

단순노무자수 = 1,620만원 ÷ 9,000원 = 1,800명 (×)

(3) 시외버스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스페어) 기사가 조사된 사례

(4) 개별화물의 경우 차량보유대수와 종사자수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

(5) 여객자동차 정류장업에 단순노무자가 조사된 사례(여객자동차 정류장업에서 단순노무자는 기타종사자로 분류하여야 함)

마. 운수수입 및 비용

연간급여액과 "운수수입 및 비용"란의 인건비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

바. 부가가치

부가가치란 운수활동을 통하여 새로이 창출, 부가시킨 순 생산개념의 가치로서 회사의 실소득을 나타내는 바, 이는 매출액에서 외부구입가치(중간재비용)를 뺀 것이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운수비용항목을 중심으로 가산법에 의하여 산정 하였음.

부가가치 = 인건비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 복리후생비 + 감가상각비 + 임차료 +세금.공과금 + 대손상각 + 국내선박 용선료 + 영업이익 + 납부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항목의 합계가 운수수입액 보다 큰 사례

(2) 부가가치 항목의 합계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사례

※ 부가가치는 조사표상의 부가가치 항목을 합산하여 기입하여야 함.

사. 유형고정자산

(1) 연간감가상각액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오기하는 사례

(2) 연말잔액 = 연초잔액 + 연간증가액 - 연간처분 및 손해액 (연간 감가상각액포함)의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사례

아. 중복조사

산하지방영업소를 본사와 중복조사하는 사례

(대한통운·한진·세방기업·동방 등은 서울 본사에서 일괄 조사함)

5. 조사표심사 및 정리요령

가. 공통사항

(1) 조사표가 오손되었을 때에는 다른 조사표에 옮겨 다시 작성한다.

(2) 조사표상의 숫자 기록이 정확한가를 검사한다.

(3) 업종(산업세세분류)별로 철해진 조사표가 조사표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매수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4) 사업체명부상 사업체 고유번호와 집계표 및 조사표상의 사업체 고유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5) 급여액은 종업원의 현실적인 급여수준에 미달되어서는 안되므로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을 계산하여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6) 조사표의 기재내용을 외부사람에게 알려서는 안된다.(통계법 참조)

(7) 대규모 사업체의 조사표는 항목간에 불균형이 없도록 전년도 자료와 대조하고 증감요인을 조사표 적요란에 상세히 기입한다.

나. 항목별 검토요령

(1) 사업체 개황

사업체명·대표자명·소재지·전화번호 등이 사업체명부상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사업체명부를 보완하였는가 확인한다.

(2) 조직형태

(가) "○"표된 란의 번호가 부호기입란의 조직형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나) 조직형태가 국가기관·공사·회사법인·기타법인 중에 해당되는 경우 『4.자본금 및 출자금』란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7의 (3)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3) 사업형태

반드시 주업종 1개에만 "○"표시되어 있는가 확인한다.

(4) 자본금 또는 출자금

단위가 천원임에 유의하고 조직형태와 연관하여 검토한다.

(5) 장비보유 현황

(가) 경과년수별 차량대수의 합계가 일치하는가 검토한다.

(나) 버스 및 택시 조사표는 기관별 차량대수와 형별차량대수가 일치하는가 검토한다.

(다) 선박의 경과년수별 척수합계와 기관별의 강선·목선·합성수지제선의 척수 합계가 일치하는지를 파악한다.

(6) 연간수송실적

(가) 단위가 천(명,Km,회,M/T)단위로 기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나) 수송총인원

여객운송업의 경우에만 기입되어야 한다.(화물운송업인 경우에는 『＼』 으로 표시)

(다) 총운행횟수

여객운송업의 경우에만 기입되어야 한다.(화물운송업인 경우에는 『＼』 으로 표시)

(라) 수송총톤수

화물운수업인 경우에만 기입되어야 한다.(여객운수업의 경우 『＼』 으로 표시)

(마) 수송총거리

여객 및 화물운송업 모두 기입되었는가 확인한다.

(7)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가) 종사자수

1) 기타 종업원수가 차량관계 종업원수 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확인하여 그 사유를 조사표 적요란에 기입한다,

2) 사업형태와 관련하여 직종별 종업원수를 검토한다.

예): 택시운송업의 경우에는 안내원 및 조수가 있을 수 없다.

3) 단순노무자수 = 연간급여총액 ÷ 1인일당 연평균 급여액 ÷300일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었는가 확인한다.

4) 보유차량대수와 관련하여 운전기사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5) 개인택시 및 개인용달의 경우에 운전기사를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란에 기입되었는가 확인한다.

6) 개별화물은 차량대수가 종사자수와 일치하여야 하며 종사자수는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란에 기입되었는가 확인한다.

(나) 연간급여액

1) 연간급여액 총계가『운수비용중 인건비』와 일치하였는가 확인한다.

2) 직종별로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을 산출하여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3) 종사자수 및 급여액에 있어서는 전체의 란을 가로·세로로 검토한다.

(8) 연간 운수수입 및 비용

(가) 운수수입

1) 차량 1대당 월평균 수입을 산출하여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2) 부가가치 항목의 합계가 운수수입보다 많을 경우에는 운수비용의 각 항목이 바르게 작성 되었는가를 검토한다.

(나) 운수비용

1) 기관별 차량대수와 연료비의 관계를 검토한다. 즉 디젤엔진인 경우에 비용중 경유란에 기입되었는가(휘발유엔진→휘발유, L.P.G엔진→L.P.G)를 검토한다.

2) 기관별(엔진별)차량 1대당 월평균 연료비를 산출하여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3) 누락시킨 항목이 있는가를 검토한다.

4) 소계·계·합계의 재검토 및 운수수입에서 운수비용의 합계를 차감하여 영업이익과의 일치여부를 검토한다.

5) 영업비용중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지불된 인건비·복리후생비·임차료(외국선박용선료 제외), 조세 등은 잡비로 처리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유형고정자산

1) 연말잔액이 다음 산식에 적합한가를 검토한다.

⑤연말잔액 = ①연초잔액 + ②연간증가액 - ③연간처분액 및 손해액 (연간감가상각액 포함)

2) 조사기간의 당해 년도 감가상각액이 기입되었는가를 검토한다.

3) 각 항목별로 가로·세로로 합계가 맞는지를 검토한다.

4) 겸업사업체에 있어서는 유형고정자산의 분할이 타당성있게 분리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버스 및 택시조사표 내검 및 제출

각 지방사무소에서는 각 시·도 버스 및 택시조합에서 조사한 조사표에 대하여 내검을 실시한 후 5월31일까지 조사관리과로 제출한다.

(1) 조사표 표지기입(9.조사표 제출요령 참조)

(2) 보완조사

조사표 표지상의 제출내역이 정확한가를 확인한 후 미조사 업체에 대해서는 각 시·도 버스 및 회사택시조합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업체명부를 입수하여 각 지방사무소에서 보완 조사토록 한다.

(3) 조사표 심사 및 정리 (버스 및 택시부문의 조사표 작성요령 참조)

(4) 집계표 작성 (6. 집계표 기입요령 참조)

(5) 증감요인 분석표 작성(증감요인 분석표 작성요령 참조)

(6) 부호기입(7. 부호기입 요령 참조)

라. '91년 운수업통계조사 증감요인 분석표 작성요령

(1) 시·도별, 업종별로 작성한다.

(2) 정확하고 타당성있는 증감요인을 파악하여 기입한다.

(3) 각 항목별 증감요인을 관련기관·협회 등에 문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91년도 운수업통계조사 증감요인 분석표

산업분류번호(　　)　　(　　)시·도

항　　목	'90	'91	단위	증 감 요 인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천명	
급 여 액			백만원	
운수수입			"	
운수비용			"	
부가가치			"	
종업원 1인당 연평균급여액			만원	
유형고정자산			백만원	

※1. 업종별은 산업세세분류별로 작성한다.

2. 각 항목별 증감요인을 관련기관·조합 등에 문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6. 집계표 기입 요령

가. 유의사항

(1) 집계표는 조사표의 내검 및 부호기입이 완전무결하게 이루어진 후에 시도별·업종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집계표상의 사업체 순서는 조사표철의 사업체순서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3) 업종별로 장을 달리하여 작성한다.

(4) 유고사업체는 기입하지 않는다.

(5) 개인택시 및 개인용달은 전수조사분과 분리하여 작성하되 "구분"란을 이용하여 개인택시·개인용달을 각각 시부와 군부별로 장을 달리하여 작성하며, 농산물창고도 "구분"란을 이용하여 전수와 표본업체를 구분하여 별도로 각각 작성한다. 그리고 겉표지에 전수·표본, 시부·군부를 표시한다. 또한, 개별화물도 "구분"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6) 개별화물은 한장에 별도로 작성하여 일반구역화물(60234)의 뒷장에 철한다. (별도증감요인 분석요)

(7) "구분"란의 부호기입요령은 『7.부호기입요령』을 참조한다.

나. 항목별 기입요령

(1) 난외사항

(가) 시·도부호는 『※ 시·도부호』를 참조한다.

(나) 해당 통계사무소 및 작성자 성명을 기입한다.

(다) 명부상 사업체수·신규·전입·유고 및 조사된 사업체수는 시도별, 업종별로 해당사항을 각각 기입한다.

(2) 난내사항

(가) 전산번호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나) 산업분류번호·사업체고유번호 및 사업체명은 조사표상의 해당사항을 각각 기입한다. 따라서 산업분류번호·사업체고유번호 및 사업체명은 사업체명부·조사표 및 집계표의 3종류에 기재된 내용과 모두 일치 하여야 한다.

(다) 『연말종사자수』·『급여액』·『운수수입』·『운수비용』·『연말유형고정자산』·『차량보유대수』·『선박척·톤수』 및 『보관창고수 및 면적』은 조사표상의 해당항목의 합계를 각각 기입한다.

(라) 차량보유대수는 조사표상의 해당 항목의 합계를 기입한다.
단, 시내버스는 좌석형·도시형, 택시는 중형·소형으로 구분한다.

(마) 부가가치는 납부부가가치세가 아니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그 합계를 기입한다.

※부가가치 = 인건비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 복리후생비 + 감가상각비 + 임차료 + 국내용선료 + 세금·공과금 + 대손상각 + 영업이익 + 납부부가가치세

(사) 선박 척·톤수는 수상운송업만 기입한다.

(3) 소계(888) 및 합계(999)기입요령

(가) 888 및 999란은 적색볼펜으로 기입한다.

(나) 1개업종이 1매로 끝날경우에는 아래로부터 둘째칸 888란에 해당장의 소계를 기입하고 첫째간 999란에 해당업종의 합계를 기입한다. 즉 1개업종이 1매로 끝날경우에는 소계(888)와 합계(999)의 수치는 동일하다.

(다) 1개업종이 2매이상으로 끝날경우에는 위와같은 방식으로 각장마다 소계(888)를 기입하고 마지막장에는 소계(888)와 함께 해당업종의 합계(999)도 기입한다.

※ 제출할 집계표 종류

(1) 시도별·업종별 집계표

(2) 개인택시 (시부·군부) 집계표

(3) 개인용달 (시부·군부) 집계표

(3) 농산물 창고 (전수·표본) 집계표

※ 시·도 부호

서울 11	인천 23	경기 31	충남 34	경북 37
부산 21	광주 24	강원 32	전북 35	경남 38
대구 22	대전 25	충북 33	전남 36	제주 39

7. 부호 기입 요령

가. 부호기입은 조사표·사업체명부·집계표가 완전히 작성된 후에 기입한다.

나. 부호기입은 모두 적색 PLUS PEN으로 정확하게 기입한다.

(1) 전산번호(집계표)

자료처리과에서 전산처리용으로 사용하는 번호이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2) 산업분류번호

조사항목 『3.사업형태』란에 "○"표시된 업종의 산업 세세분류번호를 기입한다.

※ 산업세세분류번호 및 사업형태

산업세세분류번호	사 업 형 태
60	육 상 운 수 업
6010	도시간 철도 운송업
60100	도시간철도운송업
6021	정기노선여객육상운송업
60211	구역내철도운송업
60212	시외버스운송업
60213	시내버스운송업
6022	비노선여객육상운송업
60221	택시운송업
60222	전세버스운송업

산업세세분류번호	사 업 형 태
6023	도로 화물 운송업
60231	노선 화물
60232	특수 화물
60233	전국 화물
60234	일반 구역 화물
60235	용달 화물
60236	장의차량 운영업
61	수 상 운 송 업
6110	해 상 운 송 업
61101	내항 여객
61102	내항 화물
61103	외항 여객
61104	외항 화물
6120	내 륙 수 상 운 송 업
61201	내륙 수상 여객
61202	내륙 수상 화물
61209	기타 내륙 수상
62	항 공 운 송 업
6210	정 기 항 공 운 송 업
62100	정기 항공
6220	부정기 항공기 운행사업

산업세세분류번호	사 업 형 태
62201	부정기 항공운송업
62202	항공기 임대사업
63	운 수 관 련 서 비 스 업
6301	화 물 취 급 업
63011	육상 화물 취급업
63012	수상 화물 취급업
6302	보 관 및 창 고 업
63021	보통 창고업
63022	냉장 창고업
63023	위험물품 보관업
63024	농산물 창고업
6302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6303	육 상 운 수 유 지 서 비 업
63032	여객 자동차 정류장업
63033	화물 자동차 정류장업
63034	유 료 도 로 운 영 업
6304	수 상 운 수 유 지 서 비 업
63042	수로 안내업
63043	선박 청소업
63044	선박 구난업

산업세세분류번호	사 업 형 태
6305	항공운수유지 서비스업
63052	항공기 취급업
63059	기타항공운수유지서비스업
6306	여 행 사 업
63061	여 행 사 업
6309	기타운수관련 서비스업
63091	화물운송 대행업
63092	선박 및 항공기중개업
63093	포장·검수 및 유사대리업

(3) 구분

구분란에는 개인택시·개인용달에 대한 시부·군부 및 농산물 창고업의 전수·표본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택시·개인용달 및 농산물창고 개별화물에 해당하는 조사표와 집계표 구분란에 다음과 같이 기입한다.

개인택시 [시부 - 1 / 군부 - 2]　　개인용달 [시부 - 3 / 군부 - 4]

농산물창고 [전수 - 5 / 표본 - 6]　　개별화물 - 7

(4) 사업체고유번호

가) 사업체명부상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이기한다.

나) 표본조사인 개인택시 및 개인용달은 사업체 고유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농산물창고업은 사업체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기입한다.

다) 버스 및 택시조합분도 사업체 명부를 활용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5) 행정구역번호

사업체 소재지의 행정구역번호를 사업체명부·조사표에 일치하게 기입한다.

(6) 조직형태

조사항목 『2.조직형태』란에 "○"표시된 조직형태의 해당번호를 기입한다.

. 국가기관 - 1 . 공사 - 2 . 회사법인 - 3

. 기타법인 - 4 . 개인 - 5

8. 지역소득추계조사표 기입요령

가.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지역별 주민소득 추계계획의 일환으로 운수업부문의 총생산액 및 부가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지역별 운수수입·피용자보수·감가상각비를 파악코자함.

(2) 조사대상(22개업종)

. 도시간철도	. 노선화물	. 특수화물	. 용달화물(개인제외)
. 내항여객	. 내항화물	. 외항여객	. 내항화물
. 내륙수상여객	. 내륙수상화물		. 기타내륙수상운송업
. 육상화물취급업	. 수상화물취급업		. 유료도로
. 수로안내업	. 선박청소업		. 선박구난업
. 여행사업	. 화물운송대행업		. 선박중개업
. 농산물창고업(개인제외)			. 보통창고업

(3) 조사방법 : 동 운수업통계조사와 병행조사 실시

나. 조사표 기입요령

(1) 조사표작성시 유의사항

(가) 조사표상의 운수수입·피용자보수(인건비·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및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및 감가상각비의 지역별 합계 금액은 운수업통계조사표상의 해당항목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조사표상의 모든 조사항목은 해당지역별로 기입한다.

(다) 각 사업체의 운수업부문의 영업소·수리공장·지사·사무소·출장소 등에서 발생된 것은 해당지역에 포함시켜 작성한다.

(라) 해외부문은 2개이상의 국가에 취항하여 얻은 운수수입 중 국내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국내 지역구분이 곤란한 경우 해외에 기입한다.

(2) 조사항목별 기입요령

업종의 특성상 2개 이상의 지역(시·도)이 서로 연계되어 있거나 회계계정이 본사계정으로 일괄 처리되어 지역별 금액자료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는 다음의 산식을 이용하여 지역별로 배분 기입한다.

(가) 운수수입 : 운수업통계조사표상의 운수수입(영업수입)을 지역별로 기입한다.

$$\text{지역별 운수수입} = \text{총운수수입} \times \frac{\text{지역내승객인원(지역내화물톤수)}}{\text{총 승객인원(총 화물톤수)}}$$

(나) 피용자보수 : 운수업 통계 조사표상의 인건비·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및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을 지역별로 기입한다.

$$\text{지역별 피용자보수} = \text{총피용자보수} \times \frac{\text{지역내종사자원수(지역내급여액)}}{\text{총 종사자수(총 급여액)}}$$

(다) 감가상각비 : 운수업 통계 조사표상의 운수비용 중 감가상각비를 지역별로 기입한다.

$$\text{지역별 감가상각비} = \text{총 감가상각비} \times \frac{\text{지역별 유형고정자산}}{\text{총 유형고정자산}}$$

9. 조사표류 제출요령

가. 조사표 편철

(1) 전수조사

작성완료된 조사표는 시도별·업종별·사업체 고유번호 순으로 철한다.

(2) 표본조사

(가) 개인택시 및 용달

시도별·업종별·시부·군부로 분리하여 각각 1권으로 철한다.

(나) 농산물 창고업

시도별로 전수·표본을 분리하여 철한다.

(3) 지역소득추계 조사표

별도 철하여 제출한다(버스 및 택시조합분도 같음)

나. 조사표지 기입요령

(1) 버스 및 택시운송업

(가) 각 시도 버스 및 택시조합에서 조사된 조사표는 심사 및 정리, 요계표작성, 부호기입을 완료한후 5.31일까지 제출한다.

(나) 만약 미조사된 사업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 조사한다.

(2) 편철이 완료된 조사표는 요계표, 사업체명부(표본조사용 사업체명부 포함) 및 증감요인 분석표와 함께 5.31일까지 중앙에 제출한다.

※ 중앙심사결과 미비조사표로 지적된 조사표는 접수 즉시 신속히 재조사하여 중앙에 제출한다.

10. 산업분류 신·구 비교표

구 산 업 분 류		신 산 업 분 류	
분 류	분 류 명	분 류	분 류 명
7	운수·창고 및 통신업(I)	I	운수·창고 및 통신업(7)
71	운수·창고업(60, 61, 62, 63)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1)
711	육상운수업 (601, 602)	601	도시간 철도 운송업(711)
7111	철도운수업 (6010, 6021)	6010	도시간 철도 운송업(7111)
71111	시외철도 운수업(60100)	60100	도시간 철도 운송업(71111)
71112	시내철도 운수업(60211)		
		602	기타 육상 운송업(711)
7112	노선여객 자동차운송업(6021)	6021	정기노선여객육상운송업(7112)
		60211	구역내 철도 운송업(71112)
71121	고속버스 운송업(60212)	60212	시외버스 운송업(71121, 71122)
71122	시외버스 운송업(60212)		
71123	시내버스 운송업(60213)	60213	시내버스 운송업(71123)
71129	달리분류되지않은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업(60219)	60219	달리분류되지않은 노선여객 육상운송업(71129)
7113	기타 육상운송업 (6022)	6022	비노선여객 육상운송업(7113)
71131	택시운송업(60221)	60221	택시운송업(71131)
71132	전세버스 운송업(60222)	60222	전세버스 운송업(71132)
7113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육상 여객 운송업(60229)	60229	달리분리되지않은 비노선여객 육상운송업(71139)

구 산 업 분 류		신 산 업 분 류	
분 류	분 류 명	분 류	분 류 명
7114	도로화물 운송업(6023)	6023	도로화물 운송업(7114)
71141	노선화물 운송업(60231))	60231	정기노선 도로화물 운송업(71141)
71142	특수화물 운송업 (60232)	60232	특수화물 자동차운송업(71142)
71143	일반구역화물 운송업(60233, 60234)	60233	일반 전국화물 자동차운송업(71143)
		60234	일반 구역화물 자동차운송업(71143)
71144	용달화물 운송업(60235)	60235	일반구역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업(71144)
71145	장의차량 운송업(60236)	60236	장의차량 운영업 (71145)
71149	달리분류되지않은 도로화물 운송업 (60239)	60239	달리분류되지않은 도로화물 운송업(71149)
		603	파이프라인 운송업 (711)
7115	파이프라인 운송업(6030)	6030	파이프라인 운송업(7115)
71150	파이프라인 운송업(60300)	60300	파이프라인 운송업(71150)
7116	자동차 정류장업(6303)		
71161	여객자동차 정류장업(63032)		
71162	화물자동차 정류장업(63033)		
7117	육상운수 보조서비스업(6303)		
71171	유료도로 운영업(63034)		
71172	주차장 운영업 (63035)		

구 산 업 분 류		신 산 업 분 류	
분 류	분 류 명	분 류	분 류 명
71173	차량 임대업 (71111)	71111	운수장비 임대업 : 대상외
71174	육상하역업 (63011)		
71179	달리분류되지않은 육상운수 보조서비스업 (63039)		
		61	수상운송업(71)
712	수상운수업 (611)	611	해상운송업(712)
7121	해상운송업 (6110)	6110	해상운송업(7121)
71211	내항여객 운송업(61101)	61101	내항여객운송업(71211)
71212	내항화물 운송업(61102)	61102	내항화물운송업(71212)
71213	외항여객 운송업(61103)	61103	외항여객운송업(71213)
71214	외항화물 운송업(61104)	61104	외항화물운송업(71214)
71219	달리분류되지않은 해상운송업 (61109)	61109	달리분리되지않은 해상운송업 (71219)
		612	내륙수상운송업(712)
7122	내륙수상운송업(6120)	6120	내륙수상운송업(7122)
71221	내륙수상여객운송업(61201)	61201	내륙수상여객운송업(71221)
71222	내륙수상화물운송업(61202)	61202	내륙수상화물운송업(71222)
71229	달리분리되지않은 내륙수상 운송업(61209)	61209	달리분류되지않은 내륙수상 운송업(71229)
7123	수상운수보조서비스업(6304)		
71231	수로안내업(63042)		

구 산 업 분 류		신 산 업 분 류	
분 류	분 류 명	분 류	분 류 명
71232	선박청소업(63043)		
71233	수상화물 하역업(63012)		
71234	항만시설 운영업(63041)		
71235	선박구난업(63044)		
71236	선박임대업(71120)	71120	수상운수장비 임대업:대상외
71239	달리분류되지않은 수상운수 보조 서비스업(63049)		
		62	항공운수업(71)
713	항공운수업(621, 622)	621	정기항공 운송업(713)
7131	항공운송업(6210, 6220)	6210	정기항공 운송업(7131)
71310	항공운송업(62100, 62201)	62100	정기항공 운송업(71310)
		622	부정기항공운송업(713)
		6220	부정기 항공기 운행사업(7132)
		62201	부정기 항공 운송업(71320)
		62202	항공기 임대사업(71320)
7132	항공운수 보조서비스업(6220)		
71320	항공운수 보조서비스업(62201, 62202, 63052, 63059)		

구 산 업 분 류		신 산 업 분 류	
분 류	분 류 명	분 류	분 류 명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 (71)
719	운수관련 서비스업(630)	630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 (719)
		6301	화물취급업(71233)
		63011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71174)
		63012	수상화물 취급업(71233)
7191	운수부대서비스업		
71911	화물운송대행업(63091)		
71912	여행알선업(63061)		
71913	화물중개업(63092)		
71914	선박 및 항공기중개업(63093)		
71915	포장·검수 및 유사 서비스업 (63094)		
71919	달리분류되지않은 운수부대 서비스업(63099)		
7192	보관 및 창고업(6302)	6302	보관 및 창고업(7192)
71921	보통 창고업(63021)	63021	보통 창고업(71921)
71922	냉장 창고업(63022)	63022	냉장 창고업(71922)
71923	위험물 창고업(63023)	63023	위험물품 보관업(71923)

구 산 업 분 류		신 산 업 분 류	
분 류	분 류 명	분 류	분 류 명
71924	농산물 창고업(63024)	63024	농산물 창고업(71924)
71929	달리분류되지않은 보관 및 창고업(63029)	63029	달리분류되지않은 보관 및 창고업(71929)
		6303	육상운수 유지 서비스업(7117)
		63031	철도운수유지 서비스업
		63032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 운영업(71161)
		63033	화물자동차 터미널시설 운영업(71162)
		63034	유료도로 운영업(71171)
		63035	주차장 운영업(71172)
		63039	달리분류되지않은 도로운수 유지 서비스업(71179)
		6304	수상운수 유지 서비스업(7123)
		63041	항구 및 기타해상 터미널시설 운영업(71234)
		63042	수로안내(도선)업 (71231)
		63043	선박 청소업(71232)
		63044	선박 구난업(71235)
		63049	달리분류되지않은 수상 운수 유지 서비스업 (71239)

구 산 업 분 류		신 산 업 분 류	
분 류	분 류 명	분 류	분 류 명
		6305	항공운수유지서비스업(7132)
		63051	항공터미널 시설운영업(71320)
		63052	항공기 지상 관리 서비스업(71320)
		63059	달리분류되지않은 항공 운수유지 서비스업(71320)
		6306	여행사 및 기타여행 보조업
		63061	여행사업(71912)
		63069	달리분류되지않은 여행사업
		6309	기타 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63091	화물운송 대행업(71911)
		63092	화물·중개 및 대리업(71913)
		63093	선박 및 항공기 중개업(71914)
		63094	포장·검수 및 유사대리업(71195)

<부 록> 한국표준산업분류

(1991.9.9 제6차 개정)

대분류 I. 운수, 창고 및 통신업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S)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각종 운수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활동과 창고 및 및 기타 운수관련 서비스 및 통신활동이 포함된다.

●운수업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철도, 도로, 수상 및 항공운수 시설에 의하여 일정노선 유무를 불문하고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과 터미널시설 제공, 화물운송 대리, 여행알선, 화물창고운영 등의 운수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통신업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 및 우편화물의 접수, 운반, 배달하는 우편사업과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 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이 분류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특정산업활동에 결합된 운송활동은 그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되나,동일기업체를 위한 장거리운송, 하역,육상운수, 파이프라인 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운수업에 분류된다.

나.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국 또는 스튜디오 (9213)

다.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을 제외한 운수장비의 수리 및 개조활동 (35)

라. 도로, 철도, 항구, 비행장등의 건설, 유지수선활동 (4522)

마.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의 유지, 수리활동은(5020) 또는 (5040) 에 각각 분류

바. 운전자 또는 조작자없이 운수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운수장비의 종류 종류에 따라 (711) 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LAND TRANSPORT ; TRANSPORT VIA PIPELINES)

601 도시간 철도운송업(Transport via railways)

6010 도시간 철도운송업(Transport via railways)

60100 도시간 철도운송업(Transport via railways)

도시간 또는 교외간 철도차량에 의해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철도차량 견인 및 전철활동 등 관련활동이 포함된다.

<포 함>

. 도시간 철도운송

. 여객철도우송 : 도시간

· 화물철도우송 : 도시간

· 냉동 또는 냉장품 화물 철도운송

· 액체 또는 가스화물 철도운송

· 콘테이너 화물 철도운송

· 철도화물운송

<제 외>

· 독립적인 침대차운영 (5510)

· 호텔운영 (5510)

· 독립적인 식당차운영 (5521)

· 도시내 철도운송 (6021)

· 수상운송 (61)

· 철도운수 관련서비스 (630)

· 철도차량의 유지 및 단순한 보수 (6303)

· 통신서비스 (6420)

602 기타 육상운송업(Other land transport)

이 분류에는 도로운송시설, 구역전철, 케이블카등을 포함한 각종 육상운송시설 (도시간 철도 제외)에 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도로 차량의 유지, 보수 (50)

· 육상운송 보조활동 (6301)

6021 정기노선여객 육상운송업(Other scheduled passenger land transport)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도시내 및 도시간 육상운송시설 (도시간 철도운송업 제외)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운송활동은 여객버스, 삭도차량, 무궤도전차, 도시내 철도 등에 의하여 수행된다.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버스, 공항버스,노선관광버스, 케이블카 등에 의한 운송활동이 포함된다.

60211 구역내 철도운송업 (Urban railway transport)

철도차량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내 또는 도시구역내에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지역내 철도운송

· 시내 철도운송

· 지하철 운송 : 도시내

· 전기철도 운송 : 도시내

60212 시외버스 운송업(Inter-urban highway bus passenger transport)

시내버스를 제외하고 도시간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로 버스를 운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시외 정기노선 운송, 여객

· 도시간 정기 여객 운송

· 시외버스 운송

· 정기노선 여객버스 운송

· 직통 여객버스 운송

· 도시간 노선버스 운송

· 도시간 고속버스 운송

· 정기 고속노선 도로 운송

· 고속버스 운행

60213 시내버스 운송업(Urban bus passenger transport)

일정한 도시 또는 읍면의 한정 구역내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로 버스를 운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항버스 및 특정구역 정기순환 미

니버스와 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정구간을 정기적으로 순환하는 운송시설 운영활동이 포함된다.

<포 함>

- 시내 및 교외 정기노선 운송
- 구역내 노선 여객버스운송
- 노선 여객버스운송 : 도시내, 구역내
- 시내 노선버스운송
- 정기순회 미니버스 운영
- 공항버스 운영

60219 달리분류되지않은 노선여객 육상운송업(Other scheduled passenger land transport,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노선여객 육상운송업으로, 무궤도 고가차량, 케이블카, 삭도차량등의 교통수단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내 여객운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무궤도 고가차량 여객운송 : 정기노선
- 케이블카 여객운송 : 정기노선
- 삭도차량 여객운송 : 정기노선
- 관공구역내 정기순환 여객운송
- 학교버스 운영, 대리

<제 외>

· 관광지 또는 유흥목적으로 운행되는 삭도시설 운영 (92499)

6022 비노선여객 육상운송업(Other non-scheduled passenger land transport)

일정한 운행노선을 정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택시, 운전자가 딸린 차량 임대, 전세버스, 유람용 및 기타 수시운행 차량, 인력견인 또는 동물견인차량 등에 의하여 수시로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엠블런스의 운영 (8519)

60221 택시 운송업(Taxicab transport)

소형 또는 중형 승용차에 의하여 통상 주행거리 또는 주행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승용차 임대 (운전자 딸린)

· 택시 운송 : 비노선

· 소형 또는 중형 승용차 운송 : 비노선

60222 전세버스 운송업(Charterbus transport)

일정한 노선없이 수시 계약에 의하여, 버스를 운행하며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버스 임대 (운전자 딸린)

· 비노선버스 운영 : 여객

· 전세버스 운영

60229 달리분류되지않은 비노선여객 육상운송업(Other non-scheduled passenger land transport,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비노선여객 육상운송업으로, 일정한 노선없이 동물견인차량, 인력견인차량 등에 의한 여객운송 산업을 말한다.

<포 함>

· 인력견인차량 운영 : 여객운송

· 동물견인차량 운영 : 여객운송

· 비동력차량 운영 : 여객운송

6023 도로화물 운송업(Freight transport by road)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도로화물차량에 의하여, 각종화물을 운송하는 활동으로서 원목,가축, 냉동화물,중기, 벌크화물,가구 등 다양한 화물운송활동이 포함되며, 인력견인 또는 동물견인차량에 의한 화물운송과 운전자가 딸린 화물차량의 임대활동이 포함된다.

<제 외>

· 화물 터미널 운영 (6303)

· 운송용 화물 포장 및 검사 (6309)

· 우편물 도로운송 (641)

60231 정기노선 도로화물 운송업(Freight transport regularly scheduled)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각종 도로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0232 특수화물 자동차 운송업(Special freight transport non-regularly scheduled)

일정한 노선을 정하지않고 부정기적으로 특정화물 운송에 적합한 특수장치를 설비한 냉동차량, 콘테이너차량,탱크차량,크레인 및 기타 특수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구역간 또는 구역내 각종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차량구난 및 견인차량의 운영도 여기 포함된다.

〈포 함〉

- 특수화물 운송업
- 냉장, 냉동화물 운송
- 콘테이너화물 운송
- 탱크로리 운송
- 벌크화물 운송
- 덤프트럭화물 운송
- 원목 운송
- 차량, 중기화물 운송
- 액체화물 운송
- 포크레인 화물 운송
- 액체 및 가스 도로 운송
- 현금 및 귀금속 도로 운송
- 자동차 견인 운송

<제 외>

· 벌목장내의 원목운반 (02020)

· 정기노선 도로화물 운송(60231)

60233 일반 전국화물 자동차 운송업(General whole country freight transport)

정기노선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운행구간으로 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0234 일반구역 화물 자동차 운송업(General local freight transport)

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정기노선을 정하지 않고, 적재 정량이 1 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일반구역화물 운송

· 비노선 일반구역화물 운송

<제 외>

· 특수화물 부정기운송, 구역내 또는 구역간 (60232)

60235 일반구역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업(General local cargo pick-up and delivery transport)

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노선을 정하지 않고, 적재 정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용달화물 운송, 구역

60236 장의차량 운영업(Hearse operation)

시체를 운구할 수 있는 특수한 설비를 갖춘 장의차량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장의차량 운영

<제외 >

· 묘지개발 및 분양 (70123)

· 장의사가 운영하는 장의차량 (93031)

· 상여 등으로 시체만 운구하는 활동 (93031)

60239 달리분류되지않은 도로화물 운송업(Freight transport by road,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도로화물 운송업으로 동물견인차량, 인력견인차량 등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동물견인차량 운영 : 화물

· 인력견인차량 운영 : 화물

· 비동력 차량 운송 : 화물

<제 외>

· 포터 및 지게 등 인력에 의한 수화물 운반 (93099)

603 파이프라인 운송업(Transport via pipelines)

6030 파이프라인 운송업(Transport via pipelines)

60300 파이프라인 운송업(Transport via pipelines)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가스, 액체 및 기타 상품을 파이프라인에 하여 운송하는 산업활동으로서,이들 상품용 펌프장 운영과 파이프라인 유지관리활동도 포함한다.

<포 함>

- 파이프라인 운송업
- 가스운송 : 파이프라인
- 액체운송 : 파이프라인
- 파이프라인 유지관리
- 펌프장 운영, 파이프라인 운송상품용
- 파이프라인 연료운송
- 파이프라인 상품운송

<제 외>

- 가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자영 공급 : 배관 (40201)
- 증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자영 공급 : 배관 (40300)
- 수도 자영 공급 : 배관 (41000)
- 특정산업에 관련된 배관시설 운영은 그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61 수상운송업(WATER TRANSPORT)

노선 또는 정기여부를 불문하고 여객 또는 화물을 수상운송설비에 의하여 운송하는 활동으로서 견인보트, 관광 또는 순항보트, 유람선 또는 광선, 수상택시 등의 운영활동이 포함된다.

<제 외>

- 선상에서 독립적으로 음식점 및 주점 운영활동은 (552)에 분류되나, 운송활동에 결합, 운영되는 경우는 운송업 분류
- 화물의 적재 및 하역, 보관, 부두운영과 도킹, 수로안내 (도선), 선박구난활동 및 구난선 운영 등의 기타 수상운송 보조활동은 (6304)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된다.

611 해상운송업(Sea and coastal water transport)

6110 해상운송업(Sea and coastal water transport)

연근해 및 원양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대 호수내의 수상운송도 포함된다.

<제 외>

- 항만내의 수상운송 (612)

61101 내항여객 운송업(Coastal water passenger transport)

국내항 간에 선박을 취항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여객수상 운송 : 국내항간

· 수상여객 운송 : 국내항간

· 내항여객선(박) 임대 (승무원 딸린)

<제 외>

· 내항 화물선(박) 임대 (승무원 딸린) (61102)

· 연안 순항 여객선 운영 (항간이동 제외) (61109)

61102 내항화물 운송업(Coastal water freight transport)

국내항 간에 선박을 취항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수상운송 : 국내화물

· 내항화물운송

· 화물수상운송 (국내항)

· 내항화물 선박 임대 (승무원 딸린)

61103 외항여객 운송업(Deep sea foreign passenger transport)

외국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외항여객 운송업

· 여객수상 운송 : 외국항로

· 외항 선박 여객 운송업

· 외항여객 선박 임대 (승무원 딸린)

61104 외항화물 운송업(Deep sea foreign freight transport)

외국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외국화물 운송

· 화물 수상 운송 : 외국항로

· 외항 냉장 및 냉동품 운송업

· 외항 액체 및 가스선박 운송업

· 외항 콘테이너 선박 운송업

· 외항 선박 화물운송업

· 외항 화물선박 임대 (승무원 딸린)

61109 달리분류되지않은 해상 운송업(Sea and coastal water transport,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해상 운송업으로, 해상 유람선 임대 (조종사 딸린), 예인선 운영 등이 포함된다

<포 함>

· 예인선 운영 : 공해, 근해상

· 유선업 운영 : 연안 (항간이동 제외)

· 유람선 임대 (조종사 딸린), 해상

〈제 외〉

· 항만내 수로여객 운송 (61201)

· 내륙수로상의 예인선 운영 (61209)

· 항구내의 거룻배 운영 (61209)

· 조난선의 구조예인선 (63044)

612 내륙수상 운송업(Inland water transport)

6120 내륙수상 운송업(Inland water transport)

강, 운하, 항만내 수로에서 보트, 거룻배, 예인선, 바지선, 관광선, 수상택시 등의 각종 선박에 의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 여객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1201 내륙수상 여객운송업(Inland water passenger transport)

강, 운하, 항만내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 항간 이동 여객운송을 위한 각종 선박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내륙수상 여객운송

· 여객운송, 강, 운하, 항만내

· 내륙선박 여객운송업

· 관광선 운영, 내륙 항간이동

· 내륙여객선 임대 (승무원 딸린)

61202 내륙수상 화물운송업(Inland water freight transport)

강, 운하, 항만내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 화물운송을 위한 각종 선박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내륙수상 화물운송
- 수상화물운송, 강, 운하, 항만
- 내륙화물선박 임대업 (승무원 딸린)
- 내륙수상 냉장 및 냉동품 운송업
- 내륙수상 액체 및 가스 운송업

61209 달리분류되지않은 내륙수상 운송업(Inland water transport,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내륙수상 운송업으로 내륙수로 유람선 임대 (조종사 린), 예인선운영 및 유선업 등이 포함된다.

<포 함>

- 예인선 운영, 내륙수상
- 유선업 운영, 내륙수상
- 내륙선박 견인 및 예인 서비스업
- 수상택시 운영
- 유람선, 내륙수상
- 유람선 임대 (승무원 딸린), 내륙수상

<제 외>

- 하역업체가 거룻배를 운영할 경우 (63012)

62 항공 운송업(AIR TRANSPORT)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항공기 또는 항공기 엔진의 분해·수리활동 (3530)
- 우편물 항공 운송활동 (641)

621 정기 항공 운송업(Scheduled air transport)

6210 정기 항공 운송업(Scheduled air transport)

62100 정기 항공 운송업(Scheduled air transport)

일정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면서 국내·외 항공여객,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정기 항공 운송
- 항공여객 운송
- 항공 화물 운송
- 항공 화물 운송,정기

622 부정기 항공기 운행사업(Non-scheduled air transport and airplane-rental with operator)

6220 부정기 항공기 운행사업(Non-scheduled air transport and airplane-rental with operator)

부정기적으로 항공 여객 또는 화물운송 사업과 조종사가 딸린 항공기를 운송 이외의 목적에 주로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2201 부정기 항공 운송업(Non-scheduled air transport)

부정기적으로 항공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항공여

객 또는 화물운송을 위한 항공기 임대 (조종사 딸린)와 우주선에 의한 운송활동도 여기에 분류된다.

<포 함>

- 부정기 항공 운송
- 항공화물 운송 : 부정기
- 항공여객 운송 : 부정기
- 우주선 운행
- 운송 항공기 임대 : 조종사 딸린

62202 항공기 임대사업(조종사 딸린) (Air plane rental with operator)

조종사가 딸린 항공기운송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대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항공 광고대행용 항공기 임대 (조종사 딸린)
- 항공 약품살포용 항공기 임대 (조종사 딸린)
- 항공측량용 항공기 임대 (조종사 딸린)
- 조종사훈련용 항공기 임대 (조종사 딸린)
- 항공 방제용 항공기 임대 (조종사 딸린)
- 항공 촬영용 항공기 임대 (조종사 딸린)
- 보도비행용 임대
- 시설물 순시 비행용 임대

<제 외>

- 항공기를 이용하여 직접 특정용역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용역사업 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SUPPORTING AND AUXILIARY TRANSPORT ACTIVITIES : ACTIVITIES OF TRAVEL AGENCIES)

각종 화물취급,보관 및 창고시설 운영,운수사업 유지 서비스,여행알선 및 대리 서비스,운수관련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운전사 알선 및 대리 (7491)
- 승용차 임대, 운전사 없이 (7111)

630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Supporting and auxiliary transport activities ; activities of travel agencies)

6301 화물 취급업(Cargo handling)

운송수단을 불문하고, 화물 또는 여행자 수화물을 운송장비에 적재 또는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3011 항공 및 육상화물 취급업(Air freight and land freight handling)

철도, 도로 등 각종 육상 운송장비에 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항공화물 취급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 화물 취급업, 육상
- 화물 하역업, 육상 (도로, 철도)
- 화물 취급업, 항공
- 하역업, 육상화물
- 하역업, 항공화물

63012 수상화물 취급업(Water freight handling)

항구내에서 선박과 부두, 선박과 선박간에 직접 화물을 운반하여 이를 선적 또는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화물 취급업, 수상
- 하역업, 수상화물

6302 보관 및 창고업(Storage and warehousing)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가구,자동차,목재, 가스 및 유류, 화학물, 석유,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관세부과 지역에 설치되는 무역상품 보관시설 운영활동이 포함되며, 이러한 보세 창고는 보세물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세분항목에 분류한다.

<제 외>

- 벌크상태의 천연 또는 제조가스 저장 시설 운영 (4020)
- 주차시설의 운영 (6303)
- 은행의 안전예금금고 서비스 (6719)
- 영화필름 및 영화용 비데오테이프 보관 (9211)
- 세탁소에서의 의복보관 (9301)
- 수화물 임시보관소 (9309)

63021 보통창고업(General warehousing)

물자의 보관을 위하여 특수한 시설이 없이 보통 상온에서 저장이 가능한 물자를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보관 창고 운영
- 일반물품 보관 창고 운영

63022 냉장 창고업(Refrigerated warehousing)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포 함 >

- 냉장창고 운영
- 얼음보관소 운영
- 냉장 및 냉동품 창고 운영
- 냉동식품 보관
- 냉동물품 보관

< 제 외 >

- 냉장 또는 냉동물의 보관 목적이 아니고, 수수료에 의하여 위탁된 물품의 냉동처리 활동을 주로할 경우(15489)

63023 위험물품 보관업 (Dangerous goods warehousing)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 등 안전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물품을 저장탱크 또는 야적장에서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가스성 화물 보관소
- 화학물 창고 운영
- 가스포장 화물 창고 운영
- 액체 인화물 보관소
- 위험물 창고 운영
- 가스포장 화물 창고 운영

63024 농산물 창고업(Farm product warehousing)

곡물 및 기타 농산물을 주로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식품의 벌크상 또는 포장여부를 불문한다.

<포 함>

- 곡물 창고 운영
- 농산물 보관 운영

63029 달리분류되지않은 보관 및 창고업(Storage and warehousing,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보관 및 창고업으로 차량 장기보관소 운영,목재하치장(수면목재창고 포함),각종 물품의 야적장 운영활동 등이 포함된다. 다만 비축시설 운영업은 비축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적합한 항목에 분류 된다.

<포 함>

- 목재 하치장 운영
- 수면 목재 창고 운영

· 일반 물품 보관 야적장 운영

· 주류 보관 창고 운영

· 차량 보관소 운영

<제 외>

· 위험물 보관시설 운영 (63023)

6303 육상운수 유지 서비스업(Other supporting transport activities)

63031 철도 운수유지 서비스업(Supporting, railway transport activities)

도시내 또는 도시간 철도운송에 관련된 여객 또는 화물터미널 시설운영 및 기타 철도 운수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철도차량 정류장 운영

· 철도여객 터미널 운영

· 철도화물 터미널 운영

· 철도차량 주차장 운영

· 철도운수 유지 서비스

63032 여객 자동차 터미널시설 운영업(Operation of passenger terminal facilities)

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 운영

· 자동차 정류장 운영 : 여객

· 버스 정류장 운영 : 여객

<제 외>

· 주차장 운영 (63035)

· 매표소(승강장) 운영 (63069)

63033 화물자동차 터미널시설 운영업(Operation of freight terminal facilities)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자동차 정류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화물 자동차 터미널시설 운영

· 자동차 정류장 운영 : 화물

63034 유료도로 운영업(Operation of tall road)

유료도로, 터널, 교량 등의 설비를 수수료를 받고 관리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고가로 운영, 유료

· 교량 운영, 유료

· 터미널 운영, 유료

63035 주차장 운영업(Operation of vehicle parking facilities)

유개 또는 무개를 불문하고,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시간 주차시키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주차장 운영

<제 외>

· 차량 장기보관소 운영 (63029)

63039 달리분류되지않은 도로운수 유지 서비스업 (Supporting land transport activities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도로운수 유지 서비스업으로서, 기타 도로 운수유지, 보조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포 함>

· 도로 운수유지 서비스, 기타

<제 외>

· 자동차 세차업 (50203)

· 도로 차량점검 유지 서비스 (5020)

6304 수상운수 유지 서비스업(Supporting water transport activities)

6304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업 (Operation of harbour and water terminal facilities)

항구, 선창, 도크, 잔교 및 기타 해상 터미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항만시설 운영

·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

63042 수로 안내(도선)업(Pilotage)

항구내 또는 항구외로 선박을 인도하거나 항해 위험지구에서 수로안내 활동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수로 안내 및 정박서비스

63043 선박 청소업(Shipboard cleaning)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선박갑판 및 탱크 등의 청소, 살균, 훈증 소독, 해충구제 및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선박청소 서비스

· 선박소독 및 해충구제 서비스

63044 선박 구난업(Vessel salvage)

원양 및 근해 또는 내륙수로에서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63049 달리분류되지 않은 수상운수 및 관련유지 서비스업(Supporting water transport activities n.e.c.)

달리분류되지 않은 수상운수 및 관련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등대운영
- 운하운영
- 항해조력 서비스
- 수로, 갑문 운영
- 항해 보조 서비스

<제 외>

- 해상터미널시설 운영 (63041)

6305 항공운수유지 서비스업(Supporting air transport activities)

63051 항공터미널 시설(Operation of air terminal facilities)

항공여객 또는 화물의 승강, 적하를 위하여 항공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공항운영 서비스업
- 항공터미널 시설 운영

63052 항공기 지상 관리 서비스업(Ground management of airplane)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지상에서 항공기 예인, 격납고 서비스,

청소 및 관리서비스, 급유점검 및 경상유지 수리 등의 착륙한 기체관리에 관련된 지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항공화물 하역 및 적재활동 (63011)

63059 달리분류되지 않은 항공운수 유지서비스업(Supporting air transport activities, n.e.c.)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항공운수 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공항설비 운영 서비스 : 항공터미널 제외
- 기권운수 보조 서비스
- 공항지상 서비스
- 비행 관제탑 운영 서비스
- 비행관제 서비스
- 항공교통통제 서비스

<제 외>

· 무선표지 및 레이더 통신소 (6420)

6306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 (Activities of travel agencies and tour operators ; tourist assistance activities)

여행자 및 관광객을 위하여 여행정보, 조언 및 여행일정 계획 등 여행 관련 서비스제공, 숙식 및 운송을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행자 안내활동과 매표 대리활동도 포함된다.

<포 함>

· 여행대리
· 여행사 운영
· 여행안내
· 숙식알선
· 매표대리
· 여행알선 및 여행사 운영
· 관광안내 서비스

63061 여행사업(Activities of travel agencies)

국내외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관련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포 함>

· 여행 대리업
· 여행사 운영업

· 여행 알선업

· 국내 여행사 운영

· 국외 여행사 운영

· 일반 여행사 운영

· 관광 알선업

· 관광 대리업

63069 달리분류되지않은 여행알선업(Activities of travel agencies,n.e.c.)

달리분류되지않은 여행알선업으로서, 여행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여행자 안내활동, 매표대리활동, 음식안내활동 등 특정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관광 안내소

· 매표대리

· 여행자 안내 서비스

· 카풀체계 운영

· 숙식 알선

6309 기타 운수관련 대리 서비스업(Other service allied to transport agency)

화물운송대리 및 중개, 통관업무대리, 선박 및 항공기 중개, 화물포장 및 검수 등 화물운송에 관련된 대리 또는 중개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3091 화물운송 대행업(Freight forwarding)

직접 화물운수 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각종 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화물운송 대리

63092 화물중개 및 대리업 (Freight brokerage and agency)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운송에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통관 및 관세 중개 서비스, 화물증서 결산 및 화물요금 공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통관 서비스
· 관세 중개
· 화물요금 결산대리
· 화물대리
· 화물중개
· 화물수송 알선
· 통관기록 작성
· 화물증서 작성 및 결산
· 화물운임 정보 서비스

<제 외>

· 화물운송 대행 (63091)

63093 선박 및 항공기 중개업 (Ship and aircraft brokerage and similar services)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항공기의 임대 및 판매에 관련하여 이를 중개 또는 알선해 주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선박 임대 중개

· 선박매매 알선

· 항공기 임대 중개

· 항공기 매매 알선

<제 외>

· 선박임대, 조종사 딸린 (61)

· 항공기 임대, 조종사 딸린 (62)

63094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 (Freight packing, crating, inspection and similar services)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운수화물 포장, 검수, 형량 및 유사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 화물 포장, 운수관련

· 화물 검수, 운수관련

· 화물 형량 및 유사 서비스, 운수관련

<제 외>

· 제품 포장 (74950)

· 계량 서비스 (74994)

630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운수관련 대리업(Other service allied to transport agency,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운수부대 서비스업으로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가축운송에 따른 임시가축 사육장 운영, 가축형량, 가축 하역 등 관련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포 함>

· 동물운송 관리 서비스

· 가축 형량 및 하역 서비스

· 가축운송 관련 서비스

70-47

1991년 건설업통계조사

내용검사 및 부호기입요령서

1992. 2

통 계 청

차 례

Ⅰ. 일반 사항 ····· 3

Ⅱ. 항목별 내용검사요령 ····· 5

1. 통합조사표 ····· 5

2. 건설공사 실적내역표 ····· 13

3. 요계표작성 및 내검요령 ····· 14

Ⅲ. 부호기입요령 ····· 16

1. 접수번호 및 사업체고유번호 ····· 16

2. GI ····· 16

3. 산업분류 ····· 17

4. 조직형태 ····· 20

5. 종사자 규모 ····· 20

6. 자본금 규모 ····· 21

7. 총공사액 규모 ····· 22

8. 기 타 ····· 24

Ⅳ. 조사표 접수요령(접수대장) ····· 24

1. 통합조사표 및 실적내역표 동시 접수시 ····· 24

2. 실적내역표 및 통합조사표 별도 접수시 ····· 24

3. 접수대장 제출 ····· 25

4. 기 타 ····· 25

Ⅰ. 일반 사항

1. 일반면허 또는 전문면허 업체중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 면허를 중복 소지한 업체는 통합조사대상업체로서 이미 각 협회에서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분은 자계식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우리청 조사요원에 의한 타계식 조사에서는 제외시켜야 하며, 따라서 관련면허의 중복 소지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조사 되었으면 우리청 조사표를 제외시키되 특히 조사표 내용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합계액이 기록 안된 것은 합산하여 합계액을 기입한다.
3. 공사실적내역표는 매장마다 소계(888)를 기입하고 마지막 장에는 총합계(999)를 기입한다. (면허업종이 다른 경우의 실적은 장을 달리하여 기재하고 일련번호는 면허업종 구분없이 계속해서 부여한다)
4. 합계항목은 모두 검산하여 등식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있는 항목은 상호비교 검토하여 상호숫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정정한다.
5. 단위미만(소수점이하의 숫자)이 있을 때는 4사5입하여 정정한다.
   그러나 종사자란의 1일 평균 인원 (임시기능공, 단순노무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6. 금액 조사단위는 천원으로 하였으므로 단위기입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적자(기성액<공사비용)인 사업체의 조사표는 재확인한다.

8. 면허종류와 조사항목간에 서로 합당치 않은 내용이 있는 조사표는 재확인 한다.

   예 : 조사항목 10의 전기면허만을 취득한 업체가 전기공사가 아닌 건축 또는 토목공사를 시공한 경우

9. '91년중 해외건설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건설부문과 해외건설부문별로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10. 해외건설조사표는 별도로 철한다.

11.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지역을 세분하여 작성한다.

   예 : 41 : 중동 지역

   42 : 아시아 지역(중동제외)

   43 : 유럽 지역

   44 : 아프리카 지역

   45 : 오세아니아 지역

   46 : 아메리카 지역

II. 항목별 내용검사 요령

1. 통합조사표

난 외 기 입 사 항

가. 국내·외 건설업통계 조사표 구분요령

(1) 대한건설협회 조사표

국내건설분 1 ┐
해외건설분 2 ┘ 동일 양식의 조사표에 '장'만 달리하여 별도 작성

(2) 전문건설협회 조사표

국내건설분 - 백색조사표 ┐
해외건설분 - 황색조사표 ┘ 별도작성

(3) 설비공사협회 조사표

동일양식의 조사표에 '장'만 달리하여 별도작성

나. 사업체 고유번호

통합조사표, 실적내역표(매장마다), 요계표상의 시·도별 사업체 고유 번호가 서로 일치되었는가 확인한다.(접수번호를 사업체 고유번호로 대체 예정)

다. G.I

(1) 종합건설업체(대한건설협회)

본 사 소 재 지		면 허 업 종		면 허 번 호			

(2) 전문건설 및 설비공사업체(대한전문건설협회 및 대한설비공사협회)

본사 소재지	면 허 업 종	면 허 번 호
		- -

(3) 전기 및 기타 설비업체

사 업 체 고 유 번 호	본사 소재지	면 허 업 종

(4) GI는 업종별로 상이하나 이 GI는 통합조사표, 실적내역표(매장마다), 요계표(전문설비업체에 해당)의 3자는 완전히 일치되어야 전산처리가 가능하므로 특별히 유의하여 확인한다.

- 본사소재지

  시·.도 지역부호를 실적내역표 하단에서 찾아 기입한다.

- 면허업종

  2개이상의 면허를 가진 사업체는 주된 면허업종의 부호를 실적내역표 하단에서 찾아 기입한다.

- 면허번호 및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의 주된 면허업종의 면허번호와 사업체 고유번호를 기입한다.

라. 도급순위

종합건설업체에만 해당하며 기재된대로 두고 기재 누락되었으면 확인하여 기재한다.

난 내 기 입 사 항

가. ① 사업체명 및 소재지

(1) 시·도명부터 번지수까지 상세히 기입되었는가 확인한다.

2) 전화번호의 기입이 누락되었으면 전화유무를 확인하여 기입한다.

나. ② 조 직 형 태

사업체명을 대조하여 조직형태란 해당번호에 "○"표로서 정확히 구분되었는가 검토한다.

(1) 『조직형태』가 회사법인 및 회사이외 법인일 경우

① 조사항목 『3.자본금 및 총매출액』란에 금액이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조사항목『4.종사자수』중 (2)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란에 숫자가 기입되어 있으면 안된다.

② 『자본금』과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양자에 모두 숫자가 기입되어 있으면 안되므로 이를 확인하여 정정한다.
단, 전문건설업체는 개인업체일지라도 자본금(자산평가액)을 조사하므로 없을 경우는 재확인 한다

③ 『자본금』과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란에 숫자가 모두 없으면 재조사하여야 한다.

(2) 『조직형태』가 개인일 경우

① 조사항목 『3.자본금 및 총매출액』란에 금액이 기입되어 있어서는 안되며,(단,전문건설업체 제외), 조사항목 『4.종사자수』의 (2)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란에 숫자가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자본금』과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항목에 모두 숫자가 기입되어 있으면 재확인한다.(단 전문건설업체 제외)

③ 조사항목『3.자본금 또는 총매출액』란에 자본금이 기입되어 있고 조사항목4의 (2)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란에 숫자가 기입되어 있으면 재확인한다.(단 전문건설업체 제외)

④ 『자본금』과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양 조사항목에 모두 숫자가 없으면 재조사하여야 한다.

다. ③ 자본금 및 총매출액

(1) 자본금 또는 총매출액은 이 회사의 겸업이 포함된 총자본금과 총매출액을 말하는데 회사법인 및 회사이외 법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기입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재확인하여 기입토록한다.(단 전문건설업체는 개인일지라도 자본금(자산평가액)을 기입조사하므로 당청 보고서용 집계시에는 개인업체일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체는 사선(\)을 긋는다.(단 전문건설업체는 제외)

라. ④ 종 사 자 수

(1) 종사자수가 월별 및 직종별로 나누어서 기입되어 있는가를 검토하고 특히 임시고(일용) 중 임시기능공과 단순노무자의 1일평균 인원은 매월별 투입연인원을 조업일수로 나누어 계산(소수점이하는 올림)하고, 년간합계는 투입연인원의 누계를 조업일수 누계로 나눈 수치를 기입하지 말고 월별 1일평균 인원의 가로(1월부터 12월까지) 합계를 기입하여야 하므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겸업 사업체인 경우 건설업이 아닌 타 산업의 종사자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 임시기능공 및 단순노무자의 1일평균인원 = 월별투입연인원 / 월별조업일수

(2) 월별 종사자수의 계가 합계란의 숫자와 일치하는가를 검산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종사자 구분별 합계숫자와 상호비교하여 내역을 기준으로 정정한다.

(3) 종사자 구분별 합계숫자에 임시기능공 및 단순노무자의 월별 투입연인원이 그대로 합산된 예가 가끔 있었는바 이런 사례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입한다.

마. ⑤ 연 간 급 여 액

(1) 합계액을 검산하고 겸업사업체일 경우 순수한 건설업 부문만 조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급여액합계 = 사무 및 기타종업원+기술자 및 기술공+기능공+임시기능공+단순노무자+당년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2) 1인당 월간급여액 수준을 검토한다. 검토결과 직종별 피고용자간의 급여액 수준과 크게 괴리현상이 있거나, 타사업체의 급여액 수준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있을 때는 재확인 보완하도록 한다.

(3) 『사무 및 기타 종업원,기술자 및 기술공,기능공,임시기능공,단순노무자』등의 연간급여액과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의 합계는 조사항목 8의 『203임금 및 급료』의 숫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바. ⑥ 유 형 고 정 자 산

(1) 유형고정자산의 종류중 "중기"의 연말총액이 있으면 조사항목 7 『주요건설장비보유대수』에 숫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 『(3)연간처분 및 손해액』의 합계숫자는 조사항목 8의 『205감가상각비』보다 같거나 많아야 한다.

(3) 【(4) 연말총액 = (1)연초총액+(2)연간취득 및 증·개축액-(3)연간처분 및 손해액】의 등식관계가 맞는가 검토한다.

(4) 합계를 검산한다.

(5) 겸업사업체일 경우 타산업분를 제외한 순수한 건설업 부문만의 금액이어야 한다.

사. ⑦ 주요건설장비보유대수

(1) 합계를 검산한다.

(2) 유형고정자산의 (4)중기항목과의 함수관계를 확인한다.

아. ⑧ 기성액 및 공사비용 (부가가치세 제외)

(1) 기성액은 겸업 매출액을 제외하고 건설부문 매출액(전기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매출액은 포함)만 기입되었나 확인한다.

(2) 기성액(겸업을 제외한 건설부문 매출액)은 건설공사 실적내역표중 『(17)당년도 기성액』보다 같거나 적어야 한다.

(3) 기성액에서 매출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기입되었나를 확인한다.

(4) 공사비용에서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작성하였나를 확인한다.

(5) 공사비용에는 겸업 산업분을 제외한 순수한 건설업부문만의 비용이 조사되었는가 확인한다.

(6) 『203 임금 및 급료』는 조사항목5 『연간급여액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7) 『205 감가상각비』는 조사항목6 『유형고정자산』중 『(3)연간처분 및 손해액』의 합계보다 같거나 적어야 한다,

(8) 영업이익이 적자 【공사비용 합계액>기성액(총매출액)】인 업체의 조사표는 재확인하고 적요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9) 『207 조세공과』에는 납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 기재되었나 확인한다.(납부부가가치세는 별항으로 조사함)

(10) 『(2)합계』란에는 손익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와 공사원가 계산서상 비용을 합하여 기입되었나 확인하고 합계를 검산한다.(종합건설업체분 제외)

(11) 요계표 작성을 위한 부가가치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3 임금 및 급료』, 『204 복리후생비』, 『205 감가상각비』, 『206 지급임차료』, 『207 조세공과』, 『(3)영업이익(기성액-공사비용)』, 『313 납부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때 항목별 비용은 손익계산서상의 비용과 공사원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예시"

『203 임금 및 급료』=『손익계산서』사의 『203 임금 및 급료』+『공사원가계산서』상의 『203 임금 및 급료』

즉, 부가가치 = 203 + 204 + 205 + 206 + 207 + (3)항 + 313

자. ⑨ 연초, 연말 재고액

(1) 합계액을 검산한다.

(2) 겸업 사업체분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차. ⑩ 면 허 종 류

(1) 사업체에서 소지한 각종 건설면허 또는 인·허가사항 등이 빠짐없이 기입되었나 확인한다.

(2) 건설부장관 면허업체는 반드시 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만 기입되어야 한다.

(3) 전문건설면허는 업체별로 최고 3종까지만 기재할 수 있으므로 4종이상 기입된 것이 있나 확인한다.

(4) 특수면허중 포장,조경면허와 전문면허중 포장보수,조경식재,조경시설물 설치면허를 상호 혼동하여 기입하지 않았나 검토한다.

(5)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업체가 해외건설면허란에 기입이 누락되었으면 확인한다.

2. 건설공사 실적내역표

가. 사업체명 및 대표자명은 통합조사표와 일치하는가 확인한다.

나. 통합조사표사의 GI와 실적내역표의 GI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다. 『(1)매수』를 정확히 기입했는지의 여부, 실적내역표 매수를 ( )매 중 ( )매로 기입했는지 확인

라. 공종분류는 조사표 하단의 『공종세분류』에 따라 정확히 분류해서 기입하였나 확인한다.

마. 전문건설업체분 실적내역표의 『(4)공종세분류』항목은 사업체에서 분류한 공종대로 둔다.

바. 전문건설업체 조사표의 (11)항 계약종류가 2.하도급(일반) 3.하도급(전문)이면 7항의 ( )안에는 원도급자명,(9)항에는 원도급자의 면허번호가 기재되었는가 확인한다.

사. 『발주자분류』는 발주자명에 따라 조사표 하단의 『발주자 분류번호』를 기입하게 되었으므로 '92.1.1일자로 개정된 한국 표준 산업분류 발주자 분류가 정확히 기입되었나 확인한다.

아. 『계약방법』은 1.일반경쟁; 2.제한경쟁, 3.지명, 4.수의계약 중 해당되는 1개의 부호만 기재되어야 한다.

자. 『계약종류』는 1.원도급, 2.하도급 중 어느 한 번호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차. 『계약년월』이 1992년일 경우에는 조사기준기간('91.1.1~'91.12.31)이 아니므로 조사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조사사항은 모두 삭제토록 하고 소계 및 합계액도 정정한다.

카. 『수령년월』은 당년도('91년)의 공사대금 수령년월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90년 또는 '92년도로 기입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확인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타. 종합건설업체 실적내역표 중 『20 계약총액』, 『22 '91년까지의 누계기성액』, 『24 '91년도 까지의 누계수령액』란을 확인한다. 전년도 예로 보아 점선 위칸에 기재하여야 할 것을 아래칸에 기재한 경우가 많았음.

3. 요계표 작성 및 내검요령

가. 요계표 내검

(1) 전문건설 및 설비공사업체분 : 조사표와 요계표 모두 자계식으로 업체로서 작성하였는바, 겸업업체로서 『종사자수』, 『기성액』, 『유형고정자산』, 『주요건설장비 보유대수』, 『부가가치』, 『공사비용』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례배분원칙에 따라 보완 작성함.

(2) 종합건설업체분 : 종합건설업체는 대한건설협회 본회에서 일괄 성한 후 우리청(본청)으로 조사표류와 함께 제출 하도록 되어있다.

나. 항목별 요계표 작성요령

(1) G.I : 실적내역표에 기재된 G.I를 조사표 및 요계표에도 똑같이 기입한다.

(2) 부가가치 : 통합조사표(건설업통계조사표)중 조사항목 『8 기성액 및 공사비용』을 재무제표명세서대로 세분하여 조사하였으므로 부가가치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야 한다.

① 단독건설업체(비겸업업체) : 203 + 204 + 205 + 206 + 207 + (3)항 + 313

② 겸업사업체 : 공사비용(일반관리비 +공사원가비용)은 건설공사분만을 분리하여 조사하였으므로 단독건설 사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건설업부분의 산업비율에 따라 배분후 부가가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3) 전문건설 및 설비공사업체는 전문건설업체용 요계표를 이용하여 지방통계사무소에서 시·도별로 사업체 고유번호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체 고유번호순에 따라 별도 요계표를 작성 조사표(내역표포함)와 동시에 제출한다.

III. 부호기입요령

1. 접수번호 및 사업체 고유번호

가. 시·도별 접수번호를 사업체 고유번호 (시·도별) 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중복되거나 결번이 있어서는 안됨.

나. 실적내역표와 통합조사표가 함께 접수되는 경우에는 사업체별로 실적내역표의 매장마다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통합조사표에도 그 접수번호를 사업체 고유번호란에 기재한다.

다. 실적내역표를 먼저 접수한 사업체는 추후 접수된 통합조사표에도 실적내역표 접수시 부여한 그 접수번호를 사업체 고유번호란에 동일하게 기재한다.

라. 실적내역표 접수시 사업체별로 몇매중 몇매를 기재한다.

마. 전문건설, 설비공사업체 및 기타설비업체의 접수번호는 협회별 시·도별로 구분하여 지방사무소에서 접수번호를 부여하며, 사업체 고유번호는 이와같이 각각 분리 부여된 접수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종합건설업체는 사업체 고유번호를 협회 본회에서 작성한다.

예 : · 전문건설협회 조사표 접수번호(1번부터 계속부여)
· 설비공사협회 조사표 접수번호(1번부터 계속부여)
· 당청조사요원 조사표 접수번호(1번부터 계속부여)
· 종합건설협회 조사표 접수번호(대한건설협회에서 부여)

2. G.I

실적내역표와 통합조사표의 G.I(본사소재지,면허업종,면허번호)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고 불일치한 경우에는 협회 각 지부에 확인시킨다.

3. 산업분류

건설공사실적내역표상의 공종별 기성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금액이 가장 큰 공종(주산업)에 따라 산업을 결정하고 산업분류부호는 다음과 같이 3자리 숫자(소분류)로 부여한다.

가. 대한건설협회 조사분

	공종명	공종분류번호	산업분류번호
건축	단독 및 연립주택	411	·45212(주택도급건설업)
	아파트	412	
	주거겸용아파트및사무실	413	
	사무실,시장,백화점	414	·45213(사무및상업용 건물도급 건설업)
	호텔, 숙박시설	415	
	은행	416	
	극장,영화관,욕장	417	
	창고 및 차고	418	·45214(공업용및유사 산업용 건물도급건설업)
	공장	419	
	관공서 건물	420	·45213(사무및상업용 건물도급 건설업)
	학교	421	
	병원	422	
	문화재·유적건물	423	
	교회·사찰·종교건물	424	
	위험물저장소	425	·45219(달리분류되지않은 건물종합건설업)
	위생·냉·난방	430	
	기계기구설치	440	
	기타건축	450	

※ 건축물 자영공사 - 45211

	공종명	공종분류번호	산업분류번호
토목	도로,교량	210	45221(도로건설및 포장공사업)
			45222(교량,터널및 철도건설업)
	댐	220	45223(수로,댐및 급배수시설 건설업)
	발전소시설	221	45224(산업설비 조립및설치공사업)
	항만	230	45223(")
	공항	231	
	철도, 지하철	240	45222(")
	치산, 치수	250	
	농림, 수산	260	45102(토공사및 정지공사업)
	농지정리	261	
	상·하수도	270	
	경기장, 운동장	280	45229(토목건설업, N.E.C)
	택지조성	281	45102(")
	기타토목시설	290	45229(")
			45225(폐기물처리및 오염방지시설공사업)
	1종전기	301	45229(")
	2종전기	302	45302(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	310	45229(")
	포장	610	45221(")
	철강재설치	620	45222(")
	준설	630	45223(")
	조경	640	45229(")

나. 대한전문건설협회 조사분

- 45101 : 건축물 해체 공사업
- 45102 : 토공사 및 정지 공사업
- 45232 : 보링, 그라우팅 및 우물 공사업
- 45233 : 비계 및 형틀 공사업
- 45234 : 철골 공사업
- 45235 :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 45236 : 벽돌조적 및 석축 공사업
- 45237 : 지붕잇기 및 함석 공사업
- 45238 : 잠수 및 수중 공사업
- 45239 : 건축물축조 관련 전문건설업, N.E.C.
- 45302 : 전기 공사업
- 45303 : 통신공사업
- 45304 : 방수, 방음 및 내화 공사업
- 45305 : 장치용 기계장비설치 공사업
- 45306 : 환경위생 처리기기설치 공사업
- 45307 : 울타리, 난간 및 관련 금속구조물 설치 공사업
- 45309 :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N.E.C.
- 45401 : 유리 공사업
- 45402 : 창호 공사업
- 45403 : 미장 및 타일 공사업
- 45404 : 도장 공사업
- 45405 : 도배 및 실내장식 공사업
- 45406 : 내장 목공사업

- 45407 : 장식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
- 45409 : 건축마무리 공사업,N.E.C.
- 45500 : 건설장비 임대업(운전사 딸림)

다. 대한설비공사협회 조사분

- 45301 : 배관, 냉난방 및 관련 공사업

라. 지방통계사무소 조사분

- 45301 : 배관, 냉난방 및 관련 공사업
- 45229 : 달리분류되지않은 토목 공사업
- 45302 : 전기 공사업
- 45303 : 통신공사업
- 45306 : 환경위생 처리기기 설치 공사업

4. 조직형태

회사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 1

회사이외법인 ····· 2

개 인 ····· 3

5. 종사자 규모

조사항목 『4 종사자수』에서 가로 세로 맨끝의 합계란의 수치를 보고 아래 보기와 같이 계층별로 구분 기입한다.

(보 기)

1 ~ 59인까지	01
60 ~ 119 "	02
120 ~ 227 "	03
228 ~ 559 "	04
600 ~ 1,199 "	05
1,200 ~ 2,399 "	06
2,400 ~ 3,599 "	07
3,600 ~ 5,999 "	08
6,000 ~ 11,999 "	09
12,000인이상	10

6. 자본금 규모

조사항목 『3. 자본금 또는 총매출액』의 금액을 계층별로 구분 기입한다.

2,000천원미만	1
2,000천원 ~ 4,999천원	2
5,000 " ~ 9,999 "	3
10,000 " ~ 49,999 "	4
50,000 " ~ 99,999 "	5
100,000 " ~ 499,999 "	6
500,000 " ~ 999,999 "	7
1,000,000천원 이상	8

(단, 전문건설업체는 개인일 경우에도 자본금 및 총매출액을 조사하였으므로 조직형태가 1,2인 경우만 집계)

7. 총공사액 규모

건설공사 실적내역표중 『당년도 기성액』의 합계를 계층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5,000천원미만	1
5,000천원 ~ 9,999천원	2
10,000 " ~ 49,999 "	3
50,000 " ~ 99,999 "	4
100,000 " ~ 499,999 "	5
500,000 " ~ 999,999 "	6
1,000,000 " ~ 4,999,999 "	7
5,000,000 " ~ 9,999,999 "	8
10,000,000천원이상	9

8. 기타

- 종합건설업체 실적내역표

① 실적내역표 접수시 우측상단에 업체별로 『매수』를 주서로 기입한다.

② 실적내역표중 『11하도급자는 ( )안에 원도급자명 기입』란에 원도급자명이 기재되었으면 이 공사는 하도급 공사이므로 분류번호 『2』를 부여(적색 싸인펜사용)하고 없으면 분류번호 『1』을 기재한다.

③ 『20계약총액』, 『22 90년도까지 누계기성액』, 『24 90년도까지의 누계수령액』은 집계항목이 아니므로 적색싸인펜으로 굵게 지운다.

④ 모든 실적내역표상 공사건별 일련번호는 전산을 위하여 사업체별 일련번호로 부여(적색으로)한다.

Ⅳ. 조사표 접수요령(접수대장)

1. 통합조사표 및 실적내역표 동시 접수시

- G.I(본사소재지, 면허업종, 면허번호)가 완전히 일치한가 확인
- 접수번호를 통합조사표와 실적내역표에 일치되게 기재
- 실적내역표와 통합조사표의 기성액이 합리적인가 확인

※ 실적내역표상의 기성액은 매출부가세 포함

통합조사표상의 기성액(총매출액)은 매출부가세 제외되었음.

2. 실적내역표 및 통합조사표 별도 접수시

가. 실적내역표 접수시

- 매장마다 매수와 G.I가 기재되었는가 확인하고 접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그 부여된 접수번호를 접수대장에 이기
- G.I를 접수대장에 이기
- 기성액을 접수대장에 이기

나. 통합조사표 접수시

- 실적내역표상의 접수번호 및 G.I와 일치하는가를 접수대장으로 확인
- 실적내역표상의 기성액과 일치하는가 확인 후 이기
- 접수번호는 실적내역표 제출시 부여한 접수번호를 이기
- 실적내역표상의 기성액과 통합조사표상의 기성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사업체에 직접 확인 후 보완하여 보고할 것.(추후라도)

3. 접수대장 제출

- 실적내역표, 통합조사표 모두 접수가 끝났으면 시·도지부별로 2부를 복사하여 당청 및 협회 본회로 제출하고 1부는 지방사무소에 비치한다.
- 접수대장은 당청 조사표분, 전문건설업체분, 설비공사업체분을 별도작성한다.

4. 기 타

- 대한설비공사협회가 대한전문건설협회로 부터 독립('89.10.27), 자체 협회를 설립하였으므로 전문면허와 설비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는 업체일 경우 조사표(내역표, 요계표)를 각 1부씩 작성 대한설비공사협회로 제출토록 하였으므로 협회별로 조사표 접수시에 참고한다.
- 중소등록업체의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없는 번호이나 1년간 잠정사용 예정이오니 "550"으로 분류한다.

작성기관 : 통 계 청
지정통계 : 111-11-14

1991년 건설업통계조사표

[redacted]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통계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사업체고유번호	본사소재지	면 허 업 종

※산업분류	※조직형태	※종사자규모	※자본금규모	※총공사액규모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체명 :

대 표 자 : 구·로 전화번호

소 재 지 : 시·도 구·시·군 동·읍·면 가·동·리 번지 호

2. 조직형태(해당란에 ○표)

1. 회사법인 2. 회사이외의 법인 3. 개인

3. 자본금 및 총매출액

* 자본금은 법인만 기재함.
* 자본금 및 총매출액은 겸업포함 기재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자본금								
총매출액								

4. 종사자수

* 각종설비, 전기, 전기통신공사에 종사한 자만 기재한다.

○ 상용고 : 1개월 이상의 고용계약으로 취업시간에 관계없이 고정급여를 받는 종업원
○ 임시고 : 1개월 미만의 고용계약으로 취업시간에 의해 임금을 받는 종업원
○ 기술자 및 기술공 : 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 등의 자격면허소지자이거나 기능공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종업원
○ 기능공 : 기능사1급, 기능사2급, 기능사보등의 자격면허소지자이거나 6개월이상 조직적인 기술습득을 요하는 직종에서 1년이상 경험을 가진 종업원(예 : 목공, 조적공, 미장공, 철근공, 도장공, 전공등)
○ 단순노무자 : 기능공의 조공, 특수인부, 보통인부, 여자인부등 통칭 잡부를 말한다.
○ 하도급업체의 종사자는 원도급업체의 종사자에서 제외한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1) 피고용자	상용고	①사무및 기타 종업원													
		②기술자 및 기술공													
		③기능공및단순노무자													
	임시고(일용)	조 업 일 수 (A)													
		기능공 투입연인원 (B)													
		기능공 ④1일평균인원 (B÷A)													
		단노무순자 투입연인원 (C)													
		단노무순자 ⑤1일평균인원 (C÷A)													
	소계 ①+②+③+④+⑤														
(2)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합 계 (1)+(2)															

5. 연간급여액

* 각종설비, 전기, 전기통신공사에 종사한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만 기재한다.

○ 연간급여액은 피고용자에게 지불한 급여의 총액으로서 당년도 미불금을 포함(급료, 임금, 수당, 상여금, 현물급여 등)
○ (6)란은 91년도분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입하고 이 계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지급한 퇴직금을 기입

구 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상용	(1) 사무 및 기타종업원									
	(2) 기술자 및 기술공									
	(3) 기능공및단순노무자									
임시	(4) 기 능 공									
	(5) 단 순 노 무 자									
	(6) 당년도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합 계 [(1)+(2)+(3)+(4)+(5)+(6)]										

※ 문의전화 : 통계청 산업통계 1과((02)723-0787, 732-4387)
통계청 각시도 통계사무소

6. 유형고정자산

* 각종설비, 전기, 전기통신공사에 해당하는 자산만 기재한다.

○ 연초·연말총액(미상각잔액) : 연초·연말 현재의 장부가격에 따르고 불가능할 때는 싯가에 의한다.
○ 연간취득액 및 증개축액 : 구입한 것은 운임·설치비를 포함한 구입가격으로, 양수받은 것은 양수당시의 싯가로 자가건설의 완료인 경우에는 연간 지출한 모든 비용을 기입한다.
○ 연간처분 및 손해액 : 매각, 양도, 재해, 도난 등으로 인한 감소액과 당기 감가상각액을 포함한다.
○ 따라서 연간처분 및 손해액의 합계는 조사항목8의 「205.감가상각비」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
④=①+②-③

	①연초총액(미상각기초잔액)91.1.1 현재								②연간취득및증개축액								③연간처분및손해액								④연말총액(미상각기말잔액)91.12.31현재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토 지																																		
(2) 건 물																																		
(3) 구 축 물																																		
(4) 중 기																																		
(5) 차량·선박·운반구																																		
(6) 공구, 기구, 비품																																		
(7) 건 설 가 계 정																																		
합 계																																		

7. 주요건설장비 보유대수

* 각종설비,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에 이용되는 장비만 기재한다.

○ 타업체에 대여한 자기소유 장비는 포함하고 대여받은 장비는 제외한다.
○ 해외반출 소유장비는 해외건설조사표에 별도로 작성한다.
○ 비등록장비도 포함 기입한다.

중기부호	중 기 명	보유대수 백	십	일	중기부호	중 기 명	보유대수 백	십	일
01-1	불도우저(20톤이상)				14	콘크리트믹서트럭			
01-2	불도우저(20만톤미만)				15	콘크리트펌프			
02-1	굴 삭 기(1m³이상)				16	아스팔트믹싱프랜트			
02-2	굴 삭 기(1m³미만)				17	아스팔트휘니셔			
03-1	로 우 더(타이어식)				18	아스팔트살포기			
03-2	로 우 더(무한궤도식)				19	골재살포기			
04	지 게 차				20	쇄 석 기			
05	스크레이퍼				21	공기압축기			
06	덤프트럭(12톤이상)				22	천 공 기			
07-1	기 중 기(타이어식)				23	항타 및 항발기			
07-2	기 중 기(무한궤도식)				24	사리채취선			
08	모우터그레이더				25	준 설 선			
09	로 울 러				26	타우어크레인(비등록장비)			
10	노상안정기				27	12t 미만덤프트럭(비등록장비)			
11	콘크리트뱃칭프랜트				28	기타비등록장비			
12	콘크리트휘니셔				29	합 계			
13	콘크리트살포기								

8. 기성액 및 공사비용(부가가치세 제외)

* 기성액 및 공사비용은 건설공사분(각종설비, 전기, 전기통신)에 대하여만 기재하고 겸업분은 제외한다.

			금액 (백억 / 십억 / 억 / 천만 / 백만 / 십만 / 만 / 천원)
(1) 기성액		건설공사 기성액(외주공사비 포함)	
(2) 공사비용	201. 원재료비(자급)	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	
	202. 보조재료비	일반관리비(소모품, 사무용품)와 현장경비(소모공구비등)	
	203. 임금 및 급료 (인건비총계로서 5.연간급여액란 합계와 일치)	임금 및 급료(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금액)	
		당년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전입금(손익계산서상의 금액)	
	204. 복리 및 후생비 (보험료중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는 포함)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기타	
	205. 감가상각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감가상각비, 특별상각비	
	206. 지급임차료 건물·장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건물, 장비, 중기등의 임차료	
	206. 지급임차료 토지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토지 임차료	
	207. 조세공과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세금과 공과	
	208. 수선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수선비(기계·장치, 수선유지비등)	
	209. 전력·용수·연료·광열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동력, 용수, 광열비	
	210. 잡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상의 여타 계정과 기타	
	211. 외주공사비	원가계산서상의 외주비	
(2) 합계		201+202+203+……+211	
(3) (1) − (2)		(기성액)−(공사비용)	
312. 발주자공급원재료비		계약금액이외 발주자로부터 받은 원재료중 공사에 투입된 원재료액	
313. 납부부가가치세		매출부가가치세−매입부가가치세	

9. 연초, 연말 재고액

○ 평가는 장부가격에 의하되, 불능시에는 싯가로 평가한다.
○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원도급자로부터 지급받은 것과 발주자급원자재는 제외한다.

	① 연초재고(1991. 1. 1 현재액) (백억 / 십억 / 억 / 천만 / 백만 / 십만 / 만 / 천원)	② 연말재고액(1991.12.31 현재액) (백억 / 십억 / 억 / 천만 / 백만 / 십만 / 만 / 천원)
(1) 원재료		
(2) 연료		
(3) 저장품		
합계		

10. 면허종류(해당하는 면허 종류 번호에 ○표를 한다)

90.	1 종전기공사	95.	오수정화설비
91.	2 종전기공사	96.	도시가스설비
92.	전기통신공사	97.	소방설비
93.	특정연료설비	98.	중소주택등록

겸업산업	

11. 임대수입

○ 건물이나 건설중장비를 대여해준 댓가로 받은 임대수입금액을 말한다.

	(백억 / 십억 / 억 / 천만 / 백만 / 십만 / 만 / 천원)
건물	
건설중장비	
계	

(적요)

【기입시 유의사항】

○ 이 조사표는 건설공사에 관련된 수치만 기입함(겸업인 경우 피고용자, 연간급여액, 유형고정자산, 장비보유대수, 공사비용, 연초·연말재고액등의 구분이 곤란할 때는 총매출액에 대한 건설공사 매출액 비율로 배분하여 기재함.)
○ 면허번호는 2종 이상일때 기성액이 가장 많은 업종의 면허번호만을 기재함.
(업체별 고유번호가 되어 계속 이용되므로 변경할 수 없음.)
○ ※표가 있는 란은 기입하지 않음.
○ 5. 연간급여액의 합계=8. 기성액 및 공사비용의 203. 임금 및 급료
○ 조직형태가 개인인 경우에는 4. 종사자수 란의, (2)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란에 반드시 기입되어야 함.
○ 조업일수는 매월간 조업일수이므로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작성년월일 1992. . .	통계사무소
작성부서	조사담당자 ㊞
(전화번호)	내검자 ㊞
작성자 ㊞	조사과장 ㊞

사업체고유번호	※본사소재지		※면허업종	

(1)매 수
-

1991년도 건설공사 실적내역표

70-49

사업체명 :

전화번호 :

대 표 자 : ㊞

(2) 일련번호	(3) 공 사 명	(4) ※ 공종세분류 (부호기입)	(5)※ 공사지역 (부호기입)	(6)발 주 자 명 (7) 하도급자는( )안에 원도급자명을 기입	(8) ※ 발주자분류 (부호기입)	(9) 하도급 공사의 경우원도급자 면허번호기입	(10) 계약방법 1. 일반경쟁 2. 제한 3. 지명 4. 수의	(11) 계약종류 1. 원도급 2. 하도급	(12) 계약년월 년 월	(13) 착공년월 년 월	(14) 준공년월 년 월	(15) 당년도계약액 또는 이월된 공사금액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6) 당년도발주자 공급원자재가격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7) 당년도기성액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8) 당년도수령액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9) 수령년월 년 월	(20) 선급금수령액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21) 건물의 종류 1. 신축 2. 기타	(22) 설비업종세부공종	(23) 비 고
				( )															
				( )															
				( )															
				( )															
				( )															
				( )															
				( )															
				( )															
999(888)	합(소)			계															

(주의사항) ※ 1. 업종별로 별장 기재한다. 2. 전년도 미기성액('90년도에서 이월된 공사금액)부터 기재하고 소계를 작성한 다음 당년도 분을 계약일자 순으로 기재하고 합계를 기재한다.
3. ※란은 반드시 해당코드를 찾아 해당번호를 기재한다. 4. 각 장마다 소계를 기재한 다음 끝장에 합계를 기재한다. 5. 실적내역표 (18)란~(22)란은 조사하지 않는다.

※ 각종 분류별 코드번호

※본사소재지 및 공사지역(5)별 부호코드		
11 : 서울	33 : 충북	41 : 중동지역
21 : 부산	34 : 충남	42 : 아시아지역 (중동지역제외)
22 : 대구	35 : 전북	
23 : 인천	36 : 전남	43 : 유럽지역
24 : 광주	37 : 경북	44 : 아프리카지역
25 : 대전	38 : 경남	45 : 오세아니아지역
31 : 경기	39 : 제주	46 : 아메리카지역
32 : 강원		

※면허업종별 부호코드
90. 1종전기공사
91. 2종전기공사
92. 전기통신공사
93. 특정연료설비
94. 정화조설비
95. 오수정화설비
96. 도시가스설비
97. 소방설비
98. 중소주택

※공종세분류(4)별 부호코드
401. 1종전기공사
402. 2종전기공사
403. 전기통신공사
501. 특정연료설비
502. 정화조설비
503. 오수정화설비
504. 도시가스설비
505. 소방설비
601. 단독주택및연립주택
602. 아파트
603. 부지조성

※ 발주자(8)별 부호코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민간부문 (1) 제조업 (23개)			(2) 비제조업 (13개)	
041:내무부	050:보사부	011:서울시	033:충청북도	091:국영기업체	900:음식료품	908:코크스·석유정제품, 핵연료	915:사무·계산및회계용기계	950:농림, 수렵업, 어업	958:건설업(분양임대는 부동산업에 포함)
042:재무부	051:노농부	021:부산시	034:충청남도	092:공공단체	901:담배제조업	909:화합물·화학제품	916:달리분리되지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951:광업	959:사업서비스업
043:법무부	052:교통부	022:대구시	035:전라북도	093:주한외국기관	902:섬유제품	910:고무·플라스틱제품	917: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952:전기·가스·수도	960:교육서비스업(국공립학교제외)
044:국방부	053:체신부	023:인천시	036:전라남도	094:해외	903:의복 및 모피제품	911:비금속광물제품	918: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953:도소매업	
045:교육부	054:문화부	024:광주시	037:경상북도		904: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912:제1차금속	919:자동차 및 트레일러	954:음식·숙박업	
046:농수산부	055:체육청소년부	025:대전시	039:경상남도		905: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913: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외)	920:기타 운송장비	955:운수·창고·통신업	
047:상공부		031:경기도	039:제주도		906: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914:달리분리되지않은 기계장비	921:가구 및 기타제조업	956:금융·보험업	
048:동자부	056:기타	032:강원도			907: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922:재생물질가공처리업	957:부동산업(건설회사의 분양임대 포함)	
049:건설부								962:기타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통 계 청

지 정 통 계

승인번호 : 111-11-16

1991년 기준

운수업통계조사표 (도로화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사업체고유번호	산업분류번호	구 분	행정구역번호	조직형태번호
—				

1. 사업체 개황

(1) 사업체명 (2) 창설년월 년 월

(3) 대표자명 (4) 전화번호

(5) 소 재 지 시도 구시군 구·동로·면 가동리 번지 호

2. 조직형태(해당란에 ○표)

① 국가기관 ② 공 사 ③ 회사법인

④ 기타법인 ⑤ 개 인

3. 사업형태(해당란에 ○표)

① 노 선 화 물 ② 특 수 화 물 ③ 전 국 화 물

④ 일반구역화물 ⑤ 용 달 화 물 ⑥ 장 의 차

4. 자본금 또는 출자금

1991.12.31 현재 납입 완료된 금액
(개인사업체는 해당되지 않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5. 차량 보유현황

- 영업용 이외의 차량은 제외
- 차량보유는 타인소유의 임차운행 차량포함(관리주)
- 경과년수는 차량등록일로부터 1991.12.31까지 경과된 년수
- 총가동대수 : 개인용달 제외
- 총운행일수 : 개인용달을 운행한 연간 총영업일수

(1) 기관별차량(대수)

소유형태 및 경과년수 / 기관별	① 합 계			②1년미만	②1~3년미만	③3~5년미만	④5~8년미만	⑤8년이상
	계	직 영	비직영					
(1)디 젤 엔 진								
(2)휘 발 유 엔 진								
(3)L P G 엔 진								
(4)기 타								
합 계 [(1)+(2)+(3)+(4)]								

(2) 톤수별 화물차량(대수)

계	①2.5톤이하	②2.6~4.5	③4.6~8.0	④8.1~11.0	⑤11톤이상

(3) 총가동대수

십만	만	천	백	십	일(대)

(4) 총운행일수

백	십	일

6. 연간 수송실적

- 수송총톤수 : 화물차량이 연간수송한 화물의 총톤수
- 수송총거리 : 전 보유차량에 의한 연간 총 주행거리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1)수송총톤수(M/T)								
(2)수송총거리(km)								

7.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 종사자수는 1991.12.31 현재로 기입하며 상용·임시종업원, 병가자, 단기휴가자 및 파업중인자도 포함한다. 단, 3개월이상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와 급여를 단일운수사업체로부터 고정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종업원은 제외된다.
- 정비 및 수리공 : 차량의 정비 및 수리를 주된 임무로 당해사업체 공장에서 차량의 정비 및 수리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 단순노무자 : 화물의 상·하차와 차량으로부터 창고에 이르는 입·출고작업 및 이에 준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단순노무자수는 「연간급여액÷1인일당 임금÷300일」의 산식에 의한다.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사업주 혹은 그의 가족(동거자 포함)으로서 관련되는 제반업무에 주당 정상작업시간의 1/3이상을 종사하였으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은 자를 말한다.(개인업체는 반드시 해당됨)
- 급여액 : 종업원에게 노무의 댓가로 연간지급된 급여의 총액으로서 봉급, 상여금, 각종수당, 생계보조금, 현물급여 등을 말하며 이의 미불금도 포함한다.
- 종업원의 급여액합계는 조사항목 「8」의 운수비용중 「② 인건비」와 일치되어야 한다.

		① 종사자수(1991.12.31. 현재 : 명)			② 급 여 액(연간총액)									
		계	남	여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차량관계종업원	① 운 전 기 사													
	② 조 수													
	③ 정 비 및 수 리 공													
	④ 기 타													
	계 (①+②+③+④)													
(2) 기타종업원	① 단 순 노 무 자													
	② 사 무 직 및 기 타				(1인일당 연평균급여액 : 원)									
	계 (① + ②)													
(3)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개인업체에서만 기입)													
합 계 [(1)+(2)+(3)]														

통 계 청

8. 연간 운수수입 및 비용

- 운수수입 : 사업체의 운수활동으로 얻어진 모든 영업수입을 말한다.(영업외 수입 제외)
- 운수비용 : 사업체의 운수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된 모든 영업비용을 말하며,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운송원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영업외 비용 제외)
- 영업이익 :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운수수입에서 운수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운수수입			조사기간중 얻어진 사업체의 모든 영업수입										
(2) 운수비용	① 재료비	연료비	경유	영업용차량용 경유사용량의 구입비용									
			휘발유	영업용차량용 휘발유사용량의 구입비용									
			LPG	영업용차량용 LPG 사용량의 구입비용									
			기타	영업용차량용 기타연료 사용량의 구입비용 윤활유(엔진오일, 핸들오일, 브레키오일)									
			계	경유+휘발유+LPG+기타									
		기타재료비		외부로부터 매입된 부분품으로서 그대로 차량에 부착시켜 그 구성분이 되는 부속품비(타이어, 튜브, 튜브티 등)									
		소계		연료비+기타재료비									
	② 인건비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 임금, 제수당 및 잡급등의 비용(7항 급여액과 일치)									
	③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당년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본 계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지급된 퇴직금									
	④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된 법정복리비, 장학금, 의료보험, 피복비, 보건비, 무료급식 등									
	⑤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⑥ 지급임차료			건물, 차량 및 운반구									
				토지임차료									
	⑦ 보험료			자동차, 건물, 산업재해 등에 대한 보험료									
	⑧ 세금·공과금			자동차·재산·취득·등록세(법인세·소득세 제외), 협회비, 적십자비 등									
	⑨ 수선비			건물, 수송장비 등 유형고정자산의 수선, 수리를 외부에 의뢰한 경우에 지출한 경비									
	⑩ 사용료			차량검사료 등									
	⑪ 대손상각			받을어음 그밖의 이에 준하는 채권중 회수할 수 없는 금액(경상적인 대손상각비만 기입)									
	⑫ 잡비			수도광열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소모품비, 비영업용차량유지비 및 사고비, 통신비, 여비 등									
	합계			①+②+ ····· +⑪+⑫									
(3) 영업이익				(1)운수수입-(2)운수비용									
(4) 납부부가가치세				매출부가가치세-매입부가가치세									

9. 임대수입

영업외수입중 차량, 토지, 건물 등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임대수입금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토지							
(2) 건물및구축물							
(3) 기계장치및기구							
(4) 차량및운반구							
합계							

10. 유형고정자산

- 장부가액을 기입하며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싯가에 의하여 기입한다.
- 임차사용분은 제외하고 임대하여준 것은 포함한다.
- 연초잔액은 91.1.1 현재 감가상각 충당금 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연간증가액은 신규취득 및 증고 취득하였거나 이를 설치 및 증·개축액을 말하며 건설가계정으로부터 건물이나 기계장치 계정으로 대체되어온 것도 취득으로 간주한다.
- 연간처분 및 손해액(연간감가상각액 포함)은 91년 1년간에 매각·양도·재해·도난 등으로 인한 유형고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감소액을 말하며, 건설가계정에서 건설완료로 건물이나 기계장치등으로 대체한 것은 건설가계정 감소액에 기입한다.
- 연말잔액은 91.12.31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한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 연말잔액=연초잔액+연간증가액-연간처분 및 손해액(연간감가상각액 포함)

	①연초잔액 (1991.1.1 현재)										②연간증가액 (취득·대체액)										③연간처분및손해액 (연간감가상각액 포함)										④연말잔액 (1991.12.31 현재)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토지																																								
(2)건물및구축물																																								
(3)기계장치및기구·비품																																								
(4)차량및운반구																																								
(5)건설가계정																																								
합계 [(1)+(2)+(3)+(4)+(5)]																																								

적요

작성년월일	1992. . .	조사담당자	㊞
작성자소속	전화번호 :	내검자	㊞
성명	㊞	조사과장	㊞

지 정 통 계
승인번호 : 111-11-16

1991년 기준

운수업통계조사표 (버스 및 택시운송업)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 사업체고유번호	※ 산업분류번호	※ 구 분	※ 행정구역번호	※ 조직형태번호
—				

1. 사업체 개황

(1) 사업체명 (2) 창설년월 년 월

(3) 대표자명 (4) 전화번호

(5) 소 재 지 시도 구시군 구·동읍로·면 가동리 번지 호

2. 조직형태(해당란에 ○표)

① 국가기관 ② 공 사 ③ 회사법인
④ 기타법인 ⑤ 개 인

3. 사업형태(해당란에 ○표)

① 시외버스 ② 시내버스 ③ 전세버스 ④ 택시

4. 자본금 또는 출자금(운수업부문만 기입)

1991.12.31 현재 납입 완료된 금액
(개인사업체는 해당되지 않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5. 차량 보유현황

- 영업용 이외의 차량은 제외
- 경과년수 : 차량 등록일로부터 1991.12.31까지 경과된 년수
- 형별택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요금체계(중형 : 기본요금 800원, 소형 : 기본요금 750원)에 의해 구분하고 그외 시도는 배기량(중형 : 1500cc이상, 소형 : 1500cc미만)을 기준함
- 총가동대수 : 전보유 차량 중에서 운행한 차량의 연간 총 가동대수
- 총운행일수 : 개인택시의 연간 총 영업일수

(1) 기관별차량(대수)

기관별 \ 경과년수	합계 (①+②+③+④+⑤)	① 1년미만	②1~3년미만	③3~5년미만	④5~8년미만	⑤ 8년이상
(1)디 젤 엔 진						
(2)휘 발 유 엔 진						
(3)LPG 엔 진						
(4)합 계 [(1)+(2)+(3)]						

(2) 형별 시내버스 및 택시차량(대수)

시내버스			택시		
합계(①+②)	①도시형	②좌석형	합계(①+②)	①중 형	②소 형

(3) 총가동대수

십만	만	천	백	십	일(대)

(4) 총운행일수

백	십	일

6. 연간 수송실적

- 수송총인원 : 연간 수송한 총인원
- 수송총거리 : 연간 수송한 총거리
- 총운행횟수 : 연간 총운행한 횟수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1)수송총인원(명)								
(2)수송총거리(km)								
(3)총운행횟수(회)								

7.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 종사자수는 1991.12.31. 현재로 기입하며 병가자, 단기휴가자 및 파업중인자도 포함한다. 단, 3개월 이상 장기 결근자 및 군복무자와 급여를 단일 운수사업체로부터 고정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종업원은 제외된다. 즉, 정류장(지방 정류소 포함) 등에서 운수사업체의 승차권을 판매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매표원 검표원 등은 제외된다.
- 정비 및 수리공 : 차량의 정비 및 수리를 주된 임무로 당해 사업체의 수리공장에서 차량의 정비 및 수리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사업주 혹은 그의 가족(동거자 포함)으로서 관련되는 제반업무에 주당 정상작업시간의 1/3이상을 종사하였으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 급여액 : 종업원에게 노무의 댓가로 연간 지급된 급여의 총액으로서 봉급, 상여금, 각종수당, 생계보조금 등을 말하며 이의 미불금도 포함한다.
- 종업원의 급여액 합계는 조사항목 「8」의 운수비용중 「② 인건비」와 일치되어야 한다.

		① 종사자수(1991.12.31. 현재 : 명)			② 급 여 액(연간총액)									
		계	남	여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차량관계종업원	①운전기사 고정운전기사													
	①운전기사 대기(스페어)													
	①운전기사 계													
	② 안내원 및 조수													
	③ 경비 및 수리공 (정비관리자 등)													
	④ 기타 (안전관리자, 세차원등)													
	계(①+②+③+④)													
(2) 기타종업원 (임원, 사무직 및 기타)														
(3) 사업주및무급가족종사자 (개인업체에서만 기입)														
합 계 [(1)+(2)+(3)]														

◎문의전화 : 통계청 통계조사국 산업1과(723~0787)

통 계 청

8. 연간 운수수입 및 비용

- 운수수입 : 사업체의 운수활동으로 얻어진 모든 영업수입을 말한다.(영업외 수입 제외)
- 운수비용 : 사업체의 운수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된 모든 영업비용을 말하며,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운송원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영업외 비용 제외)
- 영업이익 :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운수수입에서 운수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운수수입			조사기간중 얻어진 사업체의 모든 영업수입										
(2) 운수비용	① 재료비	연료비	경유	영업용차량용 경유사용량의 구입비용									
			휘발유	영업용차량용 휘발유사용량의 구입비용									
			LPG	영업용차량용 LPG 사용량의 구입비용									
			기타	영업용차량용 기타연료 사용량의 구입비용 윤활유(엔진오일, C오일, 구리스, 핸들오일, 브레키오일)									
			계	경유+휘발유+LPG+기타									
		기타재료비		외부로부터 매입된 부분품으로서 그대로 차량에 부착시켜 그 구성성분이 되는 부속품비(타이어, 튜브, 튜브티 등)									
		소계		연료비+기타재료비									
	② 인건비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 임금, 제수당 및 잡급등의 비용(7항 급여액과 일치)									
	③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당년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본 계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지급된 퇴직금									
	④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된 법정복리비, 장학금, 의료보험, 피복비, 보건비, 무료급식 등									
	⑤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⑥ 지급임차료			건물, 차량 및 운반구									
				토지임차료									
	⑦ 보험료			자동차, 건물, 산업재해 등에 대한 보험료									
	⑧ 세금·공과금			자동차·재산·취득·등록세(법인세·소득세 제외), 협회비, 적십자비 등									
	⑨ 수선비			건물, 수송장비 등 유형고정자산의 수선, 수리를 외부에 의뢰한 경우에 지출한 경비									
	⑩ 사용료			차량검사료 등									
	⑪ 대손상각			받을어음 그밖의 이에 준하는 채권중 회수할 수 없는 금액(경상적인 대손상각비만 기입)									
	⑫ 잡비			수도광열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소모품비, 비영업용차량유지비 및 사고비, 통신비, 여비 등									
	합계			①+②+ ····· +⑪+⑫									
(3) 영업이익				(1)운수수입-(2)운수비용									
(4) 납부부가가치세				매출부가가치세-매입부가가치세									

9. 임대수입

영업외수입중 차량, 토지, 건물 등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임대수입금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토지							
(2) 건물및구축물							
(3) 기계장치및기구·비품							
(4) 차량및운반구							
합계							

10. 유형고정자산

- 장부가액을 기입하며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싯가에 의하여 기입한다.
- 임차사용분은 제외하고 임대하여준 것은 포함한다.
- 연초잔액은 91.1.1 현재 감가상각 충당금 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연간증가액은 신규취득 및 증고 취득하였거나 이를 설치 및 증·개축액을 말하며 건설가계정으로부터 건물이나 기계장치 계정으로 대체되어온 것도 취득으로 간주한다.
- 연간처분 및 손해액(연간감가상각액 포함)은 91년 1년간에 매각·양도·재해·도난 등으로 인한 유형고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감소액을 말하며, 건설가계정에서 건설완료로 건물이나 기계장치등으로 대체한 것은 건설가계정 감소액에 기입한다.
- 연말잔액은 91.12.31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한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 연말잔액=연초잔액+연간증가액-연간처분 및 손해액(연간감가상각액 포함)

	①연초잔액 (1991.1.1 현재)							②연간증가액 (취득·대체액)							③연간처분 및 손해액 (연간감가상각액 포함)							④연말잔액 (1991.12.31 현재)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토지																														
(2) 건물및구축물																														
(3) 기계장치및기구·비품																														
(4) 차량및운반구																														
(5) 건설가계정																														
합계 [(1)+(2)+(3)+(4)+(5)]																														

적 요

작성년월일 1992. . .　　조사담당자 ㊞

작성자소속　　전화번호 :　　내 검 자 ㊞

성 명 ㊞　　조 사 과 장 ㊞

작성기관 : **통계청**
지정통계 : **111－11－10**

1991년 광공업통계조사표〔Ⅰ〕

－사업체 (공장) 조사용－

◎이 조사표에는 반드시 당해 공장(사업체)분만 기입되어야 하며, 본사·지사·영업소나 타공장분이 합산되어서는 아니됩니다.
◎1991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의 1년간 실적을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 조사는 광공업부문의 구조변화와 분포, 경영실태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한 지정통계로서,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법인·단체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제출된 조사자료는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에만 이용됩니다.

◎이 조사표에 관한 질의는 관할 동읍면 또는 구·시·군 통계담당 부서로 하여 주십시오.

★행정구역분류부호	★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	★산업분류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체(공장명) :　　공단부호

대 표 자 :　　전화 :

소 재 지 :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　번지

2. 본사명 및 소재지

본사(본점)명 :　　전화 :

소 재 지 :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　번지

3. 소속모기업

(그룹)명

4. 창설년월

(현공장의 가동년월)

19　　년　　월

5. 경영조직 (해당란에 ○표)

① 주식·유한·합자·합명회사(　)
② 기 타 법 인(　)
③ 개 인(　)

6. 결산기(마감월)

① 연1회 (　월)
② 연2회 (　, 　월)

7. 부지 및 건물 연면적(제조업체만 조사)

○ 임대한부분 및 비업무용은 제외 ○ 1평≒3.3㎡
○ 소숫점이하 삭제

	(1) 자기소유	(2) 임차사용
①부 지	㎡	㎡
②건물연면적	㎡	㎡

8. 자산·부채·자본

○개인사업체인 경우 자산·부채·자본총액만 기입
○법인사업체인 경우 모든 항목을 기입.
○자산총액＝유동자산＋투자와 기타자산＋고정자산＋이연자산
○부채총액＝유동부채＋고정부채 ○자본총액＝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 자 산 총 액							
부 채 총 액							
자 본 총 액							
※ 납입자본(출자)금							

9. 내국소비세액

○본사나 주된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경우에도 당해 공장분만을 구분 기입
○납부부가가치세＝매출부가가치세－매입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세액앞에 "△"표시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 납부부가가치세							
② 특 별 소 비 세							
③ 주 세							
합 계							

10. 종사자수 ○임시 및 일고, 사장, 임원등 포함 ○일고 종업원은 연인원으로 계상하여서는 안되고 그달의 조업일수로 나누어 월평균을 구함

	(1)12월말 현재 계	남	여	(2) 조업기간중월평균종사자수
① 자 영 업 주				
② 무 급 가 족 종 사 자				
피고용자 ③생 산 직				
피고용자 ④사무및기타				
합 계				

⑤ 연간조업월수 :　　개월

11. 연간급여액 ○퇴직금, 복리후생비 제외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	*	*	*	*	*
*	*	*	*	*	*

12.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기타수입액

○제품(자사생산품 또는 위탁생산품) 출하액에는 내국간접세를 제외함.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 제 품 출 하 액							
② 부 산 물 · 폐 품 판 매 액							
③ 임 가 공 (수 탁 제 조) 수 입 액							
④ 수 리 수 입 액							
합 계 (① + …… + ④)							
⑤ 구 입 상 품 매 출 액							
⑥ 구 입 상 품 매 출 원 가							

13.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명세서」및「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같은 비목을 합하여 기입.
○열거되지 않은 경비는 기타에 합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 재 료 비							
② 연 료 비							
③ 전 력 비							
④ 용 수 비							
⑤ 외 주 가 공 비 (위 탁 생 산 비)							
⑥ 수 선 비 (수 리 유 지 비)							
소 계 (① + …… + ⑥)							
⑦ 급 여 총 액 (퇴 직 금 포 함)							
⑧ 복 리 후 생 비							
⑨ 임 차 료							
⑩ 감 가 상 각 비							
⑪ 세 금 공 과 금 (내 국 소 비 세 액 제 외)							
⑫ 대 손 상 각 비							
⑬ 기타(광고선전비,운반비,보험료,접대비등)							
합 계 (① + …… + ⑬)							

14. 기술연구개발비(R&D)

(1) 기술연구개발활동수행유무(해당란에 ○표)
①수행했음(　) → (위탁연구개발포함) ①부설(또는독립)연구소 ②연구개발부(실) ③연 구 개 발 과 ④기타(　)
②수행안했음(　)

(2) 기술연구개발비 내역(①+②=③+④+⑤+⑥)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사용금액	①자체연구개발비사용액(외부지출액포함)						
사용금액	②외부로부터 받은 금액(수탁개발비)						
사용내역	③인건비(연구개발 직접 관련인원)						
사용내역	④기계, 장비, 토지, 건물 등 구입비						
사용내역	⑤자체연구개발비중 외부지출액						
사용내역	⑥기타제경비(수위 등 간접지원 인건비포함)						

(3) 연구개발 종사자(명)

합 계	①연 구 원	②연구보조원	③기술·기능직	④기타지원업무

15. 연간제품출하액(매출액) 및 재고액 내역

○제품명이 외국어나 특수명칭인 경우 품목설명을 병기.
○지정단위에 의하여 기입하되 수량단위와 금액간의 괴계에 유의.
○동일기업내 타공장·영업소등으로의 내부거래도 출하로 간주.
○타 사업체나 무역업체를 통해 직접 수출되는 경우는 수출액에 포함.
○타 수출제품의 원재료나 부품으로 출하되는 것은 수출액에는 제외됨(내수로 간주).
○여러제품을 생산할 경우 출하액이 많은 품목순으로 기재하고, 행이 부족할 경우 동일양식에 별도 작성하여 부착.

일련번호	품목분류번호 (산업 및 품목분류표 참조)	제품명	*지정*단위 부호	지정수량단위	(1)제품별 총출하액(내수+수출) 수량	(2)수출액	(3)연초재고액(완제품)	(4)연말재고액(완제품)	(5)단위당 출하가격(원) 최저단가	최고단가
01										
02										
03										
04										
05										
06										
99	합 계		**	**	12항 ①과일치→				***	***

16.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12항③의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제품별로 구분하여 기입.

일련번호	품목분류번호 (산업 및 품목분류표참조)	제품명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01								
02								
03								
04								
99	합 계	12항③의 금액과 일치→						

위탁사업체명	소재지	전화

17. 재고액 ○완제품재고는 자사생산제품에 한함. (구입상품은 제외)

	(1)연초	(2)연말
① 완 제 품		
② 반 제 품 및 재 공 품		
③ 원재료및보조재료		
④ 연 료		
합 계		

18. 유형고정자산

	(1)연초잔액 (감가상각충당금누계공제후)	(2)연간증가액 (취득·대체액)	(3)연간처분및손해액 (건설가계정대체액포함)	(4)연간감가상각액 (당기충당금설정액)	(5)연말잔액 ((1)+(2)−(3)−(4))
①토 지				***	
②건 물 및 구 축 물					
③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					
④차 량, 선 박, 운 반 구					
⑤건 설 가 계 정				***	
⑥기 타 유 형 고 정 자 산					
합 계					

19. 주요사용원재료명

①	②
③	④

20. 주요생산공정

①(　)→②(　)→③(　)→④(　)→⑤(　)→⑥(　)

적 요

21. 동일기업내 타공장내역

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	타공장(사업체)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연말 종사자수(명)	출하액(백만원)	주요생산품명
01							
02							
03							
04							
05							
06							
07							
08							
09							

사업체 응답자	동읍면 담당자	구시군 확인자
부 서 전화	소 속 전화	소 속 전화
성 명 (인)	직·성명 (인)	직·성명 (인)

〈조사표 작성요령〉

Ⅰ. 일반적 사항

1. ★표란은 동읍면에서 기입하고, ★★란은 통계청에서 기입합니다.
2. 이 조사는 개개 사업체(공장)별 조사이므로, 본사나 지사·영업소·하치장 또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이 따로 있을 경우, 각각 구분 조사하여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업체분이 동일회계에 의해 통합작성되고 있어 구분이 곤란한 경우라도 공장별 유형고정자산, 종사자수 등 해당업체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산정한 후 반드시 구분해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사와 함께 있거나, 단일공장이라 하더라도, 영업소·지사·직매장·하치장 등을 구역을 달리하여 따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조사표 Ⅱ(본사용)를 별도로 추가작성하여 주십시오.(동읍면 공무원에게 조사표Ⅱ 요청)
4. 이 조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회계기간이 이와 다르더라도 가급적 이에 맞추어 주십시오. 만약 불가능할 경우에는 직근 1년간의 결산자료에 의해 작성하되, 적요란에 명기하여 주십시오.
5. 「15항, 연간제품출하액 및 재고액 내역」은 이 조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류·용도, 원재료, 성질이 다른 제품은 유사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구분하여 주시고 「산업 및 품목분류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6. 조사항목별 연관관계와 단위에 유의하여 주시고, 기입누락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Ⅱ. 항목별 유의사항

10. 종사자수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는 개인사업체만 해당되며, 무급가족 종사자란 자영업주(개인사업주)와 가족관계에 있으면서 정규작업시간의 1/3이상 종사하고,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함.
- 사무 및 기타 종사자란 생산현장종업원이 아닌 기술적·전문적·영업적·서기적업무 종사자 및 사업체 임직원과 기타 잡무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 조업기간중 월평균종사자수=각 월말 종사자수누계÷조업월수
- 일고(日雇)종사자는 연인원(延人員)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연인원일 경우는 그달의 조업일수로 나누어 월평균을 구하여야 함.
- 12월말 현재 휴업인 사업체라도 12월중 조업을 하였으면 당시의 종사자수를 기입하며, 전혀 조업하지 않았으면 합계란에 △표시함.(단, 월평균 종사자란은 반드시 기입)

12. 연간 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① 제품출하액
- 직접생산 또는 타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생산하여 매출한 것.
- 동일기업내 타공장간 내부거래로 출하한 것과 직매장 등으로의 반출분도 포함.
- 매출원가에 매출이익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되 간접세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됨.

② 부산물·폐품 판매액
- 부산물이라도 이 조사에서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①제품 출하액에 포함.

③ 임가공(수탁제조)
- 원재료(또는 중간제품)나 원재료비를 타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제조 가공한 대가.
- 원재료를 직접구입하여 제조 납품한 후, 재료비를 포함한 원가 및 수수료를 받는 경우. ①제품 출하액에 기입하고 13항 및 15항에 반드시 기재.
- 신문사등 출판업에서의 **광고수입액**도 여기에 포함.

13.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내역 중 같은 비목을 합산하여 기입.
- ①재료비에는 주재료와 보조재료 등 제품생산에 소요된 모든 재료비를 포함.
- ⑦급여총액에는 생산직·사무직·임원·임시 및 일고 종사자에 지급되는 모든 임금·급료를 포함하며, 특히 「11항 연간급여액」에서 제외한 퇴직금(또는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도 합산함.
- ⑪세금공과금에는 「9항 내국소비세액」의 금액은 제외.
- ⑬기타 경비에는 앞에 열거되지 아니한 접대비, 광고선전비, 보험료, 운반비를 모두 포함하나 특히 개인사업체인 경우 과대계상되지 않도록 함.

14. 기술연구개발(R&D)비

- 1991년 1년간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등에 투입한 총비용을 기입

(2) 기술연구개발비 내역
③인건비는 기여금, 보험료, 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총금액(상여금, 퇴직금, 각종수당 및 보너스 포함)
④기계, 장치, 건물 등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자본적 지출금액의 합계
⑤외부지출액은 연구개발을 위하여 외부에 지출된 금액
⑥연구개발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비원, 기사, 일반행정 요원등 인원의 인건비와 기타 제경비를 기입

(3) 연구개발 종사자 인원현황
①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을 가진자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소지자 등)
※ 겸직인원이 있는 경우 인원산출방법
상근연구원 2명, 겸직연구원 3명이 있을때 겸직연구원중 2명은 근무시간의 1/4을, 1명은 1/2을 연구개발활동에 기여하였다면
연구원수=2+1/4+1/4+1/2=3명
②는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 검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기술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

15. 연간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 내역

- 종류·용도·원재료·성질이 다른 제품은 유사품목일지라도 세분하여 기입하고, 기타로 통합하는 품목의 출하액이 전체출하액의 5%미만이 되도록 가급적 세분.
- 출하액이 큰 품목순으로 기입
- 외국어나 특수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일 경우 제품명뒤에 ( )로 품목설명을 병기.
- 보안이 요구되는 품목은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서 지정한 기타 품목으로 표시
- 「수출액」은 직접수출, 위탁수출 등을 모두 포함하나, 다른 제조업체의 수출품제조에 부품, 원재료로 공급되는 것은 제외함.

16. 임가공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 12항③에 금액이 있는 업체는 이를 내역별로 기재.

18. 유형 고정자산

- (1)연초잔액은 전기까지의 감가상각 충당금 누계액을 공제한 가액
- (2)연간증가액은 신규·중고품 취득을 모두 포함하며, 건설 가계정에서 건물이나 기계장치 계정으로 대체된 가액도 포함
- (3)연간 처분·손해액은 매각, 양도 및 재해등에 의한 가액을 말하며, 건설가계정의 감소액도 여기에 기입.
- (4)연간 감가상각액은 지난 1년간에 감가상각한 가액(또는 감가상각 충당금 설정액)을 말하나, 감가상각 충당금 누계액은 기입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가계정에는 미착기계를 포함하며, 기타 유형고정자산은 궤도, 요, 로, 입목, 항공기 등을 말함.

21. 동일기업내 타공장 내역

- 회계를 같이하는 동일기업내에 광공업체가 달리 있을 경우, 빠짐없이 기입.

작성기관 : **통계청**
지정통계 : **111－11－10**

◎이 조사표는 다음과 같은 사업체인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본사 조직이 따로 있는 경우.
○본사 조직이 따로 없더라도 단일공장에서 지사, 영업소, 직매장, 하치장 등을 구역을 달리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조사표에는 **본사가 관할하는 동일기업내 모든 사업체를 합산**하여 '91년 연간 실적을 기입합니다.

1991년 광공업통계조사표〔Ⅱ〕
－본사(본점) 조사용－

※ 이 조사는 광공업부문의 구조변화와 분포 경영실태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한 지정통계로서,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법인, 단체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제출된 조사자료는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에만 이용됩니다.

★사업체 부호	행정구역분류부호	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	기업체번호	그룹번호	산업분류

1. 본사(본점)명 :

대 표 자 : 전 화 :

소 재 지 :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 번지

2. 소속모기업(그룹)명

3. 경영조직 (해당란에 ○표)

① 주식·유한·합자·합명회사( )
② 기 타 법 인( )
③ 개 인( )

4. 창설년월

19 년 월

5. 회계기간

19 년 월
~19 년 월

6. 자산·부채·자본
- 개인사업체인 경우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만 기입하되 사업용에 한하며, 법인사업체인 경우 모든 항목을 기입
- 자산총액＝유동자산＋투자와 기타자산＋고정자산＋이연자산
- 부채총액＝유동부채＋고정부채
- 자본총액＝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 자 산 총 액							
부 채 총 액							
자 본 총 액							
※ 납입자본(출자)금							

7. 유형고정자산
- 건설가계정은 설정된 사업체만 기입함(시설가계정 및 미착기계계정을 포함)
- (1)＋(2)－(3)－(4)＝(5)임

	(1) 연초잔액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공제후)	(2) 연간증가액 (취득·대체액)	(3) 연간처분손해액 (건설가계정대체액포함)	(4) 연간감가상각액 (당기충당금 설정액)	(5) 연말잔액 (연말미상각잔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 토 지				* * * * * *	
② 건 물 및 구 축 물					
③ 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					
④ 차 량 · 선 박 · 운 반 구					
⑤ 건 설 가 계 정				* * * * * *	
⑥ 기 타 유 형 고 정 자 산					
합 계					

8. 종사자수
- 임시 및 일고, 사장, 임원 등 포함
- 일고종업원은 연인원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9. 연간 급여액
- 상여금·수당 포함
- 퇴직금·복리후생비 제외

	12월말 현재(명)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 자영업주및무급가족종사자		*	*	*	*	*	*	*
② 생 산 직								
③ 사 무 및 기 타								
합 계								

10.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기타 수입액
- 제품(자사 생산품 또는 위탁 생산품) 출하액에는 내국 간접세를 제외함
- 타 기업체에 원재료를 제공 제조케 하고 이를 납품받아 자기명의로 출하한것도 ①에 해당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 제 품 출 하 액							
② 부 산 물 · 폐 품 판 매 액							
③ 임 가 공 (수 탁 제 조) 수 입 액							
④ 수 리 수 입 액							
합 계 (① ＋ …… ＋ ④)							
⑤ 구 입 상 품 매 출 액							
⑥ 구 입 상 품 매 출 원 가							

11. 재고액

	(1) 연초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2) 연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 완 제 품		
② 반 제 품 및 재 공 품		
③ 원 재 료 및 보 조 재 료		
④ 연 료		
합 계		

- 유형고정자산 취득액과 **연말잔액은 토지**를 제외함.
- 연말잔액은 감가상각 충당금 **누계액을 공제한 미상각잔액임.**

12.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같은 비목을 합하여 기입
- 열거되지 않은 경비는 기타에 합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 재 료 비 (부 재 료 · 보 조 재 료 포 함)							
② 연 료 비							
③ 전 력 비							
④ 용 수 비							
⑤ 외 주 가 공 비 (위 탁 생 산 비)							
⑥ 수 선 비 (수 리 유 지 비)							
(소 계 ① ＋ …… ＋ ⑥)							
⑦ 급여총액(퇴직금및제수당포함)							
⑧ 복 리 후 생 비							
⑨ 임 차 료							
⑩ 감 가 상 각 비							
⑪ 세금공과금(내국소비세액제외)							
⑫ 대 손 상 각 비							
⑬ 기 타 (광 고 선 전 비 · 운 반 비 등)							
합 계 (① ＋ …… ＋ ⑬)							

13. 기술연구개발비(R&D)

(1) 기술연구개발수행활동유무(해당란에 ○표)

①수행했음( )→ (위탁연구개발포함) | ①부설(또는독립)연구소 | ②연구개발부(실) | ③연 구 개 발 과 | ④기 타 ( )

②수행안했음( )

(2) 기술연구개발비 내역(①＋②＝③＋④＋⑤＋⑥)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사용금액	①자체연구개발비사용액(외부지출액포함)						
	②외부로부터 받은 금액(수탁개발비)						
사용내역	③인건비(연구개발 직접 관련인원)						
	④기계, 장비, 토지, 건물 등 구입비						
	⑤자체연구개발비중 외부지출액						
	⑥기타제경비(수위 등 간접지원 인건비포함)						

(3) 연구개발 종사자(명)

합 계	①연구원	②연구보조원	③기술·기능직	④기타지원업무

14. 본사관할(동일기업내) 사업체 및 내역
- 01행에는 반드시 본사 내용을 기입
- 사업체 구분은 본사, 공장, 지사, 영업소, 직매장, 하치장 등으로 기입
- 활동내역은 공장일 경우 ○○제조, 그 외의 경우는 관리, 판매, 창고, 구매등으로 기입
- 행이 부족할 경우는 동일 양식에 별도 작성하여 하단에 부착

일련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사업체명	소재지	전화	사업체 구분	활동내역
01					본 사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99	합 계					

(1)12월말 현재 종사자수(명)		(2)제품및구입상품매출액(내국소비세액 제외)		(3)유형고정자산연간 취득액(토지제외)		(4)유형고정자산연말 잔액(토지제외)	
생 산 직	사무및기타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15. 내국소비세액
- 납부부가가치세＝매출부가가치세－매입부가가치세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 납 부 부 가 가 치 세							
② 특 별 소 비 세							
③ 주 세							
합 계							

◎이 조사표에 관한 질의는 관할 동읍면 또는 구시군 통계담당 부서로 하여 주십시오.

16. 동일그룹(소속모기업)내 계열기업 및 내역

- 이 난은 같은 그룹내 기업체단위란 점에서 14항과 구분됨
- 주된 경제활동 난에는 ○○제조업, ××도매업, 주택건설업 등의 기업체단위의 주력산업을 구체적으로 기입
- 행이 부족할 경우는 동일 양식에 별도 작성하여 하단에 부착

일련번호	★★ 기업체번호	기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주된경제활동(업 종)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적요 : 적자일 경우 요인 및 조사표 작성상 참고사항을 기입하십시오.

사 업 체 응 답 자	동 · 읍 · 면 담 당 자	구 · 시 · 군 확 인 자
부 서 : 전화 :	소 속 : 전화 :	소 속 : 전화 :
성 명 : ㊞	직·성명 : ㊞	직·성명 : ㊞

〈조 사 표 작 성 요 령〉

Ⅰ. 일반적 사항

1. ★표란은 동읍면에서 기입하고 ★★표란은 통계청에서 기입합니다.
2. 이 조사표에는 기업체단위 실적을 기입하므로 본사 (혹은 본사 역할을 하는 사업체) 및 본사조직이 따로 없는 단일공장이라도 지사, 영업소, 직매장, 하치장 등을 구역을 달리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장에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산하의 지사, 영업소, 하치장 및 동일기업내 타공장분을 합산 기입하여 주십시오.
3. 이 조사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회계기간이 이와 다르더라도 가급적 이에 맞추어 주십시오. 만약 불가능할 경우에는 직근 1년간의 결산 자료에 의해 작성하되 적요란에 명기하여 주십시오.

Ⅱ. 항목별 유의사항

7. 유형고정자산

- (1) 연초 잔액은 전기까지의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을 공제한 가액임.
- (2) 연간 증가액에는 신규·중고품 취득을 모두 포함하며, 건설가계정에서 건물이나 기계장치 계정으로 대체된 가액도 포함.
- (3) 연간 처분·손해액은 매각·양도 및 재해 등에 의한 가액을 말하며 건설가계정 감소액도 여기에 포함.
- (4) 연간 감가상각액은 지난 1년간의 감가상각비(또는 감가상각충당금 설정액)를 말하며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을 기입하여서는 아니됨.
- (5) 연말잔액은 연말 미상각잔액을 말하며 (1)+(2)−(3)−(4)=(5)임.
- 건설가계정은 설정된 사업체만 기입함(시설가계정 및 미착기계를 포함)
- 기타 유형고정자산은 입목, 요, 로, 항공기 등을 말함.

8. 종 사 자 수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는 개인사업체만 기입.
- 사무 및 기타 종사자란 생산현장 종업원이 아닌 기술적, 전문적, 영업적, 서기적 업무 종사자 및 사업체 임직원과 기타 잡무 등 종사자를 말함.
- 12월말 현재 휴업인 업체라도 12월중 조업을 하였으면 당시의 종사자수를 기입하며, 12월에 전혀 조업이 없었으면 조업기간중 월평균 종사자수를 기입.

10.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기타 수입액

① 제품출하액
- 직접 생산 또는 타기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고, 위탁생산하여 매출한 것.
- 매출원가에 매출이익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되 간접세는 제외하여야 함.

③ 임가공(수탁제조)수입액
- 원재료(또는 중간제품)나 원재료비를 타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제조 가공한 대가
- 원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제조 납품한 후 재료비를 포함한 원가 및 수수료를 받는 경우.
- 신문사, 출판사에서의 광고수입액도 여기에 포함.

12.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내역 중 같은 비목을 합산하여 기입.
- ①재료비에는 주재료와 보조재료 등 제품생산에 소요된 모든 재료비를 포함.
- ⑦급여총액에는 생산직·사무직·임원·임시 및 일고 종사자에 지급되는 모든 임금·급료를 포함하며, 특히 「9항 연간급여액」에서 제외한 퇴직금(또는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도 합산함.
- ⑬기타 경비에는 앞에 열거되지 아니한 접대비, 광고선전비, 보험료, 운반 및 보관비 등을 모두 포함하나 영업외비용 및 특별손실은 포함되지 않음. 특히 개인사업체인 경우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유의

13. 기술연구개발(R&D)비

- 1991년 1년간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등에 투입한 총비용을 기입

(2) 기술연구개발비 내역
- ③인건비는 기여금, 보험료, 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총금액(상여금, 퇴직금, 각종수당 및 보너스 포함)
- ④기계, 장치, 건물 등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자본적 지출금액의 합계
- ⑤외부지출액은 연구개발을 위하여 외부에 지출된 금액
- ⑥연구개발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비원, 기사, 일반행정 요원등 인원의 인건비와 기타 제경비를 기입

(3) 연구개발 종사자 인원현황
- ①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을 가진자(기사 1급 이상의 자격소지자 등)
- ※ 겸직인원이 있는 경우 인원산출방법
  상근연구원 2명, 겸직연구원 3명이 있을때 겸직연구원중 2명은 근무시간의 1/4을, 1명은 1/2을 연구개발활동에 사용
  연구원수=2+1/4+1/4+1/2=3명
- ②는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 검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③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기술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

14. 본사 관할(동일기업내) 사업체 및 내역

- 회계를 같이하는 동일기업내에 속한 사업체를 본사, 공장, 지사, 영업소, 직매장, 하치장 등으로 구분하여 빠짐없이 기입. 이 경우 사업체별 합계가 기업체 전체 결산내역과 일치하여야 함.

16. 동일그룹(소속모기업)내 계열기업 및 내역

- 법률적으로 독립된 기업이라도 자본, 혈연관계 등에 의하여 내면적으로 결합된 기업은 그룹에 포함.

70-52

機械受注統計調査指針書

1991

統　　計　　廳

차 례

Ⅰ. 조사개요 ---------- 3

1. 조사연혁 ---------- 3

2. 조사목적 ---------- 3

3. 조사대상 ---------- 3

4. 조사단위 ---------- 3

5. 조사사항 ---------- 3

6. 조사대상기간 및 시기 ---------- 4

7. 조사방법 ---------- 4

8. 집계 및 결과공표 ---------- 5

9. 조사상 특별유의사항 ---------- 5

Ⅱ. 조사시 일반적 유의사항 ---------- 6

Ⅲ. 조사표 기입방법 ---------- 7

1. 수요자별 기종별 조사표 기입요령 ---------- 7

2. 수주내역별 기입요령 ---------- 9

3. 수요자 및 기종분류 착오 유형 ---------- 11

< 부 록 >

1. 기종분류요약표 ---------- 14

2. 설비용 기계류 기종분류 ---------- 19

3. 수요자분류 요약표 ---------- 49

4. 수요자 분류 ---------- 53

I. 조 사 개 요

1. 조사연혁

가. 1978. 6 ~ 12월분까지 시험조사

나. 1979. 1월분부터 본조사

다. 1989. 1월부터 조사대상 사업체 17개 추가(90개 → 107개 업체)

2. 조사목적

설비용 기계류를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체가 매월 주문받은 실적(계획생산품은 판매실적 기준)을 수요자(발주자) 및 기계의 종류별로 조사, 산업별 설비투자 동향을 파악하거나 경기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3.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38분류중 설비용 기계류를 생산하는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이중 종업원 규모(100인 이상)와 설비용 기계류의 기종별 생산액 등을 감안하여 총생산액에 대하여 약60%를 대표하는 107개 업체를 유의 선정하였다.

4. 조사단위

수주체계를 고려하여 본사중심의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단일 공장의 경우는 사업체(공장)조사

5. 조사사항

가. 수주실적

설비용 기계류의 종류(기종)별로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수요자별 수주액

(2) 판매액

(3) 수주잔고

나. 수주내역조사

해당월에 주문받은 품목중 주요한 것(수주액이 많은 것)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입한다.

(1) 제품명

(2) 기종분류(중분류)

(3) 수요자 사업체명

(4) 수요자 분류

(5) 수주액

(6) 수주수량(수량 및 단위)

(7) 신규개수의 구별

(8) 예정납기

6. 조사대상 기간 및 시기

조사기준 기간은 원칙적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다. (단 경리상의 결산일이 월중에 있는 기업에 있어서는 전월결산일의 익일부터 당월의 결산일까지로 한다.)

조사표는 조사기준 기간의 익월 15일까지 수집 확인한 후 19일까지 중앙에 도착하도록 한다.

단 19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18일 근무시간안에 도착되도록 발송한다.

7. 조사방법

조사표의 기입은 자계식과 타계식 병행으로 하고 조사표의 배포, 제출과 내용검토는 조사담당자에 의한다.

8. 집계 및 결과공표

조사결과는 매월 조사기준 기간의 익월 하순에 집계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9. 조사상 특별 유의사항

본 조사는 설비용 기계류 제조업체 약 6,200개 업체 ('87 광공업 통계조사 기준)중 대규모 107개 업체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 자체의 조사누락은 두말할 것도 없고 단 1건의 수주건수 누락과 중복도 금액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 생산액(외부로부터의 주문없이 계획에 의해 직접 생산하는 경우)도 판매(출하)시에 수주액과 판매액 조사에 누락이 없도록 한다.

Ⅱ. 조사시 일반적 유의사항

1. 일반적 유의사항

수요자별 기종별 조사와 내용조사로 구분하며 조사표 기입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표 기입은 일반적으로 청 또는 흑색잉크나 볼펜을 사용하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한다.

나. 설비용 기계류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하므로 주문받은 설비용 기계류 뿐만 아니라 계획 생산한 기계류중 조사기준월간에 출하된 설비용 기계류는 당월의 수주로 간주하여 포함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품뿐만 아니라 부분품 및 부속품의 수주도 포함시키고 보수공사, 부대공사 등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금액의 단위는 백만원으로 하고 단위 미만의 금액은 4사 5입한다.

라. 수주액 합계란에는 기종별 및 수요자 별로 수주액의 합계를 계산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이때 기종별 수주액 합계와 수요자별 수주액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마. 수주액 합계는 민간수요 + 공공수요 + 해외수요 + 대리점의 합계이다.

Ⅲ. 조사표 기입요령

1. 수요자별 기종별 조사표 기입요령

가. 사업체 번호는 조사대상사업체 명부에 지정된 번호를 기입한다.

나. 수요자 분류

(1) 수요자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23개업종(해외수요, 대리점포함)으로 세분하였다. (부록3, 4 수요자 분류참조 : 기계공업을 조립금속, 기계 정밀기기공업과 전기전자공업으로 세분하였고 공공기타를 공공제조업과 공공기타로 세분)

(2) 수요자 분류는 설비용 기계를 주문한 기업 즉, 최종수요자의 업종을 기준으로 부록3, 4와 같이 분류한다. 그러나 대리점(상사, 회사포함), 건설업체로부터의 수주품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최종수요자에 따라 분류하고 최종수요자가 불분명할 때는 대리점 또는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건설중인 빌딩에 설치되는 설비(예:승강기)를 건축 청부업자가 주문 하는 경우 그 빌딩의 시행주가 불분명할 때는 건축청부업체를 최종수요자로 보고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3) 국내무역업체(종합무역상사등)가 수출을 위해 주문할 경우 최종수요자가 해외이므로 해외 수요로 분류한다.

(4) 주문자가 2종 이상의 다른 업종을 겸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계를 수요하는 사업체의 업종에 의하여 분류한다.

(5) 동일사업체가 2종 이상의 산업을 일관 작업공정으로 겸하고 있는 업체에서 주문이 있을 경우 (예 : 합성원료의 제조와 방적업을 일관작업으로 겸하고 있을 때) 최종제품에 속하는 산업으로 분류한다.

다. 기종분류

기종분류는 한국표준무역분류(SKTC)에 의거 4대분류하고 이를 다시 표준산업분류에 의거 17개 중분류(철구조물 별도)로 세분하였다. (부록 1,2기종분류 참조),이는 제품(기계명)의 기능을 중시하고 용도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부분품 및 부속품도 동일함)

예) (1) PLANT 수주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단일부분(단체)을 기준으로하여분류하고 만일 이것이 곤란할 때는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한다.

(2) 다음에 열거한 선박용부품은 각각의 소속에 분류한다.

화력원동기, 내연기관, 중전기, 통신기계, 풍수력기계, 운반기계,화학기계

(3) 철도차량의 부분품(철도용 내연기관, 증기기관, 철도차륜 등)을 수주받았을 경우에는 부분품의 기능에 관계없이 철도차량으로 분류한다.

라. 수주액

(1) 수주액은 조사기준기간(월간)중 주문을 받은 총금액(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을 기입하 되 그 일부가 외주 또는 하청인 경우에도 포함한다. (단,하청을 받은업체가 조사대상인 경우에는 하청을 준 금액이 제외된다)

(2) 계획생산품은 판매(출하)시에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기종별로 수요자별 금액을 계산하여 당월의 수주액에 합산한다.

(3) 계약 금액이 미정인 경우에도 사실상의 수주가 있을 때의 계산이나 견적의 금액을 기입한다.

(4) 기보고된 수주액중 해약 등으로 인한 계약변경으로 발생된 증감액은 변경사유를 보고받은 조사월에 조정하고, 당월분의 수주액에 반영(감

액)한 결과 당월의 수주액이 "-"가 될 경우에는 그 금액 앞에 "-"표를 하여야 한다.

(5) 설비용 기계류를 자기기업내에 설비하기 위하여 자가사용 하였을 경우에도 수주액에 포함 조사하여야 한다.

마. 판매액

판매액은 원칙적으로 기성고 기준에 따른 경리상의 매상고를 기입하는 것으로 판매액중에는 주문을 받은 제품을 판매한 것과 계획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것을 포함 기입한다.(단,기업의 사정에 따라 소액 규모인 경우에는 기성고 기준에 의하지 않고 완성 또는 출하시의 판매액을 기입한다)

바. 수주잔고

수주잔고란에는 대상 사업체의 총수주실적(당월에 수주받은 것과 그 이전에 수주받은것)중에서 조사기준 기간말 현재 아직 납품(판매)하지 못한 수주액(잔액)을 기입한다.

※ 제품의 재고는 생산을 해 놓고 아직 판매하지 못한 잔량(현품)인데 반하여 수주잔고는 앞으로 생산을 해야 할 주문잔액(현품이 아님)임.
또한 함수관계상(전월말수주잔고+당월수주액-판매액)의 수주잔고가 전월의 수주잔고와 증감의 차이가 클때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2. 수주내역표 기입요령

본 내역표는 수요자별 기종별 수주실적에 기입되는 수주액에 대하여 제품별로 세분조사하여 그 내용을 기입하는데 이는 조사표의 내검 및 조사결과 분석에 이용된다.

가. 「제품명」란에는 "전기발생모터 2만kw"와 같이 기계의 내용을 알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만약 완제품과 부품을 함께 수주 받았을 경우에는 부품을 완제품에 포함 조사하고 보수하기 위해 부품만 수주받았을 경우에는 완제품명도 동시에 병기한다.

예) 차축, (Axles) (철도차량)

나. 「기종분류」란에는 "화력원동기", "수력원동기","내연기관","농림업용기계"등과 같이 수요자별 기종별 조사표에 기입된 기종분류명(중분류명)을 기입한다.

다. 「수요자 사업체명」란에는 구체적인 발주자의 사업체명을 기입하고 간접주문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약자와 최종 수요자명도 병기하고 해외수요(수출)인 경우에는 "발주국명"을 기입한다.

라. 「수요자분류」란에는 "식품공업","섬유공업","화학공업","기계공업"등과 같이 수요자별 기종별 조사표에 기입된 수요자분류명을 기입한다.

마. 「수주액」란에는 각 제품 및 수요자별 수주액을 「백만원」단위로 기입한다.

바. 「수주수량」란에는 대,기,kg,M/T 등 되도록 미터법상의 단위와 수량을 기입한다.

사. 「신규.개수」란에는 제품에 대한 수주가 당월에 신규로 계약된 경우에는 신규란에 수리개조공사 등의 수주는 개수란에 각각 "○"표를 한다.

아. 「예정납기」란에는 수주 받은 제품을 완성하여 수요자에 납품할 예정 년월일을 기입한다.

자. 기 보고된 수주액에 대하여 할인 또는 해약 등에 의하여 금액에 현저한 변경이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비고란에 기입한다.

(언제 수주분인지, 그 금액, 수요자 사업체 명등을 기입하여야한다.)

차. 해외수주분에 대하여는 수주액이 적더라도 모두 기입한다.

카. 다수의 업체로 부터 동일기종에 대한 수주를 받은 경우 개개 업체별로 수주내역을 모두 기입하는 것이 곤란하여 대표적업체(금액크기)를 중심으로 일괄기입하는 경우 각 개별수요자의 산업분류가 모두 동일하여야한다. 즉 산업(수요자분류)을 달리하는 사업체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 [설비용 기계의 개념]

가. 설비용 기계란 일정한 산업의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설비로써 금속을 주재료로하여 제조되고 동력을 받아 대상물에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외부의 대상물에 작업을 가하거나 대상물을 내부에 수용하여 이를 변질,변형,분해,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이에는 소비재성 가정용 기계와 도구(기구, 공구) 등은 제외한다.

나. 조사범위

기계수주조사에서는 원동기, 기계를 만드는 기계 및 장치, 일반산업용 기계 및 장치, 변압기, 전동기, 발전기 등 전기기계, 통신기계와 버스, 트럭, 철도용차량, 선박 등의 수송용기계,구조물 등을 포괄범위로 하고 완성품 뿐만 아니라 그 부분품, 부대공사 및 보수공사까지도 포함한다.

3. 수요자 및 기종분류 착오유형

가. 수요자분류 착오유형

수 요 자	착 오 분 류	바 른 분 류
o 수공구,철물,날붙이 등 제조업	제1차 금속업	기계공업
o 악기제조업	기계공업	기타공업

수 요 자	착 오 분 류	바 른 분 류
o 장신구(귀금속,진주 등) 제조업	기계공업	기타공업
o 기중기 대여업	건설업	기타 비제조업
o 농,어가 실수요자	기타비제조업	농림어업
o 서울시(전동차)	공공기타	공공운수업

※ 수요자 분류시 특히 유의할 사항

o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에 대한 최종수요자가 불분명한 경우 막연히 대리점으로 수요자를 분류한 사례가 있는 바 이는 건설업으로 분류함이 타당(동제품의 수주는 통상 생산자와 수요자 또는 건설업자간의 직거래에 의함)

o 서울 지하철에 사용될 전동차 수주에 대한 수요자 분류를 계약당사자인 서울시를 기준으로 공공기타로 잘못 분류한 사례가 있는 바,이는 전동차의 최종수요자인 서울지하철공사의 산업인 공공운수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o 동일 그룹내 계열업체를 통한 계획생산품목의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막연히 계열업체의 산업을 기준으로 동제품에 대한 수요자를 분류한 사례가 있는 바,계열업체는 최종수요자가 아니고 단지 출하 및 판매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계열업체에서의 판매형태(대리점판매,실수요자의 주문판매,직판)를 고려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계열업체의 판매형태를 모를 경우는 대리점으로 분류한다.

나. 기종분류 착오 유형

o 잘못 분류하기 쉬운 다음 기종에 대하여는 구별 기준 및 주요 제품명

등을 참고하여 정확히 분류하도록 한다.

	기 종	구 별 기 준	주 요 제 품 명
1	o 운반기계	한정된 구역 및 공간에서의 운반, 하역, 승강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지게차, 원치
	o 기타수송용 기계	일반도로주행용	버스, 트럭, 특장차, 탱크로리
2	o 석유, 화학기계	별도의 화학장치물 부착	발효탱크
	o 철구조물	저장목적	금속탱크, 방카C유 탱크
3	o 금속공작기계	금속을 절단 및 절삭하여 기계를 만드는 기계	선반, 보링기, 밀링기
	o 금속가공기계	금속을 압축, 인발, 성형하여 가공하는 기계	압연기, 프레스기, 나사전조기

< 부록 >

1. 기종분류별 요약표

대분류	중 분 류	세 세 분 류	비 고
원동기	화력원동기	38134 보일러 및 관련제품 제조업 38212 증기 및 가스터어빈 제조업	난방용 제외 수력터어빈 제외
	수력원동기	38212 증기 및 가스터어빈 제조업 3821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관 및 터어빈 제조업	수력터어빈에 한함 풍차, 수차 등
	내 연 기 관	38211 내연기관 제조업 38411 선박용기관 및 부품제조업 38432 자동차부품 제조업	자동차용내연기관 및 부품에 한함
일반산업용기계	농림업용기계	38220 농업용기계 및 장비제조업	
	금속공작기계	38231 금속절삭기계 제조업 38239 기타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부속품	
	금속가공기계	38232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38233 금속처리용기계 제조업 38296 산업용 로보트 제조업	
	건설광산기계	38241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38431 자동차 제조업(부품제외)	트럭트랙터에 한함
	섬유용기계	38242 섬유용 기계 제조업 38262 상업용 세탁기 제조업	

대분류	중 분 류	세 세 분 류	비 고
일반산업용기계	섬유용기계	38295 재봉기 제조업	
	석유화학기계	38244 화학 및 석유정제 산업용 기계 제조업 38245 고무 및 프라스틱 산업용 기계 제조업 38246 종이산업용 기계 제조업 38263 산업용 냉동장비 제조업 38264 공기조절장치 제조업	펄프, 종이, 판지 제조용 기계에 한함(가공용 기계 제외)
	풍수력기계	38291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38292 송풍기 및 환풍기 제조업	
	운 반 기 계	38293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38294 산업용 트럭 및 적하기 제조업	
	기타산업용 기계	38116 톱 및 톱날 제조업 38235 목공기계 제조업 38243 식료품 가공기계 제조업 38246 종이 산업용 기계 제조업 38247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38248 유리 및 요업용 기계 제조업 38297 기계식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829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전기제외)	펄프, 종이, 판지 전화용(가공용) 기계

대분류	중 분 류	세 세 분 류	비 고
전기통신기계	전기기계	38311 발전기 ,전동기 및 기타 회전기 제조업 38312 변압기 제조업 38313 개폐장치 및 보호장비 제조업 38314 산업용 전기제어장비 제조업 38315 전기용접기 제조업 38316 내연기관용 전장품 제조업 38319 기타 전기산업용 기계 및 장치 제조업	
	통신기계	38322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38323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38324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수송용기계	선 박	38412 강선 건조 및 수선업 38413 모선건조 및 수선업 38419 기타 선박건조 및 수선업	
	철도차량	3819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38421 기관차 제조업 38422 철도 객화차 제조업 38423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 38429 기타 철도장비 제조업	철도차량용 스프링에 한함

대분류	중 분 류	세 세 분 류	비 고
수송용 기계	기타수송용 기계	38431 자동차 제조업(부품제외)	승용차 및 트럭 트랙터 제외
		38432 자동차부품 제조업	내연기관 제외
		38451 항공기 제조 및 수선업	
		38452 항공기 부품 제조업	
철구조물	철 구 조 물	38135 금속 구조재 제조업	
		38136 금속 탱크 및 용기 제조업	
		38139 기타 구조 금속제품 제조업	

2. 설비용 기계류 기종분류

원동기 ---------- 21

화력원동기 ---------- 21

수력원동기 ---------- 21

내연기관 ---------- 21

일반산업기계 ---------- 22

농림업용기계 ---------- 22

금속공작기계 ---------- 23

금속가공기계 ---------- 25

건설.광산기계 ---------- 26

섬유용기계 ---------- 27

석유.화학기계 ---------- 30

풍수력기계 ---------- 33

운반기계 ---------- 34

기타산업기계 ---------- 35

전기.통신기계 ---------- 41

전기기계 ---------- 41

통신기계 ---------- 43

수송용기계 ---------- 44
선 박 ---------- 44
철도차량 ---------- 45
기타 수송용기계 ---------- 46

철구조물 ---------- 47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원동기	화력원동기 (01)	38134-111	증기발생보일러	※ 중앙난방용의 보일러는 제외 ※ 철도 차량용의 증기 발생 보일러,증기기관,개스터어빈 등은 철도 차량(19항)에 기록 ※ 보일러실 보조장치 (38134-300)의 관련제품 - 이코너마이저 (ECONOMIZER) - 공기예열기 (AIR PREHEATERS) - 과열기 (SUPER HEATERS) -과열조감기 (DE-SUPERHEATERS) -증기 수집기 (STEAM-COLLECTORS) - 증기비축기 - 수로관벽 (TUBULAR FURNACE WALLS)
		112	대형온수보일러	
		211	핵 반응기	
		212	열 교환기	
		213	먼지추출기	
		214	싸이크론	
		215	가스 세정기 또는 흡수탑	
		216	액체 및 까스여과용 정치식 장치	
		217	집진 장치	
		219	기타 보일러 관련제품	
		300	보일러실 보조 장치	
		38212-100	증기기관	
		200	증기터어빈	
		300	가스터어빈	
	수력원동기 (02)	38212-400	수력터어빈	
		38219-119	기타 기관 및 부품 (풍차, 수차)	
	내연기관 (03)	38211-100	내연기관(압축 및 불꽃 점화 기관)	※ 철도차량용 내연기관은 철도차량(19항)에 기록
		38411-100	선박용 내연기관	
		38411-900	선박용 기관부품	
		38432-111	자동차용 내연기관	
		119	기관용 부품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반산업용기계	농림업용기계 (05)	38220-111	쟁 기	
		112	써 레	
		113	식부기	※ 식부기(38220-113)의 관련제품 - 파종기 - 이식기
		119	기타 경작용 기계	※ 기타 경작용 기계 - 원예용 발아장치
		211	탈곡기	
		212	청정 제질 및 선별용 기계	
		219	기타 수확용 기계	
		311	경운기	
		312	농업용 트랙터	
		313	이앙기	
		314	바인더	
		315	콤바인	※ 기타추진식 농업용기계(38220-319)의 관련제품 - 비료 살포기 - 퇴비 살포기 - 제초기 - 잔디 깍는 기계
		319	기타 추진식 농업용 기계	
		411	농업용 동력 분무기	
		412	탈수장치	
		413	농장콘베이어	
		414	마초가공품 기계 및 기기	
		415	제승기, 입직기 (가마니틀)	
		416	과일 및 기타 선별기	
		417	예취기 및 제초기	
		418	착유기	※ 착유기(38220-419)의 관련제품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반산업용기계	농림업용기계 (05)	38220-41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업용 기계	- 과실주, 과실쥬스 제품 제조용프레스, 파쇄기 및 기타 기계
		611	가금 부화기	
		612	가금 사육기	
		613	달걀 세척기	
		614	기타 가금 사육기	
		621	꿀벌 사육기	
		622	사료 및 곡물 건조기	
		623	사료 절단기	
		629	기타 동물 농업용 기계	※ 기타 동물 농업용 기계 (38220-629)의 관련제품 - 우유균질화기 - 버터제조기 - 기타 양봉, 양계용기계
		700	농업용 기계날 및 칼	
		900	트랙터 및 농업용 기계 장비 부품	
	금속공작기계 (06)	38231-111	수치제어선반(NC선반)	
		112	자동선반	
		113	보통선반	
		114	입선반	
		115	기타 선반	
		121	형삭기	
		122	평삭기	
		123	랩핑기	
		124	태핑기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반산업용기계	금속공작기계 (06)	38231-125	밀링기	
		126	브로칭기	
		127	기계톱	※금속 공작용에 한함.
		128	연삭기	
		129	호닝기	
		131	보링기	
		132	드릴링기	
		133	기어컷팅기	※ 기어컷팅기(38231-133)의 관련제품 - 나사절단기 포함
		134	리밍기	
		135	전기 또는 전자식 가공기계	
		136	스크류 컷팅기	
		137	수치제어 밀링기	
		138	머시닝 센타	
		141	수치제어 연삭기	
		142	수치제어 보링기	
		143	수치제어 기어컷팅기	
		144	수치제어드릴링기	
		145	수치제어평삭기	
		146	기타 수치제어 금속절삭기계	
		147	기타 금속절삭기계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반산업용기계	금속공작기계 (06)	38231-149	기타 금속절삭기계부품	
		38239-100	복합금속 공작기계 공구	
		300	기계공 정밀측정기	
		900	기타금속공작 및 부속품	
	금속가공기계 (07)	38232-111	단조기 및 스템핑기	
		112	액압금속 가공프레스	
		113	기타금속 가공프레스	
		114	압출기	
		115	에어햄머	
		116	굴곡기	
		117	성형기	
		118	절단기	
		121	펀칭기	
		122	신선기	
		123	인발기	
		124	나사전조기	
		125	수치제어 금속가공기계	
		126	기타 금속 가공기계	
		129	기타 금속가공기계부품	
		211	압연기	
		212	압연기롤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반산업용기계	금속가공기계 (07)	38233-111	주조기	
		112	가스용접장치	
		113	금속세척기	
		114	금속열착기	
		115	금속표면처리기	
		119	기타금속처리용 기계 및 부품	
		38296-111	교시형 로보트	
		112	적응형 로보트	
		113	지능형 로보트	
		119	로보트 부품	
	건설광산기계 (08)	38241-111	천공기	
		112	채탄기계	
		113	파쇄기	
		114	선광기	
		115	선별기	
		116	마쇄기	
		117	교반혼합기	※ 교반혼합기(38241-117)의 관련제품 - 배처프랜트 - 콘크리트 혼합기
		119	기 타	
		200	유전기계 및 장비	※ 유전기계 및 장비(38241-200)의 관련제품 - 보링기 - 시추기
		311	동력쇼벨	
		313	드레그레인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반산업용기계	건설광산기계 (08)	38241-314	크레인	
		315	스크레퍼	
		316	그레이더	
		317	로 더	
		318	탬핑기	
		321	굴착기 : 포크레인	
		322	도로 포장기	
		323	콘크리트믹서	
		324	트럭트랙터 웨곤	
		329	기타건설장비 및 부품	※ 기타건설장비 및 부품 (38241-329)의 관련제품 - 로드롤러 - 준설기 - 제설기 - 항타기
		330	인양장비	
		341	원치	
		342	건설장비 부착물	
		411	트랙터	
		419	트랙터 부품	
		511	불도저	※ 불도저(38241-511)의 관련제품 - 앵글도저
		519	불도저 부품	
		38431-500	트럭트랙터	
	섬유용기계 (09)	38242-111	인조섬유 방사기	
		112	조방기	
		113	조면기	※ 방적준비기계(38242-115)의 관련제품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반산업용기계	섬유용기계 (09)	38242-114	혼타면기	- 면방적준비기계 - 모방적준비기계 - 견방적준비기계
		115	방적준비기계	
		116	코밍기	
		117	연조기	
		118	연사기	
		119	기타섬유용 기계	※ 기타섬유용기계(38242-119)의 관련제품 - 합사기 - 합연사기 - 권사기
		211	면방적기	
		212	모방적기	
		213	견방적기	
		214	정방기	
		219	기타방적기계	
		311	면직기	
		312	견직기	
		313	모직기	
		319	기타직기	
		411	횡편직기	
		412	환편직기	
		413	가정용 편물기	
		414	종편직기	
		419	기타 편직기	※ 기타편직기(38242-419)의 관련제품 - 수편기 - 양말횡편기 - 양말종편기
		511	망제조기	
		512	툴, 레이스제조기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반산업용기계	섬유용기계 (09)	38242-513	자수기	
		514	짐핑기	
		519	기타 직기 및 편물기	
		611	스핀들	
		612	도비 및 잭쿼드	
		613	잭쿼드장치용 기계	
		614	링	
		615	카드 조립기	
		618	콤	
		622	종광	※ 기타방적보조기계 및 부품(38242-629)의 관련제품 - 노즐 - 침포 - 가아넷와이어 - 트레블러
		623	샷틀(=북)	
		629	기타방적 보조기계 및 부품	
		711	염색기	
		712	나염기	
		713	표백기	
		719	기타 섬유가공기계	
		911	펠트제조용기계	
		912	섬유완성기계 및 장비	
		913	가죽가공기계	
		914	신발 및 가죽제품 제조기	
		915	로프 제조기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반산업용기계	섬유용 기계 (09)	38242-91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섬유용 기계	
		38262-111	상업용 세탁기	
		119	상업용 세탁기 부품	
		38295-111	손 틀	
		112	발 틀	
		113	재봉기-전기식	* 가정용 재봉기 및 부품 제외
		211	재봉기-직물용	
		212	재봉기-가죽용	
		213	재봉기-포대봉합용	
		219	재봉기-기타산업용	
		300	재봉기용 부품	
	석유화학기계 (10)	38244-111	가스분리 플랜트	
		112	암모니아 합성유니트	
		113	합성수지 및 인조수지 제조용 플랜트	
		114	폭발물 제조용 플랜트	
		115	석유화학 플랜트	
		116	비료,농약 및 기타 살충제 제조용 기계	
		119	기타화학관련제품 생산용 플랜트	
		200	석유정제기 및 장비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반산업용기계	석유화학기계 (10)	38244-300	코크스로	
		911	비누절단 또는 성형기	
		912	이조섬유 압출기	
		913	전해조	
		914	원심분리기	※ 원심분리기(38244-914)의 관련제품 - 원심분리 건조기(가정용 제외) - 청정기용 원심분리기 - 왁스 또는 수분제거 원심분리기 - 화학산업용 원심분리기 - 실험용 원심분리기 - 초산염 원심분리기
		915	여과 프레스	
		916	먼지 추출기	
		917	카렌더기	
		918	분류 및 정류장치	
		921	증발 및 건조장치	
		922	찜 틀	
		923	살균장치	
		924	집진장치	
		925	페인트 제조용 기계	
		929	기타화학용기계 및 부품	
		38245-111	고무가공기계	
		112	고무 및 프라스틱 성형 프레스	
		113	고무신 제조기	
		114	자동차타이어 및 튜브 제조기	
		119	기타고무 및 프라스틱 가공용기계 및 부품	※ 기타 고무 및 프라스틱 가공용 기계 및 부품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반산업용기계	석유화학기계 (10)	38246-111	래그컷터, 더스터, 세척기 및 파쇄기	(38245-119)의 관련제품 - 인조프라스틱 성형기 ※ 래그컷터, 더스터, 세척기 및 파쇄기(38246-111)의 관련제품 - 쇄목기 - 절단기 ※ 펄프 제조기(38246-112)의 관련제조기 - 스트레이너어 - 프레스파아트기 - 바이터어 - 기타 셀루로우즈 펄프 제조기 ※ 종이.도포 및 짐책기(38246-116)의 관련제품 - 권취기 - 표면가공기 - 침투가공기
		112	펄프 제조기	
		113	에스파트토의 오프너, 파쇄기 및 절단기	
		114	우드칩 가공기	
		115	초치기	
		116	종이, 도포 및 짐책기	
		117	크레핑기	
		118	롤링기	
		121	골판지 제조기	
		122	경화파이버보드 제조기	
		129	기타펄프, 종이제조기계 및 부품	
		38263-111	산업용 냉장고	※ 가정용 냉장고 제외
		112	제빙기	
		113	차량 냉동장비	
		114	냉동제습기	
		115	산업용 냉동장비	
		116	산업용 냉동진열장	
		119	기타냉동장비 및 부품	※ 기타 냉동장비 및 부품(38263-119)의 관련제품 - 혈액저장용 냉장고 ※ 가정용은 제외
		38264-111	룸 에어콘디쇼너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반산업용기계	석유화학기계 (10)	38264-112	차량 공기조절기	※ 온도변화에 의한 재료처리용기계, 플랜트 및 유사 이화작용 장치는 석유 화학기계에 포함한다. - 냉동기용 증발 및 응축기 - 과일즙 농축장치 - 제분산업용 냉각탑 - 유지 산업용 가마솥 - 펄프제조화학용 고압솥 - 기타 공기조절용 응축기, 증발기
		113	자장공기조절기(패케이지형 에어콘)	
		114	대형 냉풍기	
		115	냉각탑	
		119	기타 공기조절기 및 부품	
	풍수력기계 (11)	38291-111	공업용 펌프	※ 공업용 펌프(38291-111)의 관련제품 - 왕복펌프 - 원심분리펌프 - 회전펌프
		112	주유소용 측정 및 분배펌프(계량용 펌프)	
		114	수동펌프	
		115	양수기	
		116	공기펌프	
		117	진공펌프	
		118	공기압축기	
		119	기타펌프와 공기압축기 및 부품	
		38292-111	블로우형 송풍기	
		112	팬형 송풍기	
		113	환풍기	※ 가정용 제외
		114	공기청정기 및 집진장비	
		115	공기 여과기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반산업용기계	풍수력기계 (11)	38292-116	에어커어튼 장치	
		119	기타 송풍기, 환풍기 및 그 부품	
	운반기계 (12)	38293-111	활 차	
		112	잭	
		113	리프트:호이스트	
		114	텔레페릭 및 푸니큘라	
		115	화차 경사기	
		116	적하기	
		117	크레인	※ 크레인(38293-117)의 관련제품 - 선박용 데릭 - 이동식 리프트프레임
		122	에스컬레이터	
		123	엘리베이터	
		124	콘베이어	
		125	스키리프트	
		126	화차 전철대	
		129	기타 재료 취급장비 및 부품	
		38294-111	산업용 수송트럭 및 산업용 트레일러	
		112	소형 트랙터	
		113	프레그홈 트럭	
		114	포크리프트(지게차)	
		119	기타 산업용트럭 및 부품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반산업용기계	기타산업용기계 (13)	38116-111	톱-나무용	※ 가정용 제외
		112	톱-금속용	
		113	톱-석재용	
		114	톱-시계 및 보석가공용	
		119	기타톱	
		121	톱 날	
		122	체인톱	
		38235-111	박피기	
		112	기계톱	
		113	세절기	
		114	박절기	
		115	대패기 및 장부기	
		116	드릴링기	
		117	선반 및 축성형기	
		118	샌드페이퍼링기	
		121	베니어 접합프레스	
		122	만능나무 공작기계	
		123	마루세공 나무제조기	
		124	목공 밀링기	
		125	수치제어 목공기계	
		211	통제조기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반산업용기계	기타 산업용 기계 (13)	38235-212	연필 제조기	
		213	등제품 제조기	
		219	기타 특수산업용 목공 기계 및 부품	
		38243-111	크림 분리기	
		112	균질기, 조사기, 저온살균기및 관련우유가공기	
		113	버터 제조기	
		114	치즈 제조기	
		115	아이스크림 제조기	
		119	기타 우유 가공기계	
		211	정미기	
		212	정맥기	
		213	압맥기	
		214	곡물제분하기전 가공기	
		215	제분기	
		216	분급기	
		219	기타 곡물가공용 기계	
		911	제빵용 기계	
		912	국수 제조기	
		913	설탕과자 제조기	
		914	고기 가공용 기계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반산업용기계	기타 산업용 기계 (13)	38243-915	물고기 가공용 기계	
		916	과실 및 야채가공용 기계	
		917	설탕 제조 또는 정제기	
		918	과실쥬스 가공용 프레스, 파쇄기	
		921	양조 및 증류용 기계	
		922	착유기	
		923	차 및 커피 가공기계	
		924	담배 가공기계	
		925	포장 및 충전기	
		92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식품 가공기계	
		38246-211	종제단기	
		212	스리터릴러	
		213	다이컷트	
		214	천공기	
		215	봉투제조기	
		216	종이포대 제조기	
		217	종이상자 제조기	
		221	종이 주형제품 제조기	
		229	기타펄프, 종이 또는 판지전화용 기계 및 부품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반산업용기계	기타 산업용 기계 (13)	38247-111	평압 및 원동압식 인쇄기	※ 윤전인쇄기 포함
		114	석판인쇄기	
		115	옵셋인쇄기	
		116	그라비아 인쇄기	
		117	특수인쇄기	
		118	인쇄보조기	
		119	기타 인쇄기 및 부품	
		211	활자 주조기	
		216	식자용 장비	
		218	스테레오 제판 주조용 기계	
		219	기타 활자주조, 식자기계 및 부품	
		311	책 재봉기	
		312	접지기	
		313	집적 및 철책용 기계	
		314	표지 제조기	
		319	기타 제본기계 및 부품	
		38248-111	판유리 제조기	
		112	병 제조기	
		113	유리관 제조용 기계	
		114	유리섬유 제조용 기계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반산업용기계	기타 산업용 기계 (13)	38248-115	전구 제조기	
		119	기타 유리 제조용 기계 및 부품	
		211	프레스기(벽돌, 타일, 브로크 등의 제조기)	
		212	압출기	
		214	관제조용 원심분리 성형기	
		215	연탄 제조기	
		219	기타 비금속 광물 응집기	
		311	톱 및 절단기계	
		312	열단기	
		313	연마기	
		314	드릴링기	
		315	조각용 기계	
		316	그라인딩휠용 기계	
		319	기타 비금속광물 공작기계공구	
		38297-111	베어링 하우싱	
		112	트랜스 밋숀 샤프트	
		113	크랭크 및 크랭크샤프	
		114	캄샤프트	
		115	기어 및 기어링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반산업용기계	기타 산업용 기계 (13)	38297-116	감속기	
		117	클러치	
		119	기타 기계식 동력전달 장치 및 부품	
		211	볼베어링	
		212	니들베어링	
		213	메달베어링	
		214	테이퍼베어링	
		219	기타베어링	
		221	베어링부품	
		38299-100	동력분무기	
		211	금속용해 및 정련전기로	
		212	금속열처리 및 가공전기로	
		213	용광로(비전기식)	
		214	용선로(비전기식)	
		215	토마스 및 베세머 진로	
		216	기타 비전기식 금속제련로	
		217	비전기식 금속열처리 및 금속가공로	
		311	전기로	
		312	비전기로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일반산업용기계	기 타 산업용 기 계 (13)	38299-411	로연소기(기계식)	
		412	급탄기	
		413	재 방출기	
		414	기계식 화상	
		415	가스 발생기	
전기통신기계	전 기 기 계 (14)	38311-111	원동기(발전기 세트)	
		112	회전변환기	
		119	기타발전기 세트 및 부품	
		211	전동기-직류	
		212	전동기-교류	
		217	발전기-직류생산	
		218	발전기-교류생산	
		219	회전전기장비의 부품	
		38312-111	송배전 변압기	
		112	발전 변압기	
		113	전력조절기, 승압기 및 유사장치	
		114	신형변압기	
		115	등안전기	
		119	기타변압기 및 부품	
		38313-111	배전판-고압	
		112	배전판-저압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전기통신기계	전기기계 (14)	38313-113	전력회로차단기-고압용	
		114	전력회로차단기-저압용	
		115	누전차단기	
		119	기타 개폐장치, 안전장치 및 부품	
		38314-111	전기제어장비	
		112	모터 스타터	
		113	전기자기브레이크, 크러치 및 연계장비	
		114	산업용 전자통제장비	
		119	기타 산업용 통제장비 부품	
		38315-111	아크 용접장치	
		112	저항 용접기	
		119	전기용접기 부품	
		38316-111	발전기 및 전동기 시동기	
		112	스파크 프러그	
		113	점화 코일, 마그네트	
		119	기타 내연기관용 전장품	
		38319-100	정류기 및 정류장치	※ 기타 전기산업용 장치 및 부품(38319-900)의 관련제품 - 수은아크 정류기 - 실리콘 정류기 - 세레늄 정류기
		211	고압축전기	
		212	저압축전기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전기통신기계	전기기계 (14)	38319-900	기타 전기산업용 장치 및 부품	- 기타 금속정류기 및 정류장치
	통신기계 (15)	38322-111	전화기세트	
		112	무선전화기	
		113	자동차용 전화기(카폰)	
		114	자동식 전화교환기	
		115	전자식 전화교환기	
		211	반송장치	
		212	텔레폰레코더	
		213	텔레타이프	
		214	텔레프린터	
		215	모사 전송기기(팩시밀리)	
		38323-111	라디오, TV 방송국장비	
		112	TV 방송국장치	
		113	라디오, TV 방송 송신기 및 관련장비	
		114	폐쇄회로 TV 조직	
		115	TV 카메라	
		116	모니터 TV	
		117	방송용 VTR	
		119	기타 방송장치 및 부품	
		211	무선 송수신기	※ 무선송수신기(38323-211)의 관련제품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통 신 기 계 (15)	38324-111	상호 통신장비	- 무선항해 조력장치 - 레이다 장치 - 원격제어용 무선장치 - 무선 방향 탐지기
		112	전기 교통 통제 장비	
		113	전기소리 또는 시각 신호장치	
수송용기계	선 박 (18)	38412-111	철강유조선	
		112	일반화물선	
		119	특수화물선	
		200	예인선	
		300	쇄빙선, 케이블선	
		400	여객선	
		511	어 선	
		512	공장선	
		900	기타 특수선박	※ 기타특수선박(38412-900)의 관련제품 - 발전선 - 소방선 - 준설선 - 인양선 - 해난구조선 - 기중기선 - 시추선
		38413-100	여객선(목선)	
		200	화물선(목선)	
		300	어선(목선)	
		900	기타 목선	
		38419-111	부선 도크 및 기타 비추진식 선박	
		112	부유구조물	
		211	합성수지선	
		212	콘크리트선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수송용기계	선 박 (18)	38419-213	경금속선	
		219	기타 선박	
	철 도 차 량 (19)	38199-111	코일스프링	※ 철도차량용에 한함
		112	잎(판상)스프링	
		38421-112	전기기관차	
		113	디젤 및 디젤기관차	
		114	전동차	
		119	기타 철도용 기관차	
		211	광산기관차	
		212	산업용 기관차	
		900	기관차 부품	
		38422-111	여객차 및 수하물차	
		112	병원차, 죄수차, 검사차	
		200	화물차	
		900	기타 차량	
		38423-100	피스톤 발브 증기기관	
		200	내연 추진기관	
		300	차 륜	
		911	완충기	※ 기타철도차량부품(38423-919)의 관련제품 - 차축(AXLES) - 윤축(PARTS OF AXLE AND WHEEL) - 커플러(COUPLERS) - 요오크(YORKERS)
		919	기타 철도차량 부품	
		38429-111	전기추진차량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수송용기계	철도차량 (19)	38429-112	레일카	- 후레임(FRAMES) -브레이크장치
		119	기타 기계추진레일차량	
	기타 수송용 기계 (20)	38191-212	콘테이너	※ 수출상품의 보관 및 운반용
		38431-211	소형버스(16인승 이하)	
		212	일반버스	
		213	고속형버스	
		311	소형트럭	
		312	중형트럭	
		313	대형트럭	
		400	특수차	※ 특수차(38431-400)의 관련제품 - 소방차 - 청소차 - 기중기차(구난차) - 분무차 - 작업차 - 이동방사선차
		38432-219	기타차량용 샷시	
		500	로드레일 및 유사콘테이너	
		600	차체부품	
		912	배기조직 및 그 부품	
		913	연료계통조직 및 그 부품	
		914	제동장치 및 그 부품	
		915	조향장치 및 그 부품	
		916	현가장치 및 그 부품	
		921	휠, 자동차륜	
		922	자동차 차축	
		929	기타 자동차 부품	

대분류	중분류	품목 번호	품 목 명	비 고
	기 타 수송용 기 계	38451-100	항공기	
		38452-100	항공기 부품	
철 구 조 물	철 구 조 물 (21)	38135-111	조립금속의 건물	
		112	육상금속구조물(교량, 굴뚝, 철탑 등)	
		113	해상금속구조물(파이프라인, 자켓)	
		200	금속구조물 부품	
		38136-100	압축, 액화가스 저장용기	
		211	탱크 및 유사금속용기 (기계장치 부착 무)	
		212	탱크 및 유사금속용기 (기계장치 부착 유)	
		38139-100	철도궤도 및 부착물	

〈 3 － 1 〉 수요자분류와 산업분류의 관련표 (총괄)

수요자분류			산업분류	
민간수요	제조업	(별표참조)	1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2	광 업
			3	제 조 업
	비제조업	운 수 업		
		건 설 업		
		광 업	4101	전기업 (한국전력)
		농 림 어 업	4200	수도사업 민간 → 비제조, 기타 ( ) 지방공공단체→공공, 기타
		기 타		
공공수요			5	건 설 업
			6	소도매 및 음식, 숙박업
	운수업 (철도청)			
	통신업 (한국전기통신공사)		711	육상 운수업
	전력업 (한 전)		7111	철도 운수업 (철도청)
	공 공 제 조 업		71124	지하철 운수업 (서울시, 부산시)
			712 ~ 713	수상운수업, 항공운수업
			720	통신업 (한국전기통신공사)
			8	금융, 보험 ┌ 특수은행 (한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 공공, 기타 └ (보 험 / 일반은행) →비제조, 기타
	공공기타 (기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91	공공행정 및 국방 (공공, 기타)
			93	사회 서어비스업 ┌ 국, 공립교육기관 → 공공, 기타 사립교육기관 → 민간, 비제조, 기타
해 외 수 요			외국으로부터의 주문 (L / C)	
대 리 점			대리점 또는 상사, 회사 등으로 부터 수주시 최종수요자가 불분명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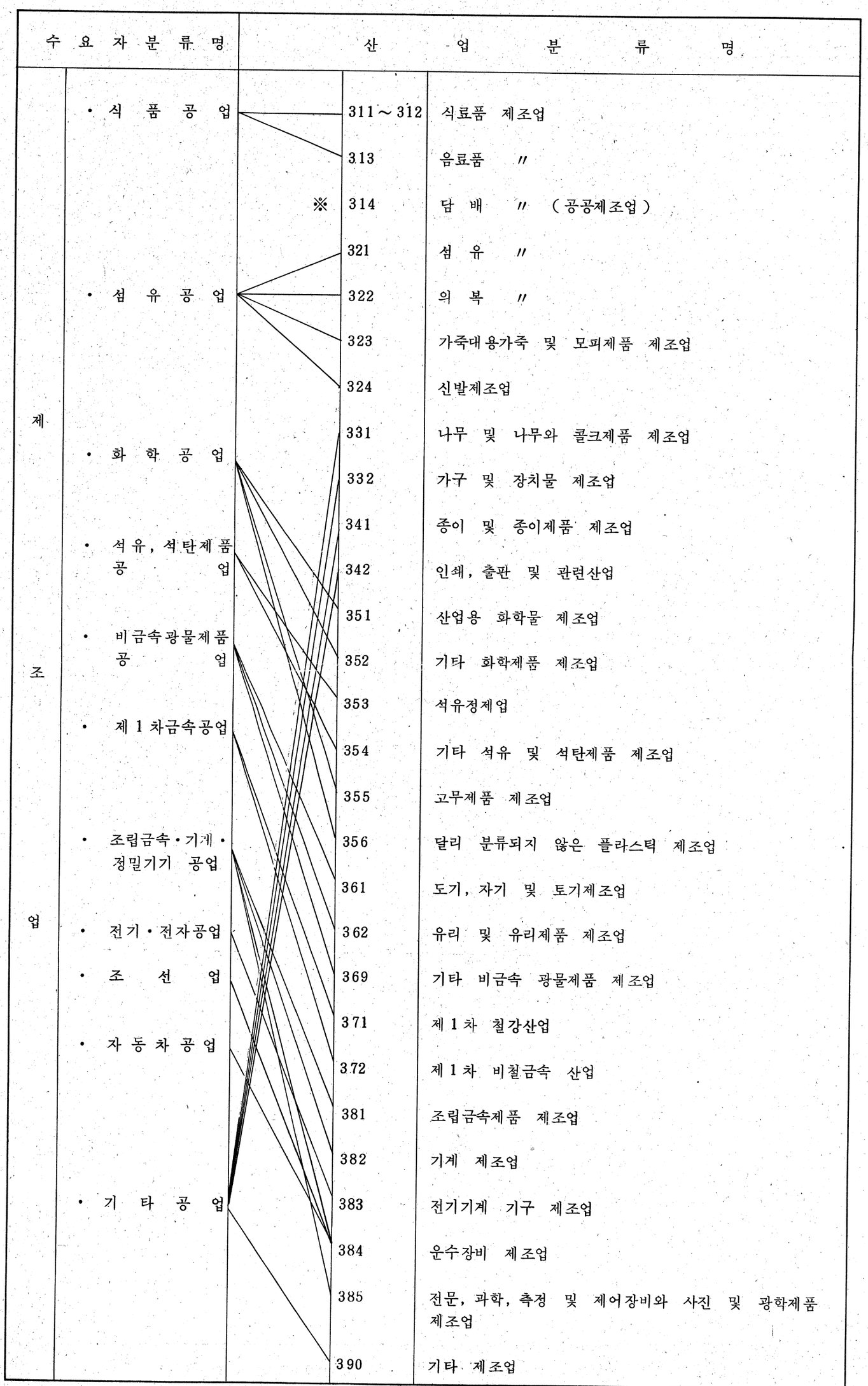
수요자분류명
산업분류명
제조업
• 식품공업
• 섬유공업
• 화학공업
• 석유, 석탄제품 공업
• 비금속광물제품 공업
• 제1차금속공업
• 조립금속·기계·정밀기기 공업
• 전기·전자공업
• 조선업
• 자동차공업
• 기타공업
311~312 식료품 제조업
313 음료품 〃
※ 314 담배 〃 (공공제조업)
321 섬유 〃
322 의복 〃
323 가죽대용가죽 및 모피제품 제조업
324 신발제조업
331 나무 및 나무와 콜크제품 제조업
332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34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42 인쇄, 출판 및 관련산업
351 산업용 화학물 제조업
35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53 석유정제업
354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355 고무제품 제조업
356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제조업
361 도기, 자기 및 토기제조업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36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71 제1차 철강산업
372 제1차 비철금속 산업
38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382 기계 제조업
383 전기기계 기구 제조업
384 운수장비 제조업
385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와 사진 및 광학제품 제조업
390 기타 제조업

〈 3 － 2 〉 수요자 분류별 관련산업 분류명

수요자분류명			산업분류명	
민간수요	제조업	• 식품공업	311～312	식료품 제조업
			313	음료품 〃
		• 섬유공업	321	섬 유 〃
			322	의 복 〃
			323	가죽대용가죽 모피제조업
			324	신발 제조업
		• 화학공업	351	산업용 화학물 제조업
			35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55	고무제품 제조업
			356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석유, 석탄제품공업	353	석유정제업
			354	석유, 석탄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제품공업	361	도기, 자기 및 토기제조업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369	기타 비금속 광물제조업
		• 제1차금속공업	371	제1차 철강제조업
			372	제1차 비철금속 제조업
		• 조립금속·기계·정밀 기기공업	381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382	기계 제조업
			384	운수장비 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선업 제외)
			385	전문과학측정 및 제어장치와 사진 및 광학제품제조업
		• 전기·전자공업	383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조선공업	384	운수장비제조업중 선박건조 및 수리수선업
		• 자동차공업	384	운수장비제조업중 자동차제조업
		• 기타공업	331	나무 및 나무와 콜크제품 제조업
			332	기구 및 장치물 제조업
			34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42	인쇄, 출판 및 관련산업
			390	기타 제조업

수요자분류			산업분류명
민간수요	비제조업	운수업	711 육상운수업 (7111 철도운수업 → 공공운수업)
			712 수상운수업
			713 항공운수업
		건설업	511 건물건설업
			512 토목건설업
		광업	210 석탄광업
			220 원유 및 천연개스 채취업
			230 금속광업
			290 기타광업
		농림어업	111 농업
			112 농업 서어비스업
			113 수렵업
			121 영림업
			122 벌목업
			130 어업
		기타	611 일반도매업
			612 상품중개업
			621 일반소매업
			622 종합소매업
			810 금융기관 (일반은행)
			820 보험업
			931 교육서어비스업 (사립교육기관)
공공수요	운수업		7111 철도운수업 (철도청)
			71124 지하철운수업 (서울시, 부산시)
	통신업		720 통신업 (한국전기통신공사)
	전력업		4101 전기업 (한국전력)
	공공제조업		정부투자기관이면서 제조업체로부터 수주
	공공기타		정부기관 + 정부투자기관중 제조업 이외의 수주
대리점			대리점 또는 상사, 회사 등으로부터 수주시 최종수요자가 불분명할 때
해외수요			외국으로부터의 주문 (L / C)

4. 수요자별 분류

민간수요 ---------- 55

[제조업] ---------- 55

식품공업 ---------- 55

섬유공업 ---------- 56

화학공업 ---------- 56

석유.석탄제품공업 ---------- 57

비금속광물제품공업 ---------- 57

제1차금속공업 ---------- 57

조립금속,기계,정밀기기 ---------- 57

전기.전자공업 ---------- 59

조선업 ---------- 59

자동차공업 ---------- 59

기타공업 ---------- 59

[비제조업] ---------- 60

운수업 ---------- 60

건설업 ---------- 61

광 업 ---------- 61

농어업 ---------- 61

기 타 ---------- 62

공공수요 ---------- 62
운수업 ---------- 62
통신업 ---------- 62
전력업 ---------- 62
공공제조업 ---------- 62
공공기타 ---------- 62

대리점 ---------- 62

해외수요 ---------- 6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민간수요	제조업	식품공업	311→312 식료품 제조업	314 담배 제조업 → 공공수요,기타
			3111 도살,고기가공 및 저장업	
			3112 낙농품 제조업	
			3113 과실 및 야채통조림 및 가공저장업	
			3114 해산물통조림 및 가공저장업	
			3115 동식물유지 제조업	
			3116 도정 및 제분업	
			3117 빵제품 및 국수 제조업	
			3118 설탕 제조업	
			3119 설탕과자 제조업	
			312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료품 제조업	
			3122 배합사료 제조업	
			313 음료품 제조업	
			3131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3132 발효주 제조업	
			3133 맥주 및 맥아 제조업	
			3134 청량음료 제조업	
			321 섬유 제조업	
			3211 방적 및 제사업	
			3212 직물제품 제조업	
			3213 편직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민간수요	제조업	섬유공업	3214	융단 및 돗자리 제조업	
			3215	끈 및 로오프 산업	
			3216	직조업	
			3217	섬유표백, 염색 및 정리업	
			3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제조업	
			322	의복 제조업	
			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업	
			3231	가죽제조업	
			3232	모피 가공업	
			3233	가죽 및 대용가죽제품 제조업	
			324	신발제조업(성형고무 또는 프라스틱 신발 제외)	
		화학공업	351	산업용 화합물 제조업	
			3511	산업용 기초화합물 제조업	
			3512	비료 및 살충제 제조업	
			3513	합성수지 프라스틱 물질 및 인조섬유 제조업 유리제외	
			35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521	도료 제조업	
			3522	의약품 제조업	
			3523	비누세정제 및 화장품 제조업	
			3529	달리 분류하지 않은 화학제품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민간수요	제조업	화학공업	355	고무제품 제조업	
			3551	타이어 및 튜브생산	
			35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고무제품 제조업	
			356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석유제품·석탄공업	353	석유정제업	
			354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공업	361	도기,자기 및 토기 제조업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36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691	구조점토제품 제조업	
			3692	시멘트,석회 및 프라스터(석고) 제조업	
			36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제1차금속공업	371	제 1차 철강제조업	
			372	제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조립금속·정밀기기·기계공업	38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3811	날붙이 수공구 및 철물제조업	
			3812	금속제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민간수요업	제조업	조립금속정밀기기·기계공업	3813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38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382	기계 제조업	
			3821	기관 및 터어빈제조업	
			3822	농업용기계 및 장비제조업	
			3823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제조업	
			3824	특수산업용기계 및 장비 제조업	
			3825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 제조업	
			38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84	운수장비 제조업	
			3842	철도장비 제조업	3841 선박 건조 및 수선업 →조선업
			38432	자동차부품 제조업	
			3844	모터싸이클 및 자전거 제조업	3843 자동차 제조업→자동차공업
			3845	항공기제조 및 수선업	
			38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장비 제조업	
			38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과학,측정 및 제어장비와 사진 및 광학제품 제조업	
			385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업	
			3852	사진 및 광학제품 제조업	
			3853	시계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민간수요	제조업	전기·전자공업	383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3831	전기산업용기계 및 장치 제조업	
			3832	라디오, 텔레비젼 및 통신장비 제조업	
			3833	가정용 전기기구 제조업	
			38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조선업	3841	선박건조 및 수선업	
		자동차공업	3843	자동차 제조업	
			38431	자동차 제조업	
		기타공업	331	나무 및 나무와 콜크제품제조업	
			3311	제재업 및 목재가공업	
			3312	목재용기 및 동세공품 제조업	
			33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나무 및 콜크제품	
			332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금속가구 제외	
			34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42	인쇄, 출판 및 관련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민간수요	제조업	기타공업	390	기타 제조업	
			3901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3902	악기 제조업	
			390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9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39091	칠기제조업	
			39092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9093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39094	가발 제조업	
			39095	비 및 솔 제조업	
			39096	라이터 제조업	
			39097	장난감 제조업	
			39098	단추 제조업	
			390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제조업	
	비제조업	운수업	711	육상운수업	7111 철도운수업→공공수요, 운수업
			7112	도로여객 운수업	
			7113	기타여객 육상운수업	
			7114	도로화물 운수업	
			7115	파이프라인 운수업	
			7116	육상운수 보조서어비스업	
			712	수상운수업	
			713	항공운수업	
			719	운수관련 서어비스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민간수요	비제조업	건설업	511	건물건설업	
			512	토목건설업	
		광업	210	석탄광업	
			220	원유 및 천연까스 채취업	
			230	금속광업	
			290	기타광업	
			2901	토사석 채취업	
			2902	화학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2903	염 전	
			29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광업	
		농림어업	111	농 업	
			1111	작물생산업	
			1112	축산업	
			112	농업서어비스업	
			1121	작물농업서어비스업	
			1122	축산서어비스업	
			1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	
			113	수렵업	
			12	임업	
			13	어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민간수요	비제요업	기타	상기 게재된 산업이외의 산업 (공공수요 제외) 도소매업,보관,통신업.금융,보험 및 용역업,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	각급 사립교육기관
공공수요	-	-	정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기타 공공단체)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경영사업소	
	운수업	운수업	7111 철도운수업 71124 지하철 운수업	철도청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통신업	통신업	72 통신업	한국통신
	전력업	전력업	4 전기업	한국전력
	공공제조업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제조활동을 하는 사업체	정부투자기관 (제조업)
	공공기타		기타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	정부기관,국공립 교육기관 기타
대리점			대리점 또는 상사,회사 등으로부터 수주시 최종수요자가 불분명할 때	
해외수요			외국으로부터의 주문(L/C)	

70-52
-1-4부

建設受注統計調査指針書

1991

統　計　廳

차 례

Ⅰ. 조사개요 ---------- 3

1. 조사연혁 ---------- 3

2. 조사목적 ---------- 3

3. 조사기준기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 3

4. 조사범위 ---------- 4

5. 조사대상처 ---------- 4

6. 조사항목(사항) ---------- 4

Ⅱ. 조사담당자 유의사항 ---------- 5

1. 실 사 ---------- 5

2. 유고사업체 처리 ---------- 7

3. 조사표 검토 ---------- 8

Ⅲ. 조사표 기입요령 ----------11

1. 일반적 주의사항 ----------11

2. 항목별 조사표 기입요령 ----------11

Ⅵ. 주요 착오사례 ----------15

1. 발주자 분류부호 착오 ----------15

2. 세분발주자분류 및 분류부호 착오 ----------15

3. 공종 분류부호착오 ----------16

4. 세분공종분류 및 분류부호 착오 ----------16

I.조 사 개 요

1. 조사연혁

1975년 1월부터 1976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의 시험조사를 거쳐 1976년 7월분 결과부터 매월 「건설 수주통계」 월보에 수록 공표하고 있으며 1976년 7월26일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11-11-15호)로 지정 고시 되었다.

2. 조사목적

건설수주 통계란 건설부장관 면허업체중 도급한도액(건설부장관고시 기준)순위 상위170개업체에 대한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을 매월 공종 및 발주자별로 조사집계한 것으로 이는 건설활동 동향을 조기에 파악하고 또한 산업활동동향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위하여 작성된다.

동 조사결과는 정부와 기업의 투자활동이나 건설업의 생산활동, 고용 및 건설자재 수급 등 건설행정 전반에 관한 기초자료가 되며, 광범위한 일반의 이용에도 제공되고있다.

특히 동 조사는 민간발주의 기계수주 통계조사와 함께 국내 설비투자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다

3. 조사기준기간,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조사기준기간은 매월 1일~말일까지로서, 각지방 통계사무소장은 전월의 수주액 조사표를 작성하여 매월 19일까지 중앙에 도착시킨다.

조사방법은 통계요원에 의한 타계식 방법으로 하되 자계식방법을 병행한다.

4. 조사범위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5, 건설업"중 국내건설공사에 한정되며 원도급공사와 직영공사는 포함하나 하도급공사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그러나 하도급받은 경우일지라도 국내 건설업체가 아닌 외국건설업체이거나 혹은 국내 종합무역상사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된다.

5. 조사대상처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도급한도액 순위상 대규모 순으로 170개사를 대상처로 하되 면허취소, 폐업, 장기휴업(6개월 이상) 등으로 대상업체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급한도액 차순위 업체를 대상처로 추가 선정한다.

(단, 2개의 조사대상 건설업체가 합병될 경우에는 추가 선정하지 않음)

6. 조사항목

가. 국내건설공사 수주액(도급공사계약액, 직영공사인 자기공사 계획액)

나. 공종명

다. 발주자명

라. 계약일자, 착공예정일자, 완공예정일자, 공사기간, 공사지역 등

Ⅱ. 조사담당자 유의사항

1. 실 사

가. 조사담당자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담당사업체를 방문, 조사표의 기입을 완료토록 해야 하며, 불의의 사고로 조사표 작성이 지연될 경우에는 2차, 3차 재방문하여 15일 이전까지는 조사표기입을 완료 해야 한다.

나. 규모가 큰 사업체로써 즉석에서 조사하기 곤란할 때는 기재요령을 충분히 설명한 후 조사표 회수를 위한 재방문 일자와 시간을 약속하고, 응답자 부재시 면접할 제2의 응답자를 지정받는다. 재방문 일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 직접 면담에 의해 조사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항목간의 연관성 및 전월과의 대비등에 유념해야 한다. 타업체의 조사표와 조사기록부를 휴대방문하였을 때에는 타업체의 실적이 누설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조사담당자는 별도로 배부된 조사기록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조사결과가 전월과 차이가 심할 때는 그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조사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마. 사업체에서 기입한 조사표를 회수할 때에는 즉석에서 반드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종명 및 발주자명이 한글(영문으로 기입되었을 시는 한글로 표기)로 정확히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세분류공종명 및 발주자명은 하단의 세분류공종명 및 세분류발주자명 보기표를 참조하여 정확히 분류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또한 계약일자, 착공, 완공 예정일자의 누락

여부 및 합리성을 점검해야 한다.

(2) 대상사업체중 도급공사와 자기공사의 관장부서가 상이할 경우가 있으므로 도급공사 수주액자료 제공부서(예: 영업부, 업무부) 뿐만아니라 자기공사(직영공사)자료 제공부서 (예: 기획관리실, 개발사업부 등)도 방문하여 자기공사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세분류공종명과 세분류발주자명이 정확하게 기입되었나를 검토하고 또한 조사표하단의 세분류 공종분류부호 및 세분류발주자 분류부호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본 조사는 약 16,000개 건설업체중 대규모 170개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비록 단 1건의 수주액이라도 누락을 시킬 경우에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누락이 안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만일, 누락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거나 익월 조사분에 포함시키고 그 내용을 비고란에 기입한다.

바. 조사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를 면접한 후 작성한다.(전화조사 엄금)

사. 조사표의 수주액 내역을 조달청 및 건설협회 자료와 비교 확인한 결과 누락되는 사례가 이따금 발생하는 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한다.

아. 이미 발주한 공사액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개별의 공사건으로 하여 일련번호, 공종별, 발주자별 부호를 부여하고 수주액 앞에는(+), (-)부호를 기입하며 우측 여백에 "증액"또는 "감액"으로 표시한다.

자. 건설회사에서 자기사옥과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건물(아파트) 및 기타건물(사무실)을 직접건설하여 일반 및 산업사용자에게 분양 또는

판매목적으로 건축할 경우 발주자분류는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차. 개인 또는 제조업체 등에서 분양 또는 판매목적으로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아파트 및 사무실 등을 건설할 경우 발주자분류는 부동산업으로 분류한다.

카. 개인, 건설업체, 제조업체 등에서 임대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 및 사무실의 경우 발주자분류는 부동산업으로 분류한다.

타. 수주계약 당시에 발주자공급 원자재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면 금액으로 환산하여 발주자공급 원자재비란에 기입한다.

2. 유고사업체 처리

유고사업체라 함은 조사불응, 휴업, 폐업, 소재불명, 이전, 전업, 명칭변경등의 경우를 말하며, 담당사업체중 이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조사불응 사업체

(1) 재방문하여 조사취지를 충분히 설명, 협조를 구하고 그래도 계속 불응하면 소속 과.부장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한다.

(2) 그래도 협조를 얻을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당해 사업체를 관할하는 건설협회 시.도 지부에 측면지원을 요청토록 한다.

(3) 건설협회 시.도 지부의 종용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방문일시 및 회수, 응답불응자, 협회종용일자, 기타사항) 즉시 중앙에 보고한다.

나. 휴업사업체

건설업은 계절변동에 민감한 사업으로 추운 동절에는 건설활동을 중단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도 사업체가 물리적인 건설활동을 중지할 뿐, 응찰, 기획, 계약 등 사무적인 활동은 계속 영위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업체의 외형적인 활동여부에 관계없이 조사담당자는 응답자를 직접 면담하여 휴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상업체가 완전히 업무를 중단하고 휴업일 경우에는 조사표 적요란에 그 사유를 기재 보고하여야한다.

다. 폐업사업체

대상 사업체중 폐업된 사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시.도 건설협회지부에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즉시 이를 중앙에 보고 하여야한다.

라. 이전사업체

동일 조사구내에서 이전한 경우에는 추적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며, 동일 사무소(시.도)내의 타조사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된 지역을 담당하는 자에게 신속히 인계하여 조사기간내에 조사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사무소장은 중앙 및 전입지에 즉시 보고(통보)하여 이전지역에서 당해 월에 조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3. 조사표 검토

접수된 조사표는 질의조회나 재조사 지시를 받지 않도록 다음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한다.

가. 조사기준인 연,월분이 정확히 기입되었나 확인하고 사업체번호 기입의 누락 또는 중복이 안되었나 검토한다.

나. 모든 금액단위는 "백만원"단위이므로 "천원"단위로 잘못 기입되었나 검토한다.

다. 공사명과 발주자명이 바르게 분류되었나를 검토하고 하단의 세분류 공종명 및 세분류 발주자명의 분류부호와도 일치하는가 확인한다.

(1) 토건공사의 경우 분리조사하는것이 원칙이나 구분이 곤란할 경우에는 수주액이 많은 공종으로 분류한다.

(2) 학교내의 제건물(강당,화장실 증.개축 등)은 주건물인 학교로 분류하나, 운동장(테니수장, 야구장 등)은 경기장(208)으로 분류한다.

(3) 공장구내 제건물은 주건물인 공장으로 분류하나, 주택, 기숙사, 병원 운동장, 연구소 등은 공사건별로 해당공종에 따라 분류한다.

(4) 건물내의 배관공사(예: 도시가스배관)는 전문공사(300)로 분류하나, 토목공사를 겸한 배관공사인 지역난방 열수송관, 송유관공사 등은 기타토목(219)으로 분류하고 상,하수도관 공사는 상하수도(206)로 분류한다.

(5) 직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의아파트를 건설할경우 발주자분류는 기타 비제조업(299)으로 분류한다.

(6)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를 위한 토목공사 발주는「농림, 수산으로 분류한다.(「토지조성」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7) 재개발사업을 위한 「oo재개발사업」은 발주자분류를 기타 비제조업으로 분류한다.(기타 공공단체가 아님)

(8) 건설업체에서 임대목적으로 짓는 사무실, 주택 등은 부동산업(223)으로 분류한다.

(9) 개인 또는 제조업체등에서 분양 또는 판매목적으로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아파트 및 사무실 등을 건설할경우 발주자분류는 부동산(203)으로 분류한다.

(10) 건설업체에서 분양 또는 판매목적으로 아파트 및 사무실 등을 자기계

정에 의하여 직접건설할 경우 건설업(225)으로 분류한다.

(11) 전신전화국에서 전화선을 매설하기 위한 도로유관공사는 전화공사(207)로 분류한다.

(12) 국책은행,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과 정부재투자기관중 정부투자기관의 지분율이 50%이상인 업체(한국핵연료, 한국지역난방공사, 남해화학 등)는 국영기업체(103)로 분류한다(단, 이러한 국영기업체 등은 민영화가 되면 국영기업체에서 제외됨)

라. 국내 타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수주액이 착오로 포함되었는지 검토한다.

마.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행 발주한 경우에 원발주자(실수요처)가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주자명을 "조달청"이라고 잘못 기입되었나 확인한다.

바. 계약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나의 공사건으로 하여 공사명 등 모든 조사항목을 기재하고 증액시에는 (+)기호를, 감액시에는 (-)기호를 증감액분앞에 표시하도록 하였는바 이의 여부를 검토한다.

사. 기타 기입사항이 오기, 누락 여부를 재검토한다.

Ⅲ. 조사표 기입요령

1. 일반적 주의사항

가. 조사표는 반드시 청색 또는 흑색 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여 각 란에 맞도록 깨끗이 기입한다. (단, 사업체번호, 공종 및 발주자분류부호, 공사지역 부호는 적색으로 기입함)

나.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4와6, 0과6, 3과8, 7과9, 4와9등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기입한다.

다. 금액의 단위는 백만원이며 백만원 미만은 사사오입하여 기입한다.

라. 오기된 내용을 정정코자 할 때는 오기된 곳에 두줄 횡선을 긋고 그 바로 위에 정정내용을 기입한다.

마. 각 항목에서 전월과 현저한 차이가 날 때는 그 사유를 적요란에 상세히 기입한다.

바. 해당되는 공사의 건수가 많아 조사표기입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조사표를 사용하여 이어서 작성하고, 그매수를 반드시 기입한 다음 끝장에만 합계를 기입한다.

사. 일련번호는 도급공사계약액과 자가공사계약액의 구분없이 차례대로 부여한다.

아. 본 조사는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제출기일을 엄수해야 한다.

자. 조사표 뒷면의 문의전화는 각 지방사무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배부한다.

2. 항목별 조사표 기입요령

가. 사업체번호

사업체번호는 지정된 번호를 기입한다. 따라서 사업체번호 기입을 누락하거나 중복이 안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국내건설공사 수주내역

(1) 도급공사계약

(가) 조사대상월중 발주자와 계약체결한 모든 건설공사내역을 공사건 별로 기입한다.

(나) 국내의 타건설업체로 부터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외국건설업체나 국내종합무역상사 등으로 부터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된다.

(다) 수주기준일은 최종계약체결일로 한다.

즉,응찰중에 있거나 설계작성중 또는 계약체결전의 일부 착공 등은 수주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낙찰되었지만 아직 계약체결이 안된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라) 장기계속공사는 총액부기금액(계약총액)을 조사한다.

장기계속공사라 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1조2의 규정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과 계약체결한 공사를 말한다.

(2) 직영공사 계획(또는 착공)내역

(가) 직영공사라 함은 조사대상 건설업체의 필요에 의하여 자기가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계약에 의하지 않은 산하기업 또는 모기업을 위한 경우도 포함한다.

(나) 자기공사의 수주기준일은 계획이 확정된 때, 즉 조사대상 건설업체의 결재권자가 결재를 완료한 때를 말한다.

그러나 계획확정없이 착공하는 경우에는 착공당시를 수주기준일로

하여 우선 대략적인 예정공사액을 보고하여 계획이 확정된 월에 공사액의 증감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명 및 세분류 공종명

(가) 공사명은 공종분류를 위하여 필요한 바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입한다.

(나) 공종분류 부호는 하단의 세분류 공종명에 따라 부호를 기입한다.

(다) 방위와 관련된 건설공사인 경우

방위와 관련된 건설공사라 함은 군부대(유엔군포함)의 공사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체, 민간 등의 건설공사도 안보상 비밀을 요하는 경우를 말하며, 방위와 관련된 공사명은 oo공사라고만 기입하고, 군인아파트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한다.

(4) 발주자명 및 세분류발주자명

(가) 발주자명은 계약상에 나타난 정식명칭을 기입하며, 세분류 발주자명은 조사표 하단을 참조하여 세분류명을 기입한다.

(나) 조달청장이 공공기관을 대행발주한 경우에는 원발주처(실수요처)를 발주자로 하여 기입한다. 따라서 원발주처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주자명을 조달청이라고 기입해서는 안된다.

(다) 방위와 관련된 공사인 경우에는 발주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기입한다. 예컨대 발주처가 군부대인 경우 군부대명 대신 "정부" 세분류 발주자명도 "정부"로 기입하고, 유엔군이면 "주한외국기관"으로 각각 기입한다.

(라) 계약에 의하지 않은 산하기업 또는 모기업을 위한 자기공사인 경우는 그 계열회사명을 기입한다.

(5) 수주액

(가) 수주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액을 말하나, 본 조사의 수주액은 공사공급가액 만이 아니라 공사공급가액에 매출부가가치세(10%)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발주자공급 원자재비도 여기에 포함한다.

(나) 직영공사인 경우는 직영공사계획 확정시(또는 착공시) 그 공사에 소요될 지가(地價)를 제외한 총공사비가 수주액이 된다.

(다) 발주자가 공사계약체결시 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건설업체에 지급키로 한 경우에는 원자재를 계약당시의 싯가로 환산하여 발주자 공급 원자재비란에 기입한다.

(라) 계약변경과 직영공사의 계획확정 또는 변경등으로 수주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변경된 수주액 내역을 공사건별로 조사 기입하되 증액시에는 증액분앞에 (+)기호를 붙이고, 감액시에는 감액분 앞에 (-)기호를 붙여 기입하고 우측여백에 "증액" 또는 "감액" 으로 표시한다.

(6) 공사지역명 및 공사지역 부호

공사지역명은 해당 시.도를 기입하고 공사지역 부호는 조사표 하단을 참조하여 적색으로 기입한다.

다. 해외건설공사 수주내역

해외건설공사 수주액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91.1월분부터 조사를 중지한다.

Ⅳ. 주요 착오사례

1. 발주자 분류부호 착오

공 사 명	발 주 자 명	착 오 분 류	바 른 분 류
· 동아일보 사옥신축	동아일보사	229. 기타제조업	219. 기타제조업
· 창천동남빌딩 신축	개인(분양목적)	225. 부동산	223. 부동산
· 평창154KV철탑공사	한국전력공사	104. 국영기업체	103. 국영기업체
· 금호강상수도 확장	대구직할시	103. 지방자치단체	102. 지방자치단체
· 국도12호선 개수공사	제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103. 정부	101. 정부
· 광양고로 주전기 설치공사	포항제철	102. 국영기업체	103. 국영기업체

2. 세분발주자 분류 및 분류부호 착오

공 사 명	발 주 자 명	착 오 분 류	바 른 분 류
· 월드타워오피스텔 신축공사(분양)	동신페인트	213. 화학	223. 부동산
· 타워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분양)	쌍용양회	219. 기타제조업	223. 부동산
· 갈현동 조합주택 아파트 공사	서울시경 주택조합	101. 정부	229. 기타비제조업
· 동부지서 신축공사	거제경찰서	102. 지방자치단체	101. 정부
· 주왕산주차장 조성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103. 국영기업체	109. 기타공공단체
· 비상용 기계설치 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109. 기타공공단체	103. 국영기업체
· 광주주유소 건설	동화석유	213. 석유	222. 상업

3. 공종 분류부호 착오

공 사 명	발 주 자 명	착 오 분 류	바 른 분 류
· 만덕 동아 아파트	럭키개발	102. 주택	101. 주택
· 삼도빌딩신축공사	삼도물산	103. 사무실	102. 사무실
· 온산공업기지 회남 단지 조성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03. 공장	208. 토지조성
· 한강저수로 준설공사	서울시	109. 기타토목	219. 기타토목

4. 세분공종분류 및 분류부호 착오

공 사 명	발 주 자 명	착 오 분 류	바 른 분 류
· 익산군청 청사공사	익산군청	102. 사무실	104. 관공서
· 송탄-평택간 도로 유관 관로공사	경기전신전화국	203. 도로	207. 전화공사
· 대천도로유관 관로공사	대전전신전화국	219. 기타토목	207. 전화공사
· 연무대국 청사신축	통신공사 충남지사	104. 관공서	102. 사무실
· 속초리조트타운 건설	현대산업개발	101. 주택	102. 숙박시설
· 농공단지 조성공사	원주시	202. 농림	208. 토지조성

〈부록〉

1. 발주자 분류해설

가. 국내 공공부문 발주

101. 정 부

중앙행정기관(각원, 부, 처, 청),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주재기관(각급 검찰관서, 각급 경찰관서, 각급 세무관서, 각급 관세관서, 각급 체신관서, 조달관서, 지방통계사무소, 농촌지도소, 지방 국토관리청, 국토유지건설 사무소 등), 각급 군부대, 각급 국립학교(국립대학교 및 부속 초.중.고등학교, 경기, 대전, 부산 개방대학 등), 각종 헌법기관(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등), 중앙정부 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 입법부(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등), 사법부(대법원, 각급 법원 및 지원, 등기소 등)

102.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각도, 구.시.군, 시.도 교육위원회, 구.시.군교육청, 공립학교(사립학교는 민간 비제조업의 상업써비스, 금융 및 보험업에 분류), 소방관서 등

103. 국영기업체

국영기업체는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의 특별한 출자로 기업체를 만들어 그 업체로 하여금 목적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 국책은행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 정부투자기관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

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탄개발공사, 한국종합화학(주),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농업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관광공사, 국정교과서(주), 한국해외개발공사, 근로복지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 정부출자기관 ; 포항제철(주), 한국외환은행, 한국감정원, 한국수출입은행, 민자역사(단,민자역사는 민간으로 분류함)

※ 지방공기업 ; 서울지하철공사,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대구시도시개발공사

※ 정부재투자기관 ;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핵연료(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성업공사, 한국송유관(주), 남해화학(주), 대한송유관공사 등 (대한중석광업, 영남화학, 진해화학, 한주(주) 등은 민간으로 분류)

109. 기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으로서 공공복리를 위한 각종조합(농협, 수협, 축협, 농지개량조합), 영조물법인, 각종연구소, 대한적십자사 등. (단,다수의 개인이 재개발을 위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조합을 건립한 경우에는 기타 비제조업으로 분류)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관리연구소, 국방품질연구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소,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에너지관리공단, 국토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한국과학기술원, 해양연구소, 한국에너지연구소, 한국표준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소, 한국과학재단, 재단법인한국농촌경제연구소,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어업기술훈련소, 한국인구보건연구원 갱생보호회, 세계반공연맹사무국, 남북평화통일연구소, 서울종합직업훈련원, 대한나환자협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결핵협회,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 대한지적공사, 교통안전진흥공단, 국제항공관리공단,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문예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보훈복지공단, 예술의전당,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부산교통공단 등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강남병원, 부산의료원, 제주의료원, 의정부의료원, 이천의료원, 안성의료원, 금촌의료원, 춘천의료원, 강릉의료원, 원주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삼척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김천의료원,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금강도선공사, 부산위생주식회사, 대구개발주식회사, 주식회사인천개발공사, 주식회사경기개발공사, 경북개발주식회사, 주식회사대전종합개발주식회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농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대구정신병원, 경주개발주식회사 등

나. 국내 민간부문 발주

(1) 제조업

211. 음식료품제조업

도살, 육류가공 및 저장, 육류포장, 낙농제품, 통조림가공, 동식물 기름제조가공, 도정, 제분, 장류제조, 사료제조, 주류, 누룩제조, 설탕제조, 어름제조, 조미료제조업 등

212. 의류제조업(섬유.의복 및 가죽제품제조업)

직물, 가방, 편직, 어망, 로프, 방적, 제사, 방직, 표백, 염색, 비옷, 가죽, 돗자리제조업 및 자수업 등

213. 화학, 석유제조업(고무 및 프라스틱제품제조업)

공업용화학제품, 비료, 농약, 합성수지, 프라스틱, 도료, 안료, 의약품, 비누, 향료, 폭약, 성냥, 사진감광제, 잉크, 석유정제, 연료, 고무제품, 타이어, 고무신, 에보나이트, 화장품제조업 등

214. 철강제조업(제1차 금속제조업)

제철, 제강, 압연, 주물 기타 비금속제련업 등

215. 기계제조업(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금속제품, 구조물, 장치틀, 베어링, 볼트, 낫트, 케이블 등의 금속소재, 기계요소, 일반기계, 전기기기, 자전거, 자동차,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등의 수송장비, 과학계측기, 카메라, 기계, 안경 등의 정밀기기 제조업 등

219. 기타 제조업

제재, 제지, 신문, 가구, 합판, 인쇄, 출판, 유리, 악기, 장난감, 운동구, 귀금속, 우산, 필기, 사무용품, 고공품, 시멘트 제조업 등

(2) 비제조업

221. 운수. 보관창고업

운수, 창고, 파이프라인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수, 보관업 등

222. 금융, 보험, 상업 및 서어비스업

시중은행, 증권회사, 전당포, 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부동산중개, 토지매매, 여관, 영화관, 문화서어비스, 법무, 회계서어비스, 자료처리, 종교, 복지, 토목건축설계사무소, 광고, 민영방송, 각종협회(한국무역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통계협회 등), 흥신소, 교육, 의료, 도소매업, 장의사, 각종 수리업, 현대사회연구소, 군인공제회, 각종 종친회 등

223. 부동산업

대점포, 대사무실, 주택(아파트) 임대 등

224. 광 업

석탄, 원유, 천연가스 채취, 금속광업, 모래, 사리, 석회석, 점토, 석면, 장석, 암석, 석재채취 등의 광업

225. 건설업

건물자영건설업(자기계정에 의하여 아파트 또는 사무실을 직접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건설업체)

229. 기타

농림어업, 수산업, 전기, 가스, 수도업 등

다. 국내 외국기관

주한외군, 외국상사, 주한외국공관 등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기관

2. 공종 분류해설

가. 건 축

101. 주 택(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아파트(군인아파트 포함), 기숙사, 연립주택(산업용과 주거용 혼합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용 면적이 연면적의 50%이상인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분류한다.), 사택증. 개축 등

102. 사무실, 점포, 숙박시설, 오락장

사무실, 은행, 점포, 백화점, 오락장, 영화관, 극장, 여관, 호텔, 욕탕, 이. 미용실, 방송국, 시장, 예식장, 실내수영장 등

103. 공장, 창고

공장구내 제건물(주택, 기숙사, 병원, 운동장, 연구소등은 제외), 발전소건물, 변전소건물, 영업창고, 농업창고, 보세창고, 위험물창고 등

104. 학교, 병원, 관공서 청사

교육시설(교사, 강당, 시험소, 교습소, 연구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사관학교 등)

후생시설(병원, 보건소, 육아소, 고아원, 양로원, 복지회관, 기타 보호시설등), 관공서 청사(각종 관공서 청사, 공회당, 소방서, 기상청 등)

109. 기타 건축

철도(기관차 차고, 정거장 제건물), 부두(보세창고, 영업창고를 제외한 부두 제건물), 공항(격납고를 포함한 공항 제건물), 교정 시설(교도소, 소년원, 부녀보호소 등), 기타(동물원, 수족관, 사찰, 교회, 체육관, 박람회건물, 화장장, 군막사, 우사, 등대 등)

나. 토 목

201. 치산, 치수

하천공사, 사방공사, 치산, 해안제방, 해안침식대책, 개수공사 등

202. 농림, 수산

농업시설공사, 간척, 개간, 관개, 어항, 양식시설, 육묘장 등

203. 도로, 교량

도로, 교량, 광장, 육교, 고가도로, 지하도, 도로터널공사, 유원지 주차장 등

204. 항만, 공항

항만, 부두설비, 방파제, 부교, 급유설비(항만내), 저탄장, 활주로, 항만준설공사 등

205. 철도, 궤도

철도, 지하철, 철도교량, 레일공사, 침목공사 등

206. 상.하수도

취수, 정수, 배수 등 상수도 설비공사, 측구, 하수종말처리장, 분뇨 처리장, 오수정화, 하수처리설비공사, 하수도 등

207. 발전, 송전, 변전, 배전시설

수력, 화력, 원자력발전, 송.변전, 옥외배전시설, 전화노선공사, 전기통신선로공사 등

208. 토지조성, 공원, 운동장, 경기장

매립, 정지, 택지조성, 공원, 운동장, 경마장, 유원지, 조경공사, 농공단지, 공단부지 조성공사 등

209. 댐

댐시설, 취수설비 등

210. 기계설치

각종 기계설치, 기중기설치 등

219. 기타 토목

터널공사(도로터널 제외), 준설(항만준설제외), 동굴공사, 삭도공사

지하주차장 시설공사, 지역난방열수송관, 송유관공사, LNG배관공사 등

다. 전문 공사

300. · 연관난방(연관, 난방, 환기, 냉방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옥내 배수 설비, 건조장치, 제빙장치, 실내 배관공사 등)

· 도장, 도배, 실내장식(시멘트 뿜어붙이기, 단청공사 등)

· 전기, 통신(옥내배선, 조명시설, 옥내전화 설치공사, 화재경보기 설치 공사 등)

· 석공, 미장(석재가공부착, 블록쌓기, 타일부착 등)

· 목공(목공, 마루깔기 등)

· 지붕잇기, 합석공사

· 구조강 건립(철골조건설, 철근, 판금, 금속제삿슈, 비상계단 공사 등)

· 방수, 방습, 내화

· 기타(유리, 굴정, 해체, 굴뚝설치, 열절연, 집진장치, 온돌, 비계, 창호, 축로, 조원공사, 칸막이, 천정공사 등)

※ 단, 건물로 부속된 냉.난방, 환기, 급배수, 전기, 가스, 오물처리, 방화, 승강기 등 각종 설비의 설비공사가 건물공사 등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체가 되는 공사의 분류에 포함시킨다.

또한 부속건물(창고, 차고 등)이나 문따위 공사도 주건물의 공사분류로 한다.

3. 지침서내용 주요변동 사항

(91년도 1월분 조사부터 적용)

'90년도 지침서 내용 및 주요변동 보완내용
1. 공종분류부호 와 발주자분류부호 변경 o공종분류부호 변경 105. 기타건축 ——> 109. 기타건축 211. 기타토목 ——> 219. 기타토목 o발주자분류부호 변경 104. 기타공공단체 ——> 109. 기타공공단체 216. 기타제조업 ——> 219. 기타제조업 225. 기타비제조업 ——> 229. 기타비제조업 **2. 세분류 발주자명 및 부호 조정** 221. 운수, 보관 ——> 221. 운수, 보관 222. 상업, 서비스 금융, 보험 ——> 222. 상업, 서비스 금융, 보험 223. 부동산업 ——> 223. 부동산업 224. 광업 ——> 224. 광업 225. 기타비제조업 ——> 225. 건설업(신설) ——> 229. 기타비제조업(농림, 어업, 수산업, 전기·가스, 수도업 등)

'90년도 지침서내용 및 주요변동 보완내용

3. 발주자 분류변경

. 건설업체에서 분양목적으로 아파트 및 사무실을 직접 건설할 경우 부동산업(223)에서 → 건설업(225)으로 분류한다.

4.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분류기준

. 건설업체가 자기사옥과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건물(아파트)및 기타건물(사무실)을 직접 건설하여 일반 및 산업사용자에게 분양 또는 판매목적으로 건축할 경우 발주자분류는 건설업(225)으로 분류한다.

. 개인 또는 제조업체 등에서 분양 또는 판매목적으로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아파트 및 사무실 등을 건설할경우 발주자 분류는 부동산(223)으로 분류한다.

. 건설업체, 제조업체 등에서 임대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 및 사무실의 경우 발주자 분류는 부동산업(223)으로 분류한다.

5. 해외건설수주조사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조사중지한다.

6. 장기계속공사는 총액부기금액(계약총액)을 조사한다.

. 장기계속공사라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1조2의 규정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과 계약체결한 공사를 말한다.

7. 장기계속공사의 조사방법

. 장기계속공사라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1조2의 규정(공사계약

'90년도 지침서내용 및 주요변동 보완내용
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 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경우 제 2차 공사이후의 계약을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과 계약체결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공사는 총액부기금액(계약총액)과 당해년도 계약금액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총액부기금액(계약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출기한 : 매월 15일

※ 사 업 체 번 호	※ 사 업 체 명
□□-□□□	

지 정 통 계
111-11-15

(199 년 월분)

건설 수주통계 조사표

본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통계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비밀은 절대로 보장됩니다.

1. 국내건설공사 수주내역

(금액단위 : 백만원)

	일련번호	① 공사명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입)	② 세분류 공종명	공종분류 (부호)	③ 발주자명	④ 세분류 발주자명	발주자분류 (부호)	⑤ 수주액 합계 (천억 백억 십억 / 억 천만 백만)	계약금액 (천억 백억 십억 / 억 천만 백만)	발주자공급 원자재비 (천억 백억 십억 / 억 천만 백만)	⑥ 계약일자	⑦ 착공예정일자	⑧ 완공예정일자	⑨ 공사기간 (개월)	⑩ 공사지역명	공사지역 (부호)
도급공사계약액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직영공사계획액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건	99	합 계									× × × × × × × × × × ×					

〔세분류공사종류및부호〕

1. 건 축	2. 토 목		3. 전문공사
101 주 택 102 사무실·점포·숙박시설·오락장 103 공장·창고 104 관공서·학교·병원 109 기타(체육관, 군막사등)	201 치산·치수 202 농림·수산 203 도로·교량 204 항만·공항 205 철도·궤도 206 상·하수도 207 발전·옥외전기및전화공사	208 토지조성·공원·경기장 209 댐 210 기계설치 219 기타	300 연관·난방·도장·도배·옥내전기공사·석공·미장·목공·지붕잇기·함석·구조강건립·방수·방습·내화·건물철거·기타(굴뚝·온돌·비계·창호·공사등)

〔세분류발주자명및부호〕

1. 국내공공	2. 국내민간		3. 국내외국기관
101 정 부 102 지방자치단체 103 국영기업체 109 기타공공단체	21 제 조 업 211 음식료품 212 섬유·의복 213 화학·석유 214 철 강 업 215 기계·장치 219 기 타	22 비제조업 221 운수·보관 222 상업·서비스 금융·보 험 223 부 동 산 224 광 업 225 건 설 업 229 기타비제조업	300 국내외국기관

〔공사지역별부호코드〕

11 : 서울	33 : 충북
21 : 부산	34 : 충남
22 : 대구	35 : 전북
23 : 인천	36 : 전남
24 : 광주	37 : 경북
25 : 대전	38 : 경남
31 : 경기	39 : 제주
32 : 강원	

1. ※란은 지방통계사무소에서 우송시 기입한다.

2. 해당되는 공사의 기입란이 부족할 경우 타조사표를 사용하여 매수를 기입하되 소계는 제외하고 합계만 기입한다.

3. 도급공사계약액에는 발주자와 체결한 도급계약 금액을 기입한다. 국내타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수주액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나, 하도급 받은 경우일지라도 외국건설업체나 국내종합무역상사등으로 부터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된다.
발주자공급 원자재비는 발주자가 공급할 재료비를 계약 당시의 싯가로 환산기입한다.

4. 직영공사는 계획확정시 예정총공사비를 기입하되, 계약확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착공시의 예정공사비를 조사한다. 여기서 직영공사란 조사대상건설업체 그리고 계약에 의하지 않은 모기업 또는 산하기업을 위한 자기공사를 말한다.

5. 사업체 고유번호, 공종분류부호, 발주자 분류부호, 공사지역부호란은 부호기입에 특히 유의하고 적색펜으로 기입한다.

6. 세분류 발주자명 및 공종명은 조사표 하단의 내용에 따라 분류 기입한다.

7.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행발주한 경우에는 원발주자(실수요자)를 확인하여 기입한다.

8. 방위와 관련된 건설공사일 경우에는 공사명은 "○○공사"로, 발주자명은 정부(국군부대일 경우도 동일) 또는 국내 외국기관(유엔군부대일 경우)으로 기입한다.

9. 계약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발생월의 증감액만을 기입하되 증액시에는(+) 기호를, 감액시에는 (-) 기호를 증감액분 앞에 표시하고 그 내용을 난외 여백에 기입한다.

10. 단 한건의 수주액도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만일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누락분을 즉시 보고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익월조사시 기입보고하되 그 내역을 비고란에 기입한다.

○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때에는 통계청( ) 통계사무소( )으로 문의하십시오.

○국내수주액 전월대비 증감요인

구 분	수주액(백만원)	증 감 요 인
전 월		
금 월		
증 감 액		

○비 고

작 성 일 자 : 199 년 월 일	전 화 번 호 :
사 업 체 명 :	작 성 자 명 ㊞
작 성 부 서 :	조사담당자 ㊞